연구보고 RR 2019-2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이 쌍 철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9년 기본 연구-2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연 구 책 임 자 **이쌍철**(한국교육개발원)
공 동 연 구 자 **김정아**(한국교육개발원)
김미숙(한국교육개발원)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이호준(한국교육개발원)
김영식(경 남 대 학 교)
김자영(공주교육대학교)
이현주(명 지 대 학 교)
연 구 원 **이지미**(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민주시민교육연구실

머 리 말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 1989년 UN이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함으로써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지내는 공간으로서 학교 내 삶 속에서 인권의식과 감수성 등이 길러질 수 있으며, 인권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라는 공간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학생의 인권의식과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사회문화가 만나는 곳으로 교사-학생 간 잠재적인 갈등이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을 뿐, 학교 인권교육과 실태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들의 주요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에 두고 학교 인권교육과 현황을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인권교육 현황, 교사 및 학생의 인권의식, 학교 실태 분석(Ⅳ장)과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석(Ⅴ장),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Ⅵ장), 차별기능문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제시법 분석(Ⅶ장) 등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학교의 인권교육, 의식, 실태 현황들은 향후 학생 인권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바쁜 학사일정 속에서도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과 학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9년 12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 장 반 상 진

연 구 요 약

본 연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고서 체계를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Ⅰ장), 이론적 배경(Ⅱ장), 조사 방법 및 도구 타당화(Ⅲ장) 등 조사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와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2부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 실태를 다각도로 드러낼 수 있도록 각 장별 핵심 주제와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 1부: 조사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분석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및 내용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학생들의 주요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침해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Ⅱ장에서는 인권교육 및 학교 인권교육의 의미와 실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맥락에서 인권과 인권교육의 의미, 인권교육의 접근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실제적 측면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도 업무 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각 지역별 인권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끝으로,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도구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인권의식조사 및 인권교육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의 조사 항목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화 분석 과정을 상술하였다. 예비조사는 전문가 협의회, 교사 및 학생 8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안면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을 오프라인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 118명, 중학생 136명, 고등학생 135명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265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의 재적 학생 수에 따라 층화군집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방식(학교 소재지, 학교유형(고등학교), 설립유형 등을 반영)으로 학교급별로 각각 105개 학교씩을 표집 하였다. 최종적 추출된 315개 학교 중 301개 학교(학생 13,524명, 교사 1,971명, 교감/부장교사 300명)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도구 문항의 타당화 분석 결과, 인권의식 척도는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타당화 과정에서도 가정된 하위구인과 동일하게 추출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3요인(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모형지수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또한 적절한 수준임이 확인되어, 학생용과 교사용 모두 인권의식 척도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 2부: 주제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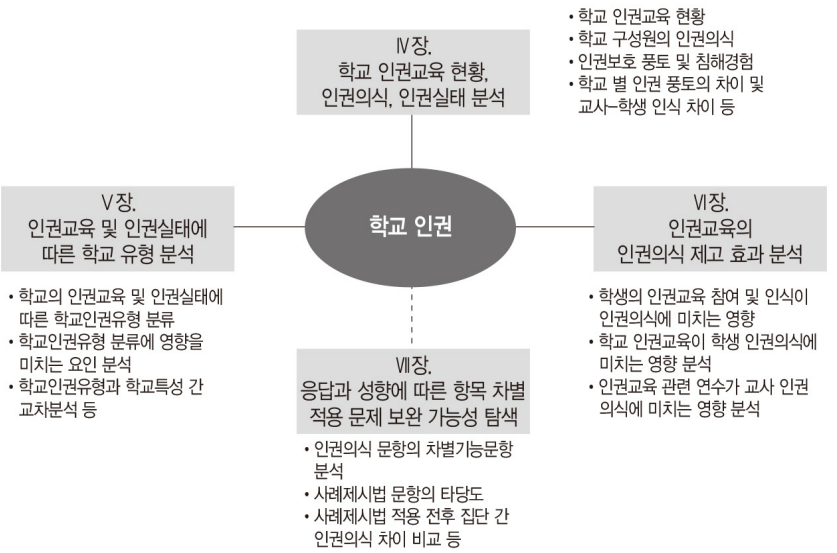

2부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인권교육과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개별 장별 연구 방법과 주제를 달리하며 핵심 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권교육 현황, 교사 및 학생의 인권의식, 학교 실태 분석(Ⅳ장)과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석(Ⅴ장),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Ⅵ장), 차별기능문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제시법 분석(Ⅶ장)을 실시하였다.

□ Ⅳ장: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 실태 분석

Ⅳ장에서는 기초 통계(평균, 빈도 등)와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보호 실태는 어떠한지, 교사와 학생의 인권의식은 어떠한지, 교사의 전문성 정도는 어떠한지,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 간 인권보호 풍토의 차이와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의 인권 현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영역	주요 분석 내용
1. 학교 인권교육 현황	▪ 인권 교육 운영 형태, 운영 시간 ▪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수업방법 및 효과 인식 등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 교사의 인권의식, 학생의 인권의식 등
3. 인권보호 풍토 및 침해	▪ 학교, 친구, 가정 내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등
4.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	▪ 학교 내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권리 영역별)
5. 교사 전문성	▪ 인권 중요도에 대한 인식 및 준비도,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정도
6. 지원 및 개선 요구	▪ 지원 요구 사항, 개선을 위한 과제 등

먼저 학교 인권교육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교육 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보다 유관교육 프로그램(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었다. 인권교육은 교과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보다 생활지도(조회·종례, 상담 등) 시간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 보다 인권수업 시간이 많았다. 교사들은 학교교육 계획서에 반영된 인권교육과정 구성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조사 참여 학생 중 33.2%는 자신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0가지 인권 영역별 인권교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의 차이가 컸으며,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효과 면에서 인권교육이 학생의 지식 이해와 태도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수업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학교 간 인권 수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호되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보호 정도는 낮아졌다. 중등학교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 권리에 대한 보호 정도가 특히 낮았다. 친구(선배) 간 권리 보호 정도는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정도가 가장 낮았다.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반면, 친구(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차별관련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부모,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 비율은 소수에 불과했다. 더불어,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인권보호 정도와 학생이 인식하는 인권보호 정도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은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업에 대한 준비도는 중요도만큼 높지 않았다. 인권 중요도 및 수업 준비도 면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르칠 준비도 역시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양성단계 및 현직에서의 인권 관련 연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 학급 운영 방안 등 실천적인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높았다. 인권 연수 내용은 지식으로서 인권 이해 교육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법, 네트워크 구축 방법,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가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

는 보통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교사들은 시간 확보의 어려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목표와 의미에 대한 공유 부재로 인해 인권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시간 확보, 교수-학습 자료 보급,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V장: 학교 유형 분석

V장에서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정도, 학생 인권 실태(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사 인권 실태(교사-교사, 교장 리더십)를 기준으로 학교를 유형화하였다.

인권교육		인권 실태			
교사 관련	학생관련	학생 관련		교사 관련	
인권교육의 질	인권교육 만족도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

전체 301개 학교를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5개 유형-유형1(22.3%), 유형2(17.3%), 유형3(35.2%), 유형4(19.6%), 유형5(5.6%)-로 분류되었다. 유형1 학교는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모두 잘 보호되고 있는 학교이다. 유형2 학교는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생의 인권보호 정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교사 간 인권보호 실태 및 학교장 리더십 등 교사 관련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학교이다. 유형3 학교는 유형2 학교와는 반대로,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생 관련 인권보호 실태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교사 관련 인권보호 실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4 학교는 인권교육, 학생 및 교사 관련 인권보호 정도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인권교육과 학교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학교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5 학교는 인권교육 정도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수준이 유형4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은 학교들로, 특히 교직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인권교육과 관련한 학교장 리더십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분류된 학교 유형과 학교특성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유형은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형1 학교는 초등학교, 군·읍·면지역 학교, 국·공립학교가 많았고, 유형2 학교에는 고등학교, 특별광역시학교, 국·공립학교가, 유형3 학교는 중학교, 중소도시 및 군·읍·면지역 학교, 국·공립학교가 많았다. 유형4 학교에는 고등학교, 중소도시, 국·공립학교가, 유형5 학교에는 고등학교, 특별광역시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학교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 Ⅵ: 인권교육이 인권의식에 주는 효과 분석

Ⅵ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인권교육 및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인권교육이 어떠한 수업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족하는지가 교육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이의 운영,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급에 따라 학교 인권교육의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의 인권교육은 인권판단 제고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의 인권교육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권 감수성 제고에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학교의 인권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

교와 고등학교의 인권교육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현행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 함양, 특히 인권판단 및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Ⅶ장: 응답 편향성 문제 보완 가능성 탐색

Ⅶ장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편향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례제시법을 탐색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학생의 성취수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 인권의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이후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권판단과 인권 감수성 차이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 편향성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본 연구에서 적용한 사례제시법과 같은 방법론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본 연구의 의미

Ⅷ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각각의 분석이 가지는 학술적 의미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권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인권의식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의 풍토가 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사-교장 등 학교 구성원 간 매일 매일 맺는 관계적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과, '인권교육'이라는 정규 과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권교육은 교원의 관심과 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학교별 인권보호 풍토의 차이, 인권의식의 차이, 인권교육 만족도의 차이 등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한 학교 내 학생인권(교육, 의

식, 실태) 현황을 드러내고 향후 관련 연구 수행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셋째, 학교 내 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 영역별로 학생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관심을 가져야할 학생 권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인권교육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인권교육 못지않게 생활을 통해 체득되는 인권교육(인권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 별 인권보호 문화의 차이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 학교의 인권 상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넷째, 본 연구는 개념 및 실태 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인권교육의 효과 즉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활동이 실제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 여부,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수업 풍토, 학교 내 인권교육 관련 교육활동, 인권교육 계획 주체, 인권교육 관련교원 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학생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를 최소자승법(OLS)과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등 정교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인권의식 관련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에서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비모수적인 방식의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차별기능문항의 식별하는 노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향후 인권의식과 같이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에서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 학교유형, 인권교육 효과, 사례제시법

CONTENTS

차 례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7

Ⅱ. 이론적 배경 ····· 13

1. 인권교육 개념 및 논의의 특징 ····· 15
2.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 정책 분석 ····· 26
3. 인권의식 도구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30
4. 시사점 ····· 41

Ⅲ.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개요 및 조사도구 타당화 ····· 45

1. 예비조사 개요 ····· 47
2. 본조사 개요 ····· 48
3.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타당화 ····· 57

Ⅳ. 학교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인권실태 분석 ····· 71

1. 학교 인권교육 현황 ····· 73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 103
3. 인권보호 풍토 및 침해 경험 ····· 111
4.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및 교사-학생 인식 차이 ····· 133
5. 교원 전문성 ····· 138
6.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요구 ····· 154
7. 요약 및 시사점 ····· 161

Ⅴ.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분석 ····· 171

1. 서론 ····· 173
2.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류 ····· 178
3. 학교특성별 학교유형 분석 ····· 182
4.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85
5. 시사점 ····· 188

Ⅵ.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 ····· 191

1. 연구의 필요성 ····· 193
2. 연구 방법 ····· 195
3. 분석 결과 ····· 202
4. 시사점 ····· 216

Ⅶ. 응답자 성향에 따른 항목 차별 적용 문제 보완 가능성 탐색: 사례제시법 (Anchoring Vignette Method) ····· 221

1. 연구의 필요성 ····· 223
2. 분석 방법 ····· 225
3. 분석 결과 ····· 231
4. 시사점 ····· 251

Ⅷ. 요약 및 제언 ····· 255

1. 요약 ····· 257
2. 학술적 의미와 제언 ····· 266
3. 정책적 제언 ····· 270

참 고 문 헌 ····· **274**

부 록 ····· **293**

[부록 1]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설문지 ····· 295

[부록 2] Ⅳ장 관련 표 ····· 351

CONTENTS

표차례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운영 세부 사항 ····· 9
〈표 Ⅱ-1〉 학교인권교육에서 함양되어야 할 인권의식의 3요소 ····· 23
〈표 Ⅱ-2〉 시·도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 분류 예시 ····· 26
〈표 Ⅱ-3〉 시·도교육청별 2019년도 인권 관련 정책 현황 비교 ····· 27
〈표 Ⅱ-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 ····· 28
〈표 Ⅱ-5〉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 ····· 29
〈표 Ⅱ-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 31
〈표 Ⅱ-7〉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 31
〈표 Ⅱ-8〉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의 조사 항목 ····· 33
〈표 Ⅱ-9〉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학생 조사지 문항 구성 ····· 35
〈표 Ⅱ-10〉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교사 조사지 문항 구성 ····· 36
〈표 Ⅱ-11〉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청소년의 인권 영역 ····· 37
〈표 Ⅱ-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 실태 조사 ····· 38
〈표 Ⅱ-13〉 2006년-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변화(대분류) ····· 39
〈표 Ⅱ-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중 인권의식 및 태도 문항 ····· 40
〈표 Ⅲ-1〉 예비조사 응답 현황 ····· 48
〈표 Ⅲ-2〉 본조사 개요 ····· 48
〈표 Ⅲ-3〉 모집단 및 목표 표집 현황 ····· 49
〈표 Ⅲ-4〉 본조사 학생용 설문지 응답 현황 ····· 51
〈표 Ⅲ-5〉 본조사 교사용 설문지 응답 현황 ····· 52
〈표 Ⅲ-6〉 본조사 학교용 설문지 응답 현황 ····· 53
〈표 Ⅲ-7〉 학생용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 54
〈표 Ⅲ-8〉 교사용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 55
〈표 Ⅲ-9〉 학교용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 56
〈표 Ⅲ-10〉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학생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 59
〈표 Ⅲ-11〉 인권의식 척도 요구구조 모형 적합도 지수 ····· 61
〈표 Ⅲ-12〉 초등학생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개념·수렴타당성 결과 ····· 61

〈표 Ⅲ-13〉 중·고등학생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개념·수렴타당성 결과 ····· 62
〈표 Ⅲ-14〉 판별 타당도 결과(초등학교) ····· 63
〈표 Ⅲ-15〉 판별 타당도 결과(중·고등학교) ····· 64
〈표 Ⅲ-1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교사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 65
〈표 Ⅲ-17〉 교사 인권의식 척도 요구 구조 모형 적합도 지수 ····· 66
〈표 Ⅲ-18〉 교사 인권의식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개념·수렴 타당성 결과 ····· 67
〈표 Ⅲ-19〉 교사의 판별 타당도 결과 ····· 68
〈표 Ⅴ-1〉 분석대상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 현황 ····· 175
〈표 Ⅴ-2〉 학교유형 분류에 투입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 176
〈표 Ⅴ-3〉 잠재계층 분류 적합도 지수 ····· 179
〈표 Ⅴ-4〉 유형별 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 180
〈표 Ⅴ-5〉 학교특성별 학교유형 현황 ····· 182
〈표 Ⅴ-6〉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 185
〈표 Ⅴ-7〉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6
〈표 Ⅴ-8〉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7
〈표 Ⅵ-1〉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판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2
〈표 Ⅵ-2〉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3
〈표 Ⅵ-3〉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4
〈표 Ⅵ-4〉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6
〈표 Ⅵ-5〉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8
〈표 Ⅵ-6〉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10
〈표 Ⅵ-7〉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인권판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13
〈표 Ⅵ-8〉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14
〈표 Ⅵ-9〉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15
〈표 Ⅶ-1〉 인권의식 관련 앵커링 비네트(Anchoring Vignettes) 문항 ····· 230
〈표 Ⅶ-2〉 인권판단 문항의 차별기능문항 분석(학생) ····· 232
〈표 Ⅶ-3〉 인권감수성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학생) ····· 233
〈표 Ⅶ-4〉 인권 행동의사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학생) ····· 235
〈표 Ⅶ-5〉 '인권판단' 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교사) ····· 237

〈표 Ⅶ-6〉 인권 감수성 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교사) ····· 240
〈표 Ⅶ-7〉 인권 행동의사 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교사) ····· 242
〈표 Ⅶ-8〉 사례제시법 문항에 대한 응답 타당성(학생) ····· 245
〈표 Ⅶ-9〉 사례제시법 문항에 대한 응답 타당성(교사) ····· 246
〈표 Ⅶ-10〉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학생의 인권의식 비교 ····· 247
〈표 Ⅶ-11〉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교사의 인권의식 비교 ····· 249

CONTENTS

그림차례

[그림 Ⅱ-1]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의 프레임워크 ····· 37
[그림 Ⅲ-1] 학생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 60
[그림 Ⅲ-2] 교사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 66
[그림 Ⅳ-1]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 74
[그림 Ⅳ-2]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 75
[그림 Ⅳ-3] 인권교육 계획: 반영 형태 ····· 76
[그림 Ⅳ-4]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도 ····· 77
[그림 Ⅳ-5] 인권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78
[그림 Ⅳ-6]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 ····· 79
[그림 Ⅳ-7] 1년간 인권교육 실시: 경험 여부 ····· 81
[그림 Ⅳ-8] 1년간 인권교육 실시: 시간 ····· 82
[그림 Ⅳ-9]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편성 여부 ····· 83
[그림 Ⅳ-10]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학년별 합계 평균 시간 ····· 84
[그림 Ⅳ-1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실시 주체 ····· 85
[그림 Ⅳ-12]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 ····· 86
[그림 Ⅳ-13]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시간 ····· 87
[그림 Ⅳ-14]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 ····· 88
[그림 Ⅳ-15]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시간 ····· 88
[그림 Ⅳ-16]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 학교 밖 ····· 89
[그림 Ⅳ-17]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 학교 내 ····· 91
[그림 Ⅳ-18]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 92
[그림 Ⅳ-19]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 ····· 93
[그림 Ⅳ-20] 인권 주요 내용: 필요 정도 ····· 94
[그림 Ⅳ-21] 1년간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정도: 활동별 참여율 ····· 95
[그림 Ⅳ-22] 1년간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수 ····· 95
[그림 Ⅳ-23] 인권교육 수업방법: 설명식 ····· 96
[그림 Ⅳ-24] 인권교육 수업방법: 토론식 ····· 97
[그림 Ⅳ-25] 인권교육 수업방법: 모둠활동 ····· 98
[그림 Ⅳ-26] 인권교육 수업방법: 프로젝트, 문제해결식 ····· 99
[그림 Ⅳ-27] 개방적 수업풍토 ····· 99

[그림 Ⅳ-28]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 ····· 100
[그림 Ⅳ-29] 인권교육 통해 알게 된 내용: 태도로서의 교육효과 ····· 101
[그림 Ⅳ-30] 인권교육 시간 동의정도: 수업 만족도 ····· 102
[그림 Ⅳ-31] 학교 간 분포: 지식 및 태도 변화에 대한 인식 ····· 103
[그림 Ⅳ-32] 학교 간 분포: 만족도, 수업 풍토 ····· 104
[그림 Ⅳ-33] 인권의식: 인권판단 ····· 105
[그림 Ⅳ-34]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 ····· 105
[그림 Ⅳ-35]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 ····· 106
[그림 Ⅳ-36]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 유엔아동권리협약 ····· 107
[그림 Ⅳ-37] 인권의식: 인권판단 ····· 108
[그림 Ⅳ-38]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 ····· 109
[그림 Ⅳ-39]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 ····· 110
[그림 Ⅳ-40]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인권 ····· 111
[그림 Ⅳ-41]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유엔아동권리협약 ····· 112
[그림 Ⅳ-42]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 ····· 113
[그림 Ⅳ-4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보호 정도 ····· 113
[그림 Ⅳ-4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호 정도 ····· 114
[그림 Ⅳ-45]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 ····· 115
[그림 Ⅳ-46] 자치 및 참여권리 보호 정도 ····· 116
[그림 Ⅳ-47]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 정도 ····· 116
[그림 Ⅳ-48] 복지에 관한 권리 보호 정도 ····· 117
[그림 Ⅳ-49]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보호 정도 ····· 118
[그림 Ⅳ-50]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정도 ····· 119
[그림 Ⅳ-51] 권리침해로 부터의 보호 보호 정도 ····· 119
[그림 Ⅳ-52]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 ····· 120
[그림 Ⅳ-53]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보호 정도 ····· 121
[그림 Ⅳ-54]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호 정도 ····· 122
[그림 Ⅳ-55] 가정 내 인권보호: 의사 반영 ····· 123
[그림 Ⅳ-56] 가정 내 인권보호: 폭력 ····· 123

[그림 Ⅳ-57] 가정 내 인권보호: 차별 ····· 124
[그림 Ⅳ-58] 교직원 간 인권보호: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 125
[그림 Ⅳ-59] 교직원 간 인권보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 126
[그림 Ⅳ-60] 교직원 간 인권보호: 성별에 따른 차별 ····· 126
[그림 Ⅳ-61] 교직원 간 인권보호: 부당 업무 지시 ····· 127
[그림 Ⅳ-62]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 128
[그림 Ⅳ-63]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 ····· 128
[그림 Ⅳ-64]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 ····· 129
[그림 Ⅳ-65]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 130
[그림 Ⅳ-66]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 ····· 131
[그림 Ⅳ-67]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 ····· 132
[그림 Ⅳ-68]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 132
[그림 Ⅳ-69]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 ····· 133
[그림 Ⅳ-70]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 ····· 134
[그림 Ⅳ-71]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 ····· 135
[그림 Ⅳ-72]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135
[그림 Ⅳ-73]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호 정도 ····· 136
[그림 Ⅳ-74]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 ····· 137
[그림 Ⅳ-75]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자치 및 참여권리 ····· 137
[그림 Ⅳ-76]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 138
[그림 Ⅳ-77]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소수학생권리보장 ····· 139
[그림 Ⅳ-78]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0
[그림 Ⅳ-79]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140
[그림 Ⅳ-80]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학습권 및 휴식권 ····· 141
[그림 Ⅳ-81]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 142
[그림 Ⅳ-82]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표현의 자유 ····· 143
[그림 Ⅳ-83]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144
[그림 Ⅳ-84]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복지에 관한 권리 ····· 145
[그림 Ⅳ-85]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 145

[그림 Ⅳ-86]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146
[그림 Ⅳ-87]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 147
[그림 Ⅳ-88] 인권 관련 교육 경험: 양성과정 ····· 148
[그림 Ⅳ-89]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교사 임용 후) ····· 148
[그림 Ⅳ-90] 인권교육 관련 연수 주제: 교사 임용 후 ····· 149
[그림 Ⅳ-91] 인권교육 관련 연수 수강 경험: 도움 정도 ····· 150
[그림 Ⅳ-92]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 151
[그림 Ⅳ-93]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횟수 ····· 151
[그림 Ⅳ-94]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총 시간 ····· 152
[그림 Ⅳ-95]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실시 주체 ····· 153
[그림 Ⅳ-96]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형태 ····· 153
[그림 Ⅳ-97]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 ····· 154
[그림 Ⅳ-98]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 155
[그림 Ⅳ-99] 인권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 ····· 156
[그림 Ⅳ-100]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 157
[그림 Ⅳ-101]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학생) ····· 158
[그림 Ⅳ-102]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 요구 ····· 159
[그림 Ⅳ-103] 인권 구제 제도 인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 ····· 160
[그림 Ⅳ-104] 인권 구제 제도 도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 ····· 160
[그림 Ⅳ-105] 인권조례 효과: 인권조례 제정 지역 ····· 161
[그림 Ⅳ-106] 인권조례 필요 여부: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 162
[그림 Ⅴ-1] 잠재계층 분류 적합도 지수 도표 ····· 179
[그림 Ⅴ-2]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 181
[그림 Ⅴ-3] 학교급별 학교유형 ····· 183
[그림 Ⅴ-4] 학교소재지별 학교유형 ····· 183
[그림 Ⅴ-5] 설립유형별 학교유형 ····· 184
[그림 Ⅴ-6] 차상위계층 비율별 학교유형 ····· 184
[그림 Ⅴ-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별 학교유형 ····· 184
[그림 Ⅴ-8] 혁신학교 여부별 학교유형 ····· 185
[그림 Ⅶ-1] 사례제시법의 비모수적 접근 개념도 ····· 229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 1948년 UN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18세 미만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지 40년이 지난 1989년에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제시한 보편적인 인권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의 발달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보장받아야할 권리를 40개 조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으며(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n.d.a), 특히 제2조(비차별의 원칙),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제6조(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제12조(아동존중의 원칙)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류은숙, 1997).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들이 일상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학교 내 삶 속에서 인권의식과 감수성 등이 길러질 수 있으며, 인권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내 인권교육 시간 확보, 인권교육과정 개발(문용린 외, 2003), 인권실태 조사(최창욱 외, 2018) 등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학술적 노력을 해왔다. 최근에는 경기도교육청(2010),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전라북도교육청(2013)이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 학생은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기보다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금도 학교가 권위주의적으로 학교 규칙에 복종하는 '학생다움'을 요구하며 학생 인권을 구속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김병준, 2017: 392). 집단 따돌림과 학생 간 폭력 등 학교 폭력 문제는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

며, 폭력의 수준과 잔인성은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더불어, 교사에 의한 성차별·성폭력을 고발한 스쿨 미투 사례, 교장의 사모임에 학생의 강제 동원한 사례(SBS News, 2019. 01. 28.),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두발 및 교복 자율화를 두고 벌어진 사회적 논쟁(동아일보, 2019. 04. 22.) 등 학생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는 하였지만,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까지는 확장되지 못하였다. 박효정과 유성상(2006: 4-6)은 그 원인에 대해 첫째,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존의 학교운영 체제(권한 관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학생 인권조례를 두고 발생한 찬·반 논쟁의 주요 논거로도 등장하고 있는데(연합뉴스, 2019. 03. 14.),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교권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비판의 요지이다. 이러한 논쟁의 이면에는 학생을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여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 역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할 수 있는 자율적 학습 주체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 둘째, 학생 인권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사회 전반의 현상 또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개별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 문제, 개별 학생의 비행 문제, 단위 학교의 불법 행위 등으로 분리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인권교육이 국가 구성원으로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책임 또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는 가치교육 등과 혼돈되고 있다는 점, 넷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비판적 인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 없이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인권이 사회적 핵심 가치와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의식을 가져야하는데, 그 출발점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1994년 유엔은 인권교육이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유엔 인권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선언하였으며(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n.d.b), 이를 기반으로 「세계인권교육프로그

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과 이를 구체화한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plan of Actio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2005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진행된 1단계 계획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며(United Nations, 2006), 인권교육의 정의, 교육 내용, 행동 계획뿐만 아니라 교사 양성과정 및 현직 연수를 통한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제안하였다(정해숙 외, 2011: 29-30). 2단계(2010~2014년)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와 공무원, 군인, 법 집행관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으며(United Nations, 2012), 3단계(2015~2019년)에서는 1단계 및 2단계에서의 프로그램 이행 강화와 더불어 언론인 및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United Nations, 2014).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06년 발표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을 통해 학교부문 인권교육 핵심 추진과제로 1)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 내용의 체계적 통합·편성, 2)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보급으로 인권교육 강화, 3) 교원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 4) 학교 생활규정 정비 등 인권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5) 인권교육 연구 기반 조성을 제시하였으며(국가인권위원회, 2006a: 118-119)[1],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교육과 재량활동 시간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김병준, 2017: 389), 교과서 내용, 교과서에 포함된 텍스트, 삽화, 사진 등 교과서 구성 역시 인권의 관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설규주·은지용·전진현, 2016)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학교 내 인권교육은 사회/도덕과의 일부 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실효성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제2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도 학교 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재권고하고 있는 등(국가인권위원회, 2016: 194-195) 보다 실질적인 학생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 제3차 기본계획(2017-2021)이 발표되었다.

학생 인권에 관한 조사연구들은 주로 학생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매년 유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과는 달리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정해숙 외, 2011). 또한, 이들 선행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 인해 단위 학교 내 인권교육 현황의 학교 간 차이, 인권교육이 실제 학생의 인권의식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인권교육 현황과 인권실태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수집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되 다음의 요소들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현황과 교사, 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단위 학교 간 인권교육 현황과 인권의식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 내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각 교과 내 인권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교육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관심과 학교의 노력 여하 및 정책적 지원 정도에 따라 인권교육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가정, 지역 사회, 학교 등 전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다루기보다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실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한다.

둘째, 인권의식에 대한 개념 및 측정 방법을 명료화하고 한다. 초기의 인권 논의는 사회 제도로서 인권 보장 장치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사회 제도를 통해 인권을 논의할 경우 실제적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제도적 인권 보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의식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구정화, 2016a: 5). 그러나 그간 인권의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인권의식, 인권인식, 인권태도 등 여러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인권인식'을 다루는 등 인권의식 측정에 학술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의식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질과 만족도,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학교운영, 교우관계, 교직원 문화, 학교장 리더십의 인권친화 정도 등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를 유형화한다. 학교인권유형과 학교특성 간에 연관성을 분석하고, 더불어 학교인권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차별적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실제 학생의 인권의식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실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실제 학생의 인권의식 제고에 주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인권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 인권의식과 같은 자기보고 형식의 인식 조사는 개인의 인식 및 이해 차이로 인해 응답 결과 분석에서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기존에 이루어졌던 인권 조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 수준을 분석함에 있어 '사례제시법(Anchoring Vignette method)'을 활용하여 인식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단기 수시연구과제로 추진한「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방안 연구(김진희 외, 2018)」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 및 연구 동향, 사회/도덕과에 반영된 인권교육과정 분석, 학생·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초안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조사도구 보완 및 타당화 그리고 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고서 체계를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Ⅰ장), 이론적 배경(Ⅱ장), 조사 방법 및 도구 타당화(Ⅲ장) 등 조사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와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2부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를 다각도로 드러낼 수 있도록 각 장별 핵심 주제와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분석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에서 제시한다.

가. 문헌연구

인권 관련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문서를 검토하여 인권교육의 범위 및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 영역과 쟁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인권 관련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도 업무 계획 자료를 분석하여 각 지역별 인권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에 관한 대규모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나. 전문가 협의회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를 문항별로 검토하여 수정·보완된 문항의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한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권교육 관련 연구자, 교사, 실무담당자들과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 조사에 있어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문항을 수정하고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논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Ⅰ-1〉과 같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표 Ⅰ-1〉 전문가 협의회 운영 세부 사항

연번	목적	참석자		일시
1	문항 검토	• 청소년 인권 분야 전문가 1인 •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 1인 • 공동연구자 1인	총 3인	2019.4.10.(수) 14:00~16:50
2		•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 1인 •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 1인 • 공동연구자 1인	총 3인	2019.4.12.(금) 14:30~18:30
3		• 중등학교 교사 2인 • 공동연구자 1인	총 3인	2019.5.13.(월) 13:00~15:00
4		• 교육부 연구사 1인 • 공동연구자 1인	총 2인	2019.6.18.(화) 15:00~16:00
5	설문조사 표집 논의	• 측정평가 분야 전문가 1인 • 공동연구자 1인	총 2인	2019.6.20.(목) 16:00~19:00
6	인권교육 실태 및 학교 현황 분석	• 교육심리 분야 전문가 1인 • 초등학교 교사 1인 • 공동연구자 2인	총 4인	2019.8.8.(목) 10:00~13:00
7		• 중등학교 교사 3인 • 공동연구자 2인	총 5인	2019.8.14.(수) 10:00~13:00
8		•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 1인 • 시·도교육청 장학사 2인 • 공동연구자 2인	총 4인	2019.8.20.(화) 10:00~13:00
9		• 사회교육 분야 전문가 1인 • 초등학교 교사 2인 • 공동연구자 1인	총 4인	2019.8.20.(화) 1600~1900
10	보고서 집필 방향 조정 및 협의	• 교육심리 분야 전문가 1인 • 측정평가 분야 전문가 1인 • 공동연구자 2인	총 4인	2019.9.27.(금) 10:00~15:00

다.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도구 타당화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김진희 외(2018)의 연구에서는 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 조사지 초안이 개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학생 및 교사 대상 조사지를 보완하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 맥락 및 학교의 배경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학교 조사도구를 추가로 개발한다. 개발된 문항에 대해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고,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여 문화 타당화 과정을 거친다.

라.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 자료 분석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실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실태 분석(Ⅳ장)과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석(Ⅴ장),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Ⅵ장), 응답자 성향에 따른 차별기능 문항 문제(응답 편향성)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제시법 분석(Ⅶ장)을 실시한다. 각 장별 분석의 필요성, 분석 방법,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해당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인권침해 실태, 인권의식 분석

교사, 학생, 학교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제에 따라 재구조화하여 학교에서의 인권 관련 노력과 활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인권교육 현황 분석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 운영 형태, 운영 시간,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수업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한다. 이후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의 인권의식, 단위 학교의 인권보호 풍토 및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교사의 준비도와 전문성 개발 활동을 분석한다. 더불어, 이러한 현황이 학교급, 설립 유형별, 인권조례 제정 지역 유무, 혁신 학교 유무 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교차분석과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다.

2)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석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에 제시된 여섯 가지 변수(인권교육의 질, 인권교육 만족도,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간 인권보호 정도,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통해 학교를 유형화한다. 더불어, 이렇게 분류된 학교유형과 학교특성 간에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한다. 또한 학교유형을 분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활용한다.

인권교육		인권 실태			
교사 관련	학생관련	학생 관련		교사 관련	
인권교육의 질	인권교육 만족도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

3) 인권교육 효과 분석: 인권의식과 인권실태에 주는 영향

학교의 인권교육 관련 변수가 교사 및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을 이용하여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전통적인 교육생산함수 분석을 실시한다. 다음으로는 관측 불가능한 개체 특성 오차항을 고정된 상수로 간주하여 이를 추정하는 고정효과모형과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확률변수로 간주하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한다.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분석에 적합한 모형을 선택은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결정한다. 한편,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 제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최소자승법(OLS)과 확률효과(EF)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라그랑지 승수 검정(Lagrange Multiplier (LM) test)을 실시하여 학교별 고유한 특성을 확률변수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증하였다.

4) 사례제시법을 활용한 응답자 성향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문제 보완 가능성 탐색

본 연구는 인권의식과 같은 심리 변인의 경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응답 편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응답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제시법을 활용하여 보완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조사 문항이 실제로 차별기능문항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할 경우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활용하여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가 가지는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보완한 DIF 보정 변수(DIF corrected variable)를 비모수적 방식으로 산출한다. 산출된 DIF 보정 변수를 가지고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학생의 인권 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등 세 가지 인권의식이 사립학교 여부, 인권조례 제정 여부, 혁신학교 여부, 여학생 여부 등과 같은 집단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마. KEDI IRB 심의

본 연구는 인간 대상 연구이므로,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대한 연구계획, 설문지 내용 등에 대해 총 4차례의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승인일: 8월 6일)을 받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교육 개념 및 논의의 특징
2.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 정책 분석
3. 인권의식 도구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4. 시사점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인권 및 인권교육의 의미와 실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한 주요 흐름을 논의하였다. 국내 인권교육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 관련 정책을 분석하였고,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도구 개발과 타당화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도구를 검토하였다.

1 인권교육 개념 및 논의의 특징

가. 인권교육 및 학교 인권교육의 의미와 실천

인권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계층, 성별, 인종, 피부색, 나이, 종교의 차이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고, 개인적, 사회적 안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진희 외, 2018: i). 원론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권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나 타인에 의해 제약되거나 권리 간 상호 충돌하는 현상을 우리 일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김진희 외, 2018: 13).

인권의 개념이 점차 일상생활 속으로 확장되어 적용되고 간학문적 접근이 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권학에서도 인권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가량, 조효제(2019. 02. 26.)는 이러한 흐름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첫째, ‘인류 공동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인권은 모든 인류를 ‘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겠다는 광범위한 지성적·정치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의 권리에 대한 공감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대상과 범위 역시 이웃, 지역을 넘어 인종, 국가,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 개인의 성격에 따라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세상을 위계질서로 구분하고 사회적 지배성향이

강할수록 반인권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감을 잘 하고 도덕적 추론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인권과 정비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셋째, 인권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인권과 반대되는 사람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조효제(2019. 02. 26.)는 사람들은 관념적 차원에서 "인권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인권문제를 접하면 평상시의 사고방식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추상적 인권원칙과 실질적 인권의식 사이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는 향후 인권교육에서 인권을 개인이나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각각 부여된 인권이 아닌 인류 공동체의 공존공영을 위한 인권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종합적 접근(holistic human rights Approach)"이 중추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김진희 외, 2018: 25).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효제, 2015). 그러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에 대해서 민감도를 가지는 체감 분위기를 넘어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 하는 점은 사회 구성원들이 속한 집단, 그리고 개인이 인권 보장을 얼마나 받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단순히 개별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근본적 차원에서 사회 전체가 인권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형식적 맥락에서는 물론 무형식적 학습 맥락에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념적 정의로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각종 국제적 수준의 선언과 규약에서 천명된 '인간으로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들'을 모두가 지켜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학습자가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McLeod, 2014). 우선 세계인권선언부터 교육을 받을 권리 자체가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그 자신의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역량의 신장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인권이 침해당할 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를 받을 방법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교육을 통해 인권을 보장받고 타인의 인권을 수호할 수 있으므로 교육 받을 권리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인권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Tibbitts, 2015).

인권교육은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 모두를 아우르는 인권의식의 함양을 도모해야 한

다는 점에 있어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즉, 유네스코가 주장한 바대로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삶 속에서 얻은 경험에의 통찰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며 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McLeod, 2014). 우리나라에서도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보급 및 정보 전달(오세희 외, 2015: 11)"로 정의되어 왔으며,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해에 초점을 두는 인권에 관한(about) 교육, 교수-학습 방식에 있어서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의 권리 존중이 포함되는 인권을 통한(through) 교육,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을 위한(for) 교육을 망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오세희 외, 2015: 11).

인권교육의 범위 및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문서에서 그 논의의 시작과 흐름, 그리고 성과를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인권교육 논의의 흐름은 인류 보편적으로 필요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목적을 가지되 각 사회에서 필요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그에 맞게 개발해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2005년부터 시작한 세계인권교육계획(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은 이런 중차대한 과제를 '보편적인 인권 문화의 건설' 이라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야 함을 강조한다(United Nations, 2006). 1차 시기에는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2차 시기에는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교육훈련, 그리고 3차 시기에는 앞서 두 시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미디어를 통한 인권교육의 확산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하는 4차 시기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전개를 목표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학교와 미디어 등 다양한 시·공간을 망라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즉 인권교육은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지닌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7). 이런 인식 속에서 인권교육은 한 사회가 국가의 노력을 필두로 민·관이 협력하여 이루어내야 하는 중요성을 가진 교육의 분야이며, 각국은 글로벌 보편성에 입각하되 해당 사회에 긴급하고도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여 결국은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 체계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인권교육이 가진 보편성과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총체적 성격을 볼 때 인권교육을 인권의 내용을 전수하는 것, 그것도 학생들에게 전수되어야 할 교육과정의 일부로만 이해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일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즉 인권교육은 타인과 함께,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신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생을 통해 느끼고 학습하여 삶 속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모든 연령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종종 학교교육의 부분으로만 논의되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넓은 범주를 포함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단 학교 재학 연령의 아동·청소년은 대표적 사회적 약자 그룹 중 하나로 간주된다.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 따로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령기 인권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이 그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Tibbitts, 2015). 또한 삶의 많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학령기이고 이 시기가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발달단계라는 점, 그리고 학교가 이런 아동·청소년의 민주적 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중요한 삶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기는 사회화는 물론,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시기이므로(Ercan, Yaman, & Demir, 2015: 221), 이 시기에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강도 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의 의견이다(Torney et al., 1975; Üste, 2007; Ercan, Yaman, & Demirl, 2015, p.221에서 재인용).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크다. 이에 국제인권교육계획에서도 각 국가가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을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가장 먼저 추진한 바 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경험하는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들은 이들이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즉, 학생 인권의식의 형성 및 성장에 대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중요하고, 학생

에게 전수되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며, 학생들의 삶의 경험의 장이자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서의 '학교'라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인권교육은 그 특성상 민주주의적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기에 '학교' 라는 공간이 얼마나 민주적인가 하는 점이 인권교육을 둘러싼 중요한 지점을 형성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인권이 민주적 분위기에서 가장 잘 학습될 수 있는 반면, 혐오와 차별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잘 학습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혐오와 차별이 점증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학교 인권교육은 이를 별개의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혐오와 차별을 인권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상황으로 삼아, 사회 전체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의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즉, 인권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어 이야기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에게 이를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으므로 학교라는 공간의 민주성이 중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오랜 시간 지식의 전달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입시를 중심으로 한 경쟁을 일상화해온 학교 공간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학생인권조례제정 등과 같은 작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김진희 외, 2018). 즉,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에 필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관계되는 실재적인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학교의 민주적인 분위기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나. 학교 인권교육의 주요 요소

본 절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논의의 영역으로 첫째, 친인권적인 학교문화와 둘째, 공식적 및 잠재적 교육과정을 아울러 인권의식의 함양을 도모하는 교육과정과 셋째, 인권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한다.

1)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우선 학교 인권교육의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포함된 정

규 교육과정은 물론 잠재적 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김진희 외, 2018).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인권교육의 특성상 인권교육이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을 벗어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공식적 및 잠재적 교육과정을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강력하게 제안되고 있다(김진희 외, 2018: 106). 즉,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형식적 교육의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비형식적 교육 및 무형식적 학습까지 아울러 삶 속에서 인식되는 인권을 교육의 의제로 삼아야 학교 인권교육과 학교에서의 생활 사이의 괴리가 줄어들 수 있다. 즉, 형식 및 비형식 교육, 그리고 무형식 학습의 맥락을 아우르는 인권교육의 전개는 학생의 학교생활 상황 자체가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중요성은 「인권교육 세계계획」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구정화, 2009). 즉, 인권을 학습할 때의 환경이 인권친화적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식이든 간에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환경으로서의 우리 학교사회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인권교육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비판적인 숙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공통적으로 청소년의 교육과 삶이 이루어지는 '학교'라는 공간이 결코 인권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구정화, 2009; 김진희 외, 2018). 학교는 성인인 교사 및 교직원과 아동·청소년인 학생의 수직적 관계가 강조되어 온 우리 사회의 위계적인 문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곳, 가열된 입시로 인한 경쟁이 강조되어 온 공간으로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특히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교육 현상과 사태를 분석했을 때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민주적 문화를 누리고 있지 못한 상황이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교사들은 현재의 인권교육은 글자로만 존재하며, 교장, 교감 등 학교 단위에서 관리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에서는 학생인권만 강조되지 교사인권은 실종된 것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1978년 인권교육에 관한 비엔나 국제회의에서는 '교사가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지만, 교사들 역시 다양한 인권의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자영·이로미·김진희, 2019). 따라서 전술한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는 현재의 분

위기는(김진희 외, 2018) 인권교육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야 할 교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진희·이로미·김자영, 2019). 따라서 인권교육에 관한 교사 연수가 상당수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암묵적인 지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찰과 보고는 학교 인권교육의 정립에 우려를 가져온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95).

인권이 충분하게 구성원들 사이에 향유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우리의 학교사회 환경을 고려해 볼 때, 학교 인권교육의 정착을 위해 친인권적인 학교 문화의 조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지만 시급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있다.

2)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환적 사고(transformative approach)

인권을 '통하여(through)'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핵심 중 하나이자 교수-학습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학교가 가장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이다. 학교 인권교육의 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처한 맥락, 즉, 인권이 침해되거나 증진되는 맥락이 촉매가 되어 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지한 바 있다(McLeod, 2014). 다시 말해 인권을 '통하여' 하는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경험을 매개로 하는 참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이 인권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면 교육의 내용은 당연히 학습자의 인권 상황과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현재 학교 인권교육의 위기는 앞서 살펴본 학교의 상황, 즉, 친인권적이지 않은 학교 문화에 일정 정도 기반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이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인권에 대한 상이한 시각과 관점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저항과 거부감이 있기도 하다(김진희 외, 2018).

그러나 학교사회의 오랜 약자였던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은 인권교육의 출발이자 반드시 거쳐 가야 할 필수 통과의례이므로 학교사회의 지혜로운 수용과 실천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우려와 저항은 서구 각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사례로, 이들 국가들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우리 학교사회에의 적용도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런던의 중등학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교사들은 인권교육의 초기에 학생들과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그로

인해 자신들의 권위가 약해질까 걱정되어서 그러한 논의를 꺼렸으나 실제 권리에 대한 수업 및 학습이 이루어지니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알게 되고, 교사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던 결과가 있다(Hudson, 2005). 이런 측면에서 학생 권리의 신장이 학교 인권교육의 목적과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 신장 외에도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학습을 그 중요한 일부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보아도 인권교육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구정화(2018)의 연구에 따르면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참여' 영역의 교육은 학교급별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과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범주와 관련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의 경우 노동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권 위주로 성취 기준이 구성되어 있어 자유권적 인권이나 연대권적 인권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구정화, 2018). 또한 2011년 인권교육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 요소는 매우 적고 학생들은 인권교육의 콘텐츠와 주제 영역을 학습하고 있기는 하나 이런 지식으로서의 배움이 행위로서의 실천과 연계가 되지 않는 점이 지적된다(정해숙 외, 2011). 따라서 실제 학생들이 경험하는 삶을 포함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인권교육에 유의미하게 연관되지 않으면 인권교육은 인지적 교육, 그것도 영향력 없는 인지교육으로 전락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지식의 습득만이 아닌, 인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과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와 실천까지 다루려면 교수-학습을 망라하는 총체적 개념, 즉 페다고지(pedagogy)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전수되는 지식은 그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 안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황학습이론(Lave & Wenger, 1991)은 인권의 가치를 삶 속에 반영하는 실천적인 교육이 기획되고 제공되는 데 이론적인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인권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하는 인권의식을 "자신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에게 부여된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 역시 존중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옹호하려는 태도(김진희 외, 2018: 9)” 라고 정의할 때, 인권교육은 첫째,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는 갈등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둘째, 그 상황에 놓인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여 고통을 공유하며, 셋째, 인권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의지를 갖는 것을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영역 모두에 걸친 역량을 도모하는 교수-학습이 된다(김자영, 2012; 김진희 외, 2018).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Ⅱ-1〉 학교인권교육에서 함양되어야 할 인권의식의 3요소

영역	요소	세부내용
인지적 영역	인권판단	• 인권과 관련된 지식 • 인권의 옳음에 대한 신념
정서적 영역	인권 감수성	• 인권침해 상황 속의 타인에 대한 공감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서
행동적 영역	인권 행동의사	• 개인적 차원의 행동의사 • 집단적 차원의 행동의사

출처: 김진희 외(2018: 9)에서 김자영(2012: 53)을 일부 수정한 것을 인용함.

따라서 학교 인권교육은 인권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사고를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개혁의 필요를 반영한 새로운 개념과 이론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Hung(2014)은 인권은 비인지적 교육 또는 정의적 교육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감각을 통해 듣고 관찰하고 느끼고 반응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인권이 실천되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창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적 페다고지(Affective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APHERE)를 주장하였다. 학생이 감각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을 학습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의 인권침해나 증진과 관련된 경험은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구성해 가는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인권교육에 필수적 요소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많은 활동가가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상을 제시해 왔다.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삶에서 인권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경험적’이어야 하고, 학습자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교육과정에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활동적’이어야 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가진 부조

리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문제제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가 동등해야 한다는 의미로 '평등해야' 하며, 교육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더 넓은 사회에 대한 참여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참여적'이여야 함을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그러나 이런 방식의 교육은 학교 장면에서 교사에 의해 실시되고 축적되어 왔다기보다는 학교 밖 활동가의 몫이었다는 견해가 우세한데, 이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앞으로 학교 인권교육의 중차대한 과업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된다.

3) 교사의 인권관련 역량 제고

학교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제고하는 인권의 가치체계는 유럽 이사회(Council of Europe)를 필두로 한 유럽의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또는 '민주적 시민성 함양 교육(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의 핵심이다. 유럽 이사회는 전 유럽 국가를 아우르는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역량의 함양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를 산출해 왔는데, 이들 연구들 중 많은 부분이 당연하게도 인권 관련 교수-학습활동을 진작하는 교사의 역량에 관한 것이다(Council of Europe, 2009a, 2009b). 교사를 인권교육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정부나 교육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알 수 있다.

교사가 힘을 얻고 인권교육 전문가로 성장하는 속에서 학생들이 책임 있고 활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선 교사 스스로 인권을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인권교육의 전문가들 역시 교사 인권교육의 내용을 바르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인권교육의 전문가 역할을 이렇게 요구받는 교사이지만 실제 많은 경우 교사 자신의 인권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따라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은 현재 학교 인권교육을 둘러싼 각종 난항을 해결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교사를 상대로 한 인권교육 연수는 많은 경우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방법론에 치우쳐 있거나(국가인권위원회, 2006b), 학생의 '피해자성'을 더욱 강조하는 최근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으로 인해 교사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 학교

인권교육의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다(김자영·이로미·김진희, 2019). 물론 학교 인권교육의 전개 과정에서의 교사의 우려는 서구 각국에서도 경험한 사례로 보인다. 앞서 예로 든 유럽의 사례, 즉 인권교육으로 인해 교사의 권위가 하락할 것에 대한 교사의 우려를 해소하고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교사들에게는 학생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인권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Hudson, 2005; 국가인권위원회, 2006b, p.16에서 재인용).

따라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인권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교육 훈련이다. 교사는 교과서에 있는 인권 관련 내용을 건조하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의 상황과 연결시켜 '가르칠 만한 순간(teachable moment)' 을 연결하는 학습을 시도할 수 있는데(McLeod, 2014: 1228), 이런 방식의 교육을 적용하려면 교사의 높은 인권 감수성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다음 단계는 이들에게 인권친화적이자 삶의 현장을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는 교수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유럽의 학교 인권교육 문헌들은 이런 교수법 역량의 제고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유럽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일상 사건이나 학교 내 인간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확인된다(Council of Europe, 2009a, 2009b). 유럽이 처한 '난민의 유입'이라는 상황을 지식 전달 위주로 가르치지 않고 모의체험을 통한 경험학습을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학생은 역할극으로 난민(refugees) 또는 난민을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boarder official) 역할을 맡아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할 이유를 호소하거나 난민 판정 결과에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참관하면서 난민과 이민국 직원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피드백을 준다. 모든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마친 다음 소감을 물어보는 방식이다(Council of Europe, 2009a). 이런 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은 지식 전수의 전통적인 교사의 역할과는 많이 다르며, 교사도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총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른 예로 노르웨이에서 펴낸 'Build Bridges, Not Walls(벽이 아닌 다리 놓기)' 는 교사 및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비형식적 교육의 맥락에서 인권과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는 97종류의 참여적 교육 학습 활동을 담고 있다(Council of Europe, 2009b). 이런 교육 자료의 개발 및 제공이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할 것은 분명하다(Osler, 2005). 인권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전문성 함양 교육과 훈련은 인권교육 세계계획 1차 시기에 이미 강조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연구물 및 교육자료 등의 성과물이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음에도 아직 그 실천은 미약한 편이다.

2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 정책 분석

본 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의 2019년도 업무 계획 자료를 분석하여 각 지역별 인권교육 관련 정책에 대해 개략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업무 전반이 직·간접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여,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분류하고 비교하기 위해 업무 계획 자료 분석 시 '인권'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내용만을 분석 결과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시행하지만 인권이라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은 인권 관련 정책 또는 시·도교육청 업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인권 관련 정책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계획 자료 중 '인권'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을 먼저 추출한 후, 이를 정책 내용에 따라 총 6가지 정책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세부 내용은 1) 인권친화적 학교 규정 및 문화 관련, 2) 학생 혹은 교원 대상 인권교육 관련, 3) 노동인권교육 관련, 4) 성폭력 대응 및 성인권교육 관련, 5)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6)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이다. 각 내용의 분류 예시는 〈표 Ⅱ-2〉와 같다.

〈표 Ⅱ-2〉 시·도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 분류 예시

분류 기준	교육청 업무 계획 내용 예시
인권친화적 학교 규정 및 문화 관련	- 인권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확산
학생 혹은 교원 대상 인권교육 관련	-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혁신교육 역량강화 연수 운영: 인권교육 등 연수 운영
노동인권교육 관련	-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
성폭력 대응 및 성인권교육 관련	- 성인지 인권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및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교육 강화

이러한 분류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 관련 정책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시·도교육청별 2019년도 인권 관련 정책 현황 비교

분류 기준 / 시·도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규정, 문화	학생/교원인권교육	노동 인권교육	성폭력대응, 성인권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학생선수 인권보호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	○	○	○	○	○
대구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	○	○	○	-	○	○
강원도	-	○	-	○	○	○
충청북도	-	○	-	-	○	○
충청남도	○	-	○	-	○	-
전라북도	○	-	-	○	○	-
전라남도	○	○	○	○	○	-
경상북도	○	-	○	-	-	○
경상남도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분석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6개 영역을 모두 포함한 업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나 여러 영역에서 고루 인권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5개 영역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이 4개 영역을 포함한 업무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정 영역에 대한 정책만 제시하고 있어 인권 관련 정책

의 포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에는 가장 다양한 인권 관련 정책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 계획을 수립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례를 제시하면 〈표 Ⅱ-4〉, 〈표 Ⅱ-5〉와 같다.

〈표 Ⅱ-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

분류 기준	관련 정책
인권친화적 학교 규정 및 문화 관련	-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지원 체제 강화 -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의 단계별 추진 및 이행 강화 - 학생참여활동 지원으로 학생자치 역량 강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는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학생인권-교권 전담기구 구성·운영
학생 혹은 교원 대상 인권교육 관련	-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교육공동체의 인권 역량 강화 - 교원의 성찰과 재충전 기회 확대: 교원 회복력 지원 인권평화 직무연수 실시
노동인권교육 관련	-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 지원: 노동인권 강화, 연수 실시 등
성폭력 대응 및 성인권교육 관련	- 스쿨미투 긴급대책반 - 스쿨미투 사안 처리 시 성인권 시민조사관 참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장애이해(인권)교육 -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운영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인성·진로지도 강화
기타	- 평화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폭력 및 갈등해결, 인권, 한반도 평화, 난민 문제 등 평화교육 관련 분야의 정책 자문 - 서울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학생인권 국외홍보 책자 제작, 국외 학생인권 제도·정책 탐구, 교원 인권역량 강화, 서울 학생인권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 담당기관 방문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2019)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표 Ⅱ-5〉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

분류 기준	관련 정책
인권친화적 학교 규정 및 문화 관련	- 어디(학교·가정·지역사회)에서나 실천하는 생활교육: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참여와 실천 확산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및 공모전 운영 - 참여 중심의 인권 사랑 학교 문화 확산
학생 혹은 교원 대상 인권교육 관련	- 체험 중심 유아 인성교육: 인권교육 등을 통한 상호 존중 유치원 문화 조성
노동인권교육 관련	- 학습 중심 현장실습으로 취업기회 확대: 현장실습, 학교 취업지원,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대응 및 성인권교육 관련	- 학생 참여형 성교육 - 부산시, 여성가족부 연계 학교 성 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인권침해 예방상담프로그램 등 인권보호 특색사업 실시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및 인권보호

출처: 부산광역시교육청(2019)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을 직접적인 키워드로 포함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인권 관련 정책을 6개 영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육청별로 인권 관련 정책이 포괄하는 영역의 편차가 존재한다. 6개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시·도교육청이 있는 반면 1개 영역만을 포함하는 시·도교육청도 있어 교육청별 인권 관련 정책의 범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교육청별로 인권 관련 정책의 중요도와 구체성에 편차가 존재한다. 교육청별 업무 계획 작성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권교육을 정책의 큰 제목 수준에서 전면에 언급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소주제 혹은 소주제에 대한 설명 중 일부로 언급하거나 관련 정책이 한 두 문장에 그치는 교육청이 있어 교육청별로 서로 다른 수준의 인권 관련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영역별로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한 교육청에 편차가 존재한다.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권친화적 학교 규정 및 문화 관련 정책은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정책은 15개 시·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 정책이나 성폭력 대응 및 성인권교육 관련 정책은 절반 이하의 시·도교육청에서

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인권 관련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을 확대하고, 교육청별 인권 관련 정책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시·도교육청의 업무 계획뿐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 사례, 관련 예산, 정책에 대한 반응 등을 심층 검토하여 시·도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의 질에 대해서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시·도교육청의 인권 관련 정책 중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교육청 간에 서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인권의식 도구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우리 사회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기존의 인권에 대한 논의들이 이론적, 철학적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시기부터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고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확대되었다(구정우 외, 2016: 17)

대한민국 국민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로는 크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국민인권의식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와 학교의 인권 상황 및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연구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 왔다. 각 연구의 주요 조사도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도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2년 교사의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으로 성인 대상 조사와 학생 대상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 수행해 온 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6〉와 같다.

〈표 Ⅱ-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연도	제목	대상
2002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 초·중·고등학교 교사
2005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	- 일반인, 인권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2006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 중·고생, 학부모, 교사
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 일반인, 전문가, 초·중학생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 초·중·고등학생, 교사, 시·도교육청 인권교육 담당자
20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 만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출처: 김진희 외(2018: 41) 재구성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15세 이상 성인남녀 1263명과 인권 관련 연구 및 활동가 90명, 전국 주요 시민단체 상근 간부 및 대표 101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크게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로 구성되었는데, 인권의식에 대한 조사 내용은 주로 정량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정량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표 Ⅱ-7〉과 같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인권의식,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인권현안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의 실태, 청소년의 인권실태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Ⅱ-7〉 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내용	일반인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 인권의식 관련		
- 우리 사회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
-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의식	◎	◎
○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		
- 인 침해 사안별 심각성 인식	◎	◎
- 기관별 인 침해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
-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과 대응	◎	

조사 내용	일반인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경험	◎	
○ 차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차별 사안별 심각성 인식	◎	◎
- 기관별 및 유형별 차별의 심각성과 구제수단		◎
-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과 대응	◎	
- 간접적인 차별의 경험	◎	
○ 인권현안 관련		
-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	◎
-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관련	◎	◎
- 비정규직 문제 관련	◎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	◎
-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	◎	◎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식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	◎	◎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평가	◎	◎
○ 인권교육의 실태		
- 인권교육의 경험	◎	
- 인권교육의 필요성	◎	◎
○ 청소년의 인권 실태		
- 청소년 인권 사안별 심각성	◎	◎
- 청소년 인권 사안별 경험 여부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5: 3)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정진성 외, 2011)는 기존 문헌 및 사전 조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론적 틀을 도출하고, 이러한 프레임에 바탕을 두어 조사표를 구성한 인권조사의 원형으로 평가받고 있다(정진성 외, 2014).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는 인권의 다차원성 및 보편성, 인권의 특수성, 인권의 국제적 차원, 인권의식 차이의 조건, 정책적 차원의 고려 등을 이론적 틀로 하여 전반적인 인권의식·평가, 국내외 주요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인권 관련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 인권침해 및 차별의 경험 및 평가, 효과적인 홍보 방안, 공공기관의 인권증진 노력, 인권교육의

실태 및 필요성, 청소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지 및 평가 등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일반인, 인권 관련 전문가,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활용된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Ⅱ-8〉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의 조사 항목

차원	범주	항목
인권의식과 평가	주요 인권 문헌 인지	- 세계인권선언 -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의 명시
	주요 인권상황 인지 및 평가	- 국제 인권상황 인지 - 한국 인권상황 인지 및 평가 - 국제 대비 한국 인권상황 평가 - 3년 전 대비 한국 인권상황 평가
	국제인권조약	- 국제인권조약 준수의 중요도
	기타	- 인권 vs 이권
인권 침해 및 차별	집단별 인권 존중도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성적 소수자, 복지시설 생활자, 비정규직 노동자, 군복무자, 노숙자, 피의자, 구금시설 수용자,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여성, 미혼모, 전과자
	분야별 인권 존중도	-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개인정보의 보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건강권, 환경권, 교육권, 주거권
	인권침해자 및 침해근거	- 주요 인권침해자 - 인권침해 발생 근거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 본인, 배우자, 가족의 경험 여부 - 간접 경험 여부 - 인권침해 경험 시 대처방안
인권 관련 현안 및 정책	시민적·정치적 권리생명권	- 사형제도의 유지, 학교선생님에 의한 교육목적의 체벌, HIV/AIDS에 감염된 외국인의 강제출국 조치,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강제적 약물치료, 국내공항에서의 전신투시장치 도입, 호송 중인 중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국가보안법의 유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종교법인이 설립한 중·고등학교에서 종교의식의 의무적 참여, 신념·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대체복무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노인의 부양의무자 규정 유지, 2년 이상 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건강보험 혜택 부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의 확대,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높은 개발 사업,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적응에 중점두기, 경제발전을 위한 인권의 제한,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의 도입

차원	범주	항목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 경찰의 성매매 집결지 집중단속 및 성매매자 처벌, 여성 채용목표제의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않는 민간기업 처벌, 학교 교장에 의한 10대 미혼모 자퇴 요구,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유로운 국내입국 허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혜택 제공, 난민 신청의 간소화 및 적극 지원, 성소수자의 존중
	대외 협력 및 북한 인권	- 대외원조 제공시 해당국가의 인권고려, 북한인권 상황 인지, 북한주민 인권향상을 위한 정부 조치
인권증진 방안	공공기관 평가	- 주요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한 평가
	인권보호·신장 방법	-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신장 방법
	홍보 매체	-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매체
	인권활동 참여	- 인권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참여
인권교육	인권교육 경험	- 인권교육 여부 -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유경험자) - 인권교육의 적합한 장소(무경험자)
	인권교육의 필요성	- 전반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 - 공무원 인권교육의 의무화
청소년 인권	청소년 인권침해의 심각성	- 정규교과목외 교육활동의 자유로운 선택, 단체기합, 학생의 자치권 제한, 학생의 사생활 침해, 학업 성적에 의한 차별, 가정환경에 의한 차별, 학생의 개인정보 공개,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성희롱, 표현의 자유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평가	- 인권위의 인지 - 인권위에 대한 신뢰도 - 인권위가 인권개선에 기여도 - 향후 인권위의 기능(역할) 확대여부

출처: 정진성 외(2011: 36-4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정해숙 외(2011)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경험,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지는 크게 학생용과 교원용으로 나누어 개발되었으며, 학생용은 다시 초등학생용과 중등학생용이 구분되는데, 이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응답 능력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학생용 조사지는 학교의 인권보장 환경, 인권교육 경험, 인권의식과 관심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원용 조사지는 교사의 인권의식, 인권교육 경험 등에 대해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학교의 인권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 인권교육 활동, 학교 인권교육 계획, 인권 교육 실천 노력 등에 대한 별도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표 Ⅱ-9〉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학생 조사지 문항 구성

영역	세부항목	초등	중등
학교 인권교육 경험	학교 인권교육 경험 여부	○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로	○	○
	인권교육 경험 교과	○	○
	교내방송을 통한 인권교육 경험 여부	○	○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		○
	학교 인권교육의 효과	○	○
소속 학교의 인권 보장 환경	소속 학교의 인권 보장 정도	○	○
	학교에서 인권 보장이 힘든 이유	○	○
	학교에서 가장 인권침해적인 관계	○	○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	○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가해 경험	○	○
	학교에서의 인권침해시 대응 방법	○	○
	학교생활규칙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 방법	○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	○	○
교사의 인권태도	담임교사의 인권친화적 학급/수업 운영	○	○
	교사들의 학생 인권 보장 정도	○	○
	교사 대상 인권교육 필요성	○	○
인권의식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정도	○	
	청소년의 인권 현실 및 중요성 인식 정도		○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	○	○
인권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도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험	○	○
	인권에 대해 들어본 경로	○	○
	인권에 대한 관심도		○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식도	○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	○

출처: 정해숙 외(2011: 149)

〈표 Ⅱ-10〉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교사 조사지 문항 구성

영역		세부항목	비고
교원 공통 문항	인권교육 지도 경험	인권교육 지도 여부	
		인권교육 지도 시간	
		인권교육 지도 내용	
		담당 교과의 인권 관련 단원 여부	
		인권 관련 단원 지도 여부	
		교과 관련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집단	
		인권교육 시행의 애로점	
	교사의 인권의식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	
		청소년의 인권 현실 및 중요성 인식 정도	학생 공통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및 인식	학생 공통
		인권 관련 문서에 대한 인식 정도	학생 공통
	학교의 인권 분위기	소속 학교 인권친화 문화 정도	학생 공통
		학교에서 인권보장이 힘든 이유	학생 공통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의 방법	
	교사의 인권 관련 태도	학급환경에서 담임교사의 인권침해 정도	학생 공통
		교사의 학생 인권 보장 정도	학생 공통
	교사대상 인권교육	교사대상 인권교육 필요성	학생 공통
		교사대상 인권교육 경험 여부	
		교사대상 인권교육 경험 횟수	
	교사대상 인권교육	교사대상 인권교육 실시 주체	
		교사대상 인권교육 내용	
		교사대상 인권교육의 효과	
		교사대상 인권교육 참여 의향	
		교사대상 인권교육 불참 이유	
		교사대상 인권교육에 필요한 내용	
교감 문항	인권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인권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 여부	
		인권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시행 방식	
		인권 관련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학교의 인권교육 계획 및 운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학교 차원의 인권교육 계획 여부	
		학교 차원의 인권교육 계획의 내용	
		인권교육 전담부서 및 인력	
		인권교육 평가 및 점검	
		인권교육 관련 지역사회 연대	

출처: 정해숙 외(2011: 150)

〈표 Ⅱ-11〉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에서 활용한 청소년의 인권 영역

1)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자신의 두발, 복장 등을 선택할 권리 3) 성적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 사적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4) 자신의 삶과 관련된 학교의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 6) 학교의 자치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7) 자유의사에 따라 모임을 만들고 활동할 권리 8) 사생활 침해(소지품 검사, 몸수색 등)를 받지 않을 권리 9) 물리적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합리적인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처벌받을 권리 11)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12) 일할 권리(아르바이트 등) 13)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출처: 정해숙 외(2011: 161)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구정우 외, 2016)는 2005년과 2011년에 실시된 조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인권의식 및 평가, 인권증진 방안,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주요한 현안 및 정책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대국민 인권의식조사, 전문가 인권의식조사, 초중생 인권의식조사, 델파이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인권의식을 인권인식, 인권평가, 인권경험, 인권지지, 인권행동의 5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Ⅱ-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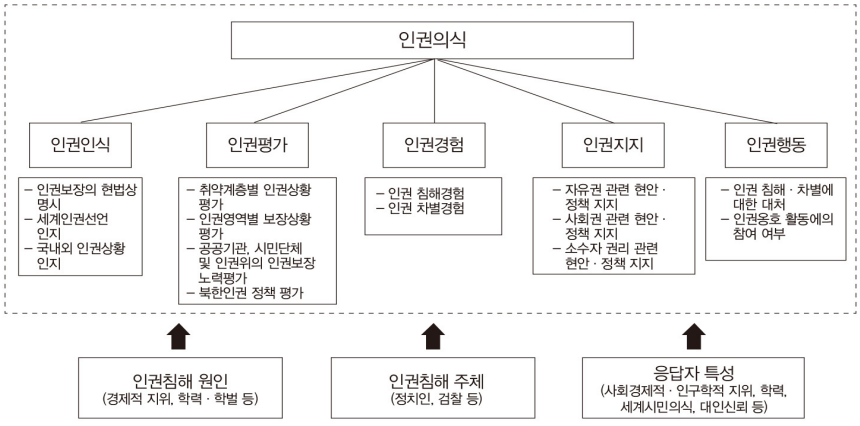

출처: 구정우 외(2016: 8)

[그림 Ⅱ-1]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의 프레임워크

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도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및 조사연구를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해 왔다(최창욱 외, 20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연구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기는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하였고. 제 2기는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었다. 제3기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 중에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실태 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 실태 조사

연도	연구 제목	비고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Ⅰ-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제1기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연구 Ⅱ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 분석	
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연구 Ⅲ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Ⅲ -생존권·보호권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Ⅴ -발달권·참여권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Ⅰ : 2011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제2기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Ⅲ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Ⅳ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Ⅴ: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Ⅵ : 2015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제3기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제1기 인권실태 연구(2006~2010)가 인권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고, 하위 인권 영역별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면, 제2기 인권실태 연구(2011~2016)에서는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도구로써 인권지표체계(148개 지표항목: 60개 설문조사,

88개 행정통계와 타조사결과 활용)를 정비하였으며, 제3기 인권실태 연구(2017)에서는 인권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여 135개 지표항목(52개 설문조사, 83개 행정통계와 타조사결과 활용)을 구성하였다. 가장 최근에 정비된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제시하면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2006년-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변화(대분류)

구분	1기 (2006~2010)	2기 (2011~2016)		비고 (2017~)
	최창욱 외(2006)	임희진 외(2011)	김영지 외(2013)	김영지 외(2017)
대분류 내용	1. 생존	1.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 보호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발달	3. 장애, 기초적 보건 및 복지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폭력 및 학대
	4. 참여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인권인프라	5. 특별 보호 조치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6. 특별 보호조치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 보호 조치

출처: 최창욱 외(2018: p.58에서 재인용)

최창욱 외(2018)연구에서는 조사 영역을 ①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②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폭력 및 학대,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⑤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⑦ 특별 보호 조치 등 크게 7개의 대분류로 구성하였다. 각 대분류별로 하위 중분류가 존재하는데, 각 중분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과의 관련성이 나타나 있다. 이 중 인권의식에 대한 내용은 대분류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중분류 '일반원칙'-소분류 '인권교육'에 속해 있다. 이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Ⅱ-14〉는 인권의식 및 태도 문항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표 Ⅱ-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항목 중 인권의식 및 태도 문항

문4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출처: 김영지 외(2017: 708); 최창욱 외(2018: 703)

다. 소결

대한민국 국민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관련 대규모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존 실태조사의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인권의식 조사에서는 '인권의식'의 개념을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권 경험, 인권 인식, 인권 행동 등을 모두 인권의식의 범주에 포함하여 질문하는 등 인권의식의 하위 범주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식'에 대한 응답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둘째, 인권침해 경험 및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일반적 내용보다는 청소년 관련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한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 실태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시민으로서의 청소

년이 경험하는 인권 실태에 대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등의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셋째,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문항이 간략하게 구성되어 심층적인 경험을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의 조사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필요성, 내용 및 효과에 대해 묻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권교육에 대해 교사와 학생은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기존의 학교 인권의식 조사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인권교육과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별 학생과 교사 차원에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섯째, 인권의식과 인권경험,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의식과 인권경험, 인권교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주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인권의식 도구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의식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하위 요인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조사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권 관련 경험 및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시 특정 대상에 국한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인권 영역별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인권교육의 실태에 대해 조사할 때, 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개별 학생 및 교사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의 인권교육 실태를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권의식과 인권경험,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인권교육 및 학교 인권교육의 의미와 실천에 대해 고찰하고, 학교 인권교육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다. 인권교육 동향은 학교 현장에서의 인권교육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실현하는 시·도교육청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또한, 인권의식 도구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각각 개발한 조사도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도구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학교 인권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가 인권교육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럽의 경우 이미 1985년에 유럽이 사회가 채택한 권고 속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가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1985).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은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하는 공간인 동시에 훈육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훈육을 위해 민주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눈감는 모습을 보여 온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둘러싸고 교사를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의 어려움이 커져 교사가 인권과 교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생긴 점도 감안해야 한다(거제인터넷신문, 2019. 07. 01.).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을 제대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만큼, 이들이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또한 인권교육이 보다 폭넓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나 사업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의 학교에서의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록 등(Osler & Starkey, 1998)과 같이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잠재적 교육과정에 있어 학생과 교사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은 이의 해결이나 예방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과서에서 인권 관련 내용은 늘어나고 있으나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침해되는 사각지대는 여전하거나 발생하는 상황이 과거보다 더 자극적인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 최근 일어난 인천 중학교에서의 다문화배경 학생의 추락사 사건 같이 학생의 다양성이 놀림의 대상이 되고 인권이 훼손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 일을 인권교육과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교사직무교육(in-service training)을 통한 인권교육 전문가 교육이 인권에 관심을 보이는 일부 교사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교사들에게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인권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함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b; Council of Europe, 2009a, 2009b).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 자신의 인권 감수성과 인권 교육역량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는 현장에서 인권교육이 또 하나의 부가적인 '수행 과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권이 보다 잘 학습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수법 역량을 제고해야 하는데 체험과 경험이 없는 인권교육에 대한 반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사의 교수법 역량 제고에 힘쓸 필요가 있다.

넷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인권 관련 정책은 내용과 실행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바, 이러한 차이가 인권보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정책이 다양성뿐만 아니라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도별로 자율성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인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와 전국 공통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청 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Ⅲ.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개요 및 조사도구 타당화

1. 예비조사 개요
2. 본조사 개요
3.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타당화

Ⅲ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개요 및 조사도구 타당화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연구(김진희 외, 2018)에서 개발된 학생과 교사의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도구를 수정 보완한 후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도구 타당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예비조사 개요

예비조사는 개발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된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조사도구를 2회에 걸쳐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문항의 안면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 2인, 중학교 교사 2인, 초등학생 2인, 중학생 2인을 대상으로 문항 검토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해, 1개 교육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3개교씩 편의 표집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조사 대상 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학년에 해당하는 2개 학급을 표집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는 학교당 30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우편 조사방식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생 118명, 중학교 3학년생 136명, 고등학교 2학년생 135명이 참여해 총 38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의 경우, 해당 학년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를 포함한 교사에게 실시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 89명, 중학교 교사 89명, 고등학교 교사 87명에게 실시되었다.

〈표 Ⅲ-1〉 예비조사 응답 현황

학교 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사수	비고
초등학교	3개교	학교 당 2학급	118명	89명	6학년 대상
중학교	3개교	학교 당 2학급	136명	89명	3학년 대상
고등학교	3개교	학교 당 2학급	135명	87명	2학년 대상
계	9개교	12학급	389명	265명	-

2 본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본조사는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로서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용 설문지는 해당학년 담당교사인 일반교사를, 학교용 설문지는 교감이나 교무·연구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식은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약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Ⅲ-2〉 본조사 개요

구분	조사 내용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지역
조사 대상	- 학생용 설문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 교사용 설문지: 일반교사(해당학년 담당교사) - 학교용 설문지: 교감이나 교무·연구부장교사
조사 방법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19. 08. 27. ~ 2019. 09. 20. (약 4주 간)
표본 추출	비례유층확률표집
표본 수	- 학교: 301개교 - 학생: 13,524명 - 일반교사: 5,886명 - 교감/보직교사: 300명
표본 오차	- 학생(n=13,524)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84%p - 일반교사(n=5,886)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28%p - 교감/보직교사(n=300)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5.58%p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를 재적 학생 수에 따라 학교 소재지, 학교유형(고등학교), 설립유형 등을 반영하여 층화군집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방식으로 연구대상 학교를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표집 방법 및 표집 학교 수는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으며, 학교급 별로 각각 105개 학교씩을 표집으로 조사하였다. 각 학교별로 조사대상 학년에 해당하는 2개 학급을 표집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는 학교당 25명 표집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단, 그 인원이 25명 미만인 경우 교사를 임의 표집으로 조사하여 25명을 선정하되 성별, 연령의 균형을 고려하여 교사를 선정하였다. 학교용 설문지의 경우, 교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교무부장교사 또는 연구부장교사 등 보직교사를 선정하였다.

나. 조사 대상

1) 모집단 및 표본 추출

2018년 4월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 등 11,636개교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2]. 학교는 본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교장 및 휴·폐교는 제외하였다. 표본 학교 수는 학교급별로 105개로 총 315개교이며, 전체 모집단의 2.71%에 해당한다. 표본 학생 수는 전체 1,402,557명 중 16,546명(1.18%)이며, 표본 교사 수는 전체 430,817명 중 9,750명(1.83%)이다.

〈표 Ⅲ-3〉 모집단 및 목표 표집 현황

구분	대상 학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모집단	목표표집 (비율 %)	목표 표집	모집단	목표표집 (비율 %)	모집단	목표표집 (비율 %)
초등학교	6	6,064	105 (1.73)	210	428,962	5,040 (1.17)	186,684	3,250 (1.41)
중학교	3	3,214	105 (3.27)	210	463,354	5,670 (1.22)	109,906	3,250 (2.39)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

구분		대상 학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모집단	목표표집 (비율 %)	목표 표집	모집단	목표표집 (비율 %)	모집단	목표표집 (비율 %)
고등학교	일반고	2	1,556	56 (3.60)	112	363,392	3,136 (0.86)	90,855	1,725 (1.54)
	특목고	2	157	12 (7.64)	24	22,062	600 (2.72)	7,787	375 (3.85)
	자율고	2	155	10 (6.45)	20	41,152	480 (1.17)	9,966	300 (2.51)
	특성화고	2	490	27 (5.51)	54	83,635	1,620 (1.94)	25,619	850 (2.63)
	소계		2,358	105 (4.45)	210	510,241	5,836 (1.14)	134,227	3,250 (1.96)
전체			11,636	315 (2.71)	630	1,402,557	16,546 (1.18)	430,817	9,750 (1.83)

※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3명, 중학교 25.7명, 일반고 27.1명, 특목고 23.1명, 특성화고 23명, 자율고 28.1명임.
※ 목표 집단 수 산정 시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7명, 일반고, 28명, 특목고, 25명, 특성화고, 24명, 자율고 30명으로 산정하여 제시함.

2) 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층화군집추출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출된 315개 학교 중 301개 학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학생은 초등학생 4,374명, 중학생 4,647명, 고등학생 4,503명으로 총 13,52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1,971명, 중학교에서 1,893명, 고등학교에서 2,02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교감/부장교사는 중학교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학교용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학생 응답자의 분포 현황을 이들이 재학하는 학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4〉와 같다. 학교 소재지별로 구분해 보면,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 학생들이 4,954명(36.6%), 중소도시 학생들이 4,640명(34.3%), 군·읍·면지역 학생들이 3,930명(29.1%)이었다. 국·공립학교의 학생들은 10,302명(76.2%)으로 사립학교 학생 응답자 3,222명(23.8%)의 3배 수준이었다. 취약집단 비율이 10% 이하인 학교의 학생이 8,086명(59.8%)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11~20%인 학교의 학생이 3,711명(27.4%), 21% 이상인 학교의 학생이 1,683명으로 12.4%를 차지하였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서울, 광주, 경기, 전

북)의 학교 학생들은 5,647명(41.8%)이었고,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의 학생들은 이보다 많은 7,877명(58.2%)이었다. 혁신학교의 학생은 2,083명(15.4%)이었으며, 일반학교의 학생은 11,441명(84.6%)이었다.

〈표 Ⅲ-4〉 본조사 학생용 설문지 응답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명	(%)	명	(%)	명	(%)	명	(%)
계		4,374	(32.3)	4,647	(34.4)	4,503	(33.3)	13,524	(100.0)
학교 소재지	특별광역시	1,369	(10.1)	1,627	(12.0)	1,958	(14.5)	4,954	(36.6)
	중소도시	1,278	(9.4)	1,819	(13.5)	1,543	(11.4)	4,640	(34.3)
	군·읍·면지역	1,727	(12.8)	1,201	(8.9)	1,002	(7.4)	3,930	(29.1)
설립유형	국·공립	4,274	(31.6)	3,467	(25.6)	2,561	(18.9)	10,302	(76.2)
	사립	100	(.7)	1,180	(8.7)	1,942	(14.4)	3,222	(23.8)
취약집단 비율	0~10%	2,989	(22.1)	2,611	(19.3)	2,486	(18.4)	8,086	(59.8)
	11~20%	1,106	(8.2)	1,307	(9.7)	1,298	(9.6)	3,711	(27.4)
	21% 이상	279	(2.1)	685	(5.1)	719	(5.3)	1,683	(12.4)
	미응답*	0	(.0)	44	(.3)	0	(.0)	44	(.3)
인권조례 제정여부	제정 지역**	1,702	(12.6)	1,937	(14.3)	2,008	(14.8)	5,647	(41.8)
	미제정 지역	2,672	(19.8)	2,710	(20.0)	2,495	(18.4)	7,877	(58.2)
혁신학교 여부	혁신학교	794	(5.9)	934	(6.9)	355	(2.6)	2,083	(15.4)
	일반학교	3,580	(26.5)	3,713	(27.5)	4,148	(30.7)	11,441	(84.6)

* 취약집단 비율 미응답은 학교용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1개교의 결측값임.
** 인권조례 제정 지역: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교사 응답자의 분포 현황을 이들이 재직하는 학교의 특성 및 개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학교 소재지별로 보면, 특별광역시의 교사들이 2,232명(37.9%), 중소도시의 교사들이 1,943명(33.0%), 군·읍·면지역의 교사들이 1,711명(29.1%)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의 교사가 4,523명(76.8%)으로 사립학교 1,363명(23.2%)보다 많았다. 취약집단 비율이 10% 이하인 학교의 교사는 3,527명(59.9%)이었고, 11~20%인 학교의 교사는 1,626명(27.6%), 21% 이상인 학교의 교사는 723명(12.3%)으로 나타났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서울, 광주, 경기, 전북)의 교사들은 2,441명(41.5%)

이었고,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의 교사들은 3,445명(58.5%)이었다. 혁신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는 895명(15.2%)이었고, 일반학교의 교사는 4,991명(84.8%)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Ⅲ-5〉 본조사 교사용 설문지 응답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명	(%)	명	(%)	명	(%)	명	(%)
계		1,971	(33.5)	1,893	(32.2)	2,022	(34.4)	5,886	(100.0)
학교 소재지	특별광역시	662	(11.2)	693	(11.8)	877	(14.9)	2,232	(37.9)
	중소도시	567	(9.6)	684	(11.6)	692	(11.8)	1,943	(33.0)
	군·읍·면지역	742	(12.6)	516	(8.8)	453	(7.7)	1,711	(29.1)
설립유형	국·공립	1,932	(32.8)	1,456	(24.7)	1,135	(19.3)	4,523	(76.8)
	사립	39	(.7)	437	(7.4)	887	(15.1)	1,363	(23.2)
취약집단 비율	0~10%	1,342	(22.8)	1,045	(17.8)	1,140	(19.4)	3,527	(59.9)
	11~20%	509	(8.6)	575	(9.8)	542	(9.2)	1,626	(27.6)
	21% 이상	120	(2.0)	263	(4.5)	340	(5.8)	723	(12.3)
	미응답*	0	(.0)	10	(.2)	0	(.0)	10	(.2)
인권조례 제정여부	제정 지역**	827	(14.1)	737	(12.5)	877	(14.9)	2,441	(41.5)
	미제정 지역	1,144	(19.4)	1,156	(19.6)	1,145	(19.5)	3,445	(58.5)
혁신학교 여부	혁신학교	350	(5.9)	379	(6.4)	166	(2.8)	895	(15.2)
	일반학교	1,621	(27.5)	1,514	(25.7)	1,856	(31.5)	4,991	(84.8)

* 취약집단 비율 미응답은 학교용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1개교의 결측값임.
** 인권조례 제정 지역: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맥락과 배경 특성을 조사하는 학교용 설문지에 응답한 학교 현황은 다음의 〈표 Ⅲ-6〉과 같다.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가 106개교(35.3%), 중소도시 및 군·읍·면지역 학교가 각각 97개교(32.3%)였다. 국·공립학교는 231개교(77.0%)로 사립학교 69개교(23.0%)보다 많았다. 취약집단 비율이 10% 이하인 학교가 170개교(56.7%)였고, 11~20%인 학교는 88개교(29.3%), 21% 이상인 학교는 42개교(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서울, 광주, 경기, 전북)의 학교들은 121개교(40.3%)였고,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의 학교들은 179개교(59.7%)였다. 혁신학교는 52개교(17.3%)이었으며, 일반학교는 248개교로 전체의 82.7%였다.

〈표 Ⅲ-6〉 본조사 학교용 설문지 응답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명	(%)	명	(%)	명	(%)	명	(%)
계		102	(34.0)	97	(32.3)	101	(33.7)	300	(100.0)
학교 소재지	특별광역시	32	(10.7)	33	(11.0)	41	(13.7)	106	(35.3)
	중소도시	29	(9.7)	35	(11.7)	33	(11.0)	97	(32.3)
	군·읍·면지역	41	(13.7)	29	(9.7)	27	(9.0)	97	(32.3)
설립유형	국·공립	100	(33.3)	73	(24.3)	58	(19.3)	231	(77.0)
	사립	2	(.7)	24	(8.0)	43	(14.3)	69	(23.0)
취약집단 비율	0~10%	66	(22.0)	51	(17.0)	53	(17.7)	170	(56.7)
	11~20%	28	(9.3)	30	(10.0)	30	(10.0)	88	(29.3)
	21% 이상	8	(2.7)	16	(5.3)	18	(6.0)	42	(14.0)
인권조례 제정여부	제정 지역*	40	(13.3)	38	(12.7)	43	(14.3)	121	(40.3)
	미제정 지역	62	(20.7)	59	(19.7)	58	(19.3)	179	(59.7)
혁신학교 여부	혁신학교	21	(7.0)	22	(7.3)	9	(3.0)	52	(17.3)
	일반학교	81	(27.0)	75	(25.0)	92	(30.7)	248	(82.7)

* 인권조례 제정 지역: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다.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인권교육, 인권실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용 설문지, 교사용 설문지, 학교용 설문지를 각각 개발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등학생용으로 구분되나, 중등학생만 응답할 수 있는 3개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의 구성 및 내용이 동일하며 단지 문항의 표현 방식에서 학교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학생용 설문지는 크게 인권교육 현황, 인권실태, 인권의식, 응답 성향 분석 문항, 학생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생용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 번호는 다음의 〈표 Ⅲ-7〉과 같다(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은 〈부록 Ⅰ〉에 첨부된 설문지 참조).

〈표 Ⅲ-7〉 학생용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인권 교육	인권 인지	인권 개념 및 관련 문서 인지 정도	1	4점 척도
	교육 현황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2	이분형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3	선다형
		인권교육 시간	4	선다형
		내용별 인권교육 경험 및 필요 정도	5	이분형/4점 척도
		인권교육 방법	6	4점 척도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	7(1-4)	4점 척도
		인권교육 수업 풍토(개방적 풍토)	7(5-6)	4점 척도
		인권교육 효과(지식/이해)	8(1-3)	4점 척도
		인권교육 효과(기능)	8(4-5)	4점 척도
		인권교육 효과(태도)	8(6-7)	4점 척도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	9	선다형
		인권 활동 참여 경험	10	이분형
인권실태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	11	4점 척도
		선생님으로부터의 인권침해(경험 여부, 유형, 대처 방법)	12	이분형/선다형
		학교 내 친구, 선배와 관계에서의 인권실태	13	4점 척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경험 여부, 유형, 대처 방법)	14	이분형/선다형
		학업 중단 고민 경험(이유)	15	이분형/선다형
		학교생활 만족도	16	4점 척도
		가족 내 인권실태	17	4점 척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경험 여부, 유형, 대처 방법)	18	이분형/선다형
인권의식		인권판단	19	4점 척도
		인권 감수성	20	4점 척도
		인권 행동의사	21	4점 척도
응답 성향 분석 문항		인권판단이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2	5점 척도
		인권 감수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3	5점 척도
		인권 행동의사가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4	5점 척도
학생 특성		성별	25	이분형
		성적수준	26	선다형
		보호자의 최종 학력	27	선다형
		소유한 책 권수	28	선다형

교사용 설문지는 인권교육 현황에 교사 연수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학생용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인권실태, 인권의식, 응답 성향 분석 문항, 교사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분된다. 교사용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 번호는 다음의 〈표 Ⅲ-8〉과 같다.

〈표 Ⅲ-8〉 교사용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인권 교육	인권 인지	인권 관련 문서 인지 정도	1	4점 척도
	교육 현황	교원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 정도	2	4점 척도
		인권교육 실시 경험	3	이분형/기입형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	4	4점 척도
		인권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5(1-4)	4점 척도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	5(5-7)	4점 척도
		개방적 수업 풍토	5(8-9)	4점 척도
		학생 권리의 중요도 및 수업준비도	6	4점 척도
		인권교육 장애 요인	7	선다형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8	선다형
		인권구제 제도 운영	18	4점 척도
		인권 조례 효과(조례의 필요성)(이유)	19(18)	4점 척도/ 기입형
		인권 관계 법령 제·개정 방안	20	선다형
		인권교육과 교권 관계에 대한 인식	21	4점 척도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22	기입형
인권 교육	교사 연수	양성과정에서의 교육 경험	9	이분형
		1년 이내의 연수 참여 경험 (여부, 횟수 및 시간, 주체, 방법, 내용)	10	이분형/기입형/ 선다형
		교사 임용 후 연수 참여 경험(여부, 도움 정도)	11	이분형/ 4점 척도
		연수 참여 의사(부정적일 경우, 이유)	12	선다형
		연수 내용에 대한 요구	13	선다형
인권실태		학생 인권보호 정도	14	4점 척도
		교직원 인권보호 정도	15	4점 척도
인권의식		인권판단	23	4점 척도
		인권 감수성	24	4점 척도
		행동의사	25	4점 척도

대영역	소영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학교 특성		교장(민주적) 리더십	16	4점 척도
		학교 만족도	17	4점 척도
응답 성향 분석 문항		인권판단이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6	5점 척도
		인권 감수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7	5점 척도
		인권 행동의사가 높은 학생에 대한 동의 정도	28	5점 척도
교사 특성		성별	29	이분형
		연령	30	선다형
		담당교과(초등의 경우, 담임 여부)	31	이분형
		고용형태	32	이분형
		직위	33	선다형

학교용 설문지는 학교 배경 정보와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용 설문지의 문항 내용과 문항 번호는 다음의 〈표 Ⅲ-9〉와 같다.

〈표 Ⅲ-9〉 학교용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문항 번호

영역	내용	문항 번호	측정 방법
학교 배경 정보	혁신 학교 유무	1	이분형
	학교폭력 피해 응답 학생수	2	기입형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비율	3	선다형
인권교육 현황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유무	4	이분형
	인권교육 계획 수립 유무(형태, 내용)	5	이분형/기입형/4점 척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의 인권교육 편성 여부(시간, 수업 교사)	6	이분형/기입형/선다형
	인권교육 실천 방법	7	이분형
	교원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 정도	8	4점 척도
	참여 중심 인권교육 활동 정도	9	4점 척도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횟수 및 시간)	10	이분형/기입형
	기 실시된 인권 관련 교육	11	기입형
	학교 인권구제 제도 운영 여부	12	이분형
	교육청 인권구제 제도 운영	13	4점 척도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	14	기입형
	인권교육 실천의 어려움 및 개선 건의	15	기입형

3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타당화

본 장에서는 개발된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의 타당화를 위하여 예비조사와 본조사 자료를 SPSS 23.0과 AMOS 18.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초등학생 118명, 중학생 136명 고등학생 135명, 초·중·고등학교 교사 265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문항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수정하였다. 역문항으로 개발된 문항의 경우 다른 요인과 분리되는 별도의 요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요인과의 상관관계와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여, 역문항을 긍정표현의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수정된 문항의 표현과 어휘를 교육학 박사 및 현직 교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여 질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과 교사용 척도 모두 인권판단 8문항, 인권 감수성 8문항, 인권 행동의사 8문항, 총 24문항씩이 확정되었다.

본조사를 통해 수집한 초등학생 4,374명, 중학생 4,647명, 고등학생 4,503명, 초·중·고등학교 교사 5,886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인권의식 척도 문항이 어떻게 하위구인으로 분리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주축요인(principal axis factoring) 방식을 활용하여 공통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인 간 상관관계를 가정하는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요인회전을 적용하였다. 그다음으로, 구인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확인을 위해 χ^2, CFI, TLI, RMSEA를 살펴보았고, 요인부하량, AVE, 개념 신뢰도, 잠재변수 간 상관자승을 검토함으로써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가. 학생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Kaiser의 법칙에 의거하여 고유치 1 이상인 곳에서 요인의 개수를 정하여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생 모두는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요인4에 해당하는 문항은 두 개 문항에 불과하고, 이 두 문항의 경우 문항-총점 간 상관이 .2 가량으로 낮게 나왔다. 또한 설명량을 보았을 때에도 요인1부터 요인3까

지 설명된 총 분산력이 50% 이상이고, 스크리 검사(scree test)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도 3개 요인이 보다 적합하였다. 따라서 두 개 문항(20-3번과 21-7번)을 제외된 22문항으로 확정하여 반복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자료의 KMO값은 .919, 중·고등학생은 .927로 나타났다. Bartlett의 구형성 검토 결과, χ^2값은 초등학생 37698.671 ($p<.001$), 중·고등학생 104056.314 ($p<.001$)로 양호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의 설명량은 요인1은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생 28.481%, 중·고등학생 29.983%, 2요인은 16.277%(초등학생)~20.863%(중·고등학생), 3요인은 7.624%(초등학생)~8.248%(중·고등학생) 설명하였고, 전체변량의 52.382%(초등학생)~59.095%(중·고등학생)로 〈표 Ⅲ-10〉와 같다. 초·중·고등학생 모든 집단에서 요인1은 학생인권의식 문항의 19-1번부터 19-8번(19-7번 제외) 7개 문항(요인계수 .711~.817), 요인2는 17-1번부터 17-8번까지의 8개 문항(요인계수 .551~.829), 요인3은 18-1번부터 18-8번(18-3번 제외)의 7개 문항(요인계수 .507~.832)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3개 요인은 본 연구가 이론적 근거에 따라 개발한 문항과 구인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1은 총 공통변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문항은 실제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인권보호를 위해 행동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인권 행동의사'에 해당한다. 요인2는 인권과 관련된 교내외 상황에서 인권존중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권판단'에 해당한다. 마지막 요인3은 인권침해를 당하는 타인과 상황에 대한 민감성과 공감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인권 감수성' 구인이라 볼 수 있다.

〈표 Ⅲ-10〉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학생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설문지 문항 번호	문항내용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요인1 인권 행동 의사	요인2 인권 판단	요인3 인권 감수성	요인1 인권 행동 의사	요인2 인권 판단	요인3 인권 감수성
19-1	학생은 무조건 어른의 말을 따라야 함	-.086	.689	-.003	-.131	.765	-.012
19-2	학생은 무조건 학교 규칙을 지켜야 함	-.070	.710	-.043	-.146	.759	-.042
19-3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장	.125	.628	-.106	.025	.763	-.076
19-4	성별 권리 차이	.040	.747	-.141	-.054	.828	-.097
19-5	높은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	.031	.756	-.099	-.027	.829	-.055
19-6	돈이 많을수록 좋은 교육 받아야 함	.110	.688	-.159	.056	.774	-.075
19-7	범죄사건 해결 시 폭력행사 인정	.091	.609	-.060	.095	.633	.037
19-8	어려운 친구를 위한 학교 돈 사용	.145	.551	-.020	.093	.645	-.031
20-1	성적으로 무시당하는 친구 안타까움	.370	.034	-.689	.323	-.034	-.700
20-2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 보면 슬픔	.388	.137	-.784	.305	.115	-.796
20-4	외국인 노동자 차별 화남	.297	.142	-.709	.367	.092	-.780
20-5	교내 활동에 차별 받는 친구 보면 마음 아픔	.463	.061	-.821	.488	.057	-.832
20-6	장애인 친구와 함께 체육활동 하고 싶은 마음	.548	.074	-.700	.558	-.021	-.691
20-7	사건 시 과거 있는 학생을 먼저 조사하는 것은 부당	.190	.011	-.507	.315	-.057	-.535
20-8	외모 차별 기분 나쁨	.402	.150	-.741	.403	.129	-.786
21-1	폭력 당하는 친구 도움	.754	.091	-.443	.785	.005	-.470
21-2	외국인 학생에게 먼저 다가감	.711	.122	-.441	.754	.045	-.464
21-3	인권침해 받는 친구 도움	.796	.142	-.526	.774	.083	-.553
21-4	인권 문제 논의 시 의견 피력	.784	.043	-.363	.813	-.003	-.388
21-5	자연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기부	.798	.058	-.385	.817	.004	-.423
21-6	SNS 활용해 문제 해결 (내 주변 사람들)	.728	.028	-.286	.801	-.027	-.336
21-8	인권 관련 집회 참여	.759	.004	-.339	.774	-.065	-.314
	고유값	6.266	3.581	1.677	6.596	4.590	1.815
	설명변량(%)	28.481	16.277	7.624	29.983	20.864	8.248
	누적설명변량(%)	28.481	44.758	52.382	29.983	50.847	59.095

2) 신뢰도 분석 결과

22개 문항의 인권의식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학교급에 따라 .856(초등), .864(중·고등)을 보였다.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 내적일치도는 '인권판단'은 .821(초등), .887(중·고등), '인권 감수성'은 .834(초등), .856(중·고등), '인권 행동의사'는 .879(초등) .900(중·고등)으로 나타났다.

3) 구인타당도 검토 결과(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에서는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통해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인권의식 척도의 요인구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의식 척도의 측정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 결과 초·중·등 모두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 는 .070 이하(Kline, 2011)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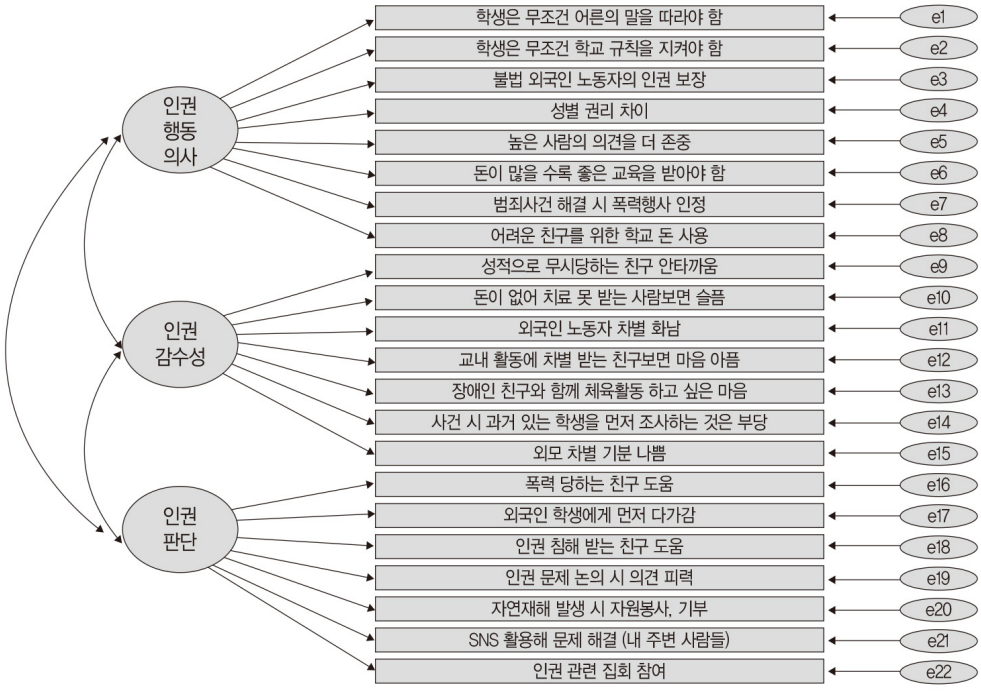

[그림 Ⅲ-1] 학생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표 Ⅲ-11〉 인권의식 척도 요구구조 모형 적합도 지수

구분	x^2	TLI	CFI	RMSEA
초등학생	3277.235	.908	.918	.058
중·고등학생	9483.489	.900	.911	.070

가)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는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과 표준오차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각 문항의 표준 요인부하량은 학교급에 따라 최소 .465에서 최대 .838로 나타났다. 관찰변수인 측정문항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의 C.R. 값을 확인하였는데, 모두 1.96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지수)는 0.5 이상,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일 때 수렴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Kline, 2011). AVE는 .382~.530, 잠재요인 개념 신뢰도는 .829~.902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AVE가 다소 낮았으나 개념 신뢰도가 높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수렴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Ⅲ-12〉, 〈표 Ⅲ-13〉와 같다.

〈표 Ⅲ-12〉 초등학생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개념·수렴타당성 결과

요인	측정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인권판단	19-1	1.000	.625			.382	.829
	19-2	1.150	.650	.033	34.550***		
	19-3	.862	.557	.028	30.600***		
	19-4	.953	.713	.026	36.907***		
	19-5	1.158	.723	.031	37.255***		
	19-6	.890	.640	.026	34.131***		
	19-7	1.054	.529	.036	29.317***		
	19-8	.812	.465	.031	26.297***		

요인	측정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인권 감수성	20-1	1.000	.627			.442	.843
	20-2	.997	.722	.026	38.679***		
	20-4	.943	.623	.027	34.530***		
	20-5	1.158	.806	.028	41.751***		
	20-6	1.085	.710	.028	38.229***		
	20-7	0.668	.401	.028	23.661***		
	20-8	1.001	.689	.027	37.352***		
인권 행동의사	21-1	1.000	.734			.519	.882
	21-2	.927	.695	.021	44.327***		
	21-3	1.023	.809	.020	51.764***		
	21-4	1.073	.733	.023	46.850***		
	21-5	1.068	.740	.023	47.273***		
	21-6	1.073	.641	.026	40.797***		
	21-8	1.050	.677	.024	43.166***		

*** p 〈 .001

〈표 Ⅲ-13〉 중·고등학생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개념·수렴타당성 결과

요인	측정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인권판단	19-1	1	.726			.509	.891
	19-2	1.044	.723	.016	66.549***		
	19-3	1.016	.717	.015	66.001***		
	19-4	1.075	.813	.014	74.870***		
	19-5	1.148	.815	.015	75.045***		
	19-6	1.081	.740	.016	68.164***		
	19-7	.886	.556	.017	50.915***		
	19-8	.823	.570	.016	52.291***		
인권 감수성	20-1	1	.615			.515	.872
	20-2	.999	.705	.018	54.736***		
	20-4	1.04	.731	.019	56.185***		
	20-5	1.149	.838	.019	61.522***		
	20-6	1.048	.703	.019	54.628***		
	20-7	.779	.471	.020	39.596***		
	20-8	1.016	.739	.018	56.621***		

요인	측정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인권 행동의사	21-1	1	.771			.570	.902
	21-2	.975	.745	.013	73.716***		
	21-3	.937	.797	.012	79.705***		
	21-4	1.09	.777	.014	77.395***		
	21-5	1.064	.776	.014	77.342***		
	21-6	1.109	.728	.015	71.731***		
	21-8	1.017	.684	.015	66.795***		

*** p 〈 .001

나)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는 각 요인들이 서로 얼마나 변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요인의 AVE가 두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각 학교급에서 인권의식의 각 하위 구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을 계산한 결과, 각 구인의 AVE값이 모든 구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인들은 충분한 판별타당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Ⅲ-14〉, 〈표 Ⅲ-15〉과 같다.

〈표 Ⅲ-14〉 판별 타당도 결과(초등학교)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AVE
인권판단	1			.382
인권 감수성	.151(.022)***	1		.442
인권 행동의사	.093(.009)***	.675(.456)***	1	.519

*** p 〈.001, ( )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

〈표 Ⅲ-15〉 판별 타당도 결과(중·고등학교)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AVE
인권판단	1			.492
인권 감수성	.089(.008)***	1		.511
인권 행동의사	.008(.0.00)	.655(.429)***	1	.547

*** p 〈.001, ( )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

나. 교사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1)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교사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역시 학생용과 마찬가지로 인권의식의 하위구성요소인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간에 상관을 가정한 Oblique 회전 방법(delta=0)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사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는 학생용과 다르게 학교급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고유치 1 이상인 곳에서 요인의 개수를 정하여 분석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나, 요인4와 5는 각각 2개 문항에 불과하고, 문항-총점 간 상관이 0.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량을 보았을 때에도 요인1부터 요인3까지 설명된 총 분산력이 50% 이상이고, 스크리 검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도 3개 요인이 보다 적합하였다. 학생과의 문항과의 일치도 등을 고려하여 총 18문항으로 문항을 확정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901, χ^2 값은 48390.978(p〈.001)으로 나타나, 양호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각 요인의 설명량은 요인1은 31.368%, 요인2는 18.269%, 요인3은 10.002%로 〈표 Ⅲ-16〉과 같다. 요인1은 교사 인권의식 문항 24-1번부터 24-8번까지(24-3번 제외)의 7개 문항(요인계수 .672∼.840), 요인2는 25-1번부터 25-8번까지(25-7번 제외)의 7개 문항(요인계수 .651∼.810), 요인3은 24-1번부터 24-8번까지(24-1, 24-4, 24-6, 24-8번 제외)의 4개 문항(요인계수 .708∼.830)로 나타났다.

3개 요인은 본 연구가 이론적 근거에 따라 개발한 하위구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1은 총 공통변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문항은 '인권 감수성'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인은 '인권 행동의사', 세 번째 요인은 '인권판단'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경우 요인1이 '인권 행동의사', 요인2가 '인권판단', 요인3이 '인권 감수성' 인 것과 차이가 존재하였다.

2) 신뢰도 분석 결과

18개 문항의 인권의식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는 .827이었다.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간 내적일치도는 '인권판단'은 .802, '인권 감수성'은 .879, '인권 행동의사'는 .856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교사용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도구)

설문지문항 번호	문항내용	교사		
		요인1 인권 감수성	요인2 인권 행동의사	요인3 인권 판단
23-3	외국인 인권보호	.288	.061	.816
23-5	높은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	.215	.023	.771
23-6	돈이 많을수록 좋은 교육 받아야 함	.287	.041	.846
23-7	범죄사건 해결 시 폭력행사 인정	.187	.019	.720
24-1	비정규직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672	-.284	.118
24-2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	.776	-.187	.287
24-4	출신지역 이유로 채용, 승진에 불공정	.786	-.133	.297
24-5	연령을 이유로 경제활동 제한	.789	-.280	.195
24-6	학력, 학벌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	.793	-.241	.257
24-7	가정환경을 이유로 불이익	.840	-.227	.304
24-8	질병, 병력을 이유로 취업 제한	.694	-.310	.181
25-1	폭력 당하는 동료 도움	.351	-.754	.119
25-2	비정규직 동료 차별 시 도움	.360	-.787	.057
25-3	인권침해 당하는 동료 도움	.408	-.761	.157
25-4	인권 문제 논의 시 의견 피력	.263	-.810	.034
25-5	사회적 약자 위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229	-.738	-.025
25-6	SNS 활용해 문제 해결 (내 주변 사람들)	.093	-.696	-.196
25-8	인권 관련 집회 참여	.043	-.651	-.254
	고유값	5.646	3.288	1.800
	설명변량(%)	31.368	18.269	10.002
	누적설명변량(%)	31.368	49.637	59.639

3) 구인타당도 검토 결과(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교사용 인권의식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은 [그림 Ⅲ-2]와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학생용 척도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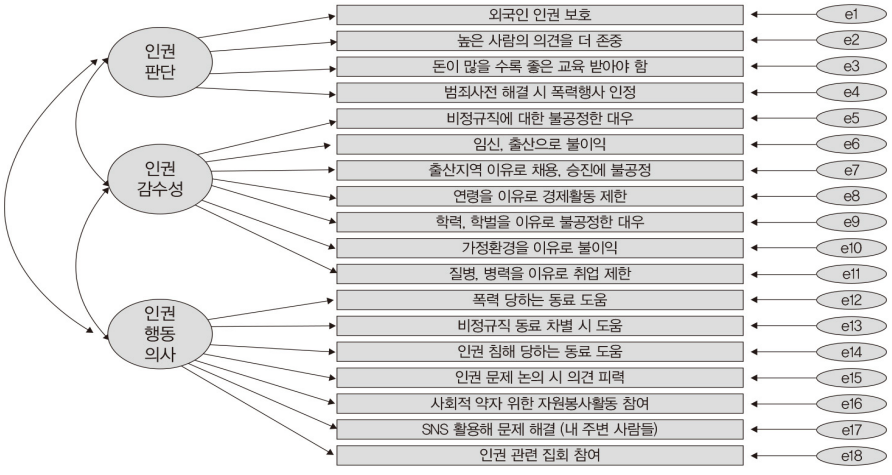

[그림 Ⅲ-2] 교사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 척도 확인적 요인분석

〈표 Ⅲ-17〉 교사 인권의식 척도 요구 구조 모형 적합도 지수

x^2	TLI	CFI	RMSEA
3989.593	.902	.916	.070

가) 수렴타당도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문항의 표준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최소 .486에서 최대 .830으로 나타났다. 관찰변수인 측정문항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계수의 C.R. 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1.96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사의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조사척도의 AVE는 .483~.552, 개념신뢰도는 .809~.890으로 수렴타당도가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교사 인권의식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개념·수렴 타당성 결과

요인	측정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AVE	개념 신뢰도
인권판단	23-3	1	.744			.518	.809
	23-5	.994	.686	.021	47.730***		
	23-6	1.18	.830	.022	53.922***		
	23-7	.945	.599	.023	41.842***		
인권 감수성	24-1	1	.599			.552	.890
	24-2	1.027	.721	.024	43.648***		
	24-4	1.041	.741	.023	44.504***		
	24-5	1.139	.749	.025	44.828***		
	24-6	1.201	.758	.027	45.178***		
	24-7	1.125	.823	.024	47.576***		
	24-8	1.081	.649	.027	40.520***		
인권 행동의사	25-1	1	.778			.483	.864
	25-2	1.098	.792	.018	62.417***		
	25-3	.992	.795	.016	62.690***		
	25-4	1.146	.766	.019	60.122***		
	25-5	.935	.633	.019	48.401***		
	25-6	1.007	.538	.025	40.491***		
	25-8	.844	.486	.023	36.305***		

*** p 〈 .001

나) 판별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위하여 각 요인의 AVE가 두 요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교사 인권의식의 각 하위 구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을 계산한 결과, 학생 인권의식과 마찬가지로 각 구인의 AVE값이 모든 구인 간 상관관계의 제곱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인들은 충분한 판별타당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표 Ⅲ-19〉 참조).

〈표 Ⅲ-19〉 교사의 판별 타당도 결과

	인권판단	인권감수	행동의사	AVE
인권판단	1			.518
인권감수	.376(.141)***	1		.552
행동의사	.037(.001)***	.417(.173)***	1	.483

*** p 〈.001, ( )의 값은 상관계수의 제곱값

다. 인권의식 척도 개발의 의의와 제한점

현재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 및 사회 분야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부재해왔던 만큼, 인권의식 척도를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타당화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교육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인권의식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로 개발하였고, 타당화 과정을 거쳐서 가정된 하위구인이 동일하게 추출되어, 이론적 근거가 충분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 교사 모두에서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원 척도는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3개 구인에 대하여 각 8개씩 총 24개 문항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예비조사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학생용 척도에서는 2개 문항이 제거되어 최종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교사용 척도는 6개 문항이 제거되어 최종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학생용 22문항, 교사용 18문항으로 확정된 인권의식 척도가 타당한 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3요인 모형의 모형지수가 기준 적합도를 고려해보았을 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역시 적절한 수준임이 확인되어, 학생용과 교사용 모두 인권의식 척도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처럼 학생용 인권의식 척도의 측정문항은 일부 문항에서의 초등과 중등 간에 표현의 차이만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교급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학생용 척도와 교사용 척도는 각각 22문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제한된 시간에 교육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본 인권의식 척도는 학생용과 교사용으로 개발되었고 구성된 하위요인도 일치하는 장점을 가진다. 이를 통하여 학교 안에서 교사의 인권의식과 학생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 등 인권의식 연구와 그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척도를 활용하여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영향 요인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인권의식 척도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나, 몇 가지 제한점도 함께 가진다. 먼저, 인권의식은 이론적으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인권의식도 증가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나, 실제 본 척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러한 발달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문항은 없는지 향후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인권의식이 실제 인권행동과 인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본 인권의식 척도의 법칙타당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식과 인과적 관련성을 가지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인권의식 척도는 대부분의 자기보고식 척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하여 정직한 응답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되어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개인의 응답패턴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측정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학교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인권실태 분석

1. 학교 인권교육 현황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3. 인권보호 풍토 및 침해 경험
4.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및 교사-학생 인식 차이
5. 교원 전문성
6.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요구
7. 요약 및 시사점

Ⅳ 학교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인권실태 분석

본 장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인권교육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인권보호 수준은 어떠한지, 교사의 인권교육 전문성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학교별 인권교육 운영 형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수업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인식, 학교별 만족도의 차이 등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교사의 인권의식과 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교사의 학생 인권보호 정도,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정도, 가정 내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분석과 실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과 유형, 대응 형태를 살펴본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살펴본 인권보호 풍토의 학교 간 분포와 교사-학생 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5절에서는 교사의 인권교육 준비도와 전문성 개발 정도를 제시한다. 끝으로 6절에서는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및 개선 요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3].

1 학교 인권교육 현황

가. 학교별 인권교육 운영 형태

□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학교)

[그림 Ⅳ-1]은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 학교의 89.7%(초등학교: 88.2, 중학교: 87.6, 고등학교: 93.1)가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를

3) ▪ 분석 문항 옆에 제시된 (학교), (교사), (학생)은 조사 대상을 제시한 것임(예.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학교))
▪ 배경 변인 옆에 붙어 있는 *** 표시는 통계적 유의도를 제시한 것임(***p〈.001, **p〈 .01, *p〈 .05).
▪ 교사, 학생 대상 조사 결과는 통계적 검증을 하였으며, 학교 대상 조사 결과는 통계검증을 하지 않은 비율 및 빈도만 제시함.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급과 상관없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초등학교: 97.5, 중학교: 97.4, 고등학교: 100)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초등학교: 82.3, 중학교: 81.4, 고등학교: 87.9)보다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해당 학교가 혁신학교인지의 여부와 설립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비율을 들여다보면, 근소한 차이가 나타나긴 하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혁신학교 여부를 놓고 보면 중학교(혁신학교: 86.4%, 일반학교: 88.0%)와 고등학교(혁신학교: 88.9%, 일반학교: 93.5%)에서 일반학교가 혁신학교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90.5%)가 더 높았다. 또한 설립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중학교에서는 국·공립(86.3%)에 비해 사립(91.7%)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인데 반해, 고등학교는 국·공립(93.1%)이 사립(93.0%)에 비해 미세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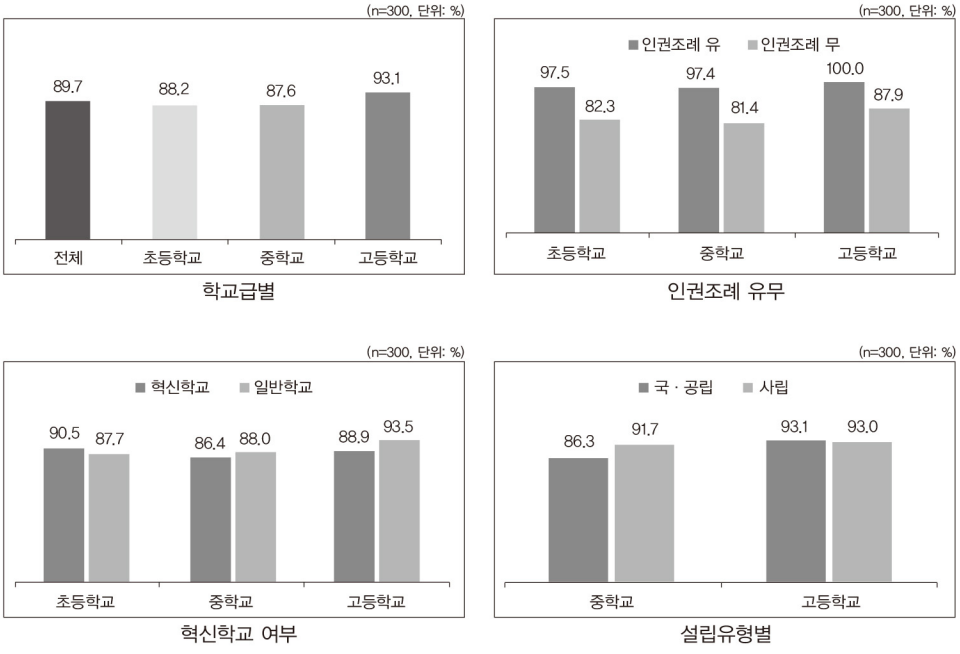

[그림 Ⅳ-1]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

□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 수립 여부(학교)

[그림 Ⅳ-2]는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한 결과, 전체 학교의 89.7%(초등학교: 92.2, 중학교: 84.5, 고등학교: 92.1)가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인권조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학교급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급에 관계없이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초등학교: 100.0, 중학교: 94.7, 고등학교: 95.3)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초등학교: 87.1, 중학교: 78.0, 고등학교: 89.7)에 비해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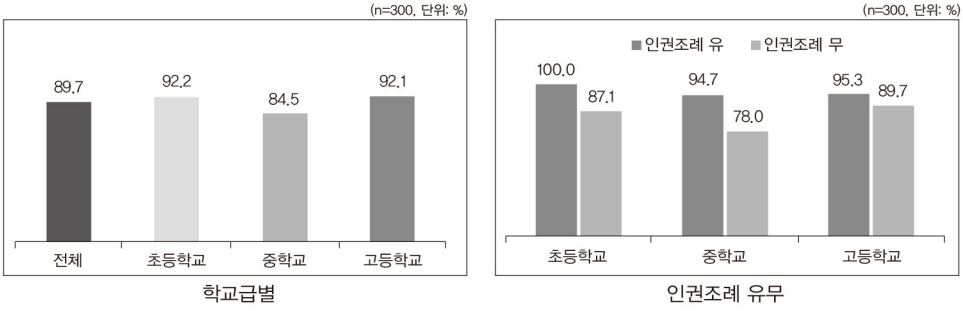

[그림 Ⅳ-2]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 반영 형태(학교)

[그림 Ⅳ-3]은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인권교육 계획 반영 형태가 유관 교육 프로그램, 예컨대 민주시민교육이나 인성교육 등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6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계획서에 제시된 경우가 30.5%, 기타가 1.9%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학교급에 따라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교육 계획서 상에 인권교육 계획은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유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교: 68.1, 중학교: 62.2, 고등학교: 72.0). 한편, 인권조례 유무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초

등학교에서 차별화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경우에서는 모두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이 유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영된 경우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초등학교는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계획서에 제시된 형태(50.0%)가 유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영된 경우(45.0%)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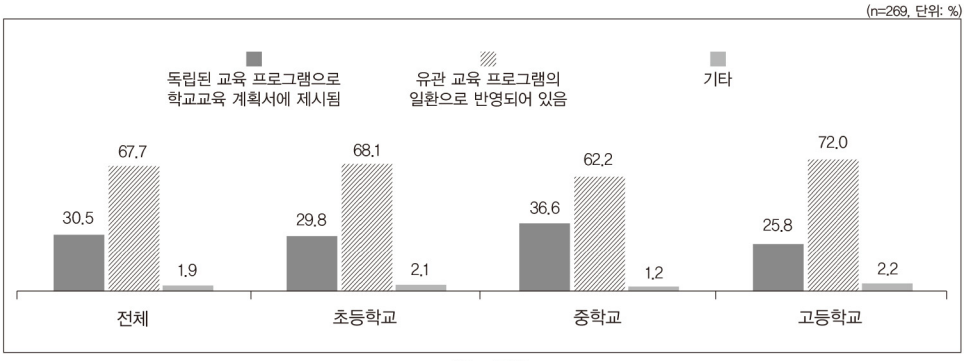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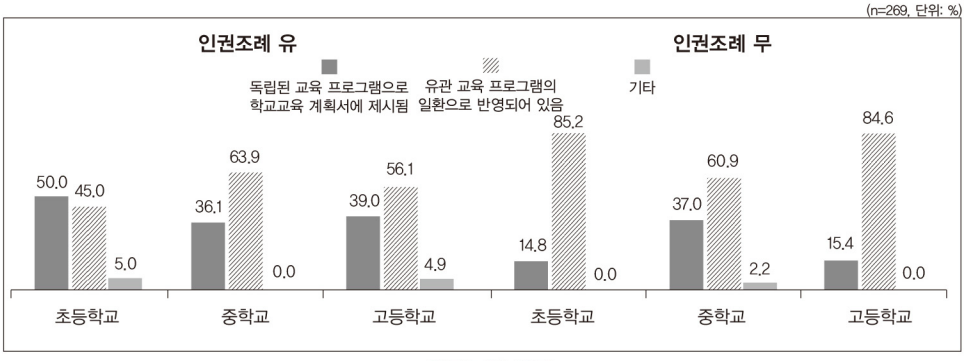

인권조례 유무

[그림 Ⅳ-3] 인권교육 계획: 반영 형태

□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도(교사)

[그림 Ⅳ-4]는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율'에 대해 교사가 인식한 것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율' 전체 평균은 87.5%로 대부분의 학교장이 인권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교사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학교급을 기준으

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교사들은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율'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초등학교: 89.9, 중학교: 89.1, 고등학교: 83.6), 그 차이는 p<.001인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장 참여에 관한 교사의 인식(91.7%)이 그렇지 않은 지역(88.6%)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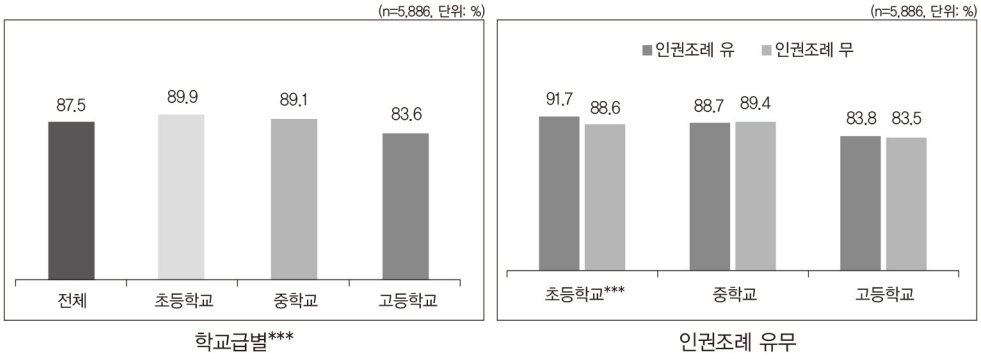

※ 참여율: ③'약간 참여한다' + ④'적극 참여한다'

[그림 Ⅳ-4]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도

□ 인권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교사)

[그림 Ⅳ-5]는 '인권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 '인권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초등학교: 3.12, 중학교: 2.94, 고등학교: 2.85),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우선,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모든 학교급에 있어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가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의 학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초등학교: 3.26, 중학교: 3.00, 고등학교: 2.89). 또,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서는 학교급에 관계없이 혁신학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초등학교: 3.19, 중학교: 3.00, 고등학교: 2.92), 고등학교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임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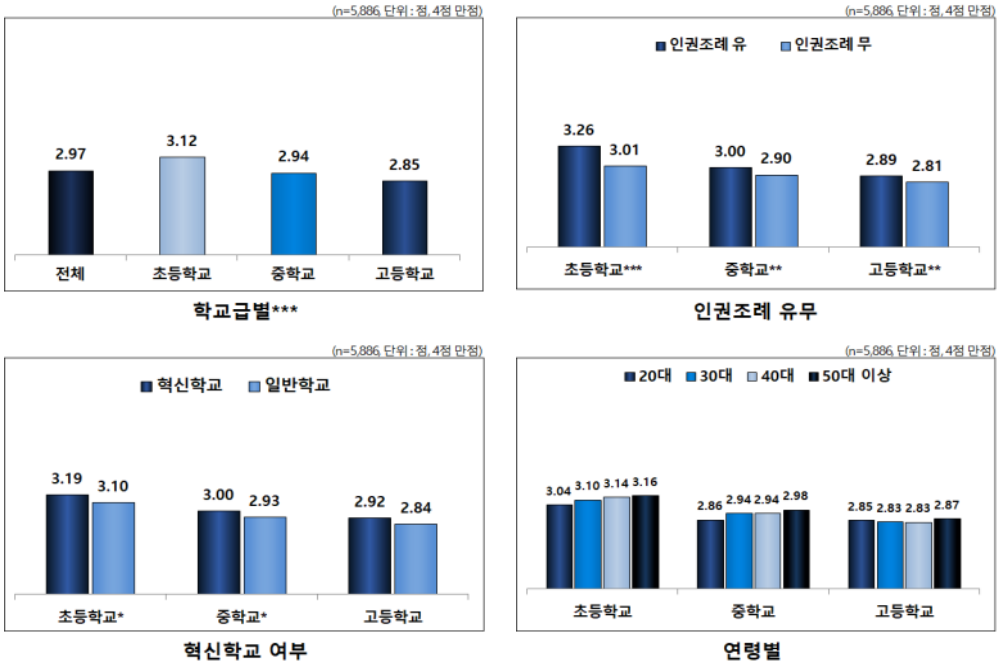

※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은 '학년별 인권교육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학년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인권 교육과정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5] 인권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교사)

[그림 Ⅳ-6]은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 '인권내용의 적절성'은 4점 만점에 2.98점이 전체 평균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11점), 중학교(2.98점), 고등학교(2.87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먼저, 초등학교에서는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가 3.21점,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가 3.03점으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중학교에서는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가 3.02점,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학교가 2.95점으로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

졌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가 2.90점,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2.85점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어서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급에 상관없이 혁신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점수가 더욱 높았다. 초등학교 중 혁신학교는 3.20점, 일반학교는 3.09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같은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중학교의 결과를 보면 혁신학교가 3.04점이고, 일반학교가 2.96점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한 경향은 이어졌는데, 혁신학교(3.00점)가 일반학교(2.86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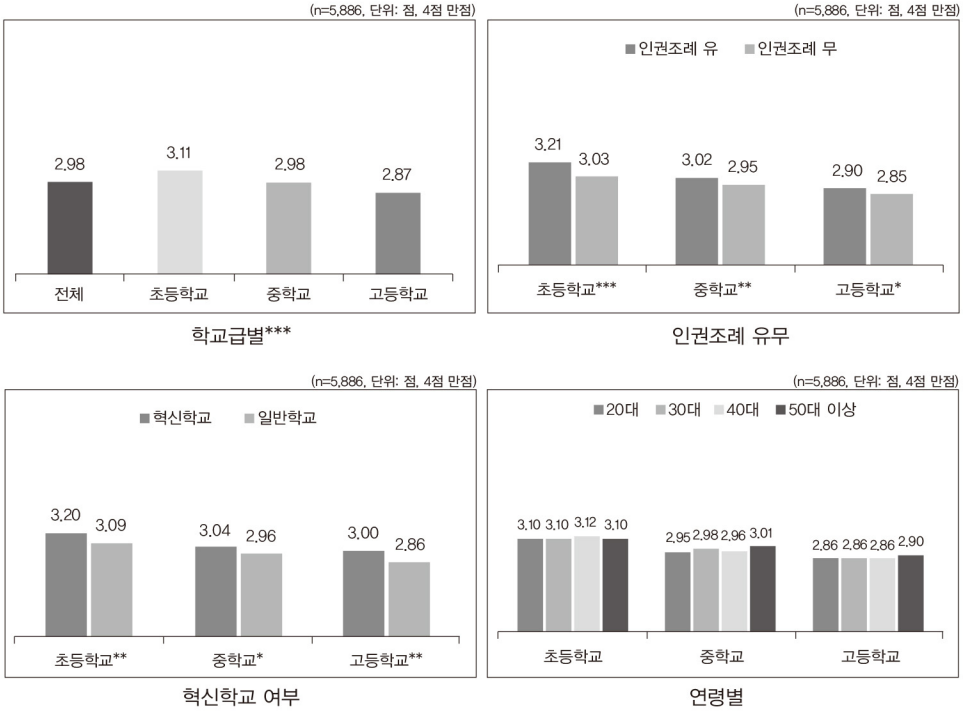

※ 내용의 적절성은 '인권 관련 지식 이해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6]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

나. 인권교육 운영 시간

□ 1년간 인권교육 실시 경험(교사)

[그림 Ⅳ-7]은 최근 1년간 인권교육 실시와 관련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응답한 교사 전체의 69.3%가 '교과 수업 시간', 63.4%가 동아리나 학급회의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78.0%가 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의 '생활 지도 시간'에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학교급에 따라 들여다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든 활동 시간에 있어 경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 수업 시간'이 88.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80.9%, '생활 지도 시간'이 87.7%를 기록해 확연히 수치가 높았다. 한편, 인권조례 유무를 기준으로 보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서 학교급과 무관히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 교사의 경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 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중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인권조례 있음: 61.1점, 인권조례 없음: 50.7점)과 '생활 지도 시간'(인권조례 있음: 81.0점, 인권조례 없음: 74.6점),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인권조례 있음: 58.2점, 인권조례 없음: 51.6점) 시간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서는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일반학교가, 중학교는 혁신학교가 교사의 인권교육 실시 경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경우는 중학교의 '교과 수업 시간'으로만 한정되었다. 중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는 69.7%가 도출된 반면에, 일반학교의 경우 62.7%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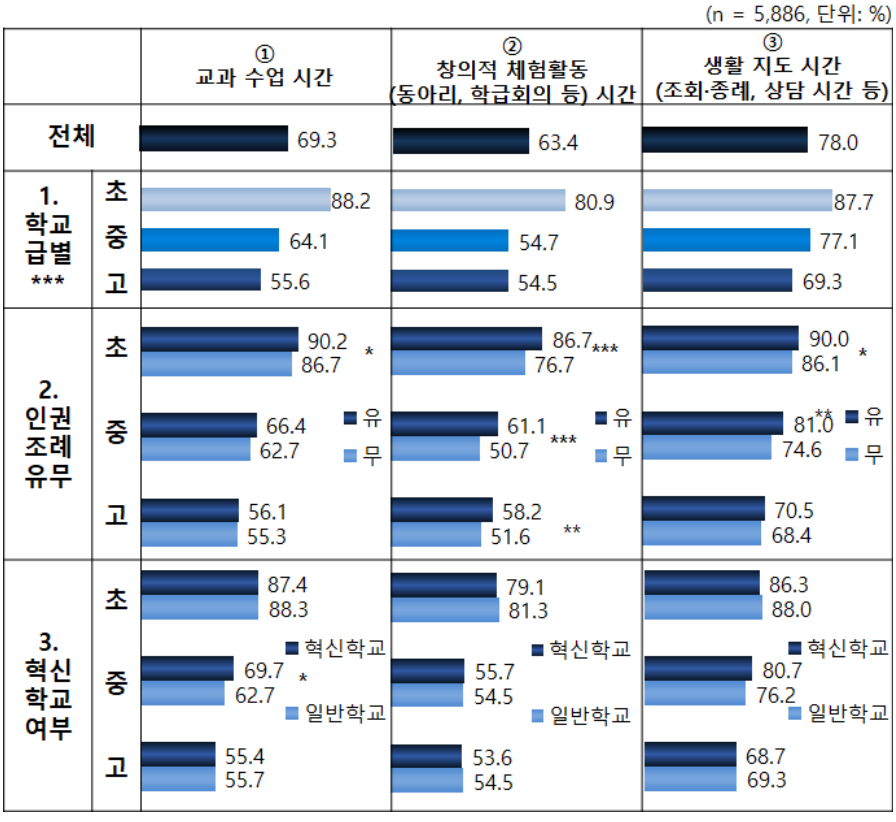

[그림 Ⅳ-7] 1년간 인권교육 실시: 경험 여부

□ 1년간 인권교육 실시 시간(교사)

[그림 Ⅳ-8]은 인권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은 응답한 교사 전체 평균 '교과 수업 시간'에 7.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5.5시간, '생활 지도 시간'에 8.7시간 이루어졌다. 학교급별로 보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서 초등학교의 평균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교과 수업 시간'에 대해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9.1, 중학교: 5.9, 고등학교: 6.3)의 순으로 나타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동일한 순위를 기록하였다(초등학교: 6.0, 중학교: 5.1, 고등학교: 5.3). 한편, '생활 지도 시간'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 인권교육 실시 시간이 긴 것으로 드러났다(초등학교: 10.8, 중학교: 8.0, 고등학교: 7.0). 다음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

부에 따라 살펴보면, '교과 수업 시간' 중 중학교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5.2시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6.4시간)가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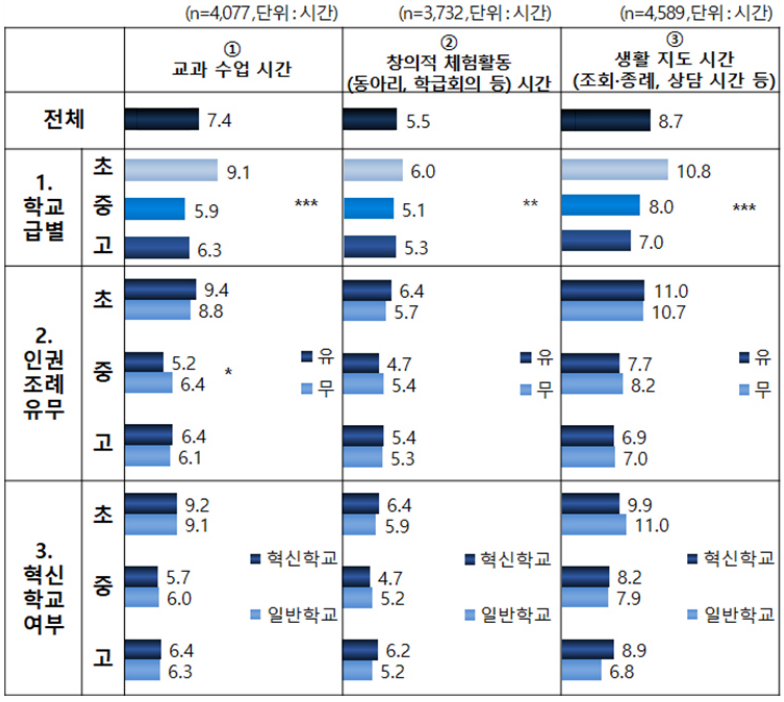

[그림 Ⅳ-8] 1년간 인권교육 실시: 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편성 여부(학교)

[그림 Ⅳ-9]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편성했는지에 대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명에 인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답변한 전체 학교의 64.0%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 시간이 편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초등학교: 68.6, 중학교: 59.8, 고등학교: 63.4). 한편,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가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의 학교보다 학교급에 상관없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을 편성한 비중이 높았다. 특히,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90.0%,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초등학교는 54.8%인 것으로 나타나 여타의 학교급과 비교해 초등학교

에서 큰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모든 학교급에서 높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편성 비율을 드러냈다. 여기에서도 초등학교 중 혁신학교가 85.7%, 일반학교가 64.2%로 드러나 학교급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중학교(혁신학교: 72.7, 일반학교: 56.0)와 고등학교(혁신학교: 77.8, 일반학교: 62.0)에서는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간 차이가 거의 동일하였다. 끝으로 설립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국·공립 학교(60.3%)가 사립학교(58.3%)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으로 실현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고등학교 중 국·공립인 경우 62.1%를 보였고, 사립은 65.1%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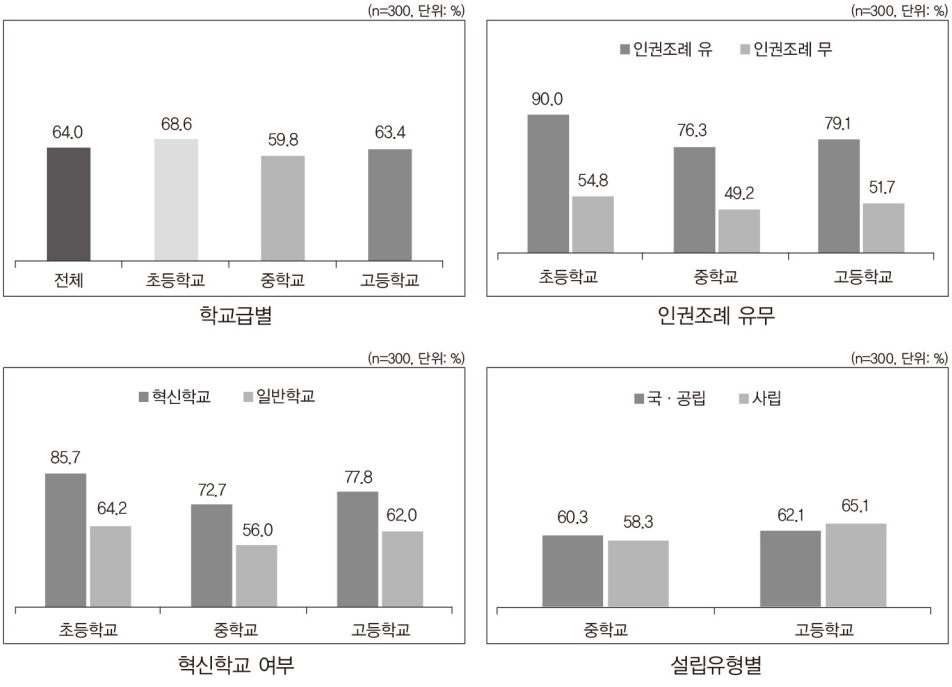

[그림 Ⅳ-9]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편성 여부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학년별 합계 평균 시간(학교)

[그림 Ⅳ-10]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된 인권교육의 학년별 시간 합을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된 학년별 인권교육 시간의 합계는 전체 평균 15.8시간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급을 기준으로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 순으로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초등학교: 16.2, 중학교: 14.8, 고등학교: 16.1). 다음으로 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아닌 학교의 인권교육 시간이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인권조례 있음: 14.1, 인권조례 없음: 18.5). 다음으로 큰 격차는 초등학교에서 드러났고(인권조례 있음: 14.3, 인권조례 없음: 18.3), 중학교는 가장 격차가 미약한 편이었다(인권조례 있음: 14.3, 인권조례 없음: 15.3).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학교급과 무관하게 혁신학교인 경우가 일반학교에 비해 인권교육 시간이 더 길게 편성되어 있었다. 시간의 격차가 가장 큰 학교급은 중학교(혁신학교: 21.3, 일반학교: 12.4)였고, 다음은 초등학교(혁신학교: 17.2, 일반학교: 15.9)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고등학교는 혁신학교가 16.7시간, 일반학교가 16.1시간으로 나타나 거의 대등한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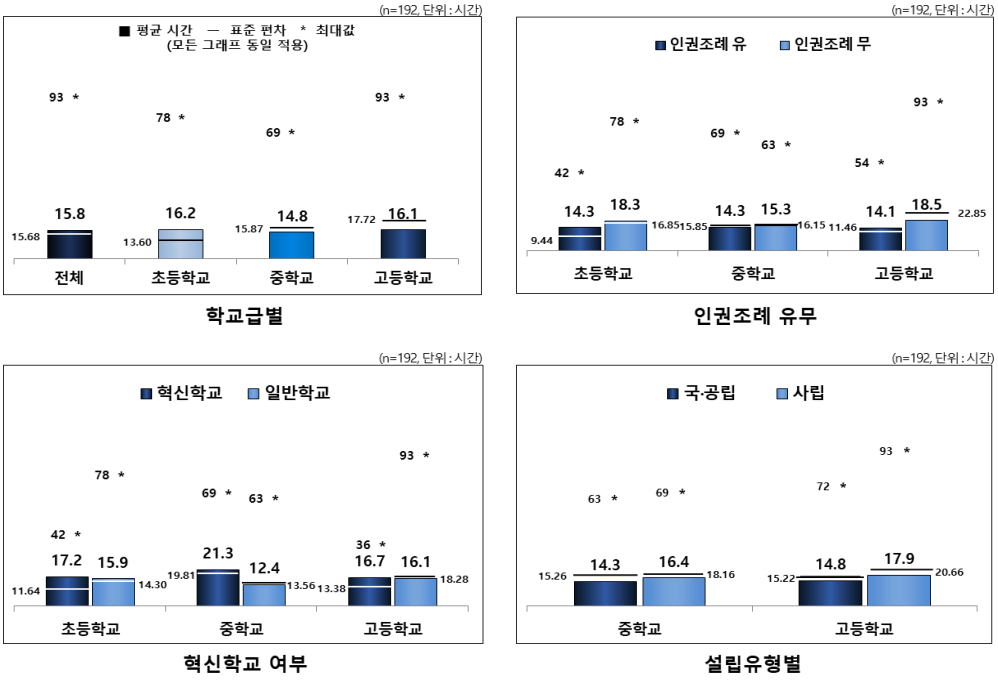

※ 최소 시간은 예외를 제외하고 3시간으로 동일함
(예외: 초등학교 인권조례 유 4시간, 초등학교 혁신학교 4시간, 고등학교 혁신학교 6시간).

[그림 Ⅳ-10]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학년별 합계 평균 시간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실시 주체(학교)

[그림 Ⅳ-11]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실시 주체는 전체의 49.0%가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교사'가 41.1%로 그 뒤를 이었고, '외부 전문 강사'는 9.9%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급별에 따라 구분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학교 교사-외부 전문 강사 순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53.4%), '학교 교사'(29.3%), '외부 전문 강사'(17.2%)였는데, 고등학교는 동일한 순서로 54.7%, 32.8%, 12.5%의 비율을 보였다. 두 학교급과는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교사'가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40.0%)가 차순위를 기록했으며, '외부 전문 강사'(1.4%)가 가장 낮은 비율인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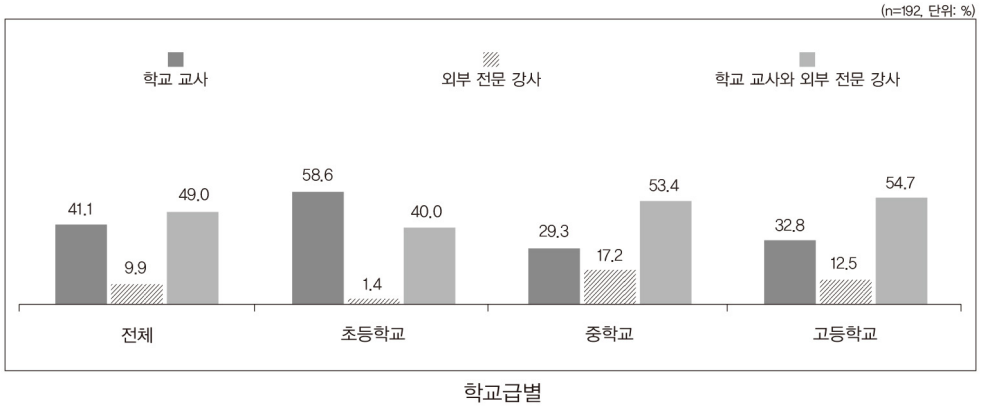

[그림 Ⅳ-1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실시 주체

□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교)

[그림 Ⅳ-12]는 2019년도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 학교의 86.0%가 2019년도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학교급별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고등

학교-중학교(초등학교: 91.2, 중학교: 79.4, 고등학교: 87.1)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교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 추가로 인권조례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9년도에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에 관해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가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의 학교보다 모든 학교급에 걸쳐서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학교에서 격차가 근소하게 큰 것으로 드러났는데,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 학교에서 89.5%, 그렇지 않은 지역 학교는 72.9%를 보였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100.0, 인권조례 없음: 85.5),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95.3, 인권조례 없음: 81.0)는 유사한 차이로 드러났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100%가 도출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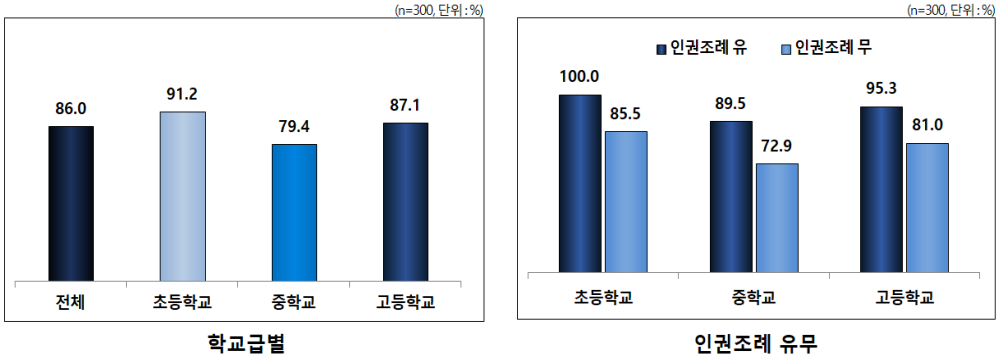

[그림 Ⅳ-12]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

□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시간(학교)

[그림 Ⅳ-13]은 2019년도에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학교들의 교육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도에 교사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들의 관련 교육 전체 평균 시간은 2.6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급별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2.2, 중학교: 3.2, 고등학교: 2.4)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를 보면, 학교급 중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2.1, 인권조례 없음: 2.3)를 제외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많은 시간을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와 실시 계획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중학교는 인권조례 있는 지역 학교에서 4.3시간,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학교에서 2.4시간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에서는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가 2.6시간,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학교에서 2.3시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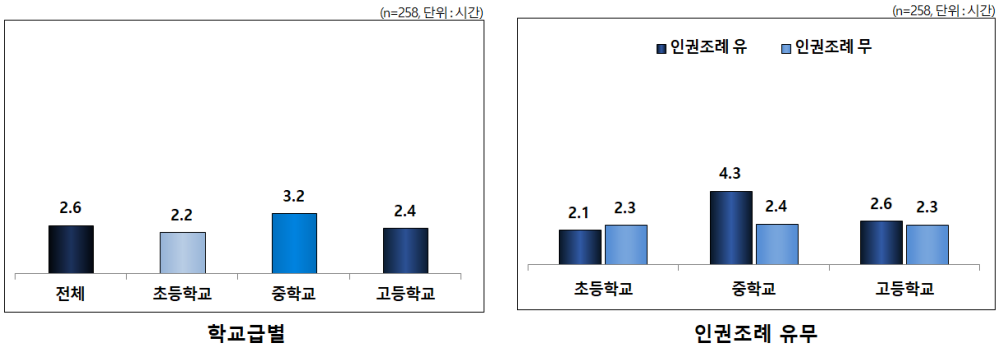

[그림 Ⅳ-13]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시간

□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교)

[그림 Ⅳ-14]는 2019년도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학교들의 교육 시간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학교의 77.0%가 2019년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81.4, 중학교: 74.2, 고등학교: 75.2) 순으로 해당 교육을 실시 및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결과를 보면, 해당 교육에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보다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더 많이 실시 및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등학교에서는 인권조례 제정한 지역에서 83.7%,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69.0%로 드러나 학교급 중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냈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87.5, 인권조례 없음: 77.4)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81.6, 인권조례 없음: 69.5)를 비교하면, 초등학교가 각각의 경우 중학교에 비해 높았으나 격차는 서로 대등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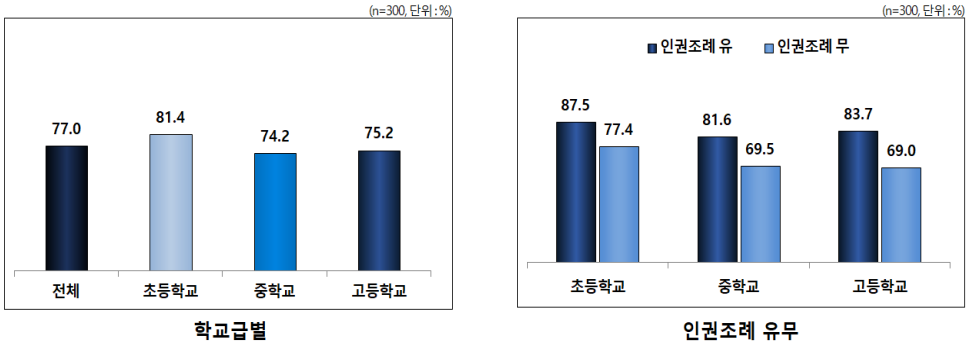

[그림 Ⅳ-14]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

□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시간(학교)

[그림 Ⅳ-15]는 2019년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학교들의 교육 시간에 관한 것이다. 2019년도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들의 교육 시간은 전체 평균 1.8시간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학교급과 비교해 초등학교의 평균 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다(초등학교: 1.7, 중학교: 1.8, 고등학교: 1.8). 다음으로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분석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가 인권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학교보다 평균적으로 긴 시간을 들여 해당 교육을 실시 및 계획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1.8, 인권조례 없음: 1.7)와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1.9, 인권조례 없음: 1.8)는 각각의 시간 격차가 동일했으나, 중학교는 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2.1시간, 그렇지 않은 지역이 1.6시간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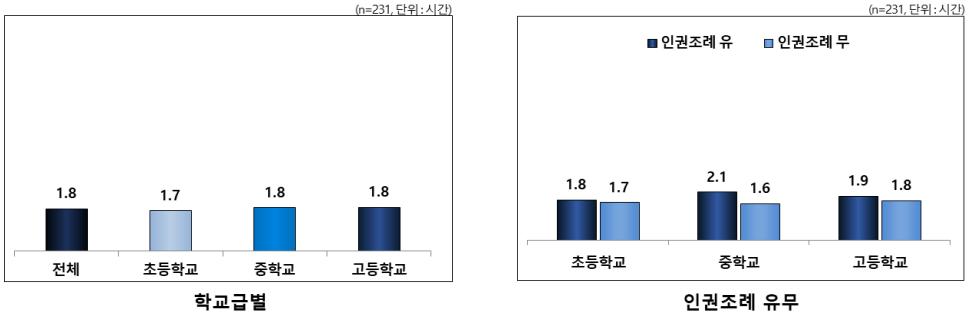

[그림 Ⅳ-15]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시간

다.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 최근 1년간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여부(학생)

[그림 Ⅳ-16]은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전체의 35.1%가 최근 1년간 학교 밖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초등학교: 37.0, 중학교: 36.1, 고등학교: 32.0). 한편,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결과에서는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37.7, 인권조례 없음: 35.0)와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5.1, 인권조례 없음: 29.6)에서 공통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 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최근 1년간 학교 밖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중학교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교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 학생이 38.4%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수치인 34.9%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 같은 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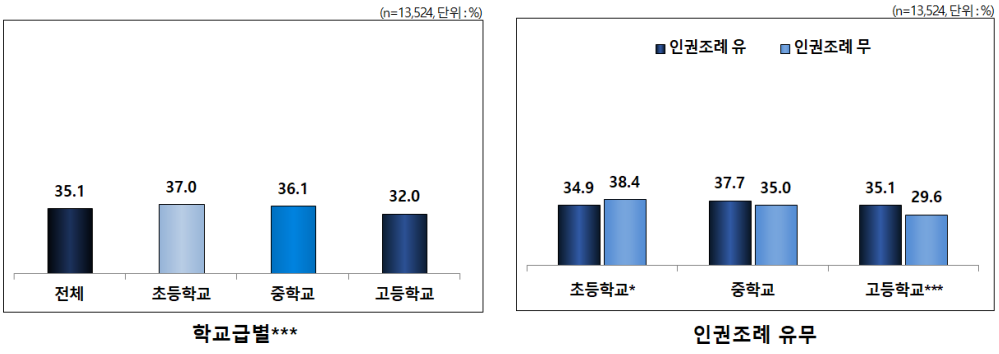

※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그림 Ⅳ-16]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 학교 밖

□ 최근 1년간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여부(학생)

[그림 Ⅳ-17]은 학생이 최근 1년간 학교 안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의 57.9%가 최근 1년간 교내에서 인권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의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초등학교: 62.8, 중학교: 57.2, 고등학교: 53.9),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한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학생의 교내 인권교육 경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과 무관히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경험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드러냈다. 다만, 학생의 경험 비율은 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65.6, 중학교: 65.7, 고등학교: 59.2) 순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비율 또한 혁신학교 학생들의 경험 비율이 일반학교와 비교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중학교만 해당되었다. 중학교 중에서 혁신학교는 61.5%였고, 일반학교는 56.1%인 것으로 드러났고,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취약집단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들여다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취약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학생의 교내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특히,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10% 이하인 초등학교의 경우, 최근 1년간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64.7%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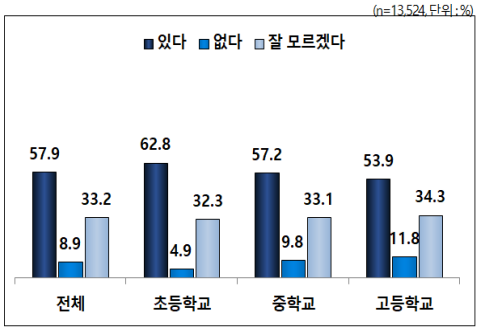

학교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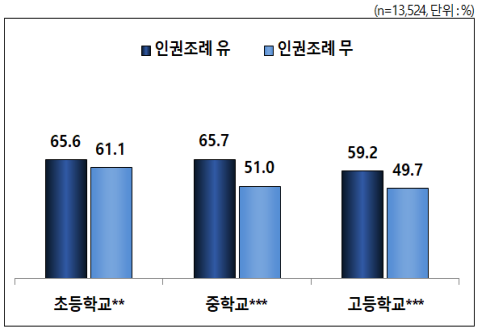

인권조례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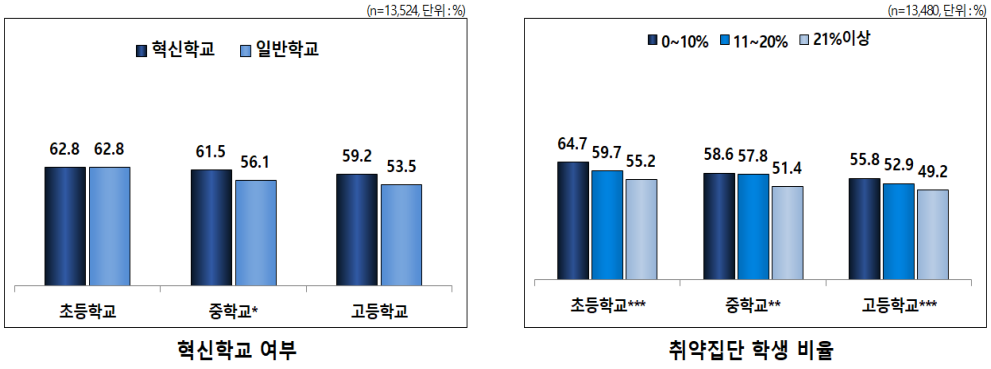

※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만 제시

[그림 Ⅳ-17]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 학교 내

□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학생)

[그림 Ⅳ-18]은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에 대해 전체의 72.6%가 '교과 수업 시간', 40.9%가 동아리나 학급회의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22.8%는 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의 '생활 지도 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과 수업 시간'(초등학교: 88.8, 중학교: 72.6, 고등학교: 54.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초등학교: 23.6, 중학교: 41.6, 고등학교: 59.7)과 '생활 지도 시간'(초등학교: 21.4, 중학교: 23.1, 고등학교: 24.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교과 수업 시간'(초등학교: 91.6, 중학교: 73.9, 고등학교: 57.5)과 '생활 지도 시간'(초등학교: 22.2, 중학교: 25.5, 고등학교: 25.1)은 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아닌 학교에서의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초등학교: 28.1, 중학교: 43.3, 고등학교: 65.5)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 학생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혁신학교가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초등학교: 26.5, 중학교: 45.1, 고등학교: 68.1), '생활 지도 시간'은 일반학교가 더 높은 응답 비율을 드러냈다(초등학교: 22.2, 중학교: 24.2, 고등학교: 24.5). 한편, '교과 수업 시간'의 경우 학교

급에 따라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일반학교가 높게 나타났고(초등학교: 89.0, 중학교: 73.1), 고등학교는 혁신학교(57.6시간)가 일반학교(53.9시간)에 비해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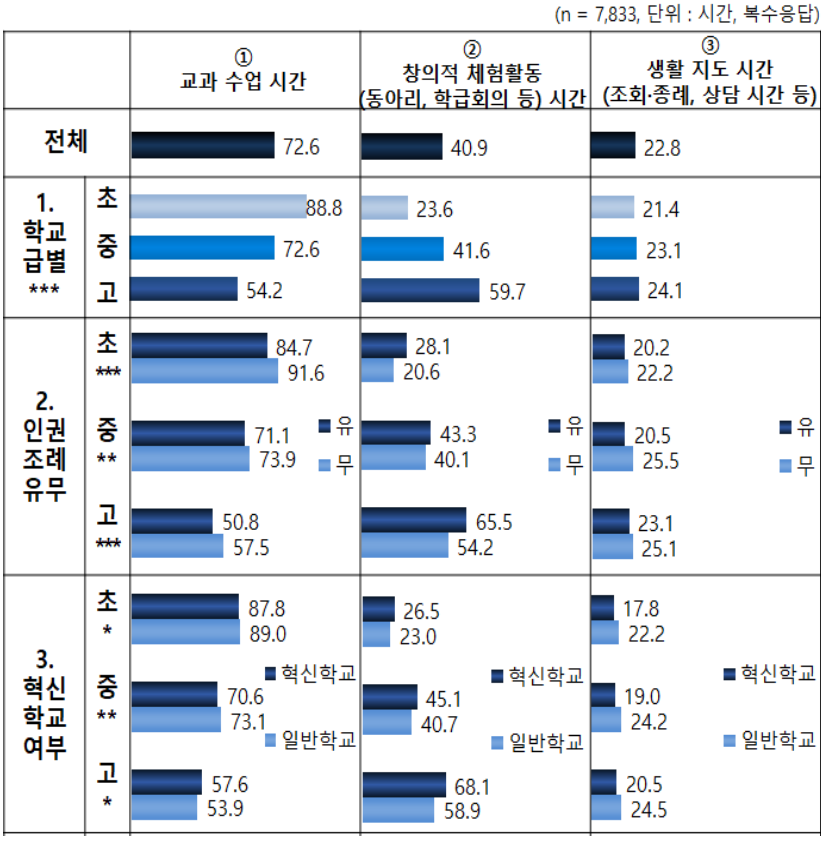

[그림 Ⅳ-18]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

□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학생)

[그림 Ⅳ-19]는 학교에서 인권교육 특정 권리와 관련된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초등학교: 83.5, 중학교: 82.4, 고등학교: 80.7), '권리침해로부터 보호'(초등학교: 83.4, 중학교: 79.6, 고등학교: 77.4) 등의 순으로 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초등학교: 64.6, 중학

교: 65.4, 고등학교: 63.3)은 모든 학교급을 통틀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자치 및 참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특히 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초등학교: 79.0, 중학교: 69.6, 고등학교: 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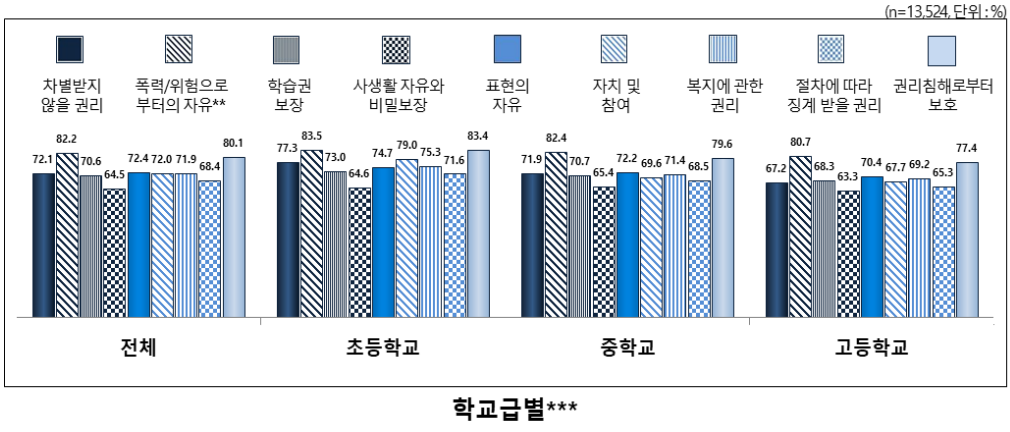

[그림 Ⅳ-19]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

□ 권리 영역별 인권 수업 필요 정도(학생)

[그림 Ⅳ-20]은 학교에서 인권교육 특정 권리와 관련된 수업이 필요한 정도를 학생이 인식한 조사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인권의 주요 내용 중 필요 정도는 '권리침해로부터 보호'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3.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가 3.54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습권 보장'과 '자치 및 참여'가 3.41점으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학교급별로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초등학교: 3.64, 중학교: 3.56, 고등학교: 3.57)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초등학교: 3.55, 중학교: 3.53, 고등학교: 3.53) 등의 순으로 수업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습권 보장'(초등학교: 3.38, 고등학교: 3.43), 중학교에서는 '자치 및 참여'(3.39점)였고, 이와 같은 학교급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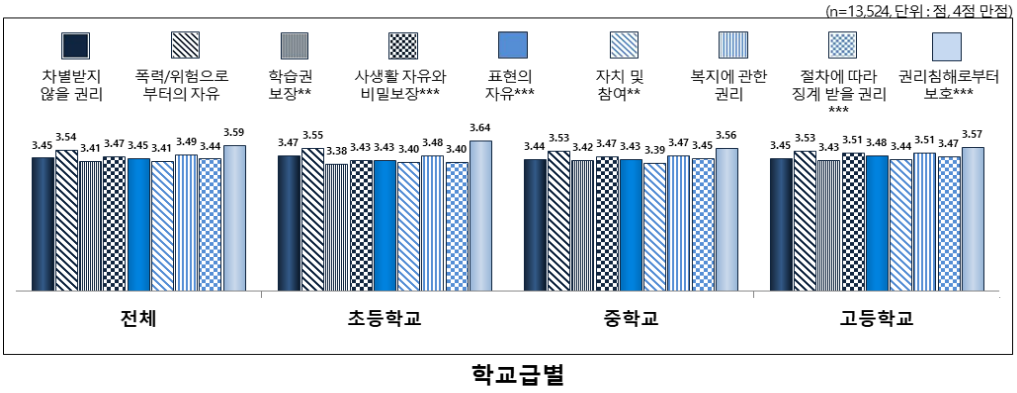

[그림 Ⅳ-20] 인권 주요 내용: 필요 정도

□ 1년간 인권 관련 활동별 참여 정도(학생)

No.	최근 1년간 학교 내외 인권 관련 활동
1	학교 동아리 활동
2	시민단체 참여
3	자원 봉사 활동
4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백일장, 전시회 등) 참여
5	캠페인 활동
6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견 표현하기

[그림 Ⅳ-21]은 학생이 위에 제시된 6개의 교내외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해 최근 1년간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참여율은 전체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이 48.3%로 가장 높았고, '자원 봉사 활동'이 40.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시민단체 참여'는 11.6%로 조사되어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동아리 활동'(초등학교: 57.0, 중학교: 46.0, 고등학교: 42.2), '자원 봉사 활동'(초등학교: 37.3, 중학교: 44.2, 고등학교: 38.8) 순으로 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전반적인 양상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유사한 편이었다. 한편, 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 의견 표현하기'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참여율도 높았는데(초등학교: 32.0, 중학교: 34.6, 고등학교: 37.0),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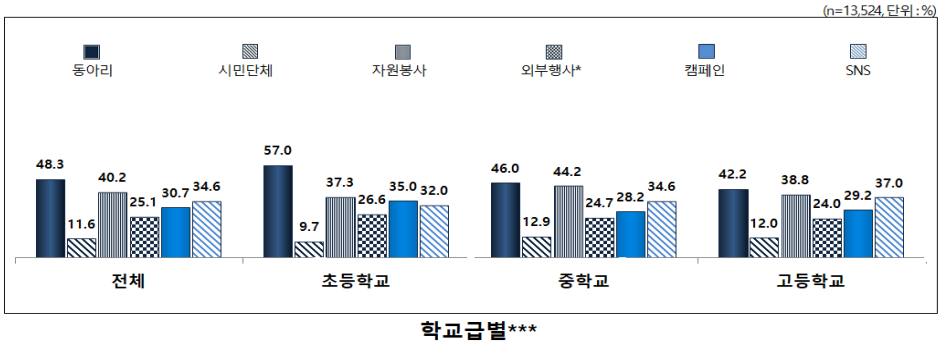

[그림 Ⅳ-21] 1년간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정도: 활동별 참여율

□ 1년간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수(학생)

[그림 Ⅳ-22]는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팎에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수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1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하여 총 6개 활동의 참여도를 6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는데, 인권조례 제정 지역인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해당 지역의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 수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초등학교: 2.00, 중학교: 1.94, 고등학교: 1.92). 또한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들여다보면, 초등학교(혁신학교: 2.07, 일반학교: 1.96)와 중학교(혁신학교: 2.05, 일반학교: 1.87)에서는 혁신학교가 높았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학교(1.84점)가 혁신학교(1.75점)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상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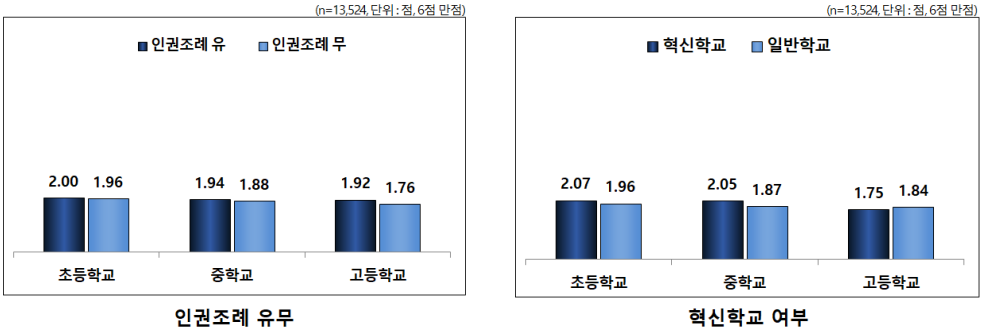

[그림 Ⅳ-22] 1년간 인권 관련 활동 참여 수

라. 인권교육 수업방법 및 효과에 대한 인식

□ 인권교육 수업방법 : 설명식(학생)

[그림 Ⅳ-23]은 교사의 인권교육 수업방법에 대해 학생이 인지한 것에 대한 자료이다. 먼저, 교사의 설명과 학생의 답변으로 구성되는 '설명식' 수업의 경우 응답한 학생 전체의 67.1%가 경험했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설명식' 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초등학교: 75.7, 중학교: 63.1, 고등학교: 61.5),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설명식' 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을 들여다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59.1, 인권조례 없음: 66.9)와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59.4, 인권조례 없음: 63.6)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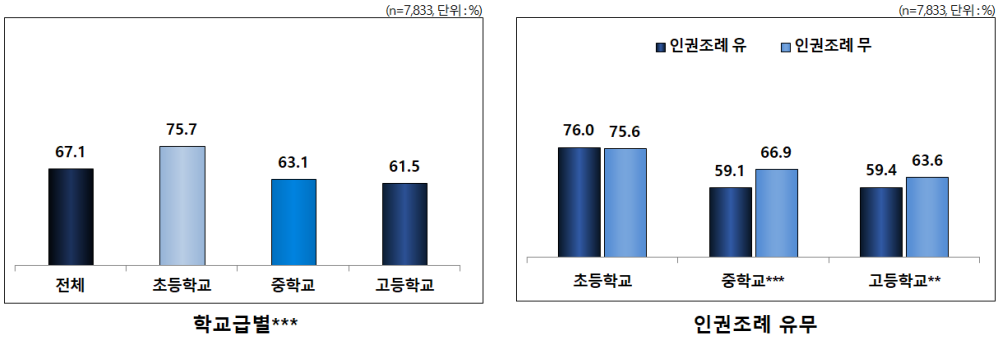

※ 활용률: ③'자주 활용했다'+ ④'매우 자주 활용했다'

[그림 Ⅳ-23] 인권교육 수업방법: 설명식

□ 인권교육 수업방법 : 토론식(학생)

[그림 Ⅳ-24]는 학생이 교사의 인권교육 수업방법 중 '토론식' 수업에 대해 인식한 자료이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학생의 33.6%가 인권교육 수업방식으로 '토론식'을 경험했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토론식' 수업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초등학교: 35.6, 중학교: 34.2, 고등학교: 30.6), 그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다음

으로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토론식' 수업 경험 학생의 비율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8.5, 인권조례 없음: 39.4)와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28.4, 인권조례 없음: 32.7)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 학생의 '토론식' 수업 경험 비율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토론식' 수업을 경험한 학생의 비중은 고등학교의 경우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일반학교(30.0%)보다 혁신학교(37.1%)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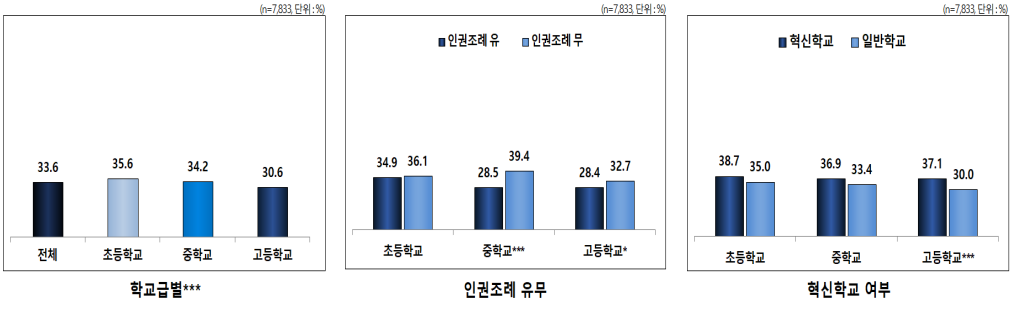

※ 활용률: ③'자주 활용했다'+ ④'매우 자주 활용했다'

[그림 Ⅳ-24] 인권교육 수업방법: 토론식

□ 인권교육 수업방법 : 모둠활동(학생)

[그림 Ⅳ-25]는 학생이 교사의 인권교육 수업방법 중 '모둠활동'에 관하여 인식한 결과이다. 전체 학생의 51.3%가 경험했던 인권교육 수업방식이 '모둠활동'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모둠활동' 수업을 경험한 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초등학교: 59.0, 중학교: 51.7, 고등학교: 42.2),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어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학생의 '모둠활동' 수업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47.8, 인권조례 없음: 55.2)와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9.0, 인권조례 없음: 45.2)에서만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학교가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높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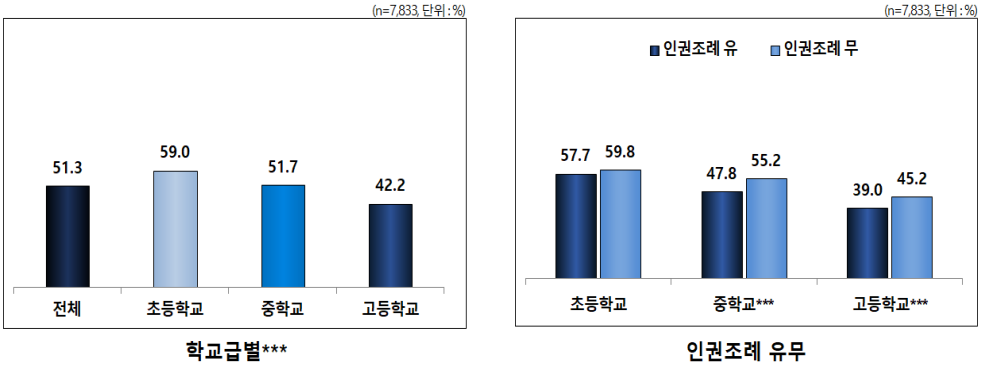

※ 활용률: ③'자주 활용했다'+ ④'매우 자주 활용했다'

[그림 Ⅳ-25] 인권교육 수업방법: 모둠활동

□ 인권교육 수업방법 : 프로젝트, 문제해결식(학생)

[그림 Ⅳ-26]은 학생이 인권교육 수업방법 중 '프로젝트, 문제해결식' 수업에 관하여 인식한 결과이다. 응답한 학생 전체의 51.2%가 인권교육 수업방식이 '프로젝트 또는 문제해결식'이라고 하였다. 특히, 중학교-초등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51.0, 중학교: 54.7, 고등학교: 47.5) 순으로 높게 나타난 학교급별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어서 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학생의 '프로젝트, 문제해결식' 수업 경험 비율은 중학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50.9%)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5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혁신학교의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의 '프로젝트, 문제해결식' 수업 경험 비중은 초등학교(혁신학교: 57.1, 일반학교: 49.6)와 중학교(혁신학교: 59.8. 일반학교: 53.3)에서 차이가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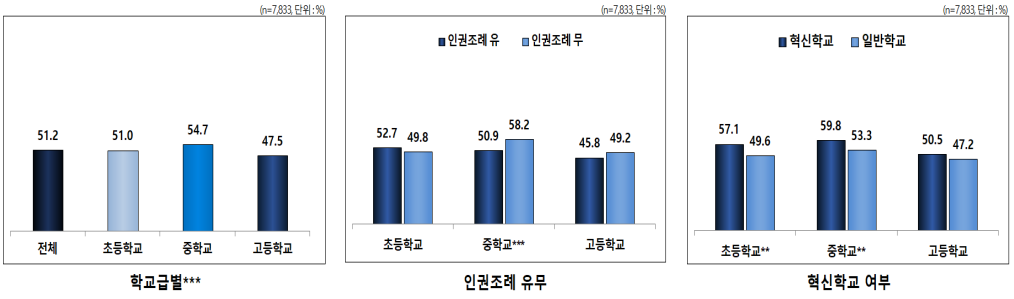

※ 활용률: ③'자주 활용했다'+ ④'매우 자주 활용했다'

[그림 Ⅳ-26] 인권교육 수업방법: 프로젝트, 문제해결식

□ 개방적 수업풍토(학생)

[그림 Ⅳ-27]은 학생이 교사의 인권교육 시간과 관련해 '개방적 수업풍토'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결과이다. '개방적 수업풍토'는 4점 만점에 전체의 평균이 2.96점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개방적 수업풍토'에 관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초등학교: 3.06, 중학교: 2.91, 고등학교: 2.90). 한편,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학생의 '개방적 수업풍토'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79, 인권조례 없음: 3.02)에서만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다. 특히,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 존재하는 학교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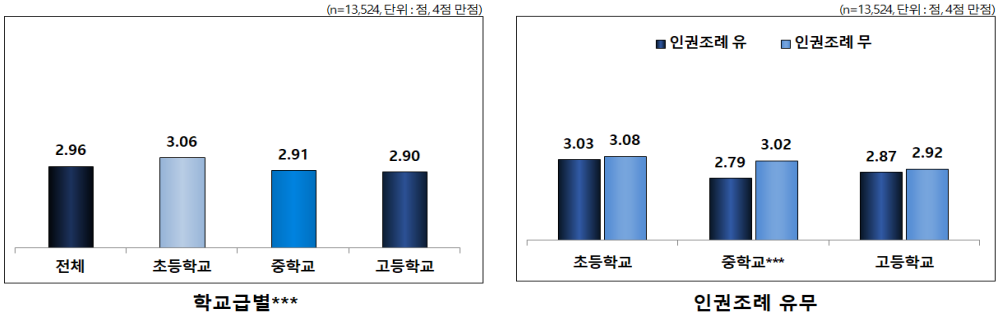

※ 개방적 수업풍토는 '일상에서 경험한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였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27] 개방적 수업풍토

□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학생)

[그림 Ⅳ-28]은 학생이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중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한 학생의'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34점으로 분석되었고,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3.47, 중학교: 3.26, 고등학교: 3.29)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 학생의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 걸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고,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초등학교: 3.49, 중학교: 3.35, 고등학교: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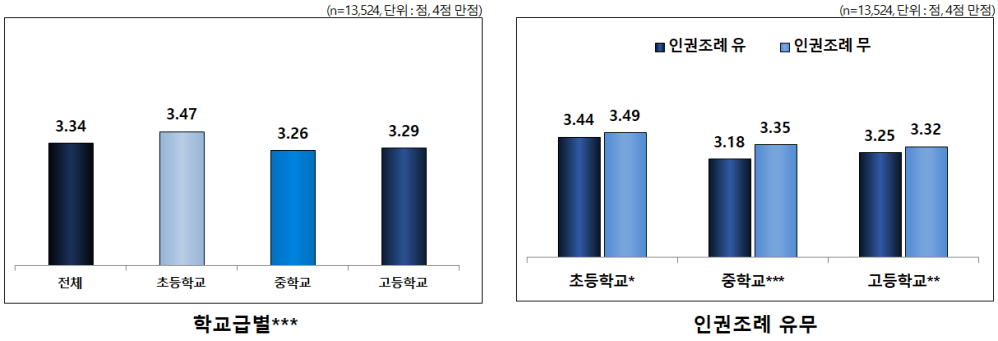

※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는 '인권의 뜻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28]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

□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태도로서의 교육효과(학생)

[그림 Ⅳ-29]는 학생이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중 '태도로서의 교육효과'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파악한 학생의 '태도로서의 교육효과'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3.51, 중학교: 3.36, 고등학교: 3.37)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이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학생의 '태도로서의 교육효과'를 보면, 초

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초등학교: 3.53, 중학교: 3.43). 이어서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생의 '태도로서의 교육효과'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일반학교가 혁신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혁신학교: 3.47, 일반학교: 3.52). 한편, 취약집단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는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의 '태도로서의 교육효과'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0~10%: 3.50, 11~20%: 3.52, 21% 이상: 3.61). 이에 비해 중학교는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3.33점, 11~20%의 구간에서는 3.42점을 보였는데, 해당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에는 3.36점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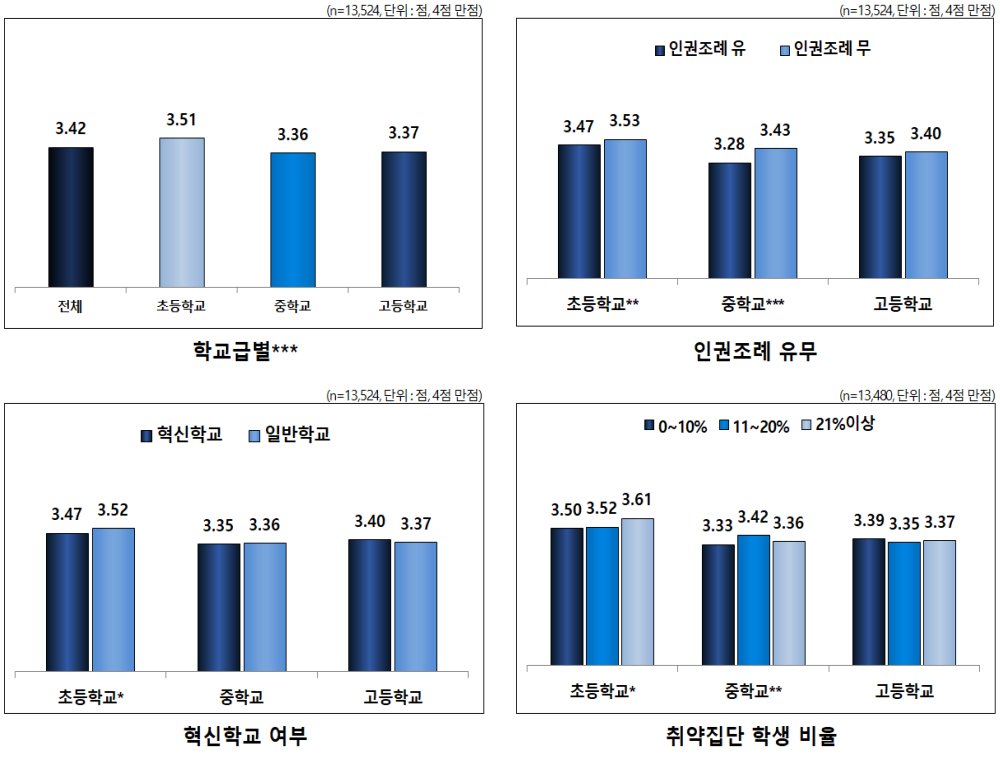

※ 태도로서의 교육효과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다',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29] 인권교육 통해 알게 된 내용: 태도로서의 교육효과

□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학생)

[그림 Ⅳ-30]에서는 학생이 인권교육 시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4]. 학생의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2.97점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3.08점)가 중학교(2.90점)와 고등학교(2.9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인권조례의 유무를 기준으로 학생의 수업 만족도를 들여다본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 수업 만족도가 더욱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가 3.05점,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학교가 3.10점을 보였고, 고등학교는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학교에서 2.86점,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 2.94점을 보였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수업만족도의 차이가 더욱 컸다(인권조례 있음: 2.79, 인권조례 없음: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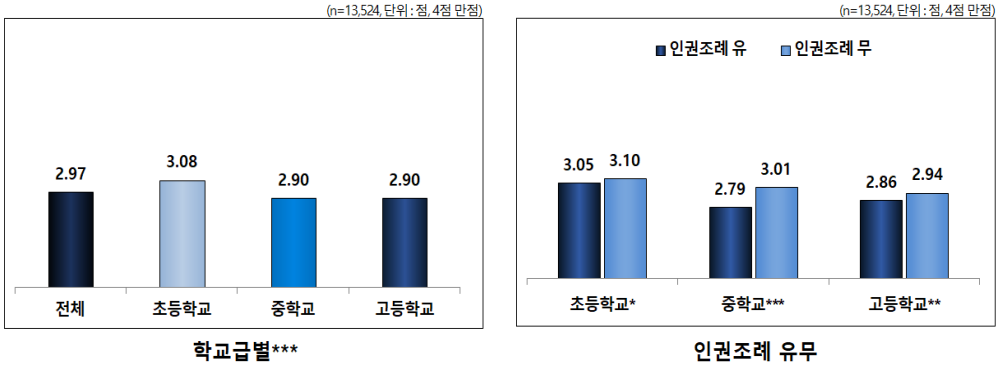

[그림 Ⅳ-30] 인권교육 시간 동의정도: 수업 만족도

4) 수업 만족도는 '인권 수업 방법은 재미있었다', '인권 수업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인권 수업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전반적으로 인권 수업에 만족한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 인권교육 만족에 대한 학교 분포

▢ 학교 간 분포: 지식 및 태도

[그림 Ⅳ-31]은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지식 및 태도' 변화 정도를 학교 내 학생 평균을 학교 값으로 산출해 학교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태도 변화 측면에서 교육 효과 평균은 3.51점, 최소 3.10점, 최대 3.85점(표준편차 0.15)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은 평균 3.46점, 최소 3.00점, 최대 3.85점(표준편차0.19) 사이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간 분포도 초등학교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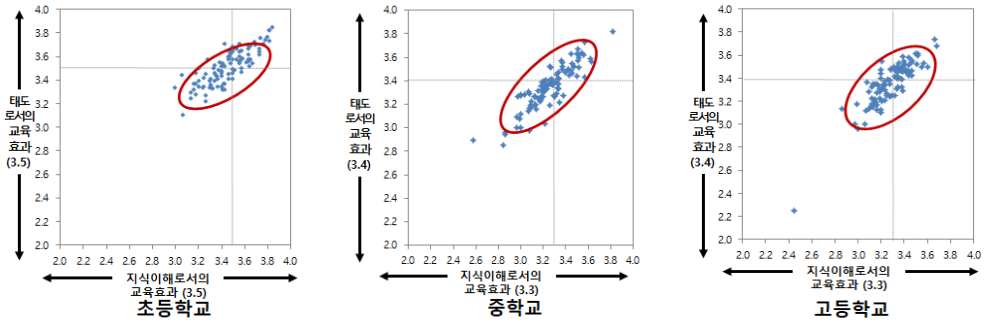

[그림 Ⅳ-31] 학교 간 분포: 지식 및 태도 변화에 대한 인식

▢ 학교 간 분포: 만족도, 수업 풍토

[그림 Ⅳ-32]는 인권교육을 통해 경험한 학생의'수업 만족도'와 '개방적 수업풍토'정도를 학교 내 학생 평균을 학교의 값으로 산출하여 학교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는 '수업 만족도'에서 평균 3.06점, 최소 2.55점, 최대 3.60점(표준편차 0.19)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또, '개방적 수업풍토'에 있어서는 평균 3.05점, 최소 3.00점, 최대 3.85점(표준편차 0.19) 사이의 분포를 보인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수업 만족도'와 '개방적 수업풍토'의 평균이 2.9점으로 동일하고 초등학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중학교의 표본이 고등학교보다 더 넓게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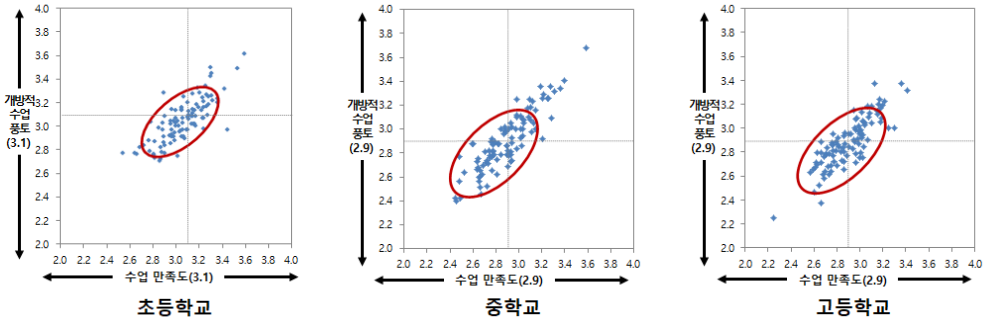

[그림 Ⅳ-32] 학교 간 분포: 만족도, 수업 풍토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가. 교사의 인권의식

□ 인권의식: 인권판단(교사)

[그림 Ⅳ-33]은 인권의식과 관련해 교사의 '인권판단'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인권판단'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초등학교: 3.41, 중학교: 3.31, 고등학교: 3.24),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20대(3.27점), 30대(3.37점), 40대(3.48점)에서는 상승하는 양상을 볼 수 있으나, 50대 이상(3.46점)이 40대보다 근소하게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학교(20대: 3.18, 30대: 3.21, 40대: 3.38, 50대 이상: 3.39)는 교사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양상을 보였고, 고등학교(20대: 3.14, 30대: 3.16, 40대: 3.29, 50대 이상: 3.29)는 40대까지 높아지는 모습이었으나, 50대 이상에서 40대와 동일한 점수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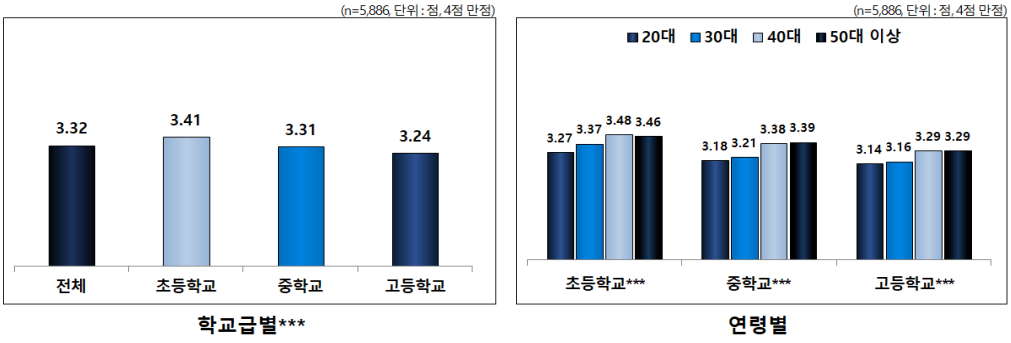

[그림 Ⅳ-33] 인권의식: 인권판단

□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교사)

아래 [그림 Ⅳ-34]의 경우, 인권의식과 연관된 교사의 '인권 감수성'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전체의'인권 감수성'은 4점 만점에 평균이 3.6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초등학교: 3.63, 중학교: 3.63, 고등학교: 3.55). 연령별 교사의 '인권 감수성'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에서는 20대-40대-50대 이상-30대(20대: 3.70, 30대: 3.59, 40대: 3.66, 50대 이상: 3.60)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인권 감수성' 점수가 40대-30대-20대-50대 이상(20대: 3.54, 30대: 3.57, 40대: 3.60, 50대 이상: 3.49) 순으로 높은 양상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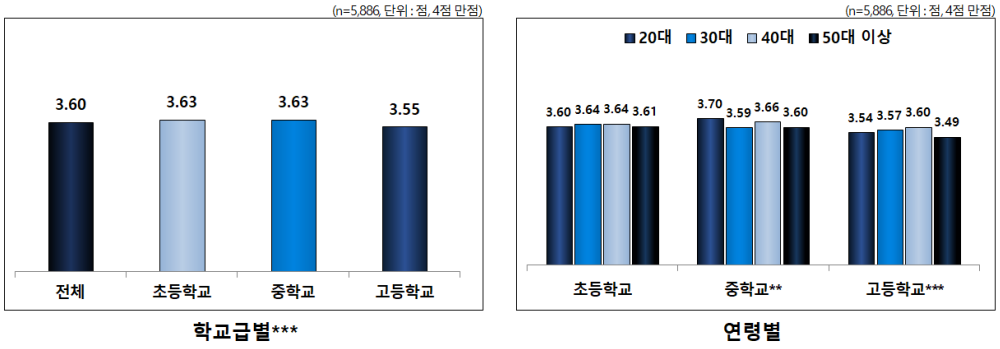

[그림 Ⅳ-34]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

□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교사)

[그림 Ⅳ-35]는 인권의식과 연관된 교사의 '인권 행동의사'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교사의 '인권 행동의사'는 응답 교사 전체의 평균이 4점 만점에 3.07점이었고, 학교급 기준으로 중학교(3.11점), 초등학교(3.07점), 고등학교(3.04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이어서 연령에 따른 교사의 행동 의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5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사 '인권 행동의사' 점수가 도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20대(3.08점)보다 30대(3.03점)가 낮았고, 다시 40대(3.13점)와 50대 이상(3.17점)에서 점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20대(2.99점), 30대(3.00점), 40대(3.03점), 50대 이상(3.12점)으로 드러나 나이가 많을수록 교사의 인권의식 중 '인권 행동의사'수준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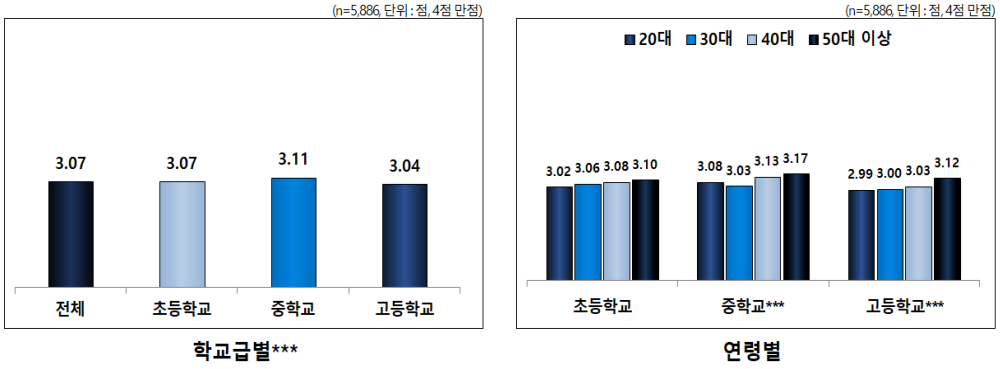

[그림 Ⅳ-35]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

□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 유엔아동권리협약(교사)

[그림 Ⅳ-36]은 교사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교사의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전체의 53.9%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급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사의 인지율이 더 높은 경향을 살필 수 있었다(초등학교: 67.0, 중학교: 51.1, 고등학교: 43.6). 한편, 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났다(초등학교: 72.8, 고등학교: 47.2). 또한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고등학교만 제외한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즉, 초등학교(혁신학교: 72.3, 일반학교: 65.9), 중학교(혁신학교: 57.5, 일반학교: 49.5)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별에 따른 분석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학교(20대: 35.5, 30대: 46.5, 40대: 53.0, 50대 이상: 60.1)와 고등학교(20대: 36.6, 30대: 39.4, 40대: 43.4, 50대 이상: 50.8)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교사의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초등학교는 20대(55.7%)부터 30대(67.6%), 40대(70.9%)까지는 높은 점수를 보이다가 50대 이상에서 66.2%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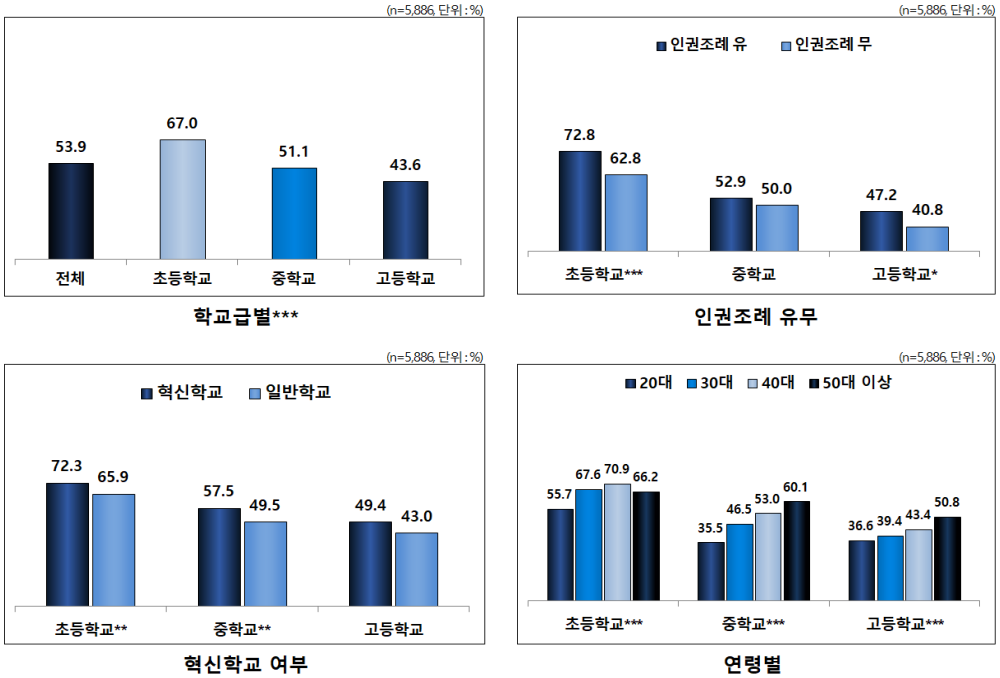

※ 인지율: ③'대체로 알고 있다'+ ④'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림 Ⅳ-36]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학생의 인권의식

▢ 인권의식: 인권판단(학생)

[그림 Ⅳ-37]은 인권의식과 관련해 학생의 '인권판단'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학생의 '인권판단'은 4점 만점으로 볼 때, 전체 평균이 3.22점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초등학교: 3.28, 중학교: 3.18, 고등학교: 3.21). 다음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드러났는데,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3.24점)가 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학교(3.1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의 '인권판단'은 초등학교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일반학교(3.29점)가 혁신학교(3.24점)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한편, 취약집단 학생 비율에 따른 학생의 '인권판단'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0~10%: 3.21, 11~20%: 3.16, 21% 이상: 3.08)와 고등학교(0~10%: 3.25, 11~20%: 3.19, 21% 이상: 3.13)에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의 '인권판단' 평균 점수는 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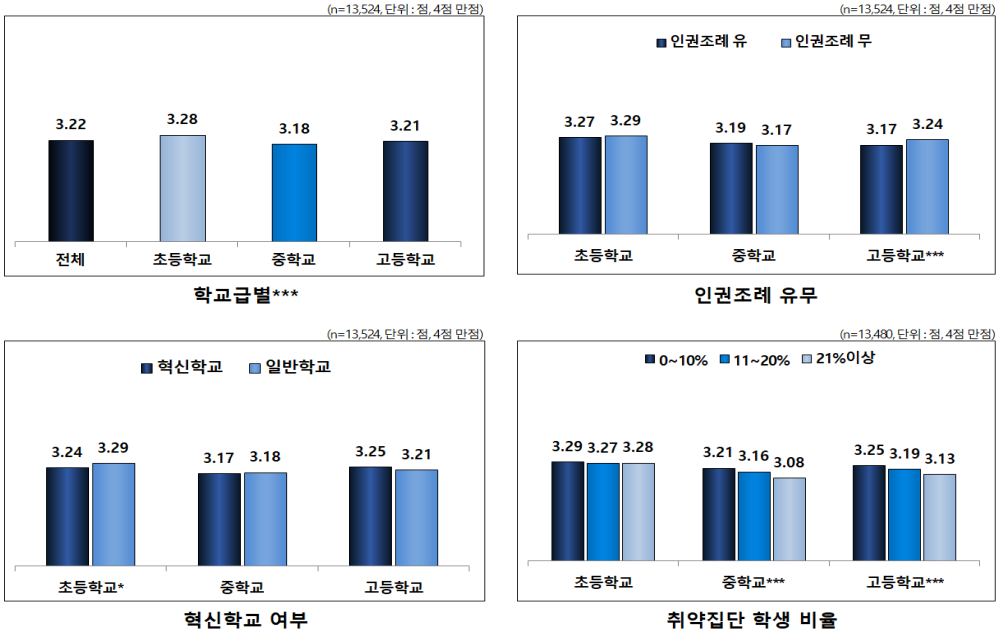

[그림 Ⅳ-37] 인권의식: 인권판단

□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학생)

[그림 Ⅳ-38]은 인권의식과 관련된 학생의 '인권 감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학생의 '인권 감수성'은 4점 만점에 전체의 평균이 3.12점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에 따른 분석에서 초등학교(3.18점), 고등학교(3.12점), 중학교(3.08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어서 인권조례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급에 따라 유사한 양상이 드러났다. 특히,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3.05, 인권조례 없음: 3.09)와 고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09, 인권조례 없음: 3.14)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권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학교에서 평균 점수가 더욱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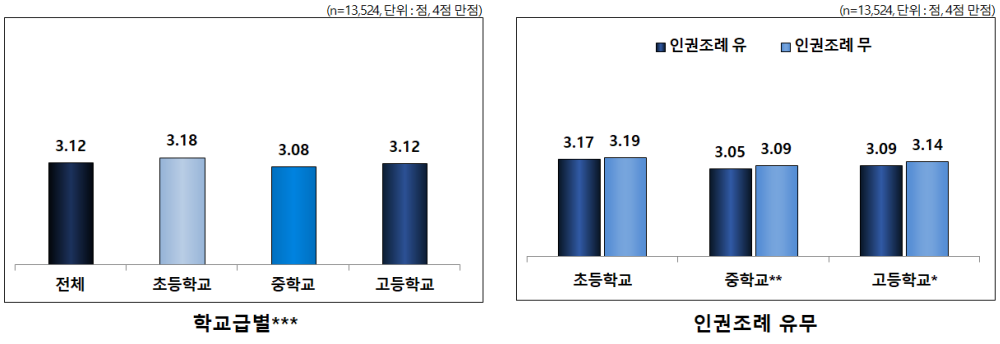

[그림 Ⅳ-38]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

□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학생)

[그림 Ⅳ-39]는 인권의식과 연관된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 정도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 3.01점이었고, 학교급 기준으로 초등학교(3.04점), 고등학교(3.02점), 중학교(2.98점)의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를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00, 인권조례 없음: 3.07)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93, 인권조례 없음: 3.02)에서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초등학

교(혁신학교: 2.98, 일반학교: 3.06)와 중학교(혁신학교: 2.94, 일반학교: 2.99)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고, 일반학교가 혁신학교에 비해 평균적으로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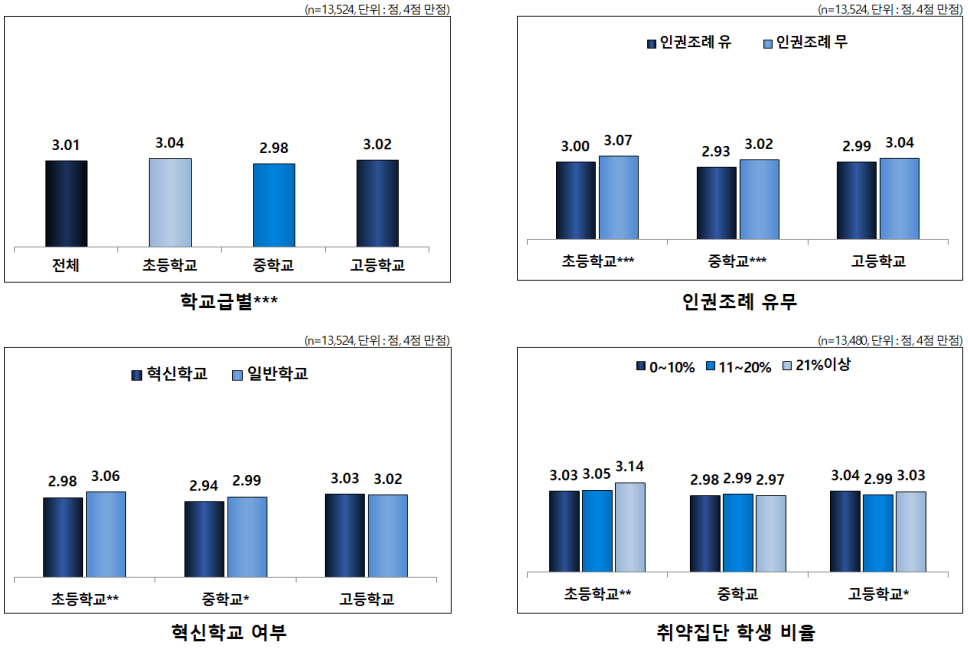

[그림 Ⅳ-39]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

□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인권 개념(학생)

[그림 Ⅳ-40]은 학생의 인권 관련 내용 중 '인권'에 관한 인지율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응답한 전체 학생의 89.3%가 '인권' 개념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급을 기준으로 보면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초등학교(86.9%), 중학교(89.9%), 고등학교(90.9%)로 나와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생의 '인권' 개념 인지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취약집단 학생 비율에 따른 학생의 '인권' 개념 인지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취약집단 학생의 비율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고,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먼저, 초등학교는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10% 이하일 때 87.7%, 11~20%일 때 85.5%, 21% 이상에서는 84.9%의 수치를 보였다. 중학교(0~10%: 90.3, 11~20%: 89.8, 21% 이

상: 87.7)와 고등학교(0~10%: 92.2, 11~20%: 90.4, 21% 이상: 87.2)는 각 연령대에서 초등학교의 결과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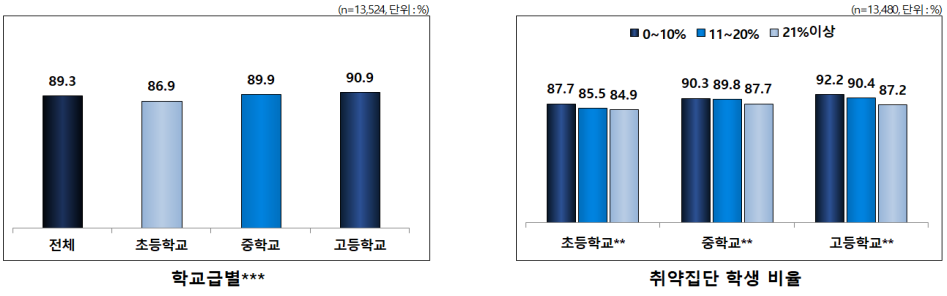

※ 인지율: ③'대체로 알고 있다'+ ④'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림 Ⅳ-40]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인권

□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유엔아동권리협약(학생)

[그림 Ⅳ-41]은 학생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학생의 인지율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학생 전체의 37.9%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었다. 학교급을 기준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는데,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생의 인지율이 더 높은 경향이 드러났다(초등학교: 29.2, 중학교: 40.6, 고등학교: 43.5). 특히, 초등학교 학생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인지율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확연히 낮은 편임을 볼 수 있다. 이어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 양상은 학교급에 따라 상이하였다. 달리 말하면, 초등학교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난 반면(인권조례 있음: 29.9, 인권조례 없음: 28.8), 중학교에서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 더 높았다(인권조례 있음: 37.0, 인권조례 없음: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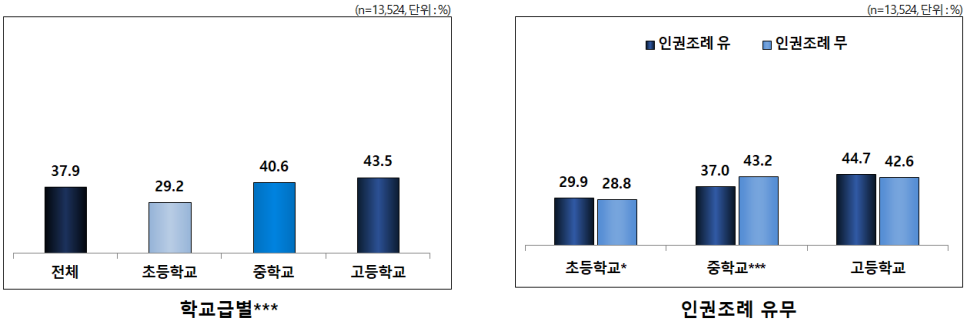

※ 인지율: ③'대체로 알고 있다'+ ④'매우 잘 알고 있다'

[그림 Ⅳ-41]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유엔아동권리협약

3 인권보호 풍토 및 침해 경험

가. 학교 내 인권보호 정도

□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

[그림 Ⅳ-42]는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호 정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07점이었고, 학교급별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다. 초등학교(3.27점), 중학교(3.06점), 고등학교(2.89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는 학생의 인식이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정도를 비교하면, 중학교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경우 3.07점을 드러낸 데 비해, 혁신학교에서는 3.01점을 보여 혁신학교보다 일반학교가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다. 끝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23, 인권조례 없음: 3.30)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98, 인권조례 없음: 3.11)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보다 더 높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로 실현되었다(인권조례 있음: 2.93, 인권조례 없음: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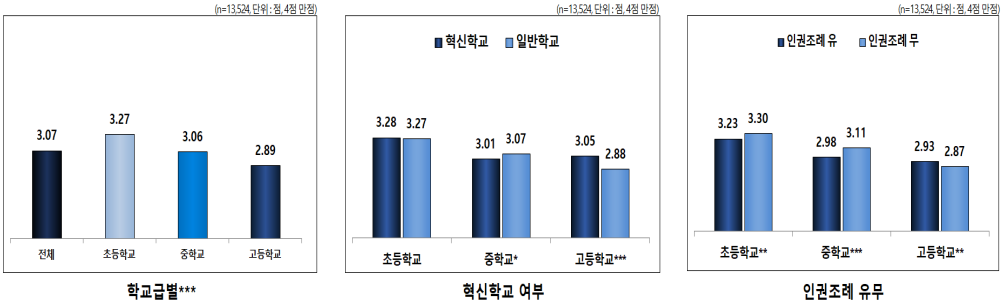

[그림 Ⅳ-42]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학생)

[그림 Ⅳ-43]의 경우, 학교에서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보호 정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10점이었고, 학교급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04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양상을 보인 데 반해 초등학교는 3.24점으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다. 한편, 인권조례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만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는 평균이 3.08점으로, 2.98점인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높았다. 또,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혁신학교(3.21점)의 학생이 일반학교(3.03점)의 학생보다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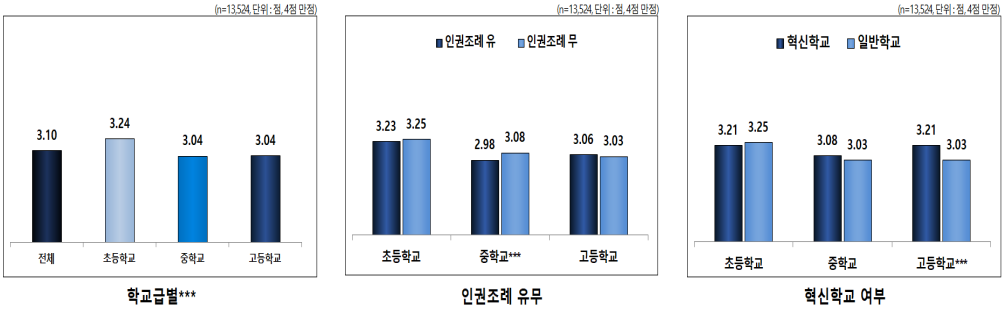

[그림 Ⅳ-4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보호 정도

□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학생)

[그림 Ⅳ-44]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이 보호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학생의 인식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2.97점으로 드러났고, 학교급별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가 평균 3.32점으로 여타 학교급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뒤이어 고등학교가 2.82점, 중학교가 2.78점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에서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2.88점)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2.77점)보다 높았다. 이어서 혁신학교인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중학교(혁신학교: 2.84, 일반학교: 2.77)와 고등학교(혁신학교: 3.04, 일반학교: 2.80)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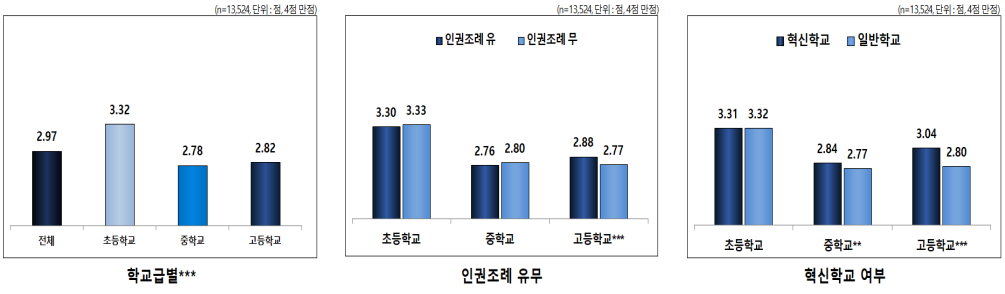

[그림 Ⅳ-4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호 정도

□ 표현의 자유(학생)

[그림 Ⅳ-45]는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고 학생이 인식한 정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06점이었고,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3.35점), 중학교(2.95점), 고등학교(2.90점)으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는 학생의 인식이 더욱 낮았다. 또,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 보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30, 인권조례 없음: 3.37)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90, 인권조례 없음: 2.99)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보다 더 높은 결과를 드러냈다. 끝으로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정도를 비교하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혁신학교: 3.01, 일반학교: 2.93)와 고등학교(혁신학교: 3.13, 일반학교: 2.89)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더욱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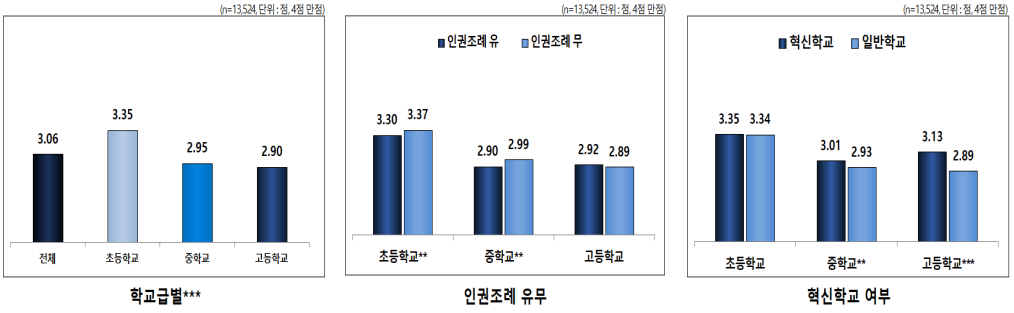

[그림 Ⅳ-45]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

□ 자치 및 참여권리(학생)

[그림 Ⅳ-46]을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자치 및 참여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자치 및 참여권리'가 보호되고 있다고 인지하는 학생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02점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3.20, 중학교: 2.97, 고등학교: 2.90)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았다. 또한 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15, 인권조례 없음: 3.23)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92, 인권조례 없음: 3.01)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2.94점)가 해당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 학교(2.8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혁신학교의 여부에 따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혁신학교: 3.04, 일반학교: 2.95), 고등학교(혁신학교: 3.15, 일반학교: 2.88)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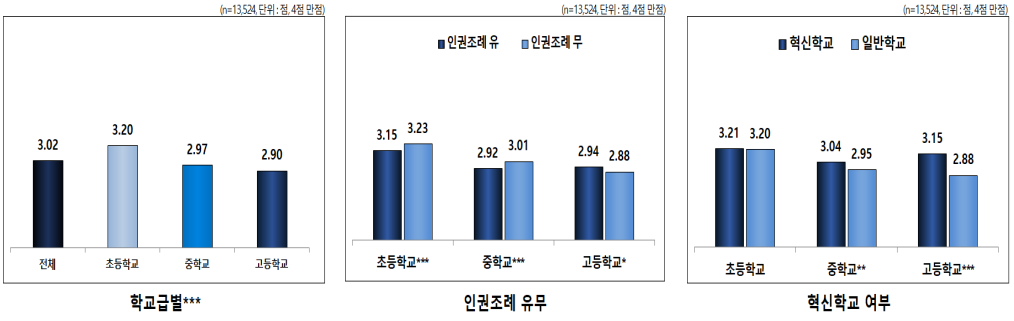

[그림 Ⅳ-46] 자치 및 참여권리 보호 정도

□ 학습권 및 휴식권(학생)

[그림 Ⅳ-47]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학습권 및 휴식권'이 보호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분석한 결과, '학습권 및 휴식권'보호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33점으로 드러났고, 학교급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드러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3.45, 중학교: 3.32, 고등학교: 3.23) 순으로 드러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더 낮았다. 또, 인권조례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급 중 초등학교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에서는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3.34점)에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3.29점)보다 더욱 높은 점수가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인권조례 있음: 3.28, 인권조례 없음: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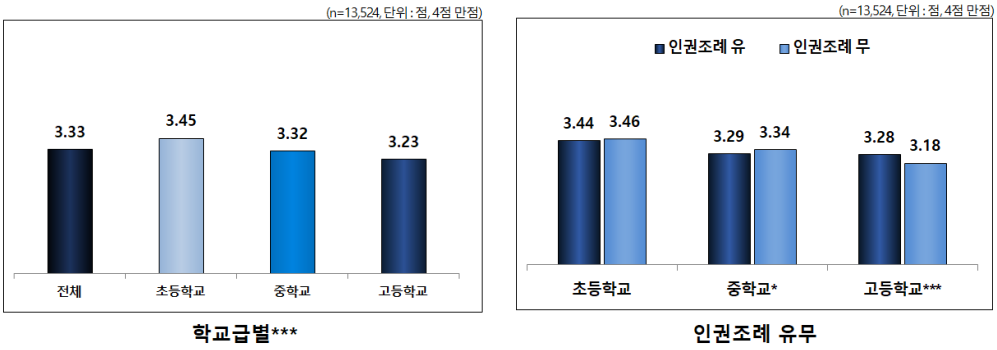

[그림 Ⅳ-47]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 정도

□ 복지에 관한 권리(학생)

[그림 Ⅳ-48]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복지에 관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복지에 관한 권리'보호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18점이었다. 이를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교가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중학교(3.14점), 고등학교(3.05점)가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다른 두 학교급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30, 인권조례 없음: 3.37)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3.06, 인권조례 없음: 3.20)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를 비교하면, 고등학교에서만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학교(3.18점)가 일반학교(3.04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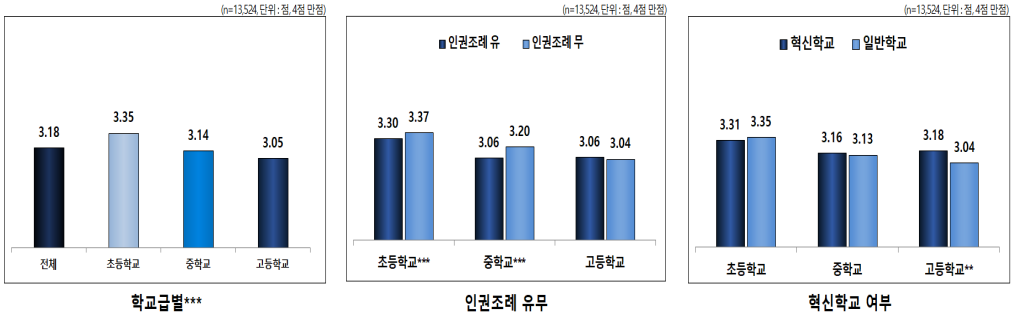

[그림 Ⅳ-48] 복지에 관한 권리 보호 정도

□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학생)

[그림 Ⅳ-49]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보호에 관련한 학생의 인식은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18점으로 드러났고, 학교급에 따라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 3.24, 중학교: 3.18, 고등학교: 3.13) 순으로 드러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

수가 더 낮은 양상이었다. 또한 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른 분석 결과, 학교급 중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19, 인권조례 없음: 3.27)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3.09, 인권조례 없음: 3.24), 양측 모두에서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의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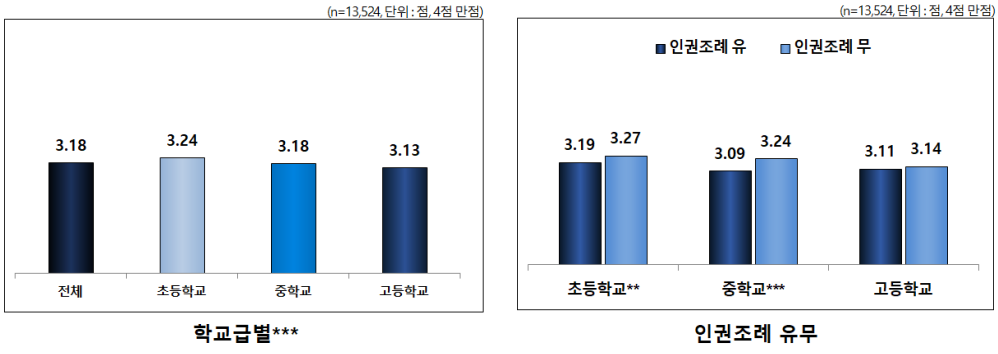

[그림 Ⅳ-49]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보호 정도

□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학생)

[그림 Ⅳ-50]의 경우는 학교에서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13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 평균 점수는 더욱 낮았다(초등학교: 3.34, 중학교: 3.06, 고등학교: 3.00). 다음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29, 인권조례 없음: 3.36)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99, 인권조례 없음: 3.11) 모두 인권조례를 비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해당 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일반학교(3.35점)가 혁신학교(3.27점)보다 점수가 높았던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3.09점)가 일반학교(2.99점)에 비해 높은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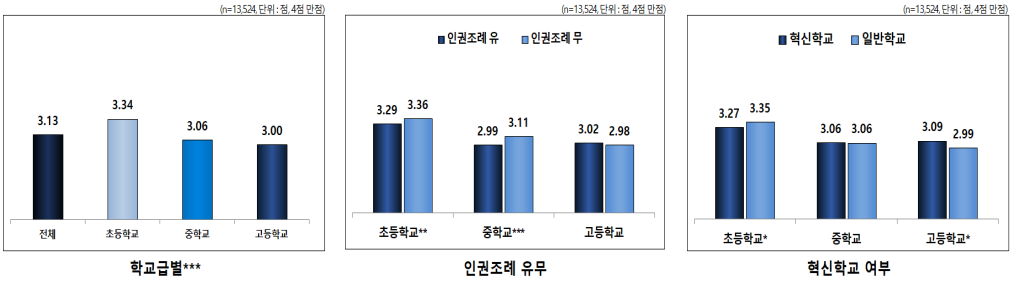

[그림 Ⅳ-50]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정도

□ 소수학생 권리 보장(학생)

[그림 Ⅳ-51]은 학교에서 '소수학생 권리 보장'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학생에게 알아본 결과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소수학생 권리 보장'에 관한 학생 인식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3.08점이었다. 이를 다시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낮게 드러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초등학교: 3.25점, 중학교: 3.04점, 고등학교: 2.94점). 이어서 인권조례 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18, 인권조례 없음: 3.29)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2.96, 인권조례 없음: 3.11)에서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역의 학교가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끝으로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중학교만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일반학교(3.26점)가 혁신학교(3.20점)보다 소폭 높았던 것에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혁신학교(3.02점)가 일반학교(2.94점)와 비교할 때, 더욱 높은 점수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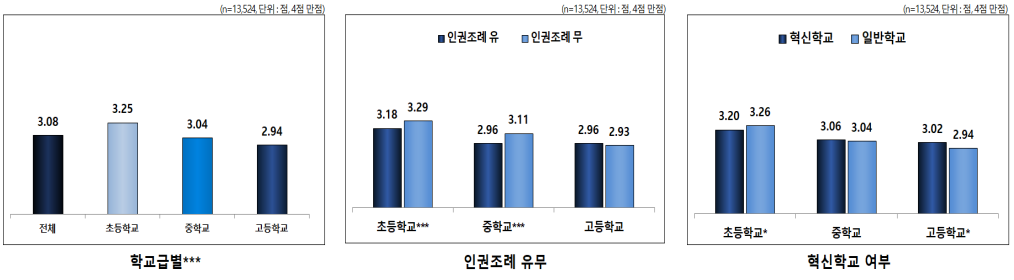

[그림 Ⅳ-51] 권리침해로 부터의 보호 보호 정도

나.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정도

□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

[그림 Ⅳ-52]는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와의 관계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 정도에 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학교 내 친구나 선배와의 관계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학생이 인지한 정도는 4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22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초등학교: 3.37, 중학교: 3.16, 고등학교: 3.15). 한편, 취약집단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교급과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10% 이하일 때, 3.36점, 11~20%일 경우 3.34점, 21% 이상에서는 3.52점으로 나타났다. 중학교(0~10%: 3.12, 11~20%: 3.20, 21% 이상: 3.24), 고등학교(0~10%: 3.13, 11~20%: 3.16, 21% 이상: 3.18)도 해당 집단별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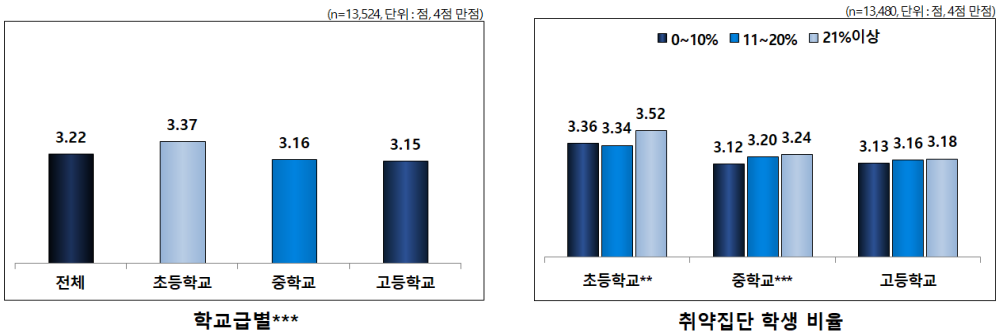

※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학업 성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경제 사정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52]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

□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학생)

[그림 Ⅳ-53]의 경우,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와의 관계에서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학생이 보호받고 있다고 인지한 정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총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의 평균이 3.03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급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3.03, 중학교: 2.99, 고등학교: 3.07)의 순으로 나타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취약집단 학생 비율에 따른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의 보호 정도를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0~10%: 3.02, 11~20%: 3.04, 21% 이상: 3.20)와 중학교(0~10%: 2.94, 11~20%: 3.05, 21% 이상: 3.06)에서 취약집단 학생 비율이 상승할수록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다고 학생이 인지한 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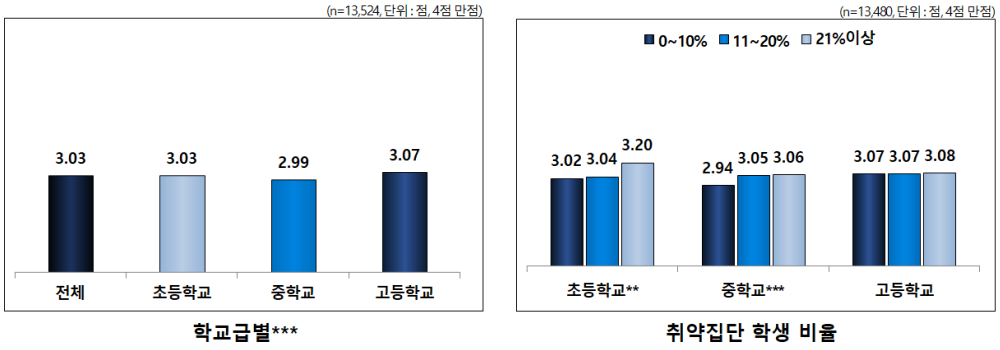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는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의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Ⅳ-53]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보호 정도

□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학생)

[그림 Ⅳ-54]는 교내 친구 또는 선배와의 관계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이 보호되고 있는 정도를 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교내 친구나 선배와의 관계 중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이 보호받는 정도는 4점 만점 중 전체 3.28점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에 따라 분석해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3.41, 중학

교: 3.21, 고등학교: 3.24)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인권조례 유무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만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35, 인권조례 없음: 3.44)와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3.15, 인권조례 없음: 3.26) 모두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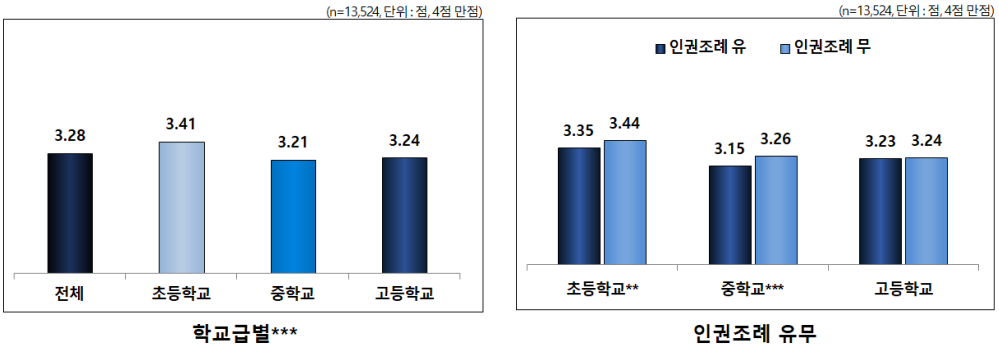

[그림 Ⅳ-54] 친구(선배) 간 인권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호 정도

다. 가정 내 인권보호 정도

□ 가정 내 인권보호: 의사 반영(학생)

[그림 Ⅳ-55]는 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 '나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을 물어보신다'는 문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초등학교: 3.57, 중학교: 3.50, 고등학교: 3.51). 한편, 인권조례 유무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먼저, 중학교의 경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3.45점,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3.53점을 기록하였다. 고등학교 역시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3.48점,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의 학교에서 3.54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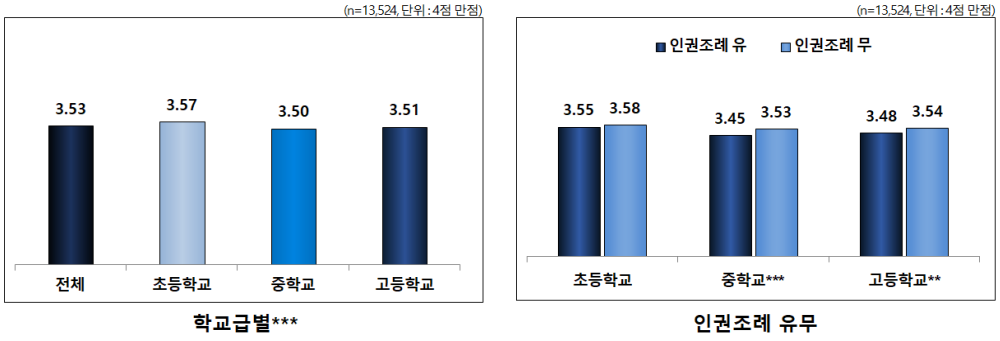

[그림 Ⅳ-55] 가정 내 인권보호: 의사 반영

□ 가정 내 인권보호: 폭력(학생)

[그림 Ⅳ-56]은 학생에게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 '나를 자주 때린다'는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먼저,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3.69점), 고등학교(3.61점), 중학교(3.53점)의 순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고[5],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이어서 인권조례 유무에 의한 분석 결과, 학생의 응답률은 고등학교에서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학교(3.68점)가 인권조례가 있는 지역 학교(3.53점)에 비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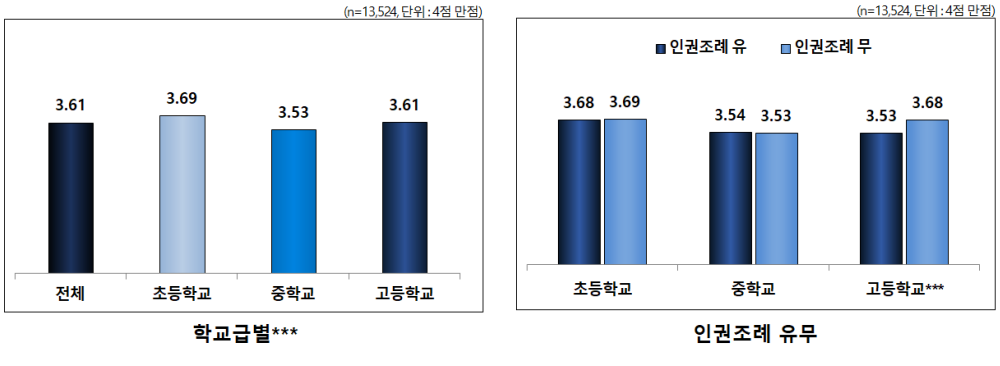

[그림 Ⅳ-56] 가정 내 인권보호: 폭력

5) 역문항으로 값이 높을수록 가정 내 인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가정 내 인권보호: 차별(학생)

[그림 Ⅳ-57]을 보면, 보호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별, 성적, 외모 등을 이유로 나를 차별하였다'라는 문항에 관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우선, 학교급에 따라 분석해보면, 초등학교(3.69점), 고등학교(3.52점), 중학교(3.45점) 순으로 해당 점수가 높게 드러났고[6],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권조례의 유무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고등학교에서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볼 때, 인권조례의 제정을 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3.58점)가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있는 학교(3.43점)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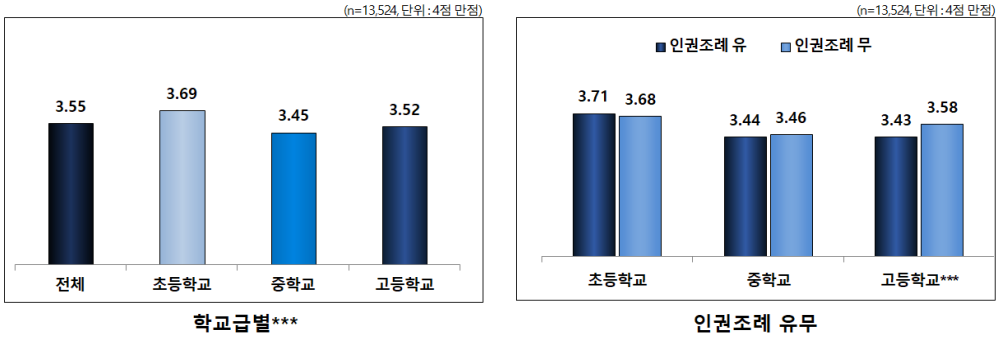

[그림 Ⅳ-57] 가정 내 인권보호: 차별

라. 교직원 간 인권보호

□ 교직원 간 인권보호: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교사)

[그림 Ⅳ-58]의 경우, 교직원 간 문화에 대한 내용 중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에 관한 것이다. 교사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70점으로 나타났는데, 학교급에 따른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초등학교: 3.78, 중학교: 3.75, 고등학교: 3.57). 다음으로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중학교에서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p<.001 수

6) 역문항으로 값이 높을수록 가정 내 인권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준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중학교 중 혁신학교(3.83점)가 일반학교(3.73점)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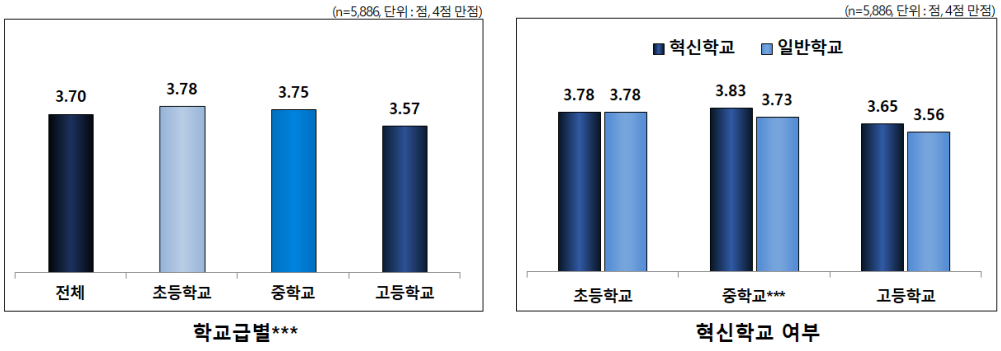

[그림 Ⅳ-58] 교직원 간 인권보호: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

□ 교직원 간 인권보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교사)

[그림 Ⅳ-59]는 교직원 간 문화에 관한 것 중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관련 조사 결과이다. 이는 교사를 대상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4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평균이 3.61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초등학교: 3.76, 중학교: 3.65, 고등학교: 3.42). 한편, 혁신학교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혁신학교인 중학교의 경우 3.74점, 일반학교인 중학교는 3.62점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인 고등학교는 3.61점, 일반학교인 고등학교의 경우 3.41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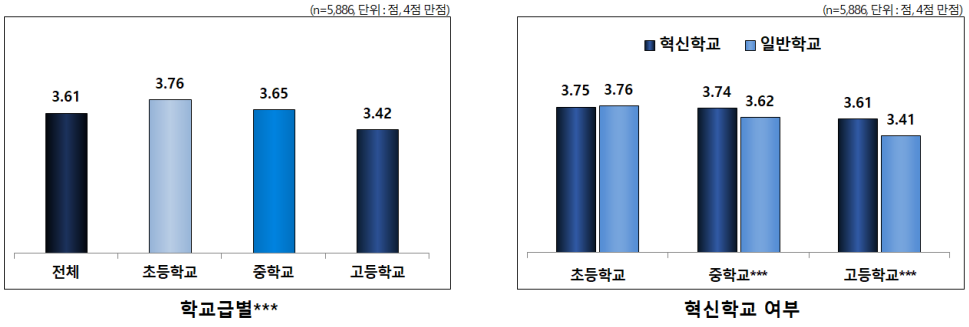

[그림 Ⅳ-59] 교직원 간 인권보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 교직원 간 인권보호: 성별에 따른 차별(교사)

[그림 Ⅳ-60]은 교직원 간 문화에 관한 것 중 '성별에 따른 차별' 관련 조사 결과이다. 이는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3.62점이었고, 학교급별로 볼 때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초등학교: 3.72, 중학교: 3.68, 고등학교: 3.47). 한편,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들여다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혁신학교인 중학교는 3.77점이고 일반학교인 중학교는 3.66점을 기록하였고,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혁신학교인 고등학교는 3.61점, 일반학교인 고등학교는 3.46점을 나타냈고,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결과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인 경우가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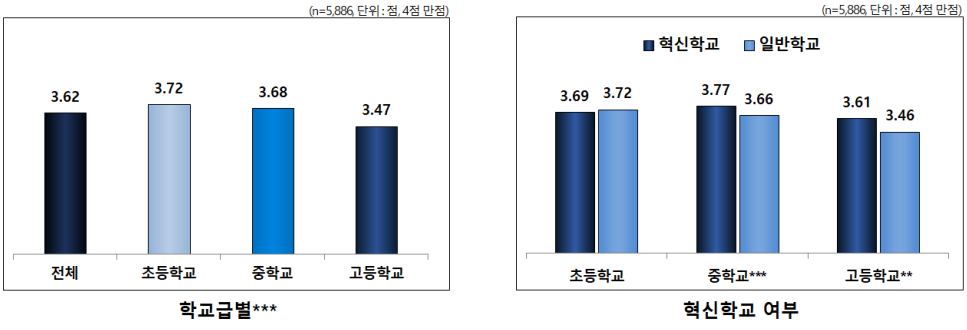

[그림 Ⅳ-60] 교직원 간 인권보호: 성별에 따른 차별

□ 교직원 간 인권보호: 부당 업무 지시(교사)

[그림 Ⅳ-61]은 교직원 간 문화에 관한 것 중 '부당 업무 지시'에 대한 것이다. 이는 교사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은 4점 만점 중 3.45점이었고, 학교급별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낮은 모습이 드러났다(초등학교: 3.62, 중학교: 3.48, 고등학교: 3.26). 다음으로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차이가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중학교(혁신학교: 3.55, 일반학교: 3.46)와 고등학교(혁신학교: 3.43, 일반학교: 3.24)에서는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가 3.63점으로 3.56점인 혁신학교보다 보다 높은 결과를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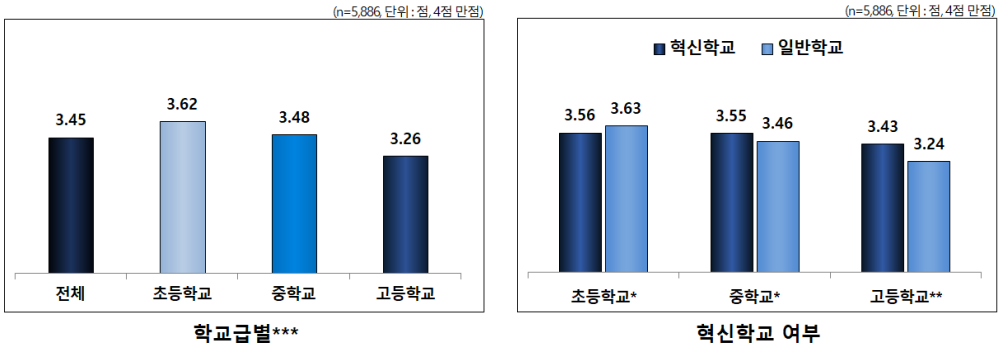

[그림 Ⅳ-61] 교직원 간 인권보호: 부당 업무 지시

마.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1)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학생)

[그림 Ⅳ-62]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학생의 13.8%가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급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8.7%, 중학교는 15.6%, 고등학교는 16.7%로 드러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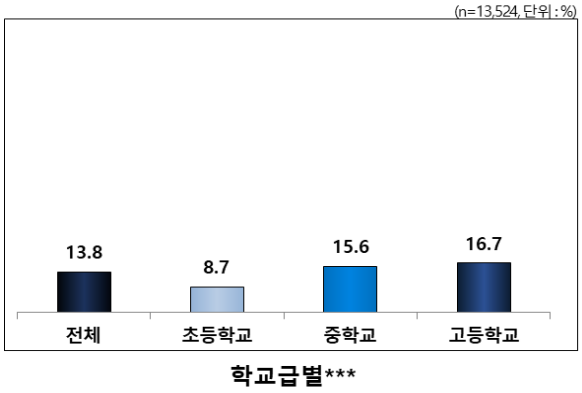

[그림 Ⅳ-62]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학생)

[그림 Ⅳ-63]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였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의 형태는 '차별 관련'이 49.7%로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 '표현의 자유 관련'이 46.9%로 뒤를 이었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차별 관련'이 제일 높은 비율을 보였고(초등학교: 46.9, 고등학교: 51.9), 중학교에서는 '표현의 자유 관련'(51.8%)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모든 학교급에서 '기타'유형은 미약한 비율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물건 압수/소지품 검사' 등의 응답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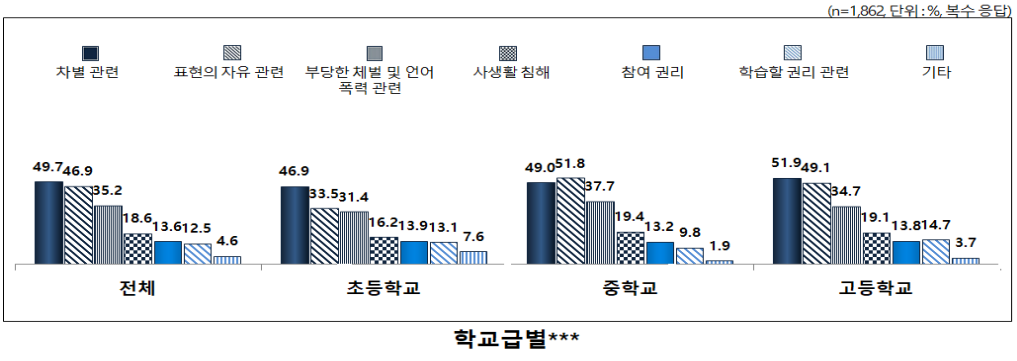

[그림 Ⅳ-63]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

□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학생)

[그림 Ⅳ-64]는 최근 1년 이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관하여 알아본 것이다. 지난 1년간 학생이 교사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가 전체에서 42.7%로 제일 높았고,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가 23.7%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모든 학교급에 걸쳐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높게 나왔는데, 해당 답변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양상이었다. 또, 학교급별로 드러난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첨언하면, 모든 학교급에서 'SNS에 글을 올렸다'(초등학교: 1.2, 중학교: 1.2, 고등학교: 1.1)보다는 높지만, 다른 것과 비교해 가장 낮은 대응인 '기타'(초등학교: 6.0, 중학교: 7.9, 고등학교: 6.4)에는 '직접 말한다', '회의 안건으로 넣어 회의를 했다'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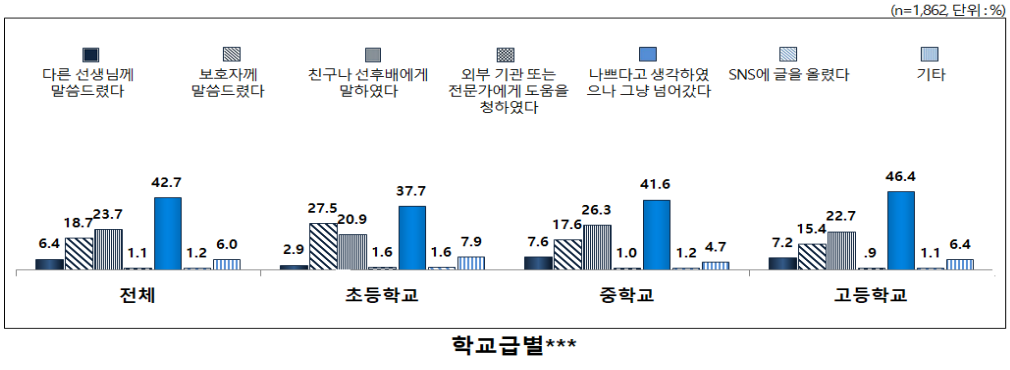

[그림 Ⅳ-64]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

2) 친구 및 선후배부터의 인권침해

□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학생)

[그림 Ⅳ-65]는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응답한 학생 전체의 8.9%가 최근 1년 이내에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교(10.7%), 중학교(8.6%),

고등학교(7.4%)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해당 경험을 한 학생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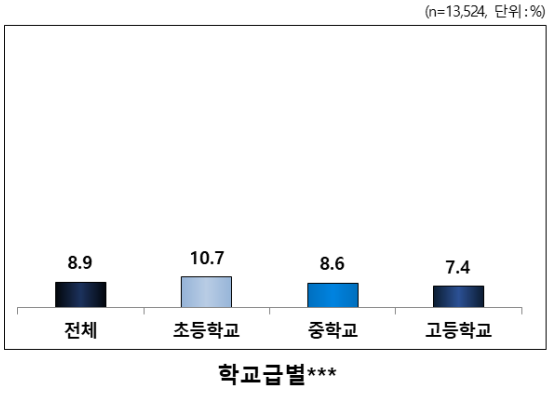

[그림 Ⅳ-65]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학생)

[그림 Ⅳ-66]은 최근 1년 이내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친구나 선배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의 형태는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이 전체에서 53.9%로 가장 높았고, '차별 관련'이 39.1%, '사생활 침해'가 25.5%, '기타' 9.1%로 후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학교급에 따라 분석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차별 관련-사생활 침해-기타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의 비율이 61%인데 비해, 다른 침해 유형은 30% 미만이었다. 또, 중학교는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50.1%)과 '차별 관련'(45.1%)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차별 관련'(46.9%)이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못지않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 포함된 응답으로는 '외모 비하', '수업시간 방해'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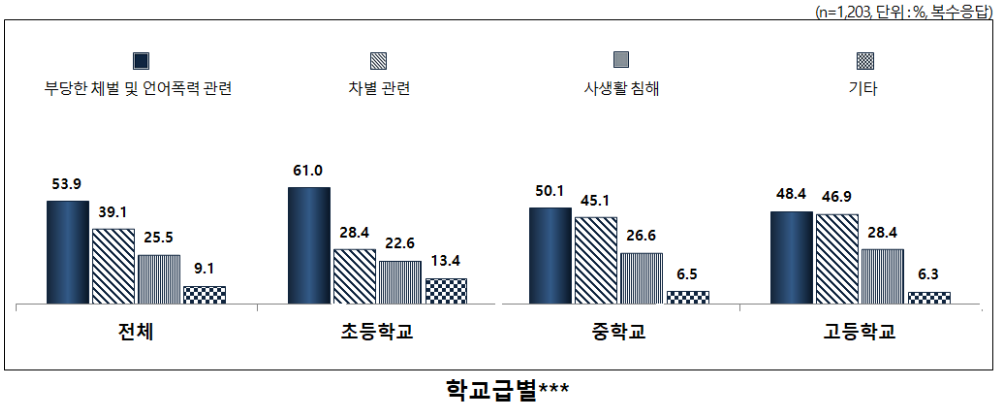

[그림 Ⅳ-66]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

□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학생)

[그림 Ⅳ-67]은 최근 1년 이내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해 살펴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1년간 친구나 선배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학생의 대응은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가 38.4%로 전체에서 가장 높게 드러났고,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가 19.3%로 바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가 제일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고(초등학교: 36.0, 중학교: 39.3, 고등학교: 40.6),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중학교: 22.8, 고등학교: 20.6)가 다음 순위로 높았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께 말씀드렸다'(24.5%)가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여 다른 학교급과 차별화됐다. 이 같은 학교급별 결과의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에 나타난 응답으로는 '직접 말한다', '나도 똑같이 한다'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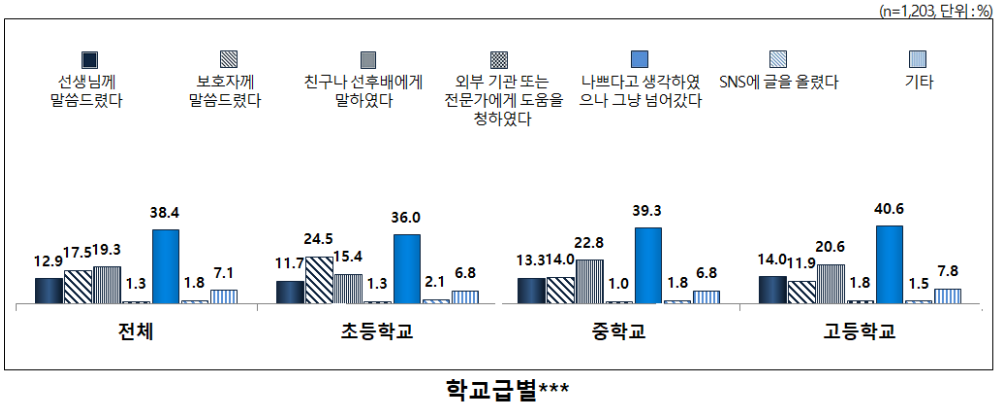

[그림 Ⅳ-67] 1년간 친구, 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

3)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학생)

[그림 Ⅳ-68]은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부모님, 조부모님 등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설문에 응답한 학생 전체의 4.9%가 최근 1년간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고등학교-초등학교(초등학교: 4.3, 중학교: 5.4, 고등학교: 5.0) 순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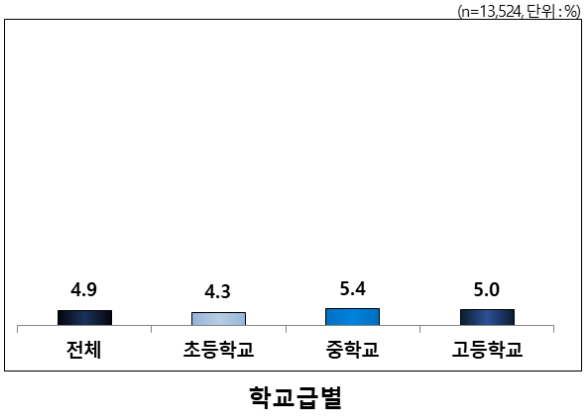

[그림 Ⅳ-68]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학생)

[그림 Ⅳ-69]는 최근 1년 이내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보호자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의 형태는 '차별 관련'이 51.2%로 가장 높았고, '표현의 자유 관련'이 36.6%,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이 33.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학교급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차별 관련'(중학교: 56.8, 고등학교: 57.3)이, 초등학교에서는 '표현의 자유 관련'(38.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드러났다. 참고로 '기타'로 드러난 응답으로는 '건강 및 안전 관련', '진로 관련/성적' 등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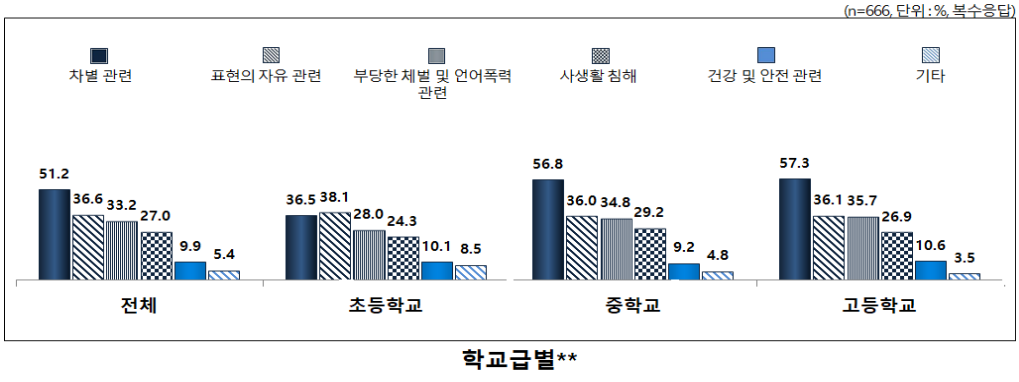

[그림 Ⅳ-69]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

□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학생)

아래의 [그림 Ⅳ-70]은 최근 1년 이내 보호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근 1년간 보호자로부터 받은 인권침해에 대한 학생의 대응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가 52.4%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가 16.2%로 후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이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초등학교: 56.6, 중학

교: 55.2, 고등학교: 45.8)가 다른 대응 형태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응답 비율을 드러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가 1% 미만으로 드러나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에 대한 학생의 대응 선택지로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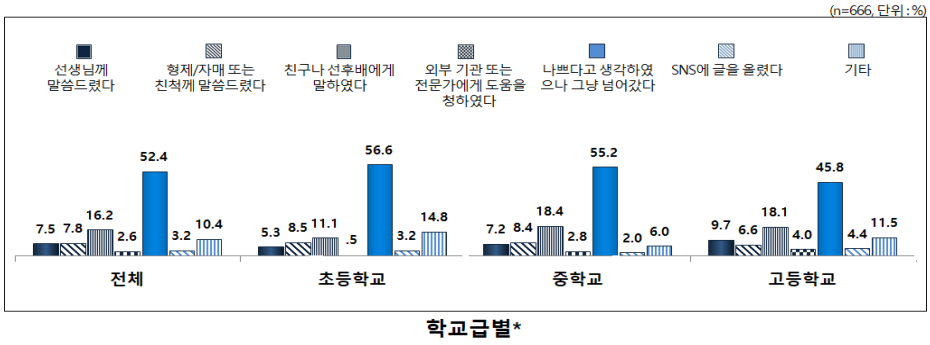

[그림 Ⅳ-70]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

4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및 교사-학생 인식 차이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림 Ⅳ-71]은 학교별 인권 풍토 중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해 학교 내 학생의 평균과 교사의 평균을 학교 값으로 산출한 후, 학교 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학생 평균이 3.27점, 최소 2.75점, 최대 3.80점 사이에 분포해 있고, 교사 평균은 3.81점, 최소 3.25점, 최대 4.00점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교사 평균이 학생 평균을 상회하면서 초등학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표본 분포가 상대적으로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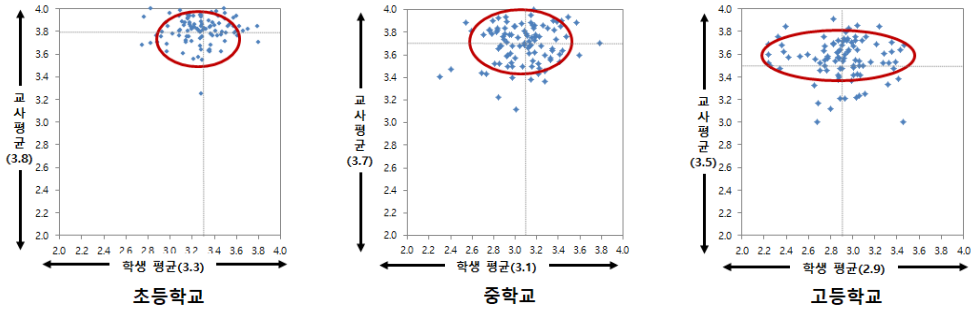

[그림 Ⅳ-71]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그림 Ⅳ-72]는 학교별 인권 풍토 중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학교 내 학생의 평균과 교사의 평균을 학교 값으로 산출한 뒤에 학교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와 관련해 학생 평균이 3.24점, 최소 2.67점, 최대 3.77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교사 평균은 3.81점, 최소 3.38점, 최대 4.00점의 분포를 드러내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시 초등학교의 분포와 유사한 편이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생과 교사의 표본 분포가 더 퍼짐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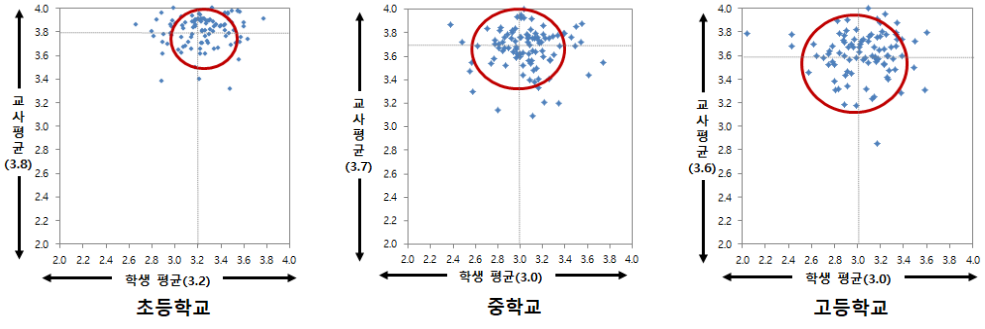

[그림 Ⅳ-72]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그림 Ⅳ-73]의 경우, 학교별 인권 풍토 중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과 연관해 학교 내 학생 평균 및 교사의 평균을 학교 값으로 산출해 학교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관련 학생 평균 3.32점, 최소 2.74점, 최대 3.78점 사이에 분포해 있고, 교사 평균 3.76점, 최소 3.35점, 최대 3.95점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비교해 학생 평균 및 교사 평균이 낮게 나타났는데, 학생과 교사의 표본이 퍼져 있는 정도는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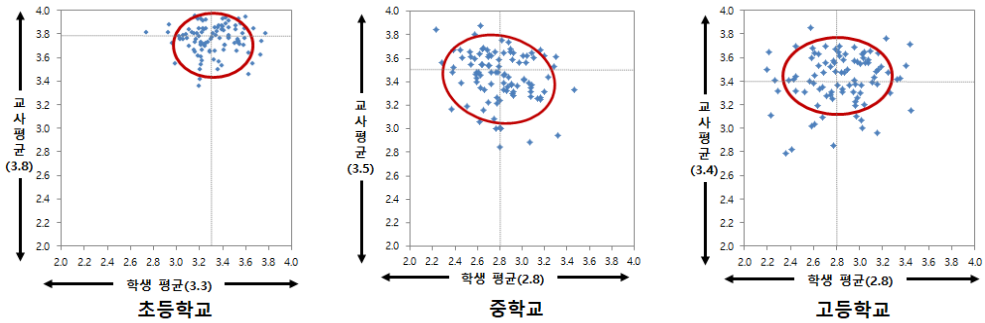

[그림 Ⅳ-73]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보호 정도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표현의 자유

[그림 Ⅳ-74]는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학교 내 학생 평균과 교사 평균을 내어 학교 값으로 산출한 후, 학교를 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학생 평균이 3.35점, 최소 2.64점, 최대 3.82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교사의 평균은 3.65점, 최소 3.25점, 최대 3.95점 사이에 분포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유사하게 이어졌는데, 중학교의 경우 교사 표본의 퍼져 있는 정도가 컸고, 고등학교는 학생 표본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해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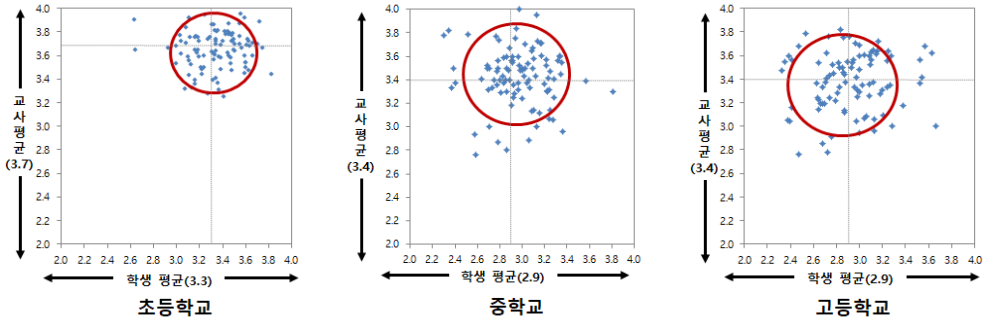

[그림 Ⅳ-74]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자치 및 참여권리

[그림 Ⅳ-75]는 학교별 인권 풍토 중에서 '자치 및 참여권리'에 대해 학교 내 학생의 평균과 교사의 평균을 학교 값으로 산출한 후, 학교 단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자치 및 참여권리'에 관한 학생 평균이 3.21점, 최소 2.46점, 최대 3.75점 사이에 분포해 있고, 교사 평균은 3.68점, 최소 3.22점, 최대 3.95점 의 범위에 분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교해 가장 높은 수치인데, 그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초등학교에 비해 학생과 교사의 표본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넓게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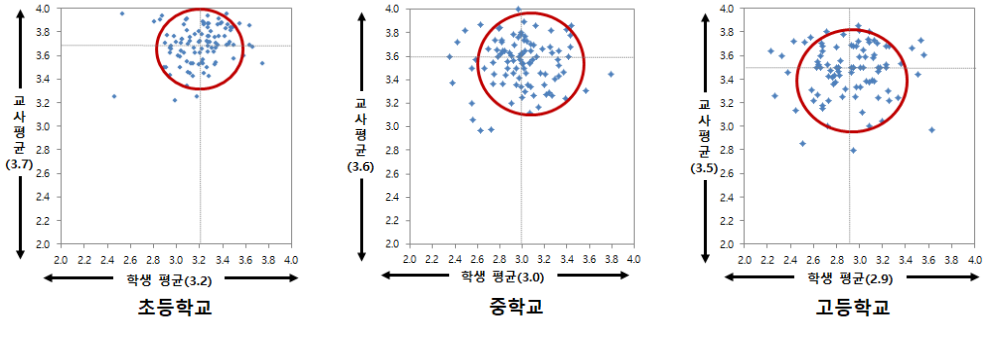

[그림 Ⅳ-75]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자치 및 참여권리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그림 Ⅳ-76]의 경우,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를 알아내고자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학교 내 학생 평균 및 교사의 평균을 학교 값으로 산출하여 학교를 분석 단위로 결과를 낸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관련 학생 평균 3.34점, 최소 2.64점, 최대 3.79점 사이에 분포해 있고, 교사 평균 3.76점, 최소 3.40점, 최대 4.00점 사이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역시 초등학교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학생과 교사의 분포가 더 넓게 퍼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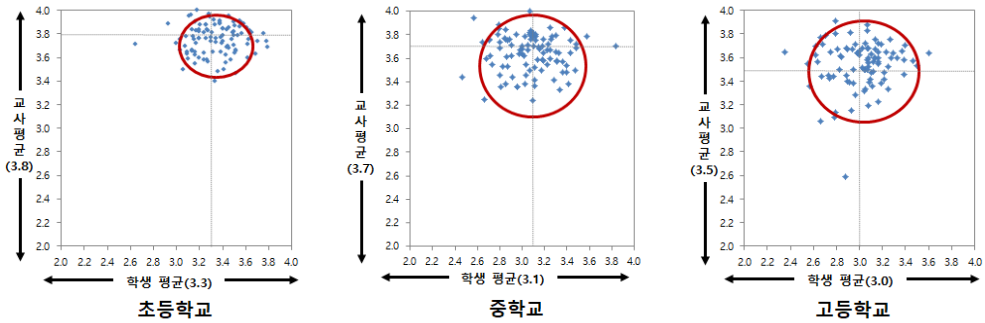

[그림 Ⅳ-76]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소수학생권리보장

[그림 Ⅳ-77]의 경우,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를 알아볼 목적으로 '소수학생권리보장'에 관하여 학교 내 학생 평균 및 교사 평균을 산출하여 학교 값으로 한 뒤, 학교 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는 '소수학생권리보장'에 대해 학생 평균이 3.25점, 최소 2.71점, 최대 3.79점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교사의 평균은 3.76점, 최소 3.40점, 최대 4.00점 사이에 분포를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에 비해 학생 표본의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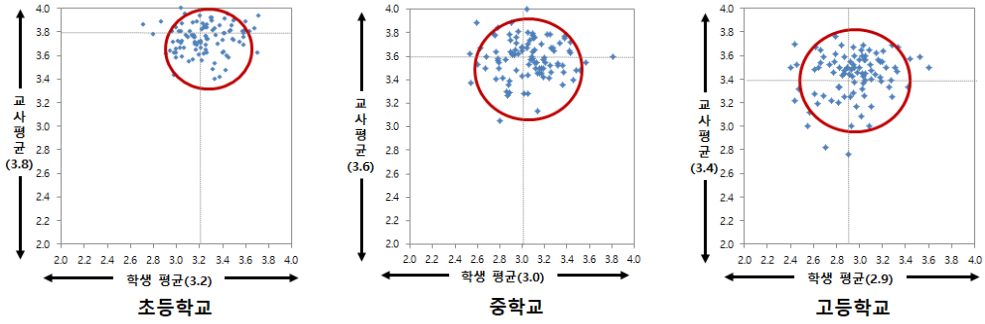

[그림 Ⅳ-77] 학교별 인권 풍토의 차이: 소수학생권리보장

5 교원 전문성

가. 인권 중요도에 대한 인식 및 준비도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교사)

[그림 Ⅳ-78]은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권리 중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중요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3.63점, 이를 가르칠 준비도는 3.24점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학교급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관한 중요도(초등학교: 3.73, 중학교: 3.61, 고등학교: 3.55)와 준비도(초등학교: 3.41, 중학교: 3.19, 고등학교: 3.13)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이 드러났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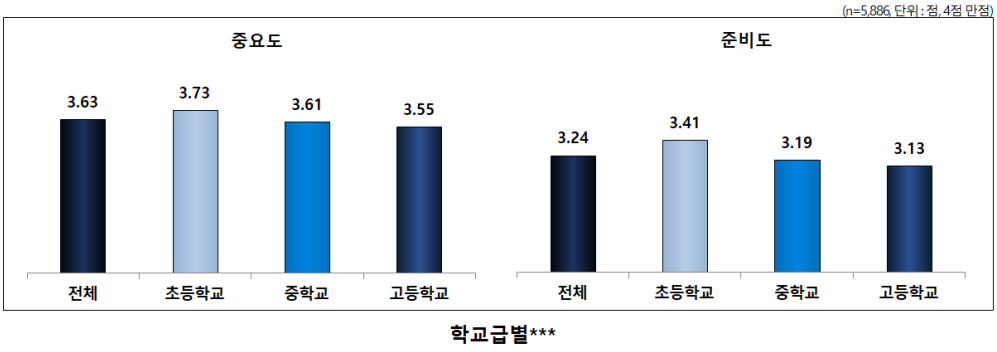

[그림 Ⅳ-78]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교사)

[그림 Ⅳ-79]는 교사에게 학생의 권리 중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교사가 생각하는 중요도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3.77점, 이를 가르칠 준비도의 경우 3.32점으로 드러나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의 중요도(초등학교: 3.85, 중학교: 3.76, 고등학교: 3.70)와 준비도(초등학교: 3.46, 중학교: 3.27, 고등학교: 3.22) 양측 모두에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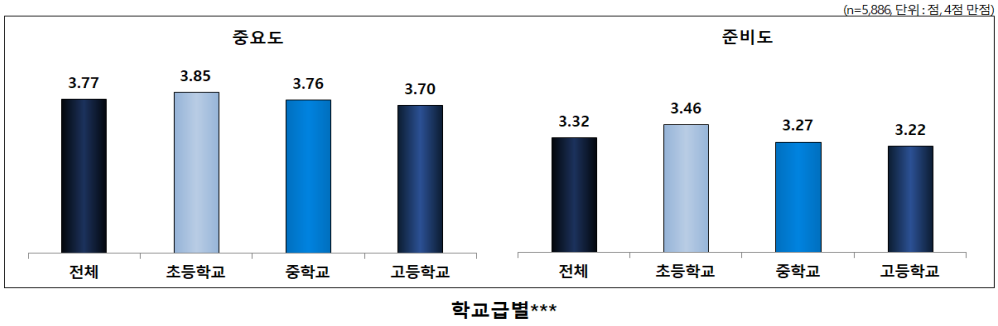

[그림 Ⅳ-79]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학습권 및 휴식권(교사)

[그림 Ⅳ-80]의 경우 교사에게 학생의 권리 중 '학습권 및 휴식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권 및 휴식권'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 평균 4점 만점에 3.56점, 준비도는 3.23점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교할 때 준비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학교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학습권 및 휴식권'에 관한 교사의 중요도(초등학교: 3.67, 중학교: 3.54, 고등학교: 3.48)와 준비도(초등학교: 3.37, 중학교: 3.21, 고등학교: 3.13)는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낮은 성향을 드러냈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임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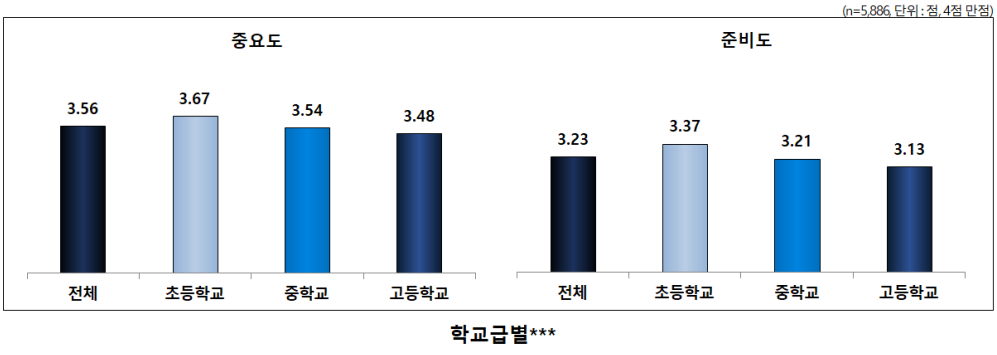

[그림 Ⅳ-80]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학습권 및 휴식권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교사)

[그림 Ⅳ-81]은 학생의 권리 중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를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얼마나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에 대한 중요도는 4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3.61점, 이에 대한 준비도는 3.25점인 것으로 드러나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가 비교적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급에 따라 분석해 보면, 학생의 해당 권리에 대해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 중요도(초등학교: 3.67, 중학교: 3.60, 고등학교: 3.56)와 준비도(초등학교: 3.37, 중학교: 3.22, 고등학교: 3.17)는 모두 학교급

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분석 결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중요도는 학교급과 관계없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준비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유의한 결과가 드러났는데,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3.43점)가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 학교(3.34점)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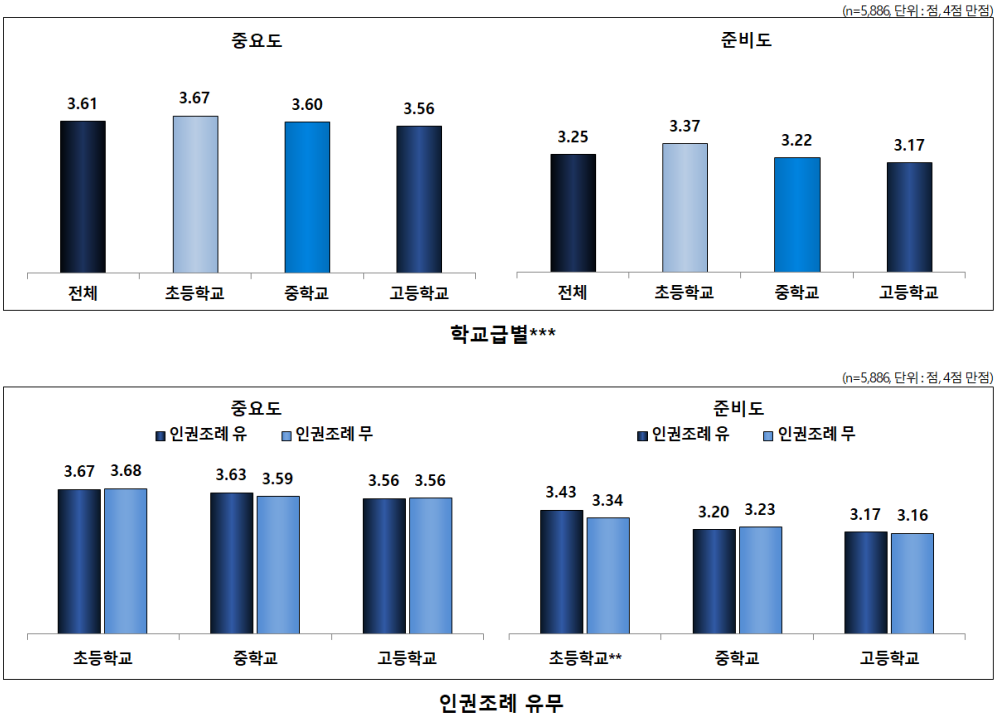

[그림 Ⅳ-81]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표현의 자유(교사)

[그림 Ⅳ-82]는 학생의 권리 중 '표현의 자유'를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도는 4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의 평균이 3.47점, 그리고 준비도는 3.20점으로 드러나 준비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교급에 따

른 분석 결과, ‘표현의 자유’ 중요도와 준비도는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았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도의 경우, 초등학교가 3.55점, 중학교가 3.45점, 고등학교에서 3.41점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준비도는 초등학교 3.32점, 중학교 3.18점, 고등학교 3.10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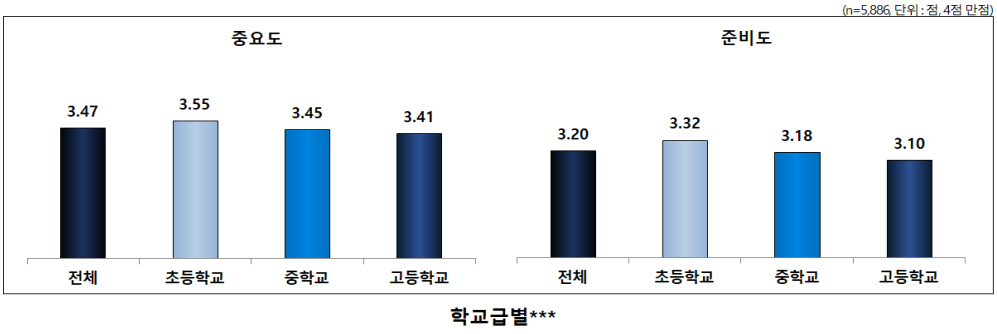

[그림 Ⅳ-82]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표현의 자유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자치 및 참여의 권리(교사)

[그림 Ⅳ-83]의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권리 중 ‘자치 및 참여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 권리에 대해 어느 정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한 결과,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대한 중요도는 4점을 만점으로 할 때, 전체 평균이 3.57점, 준비도의 경우는 3.24점으로 나타나 준비도가 중요도와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학교급에 따른 ‘자치 및 참여의 권리’에 관한 중요도(초등학교: 3.63, 중학교: 3.56, 고등학교: 3.51)와 준비도(초등학교: 3.35, 중학교: 3.21, 고등학교: 3.16)를 들여다보면, 양쪽 모두에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인권조례 유무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자치 및 참여의 권리’의 중요도는 중학교(인권조례 있음: 3.59, 인권조례 없음: 3.54)에서만, 준비도는 초등학교(인권조례 있음: 3.41, 인권조례 없음: 3.3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가 인권조례 비 제정 지역의 학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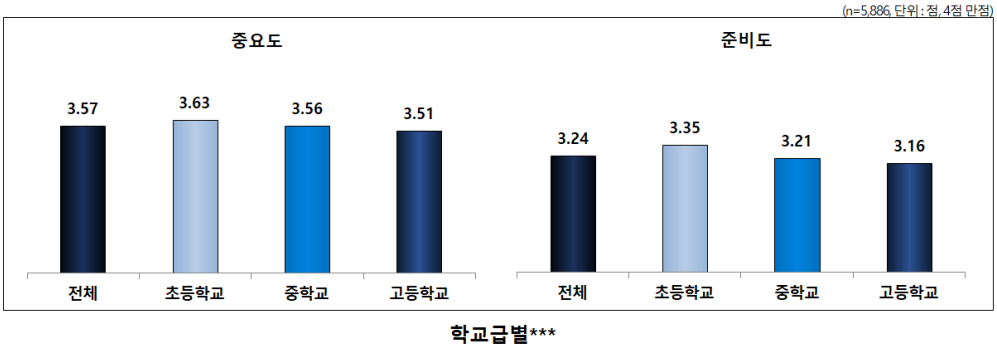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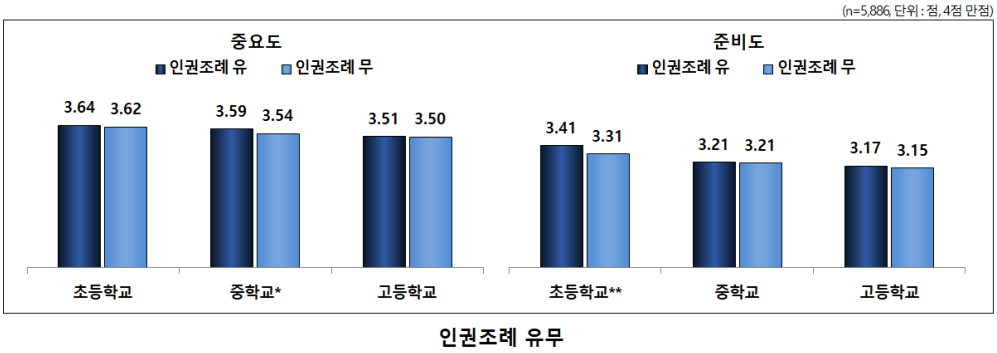

[그림 Ⅳ-83]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자치 및 참여의 권리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복지에 관한 권리(교사)

[그림 Ⅳ-84]는 학생의 권리 중 '복지에 관한 권리'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복지에 관한 권리'에 대한 중요도는 4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평균이 3.51점, 준비도는 전체 평균 3.15점으로 드러났다. 바꾸어 말하면,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교사가 인지한 '복지에 관한 권리'중요도와 준비도를 들여다보면, 모두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복지에 관한 권리'의 중요도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는 3.58점, 중학교는 3.50점, 고등학교에서는 3.45점을 보였다. 해당 권리에 관한 준비도 측면에서는 초등학교가 3.25점, 중학교는 3.12점, 고등학교 3.07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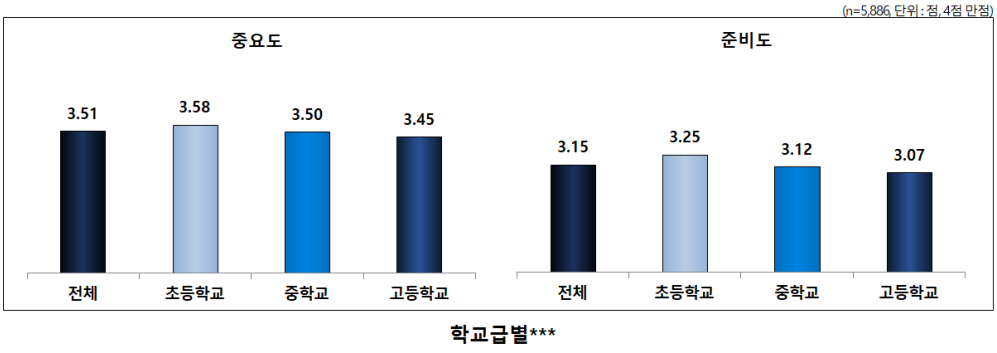

[그림 Ⅳ-84]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복지에 관한 권리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교사)

[그림 Ⅳ-85]는 학생 권리 중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를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에 대해 교사가 인식한 중요도는 전체 평균이 4점 만점을 기준으로 3.59점, 이를 가르칠 준비도는 3.19점으로 나타나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급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에 관한 중요도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초등학교: 3.64, 중학교: 3.60, 고등학교: 3.55),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반면, 준비도는 학교급에 따른 결과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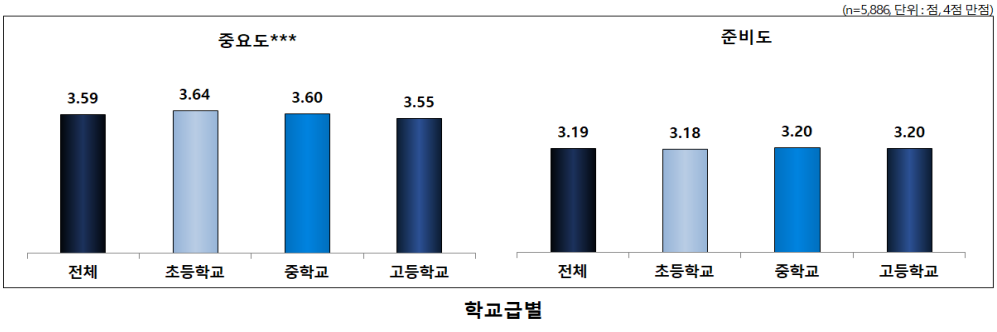

[그림 Ⅳ-85]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교사)

[그림 Ⅳ-86]은 학생의 권리 중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관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가르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 평균이 4점 만점 중에서 3.60점, 준비도의 경우는 3.20점으로 드러나 중요도에 비해 준비도가 다소 부족한 편으로 나왔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중요도(초등학교: 3.67, 중학교: 3.59, 고등학교: 3.54)와 준비도(초등학교: 3.29, 중학교: 3.17, 고등학교: 3.14)는 모두 학교급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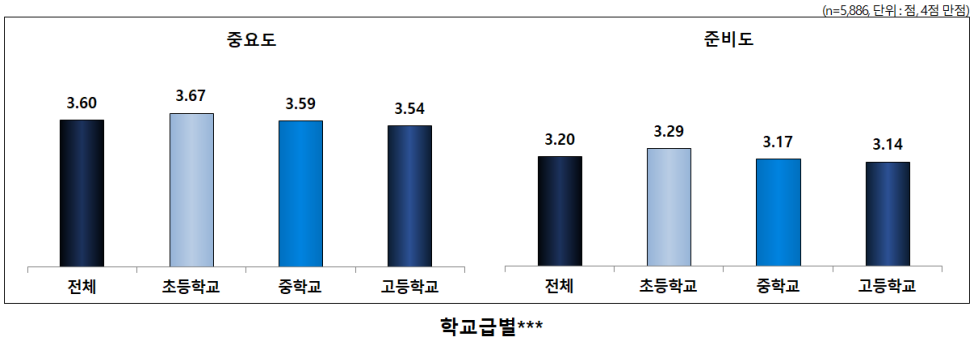

[그림 Ⅳ-86]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교사)

[그림 Ⅳ-87]은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권리 중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 권리에 대해 가르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한 중요도는 전체 평균은 4점 만점에 3.61점, 이를 가르칠 준비도의 전체 평균은 3.20점으로 나타나 준비도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한편, 학교급에 따른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중요도와 준비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낮았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권리의 중요도는 초등학교에서 3.65점, 중학교 3.63점, 고등

학교가 3.55점을 기록하였다. 또한 준비도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3.32점, 중학교에서 3.16점, 고등학교 3.10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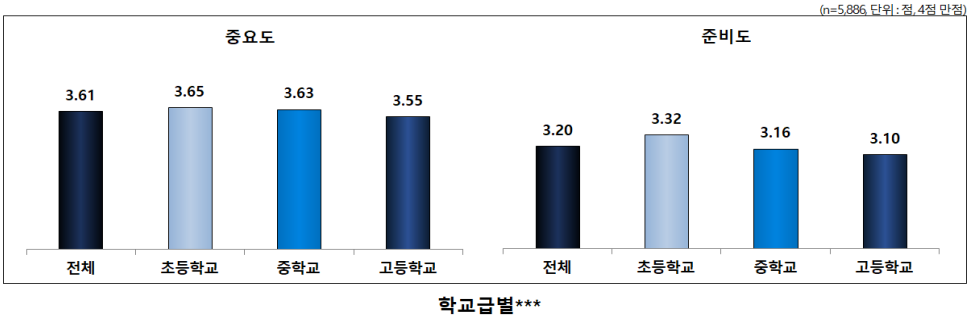

[그림 Ⅳ-87]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나. 교사 전문성 개발

□ 인권 관련 교육 경험: 양성과정(교사)

[그림 Ⅳ-88]은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설문에 응답한 전체 교사의 48.3%가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학교급별에 따라서는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51.6, 중학교: 46.4, 고등학교: 46.7) 순으로 교사의 인권 관련 교육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p<.01$ 수준에서 차이가 유의하였다. 한편, 교사의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경험한 비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에 관계없이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 있는 20대 교사의 경우 66.3%를 기록해 다른 모든 수치들과 비교해 높은 모습을 보였다. 다만, 중학교에서는 30대(53.5%)가 20대(53.0%)보다 근소하게 높은 비율을 드러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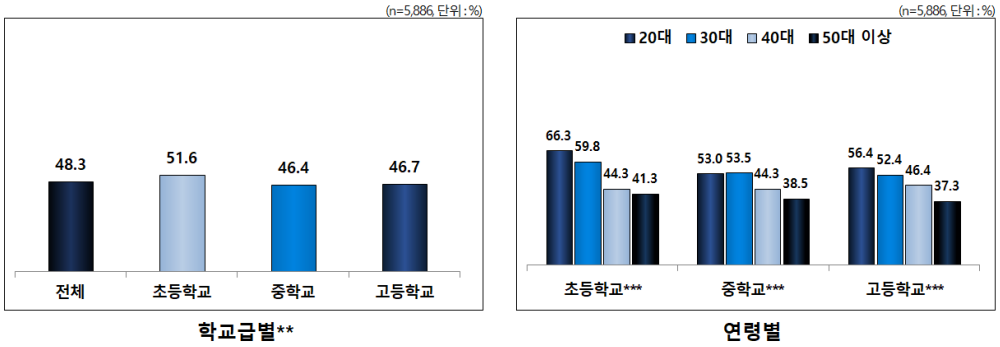

[그림 Ⅳ-88] 인권 관련 교육 경험: 양성과정

□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교사 임용 후(교사)

[그림 Ⅳ-89]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응답 교사 전체의 52.3%가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수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 있어서 차이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학교(20대: 25.0, 30대: 53.1, 40대: 56.9, 50대 이상: 59.2)와 고등학교(20대: 35.5, 30대: 47.2, 40대: 53.9, 50대 이상: 56.5)의 경우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사의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연령 증가에 따라 교사의 연수 참여 경험 비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50대 이상에서 하락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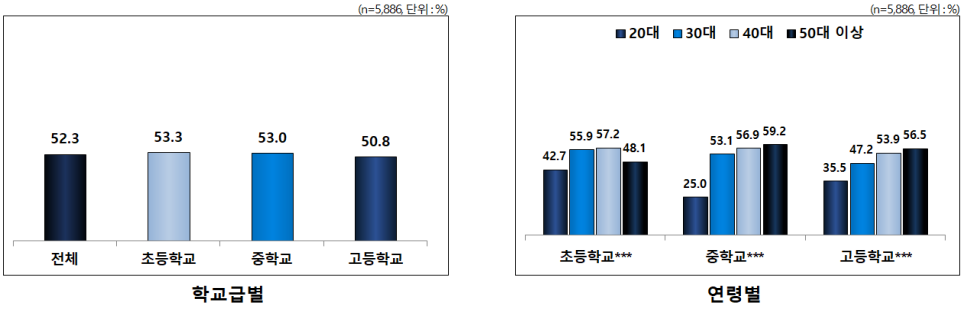

[그림 Ⅳ-89]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교사 임용 후)

□ 인권교육 관련 연수 주제: 교사 임용 후(교사)

[그림 Ⅳ-90]은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서 다룬 주제를 조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사 임용 후 받은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서 다룬 주제는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이 응답 교사 전체의 9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이 97.7%로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과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같은 결과는 학교급에 따른 분석에서도 이어졌다. 단,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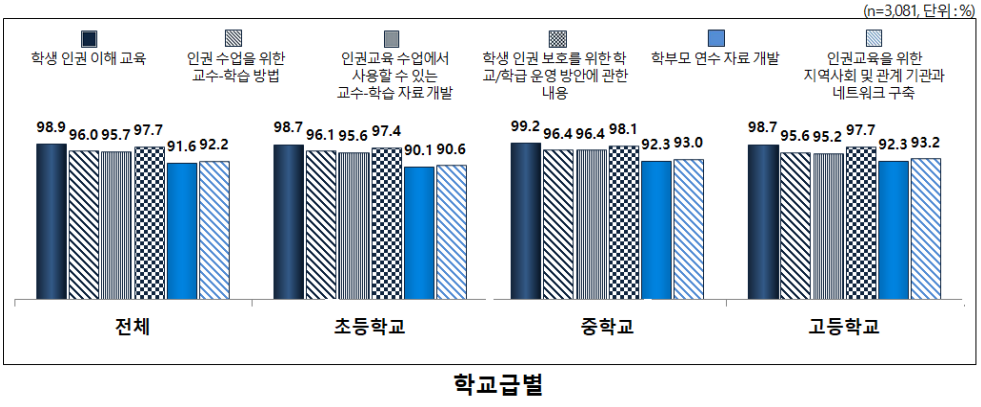

[그림 Ⅳ-90] 인권교육 관련 연수 주제: 교사 임용 후

□ 인권교육 관련 연수 도움 정도: 교사 임용 후(교사)

[그림 Ⅳ-91]은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연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교사 임용 후 받은 인권교육 관련 연수의 도움정도는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이 4점 만점에 전체 평균 3.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이 2.91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은 2.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

과에서도 비슷했다. 다만, 이들 연수 중에서 분석 결과 중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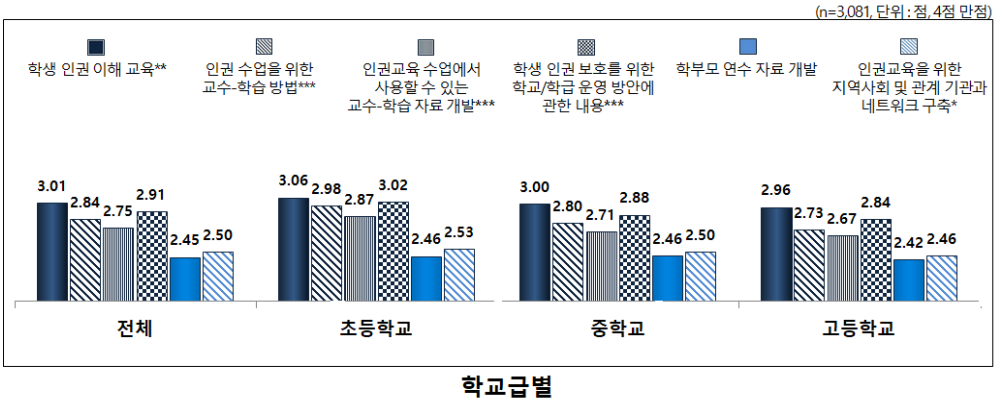

[그림 Ⅳ-91] 인권교육 관련 연수 수강 경험: 도움 정도

□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15시간 이상) 경험(교사)

[그림 Ⅳ-92]는 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본 것이다. 분석한 결과, 응답한 교사 전체의 24.9%가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수강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사의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15시간 이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인권조례의 유무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있는 학교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학교와 비교해 더욱 높은 비중을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인권조례 제정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24.4%, 그렇지 않은 지역 학교에서는 19.6%를 기록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양상도 초등학교와 비슷했는데, 중학교는 전자가 29.7%, 후자가 24.1%를 보였고, 고등학교는 각각 30.1%와 24.0%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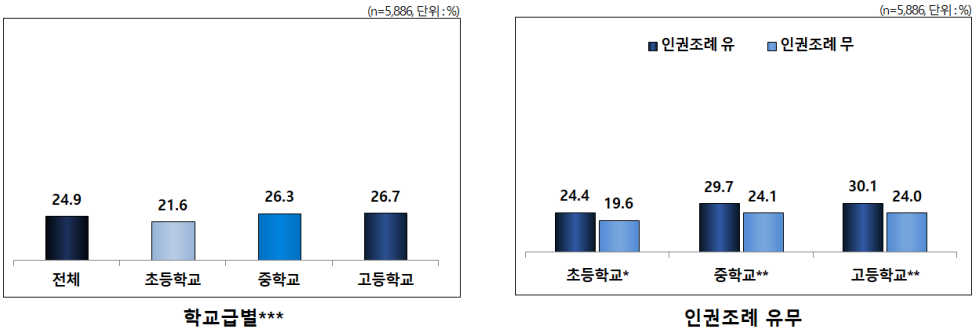

[그림 Ⅳ-92]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 최근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횟수(교사)

[그림 Ⅳ-93]은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횟수를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교사의 최근 1년간 받은 인권교육 관련 연수 횟수 평균은 2.0회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균 횟수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연수 횟수를 들여다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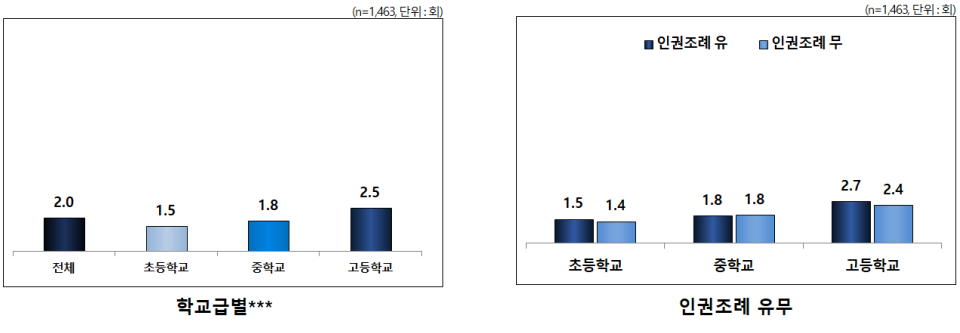

[그림 Ⅳ-93]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횟수

□ 최근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총 시간(교사)

[그림 Ⅳ-94]는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총 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응답 교사의 총 연수 시간 평균은 20.3시간이었고, 학교급을 기준으로 볼 때 고등학교-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20.1, 중학교: 19.5, 고등학교: 21.2) 순으로 평균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권조례 제정 지역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연수 총 시간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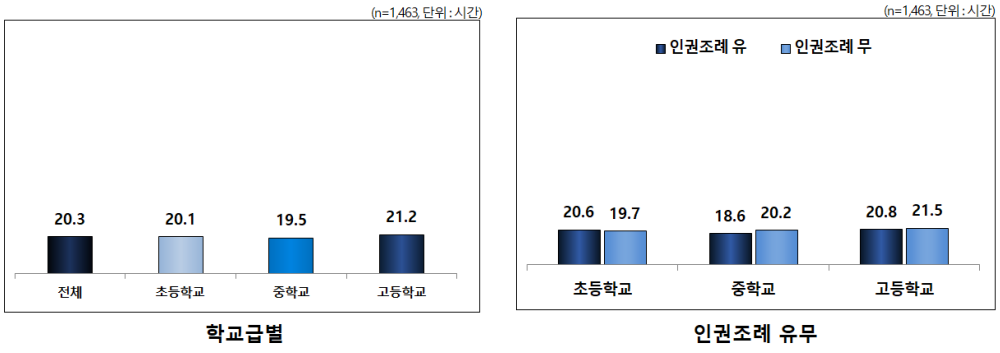

[그림 Ⅳ-94]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총 시간

□ 최근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실시 주체(교사)

[그림 Ⅳ-95]는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참여한 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수강한 교사들이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의 실시 주체는 '교육청(교육부)'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 학교'가 38.2%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드러났는데, 학교급별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참고로 '기타' 응답으로는 '사이버 연수기관', '개인 자율연수'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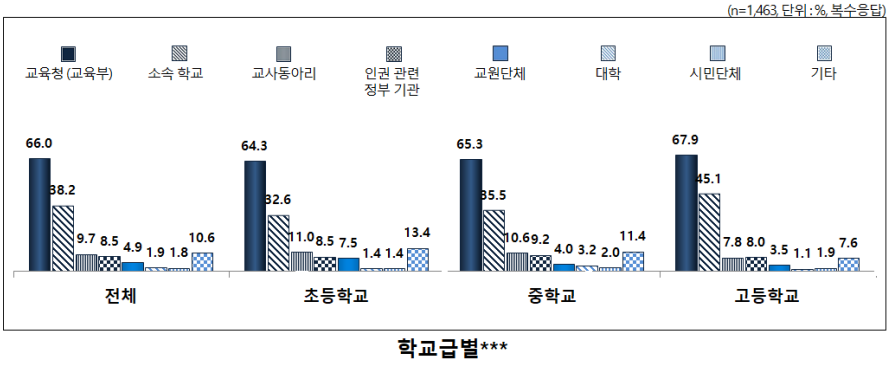

[그림 Ⅳ-95]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실시 주체

□ 최근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형태(교사)

[그림 Ⅳ-96]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들에게 참여한 인권교육 연수의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수강한 교사들이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방법 중 '원격 연수'가 86.7%로 전체 답변 중 압도적으로 높았고, '출석(오프라인)'이 31.5%로 다음 순위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급별로 이를 살펴보면 전체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 그대로 이어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원격 연수'(91.3%)가, 고등학교에서는 '출석(오프라인)'(38.6%)이 다른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현장답사', '소모임, 워크숍' 등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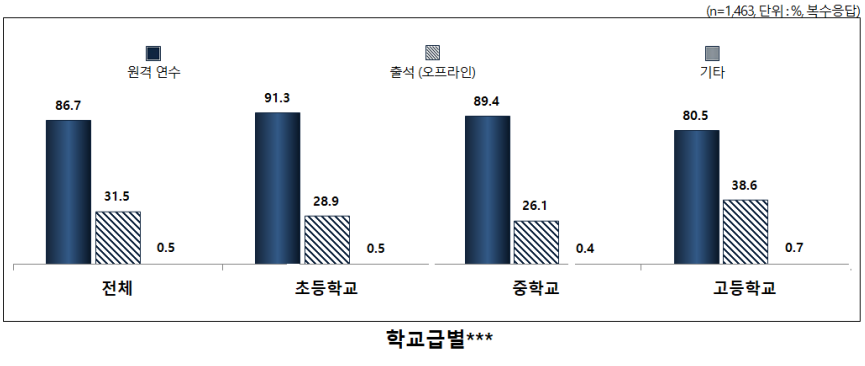

[그림 Ⅳ-96]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형태

□ 최근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교사)

[그림 Ⅳ-97]은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들에게 참여한 인권교육 연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교사들이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의 주요 내용은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이 8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이 41.7%로 그 뒤를 이었고,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28.4%),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17.1%),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7.2%),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4.1%), '기타'(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을 기준으로 살펴본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졌고, 차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기타' 응답으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아동학대, 성범죄, 노동 착취 등 학교외 인권침해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 교육' 등이 존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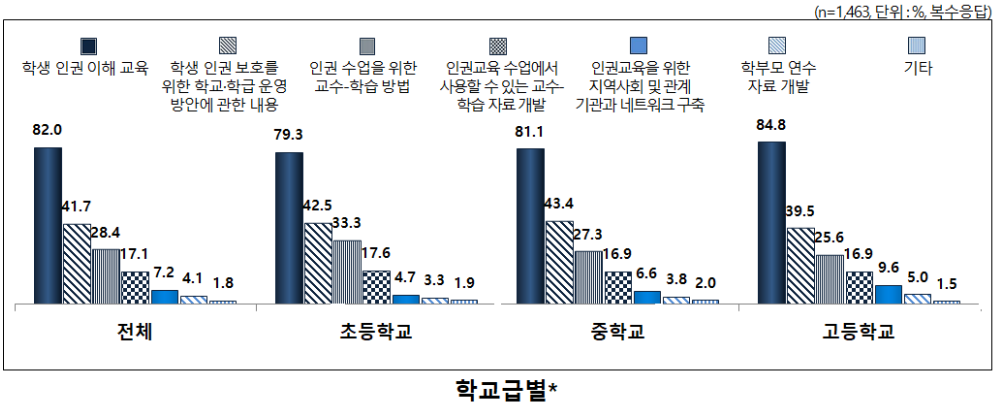

[그림 Ⅳ-97]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

□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교사)

[그림 Ⅳ-98]은 교사를 대상으로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하여 조사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사 전체의 83.9%가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두 학교급 모두 40대 교사의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비율이 제일 높았다. 초등학교는 40대(86.8%), 50대 이상(84.5%), 20대(82.4%), 30대(80.7%)의 순으로 높게 드러났고, 중학교의 경우 40대(86.3%), 50대 이상(85.7%), 30대(79.5%), 그리고 20대(78.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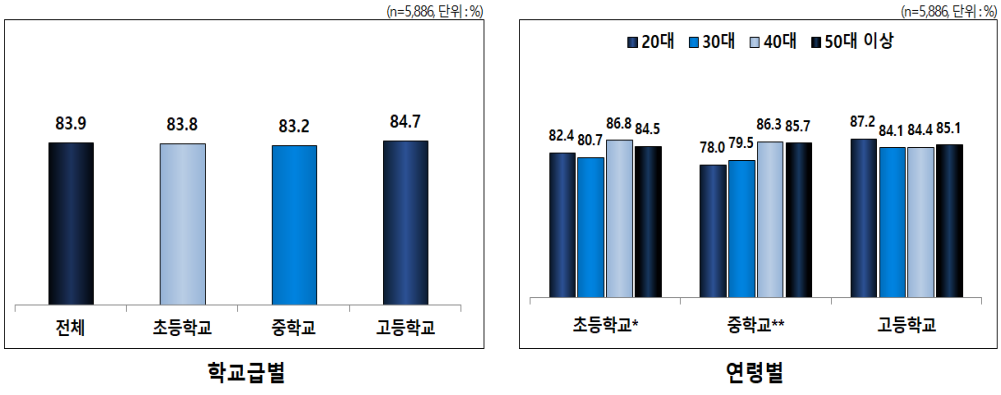

[그림 Ⅳ-98]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6 지원 및 개선을 위한 요구

□ 인권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교사)

[그림 Ⅳ-99]는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은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49.0%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41.8%로 다음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인권교육 목표와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31.3%), '국가 수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부족'(27.1%), '학생의 관심 부족'(22.3%),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11.1%), '교사의 관심 부족'(10.1%), '학교장의 관심 부족'(4.0%), '기타'(2.3%)의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

에서도 위에서 살펴본 양상은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확보의 어려움'(50.4%)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학교급별 분석에서 드러난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기타'항목 에는 '교권을 무시한 학생 위주의 인권교육',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 부족', '학부모의 협력 부족' 등의 응답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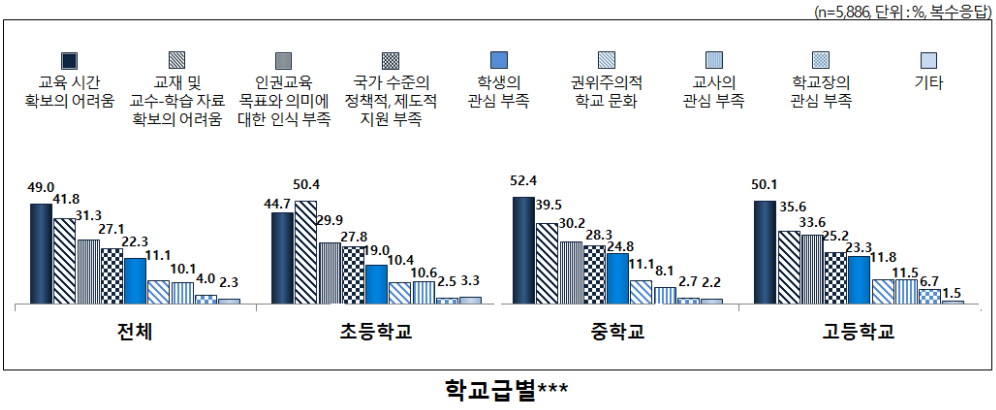

[그림 Ⅳ-99] 인권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

□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교사)

[그림 Ⅳ-100]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이다. 분석 결과, 교내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으로 '인권교육 시간 확보'가 응답 교사 전체의 36.7%로 가장 높았고,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의 개발, 보급'이 34.9%로 차순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39.6%)와 고등학교(41.4%)에서는 '인권교육 시간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의 개발, 보급'(4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참고로 '기타'에는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의식 교육', '교권 강화' 등의 응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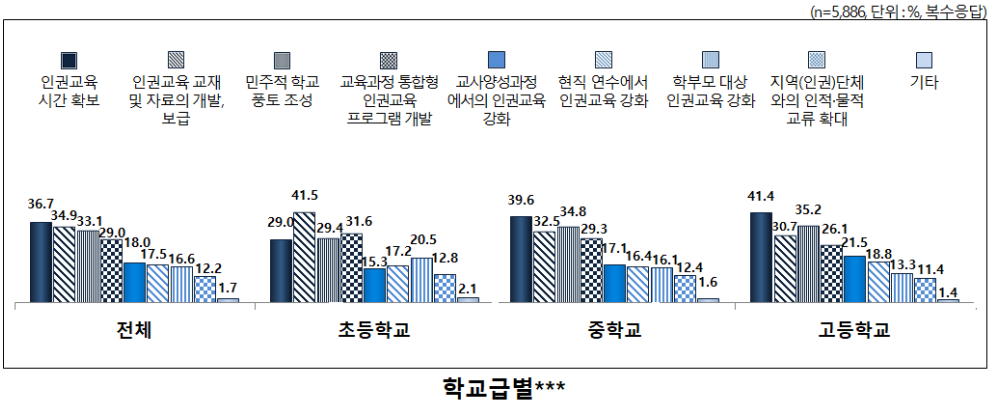

[그림 Ⅳ-100]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학생)

[그림 Ⅳ-101]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학교 측 노력은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확대한다'(24.6%)가 가장 높았고,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21.7%)가 다음 순위였다. 이를 학교급에 따라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26.5%), 중학교에서는 '학생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확대한다'(25.9%),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22.3%)가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와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기타'에는 '흥미로운 교육 위주였으면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한다', '인권침해 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등의 응답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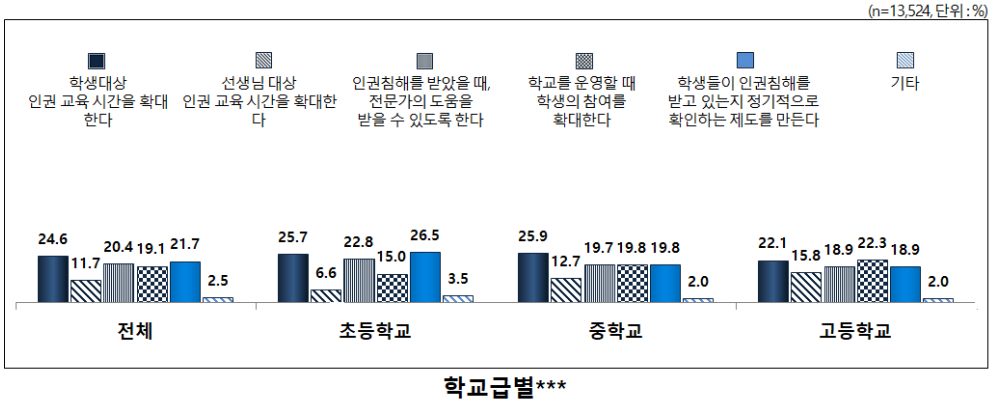

[그림 Ⅳ-101]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학생)

□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 요구(교사)

[그림 Ⅳ-102]는 교사들에게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인권교육 관련 연수 추가 필요 사항으로 응답 교사 전체의 48.4%가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이 44.7%로 높았다. 한편, 학교급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체 응답에서 드러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53.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항목은 '학생 인권 이해 교육'(46.2%)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기타' 응답으로는 '교사인권 존중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 교육',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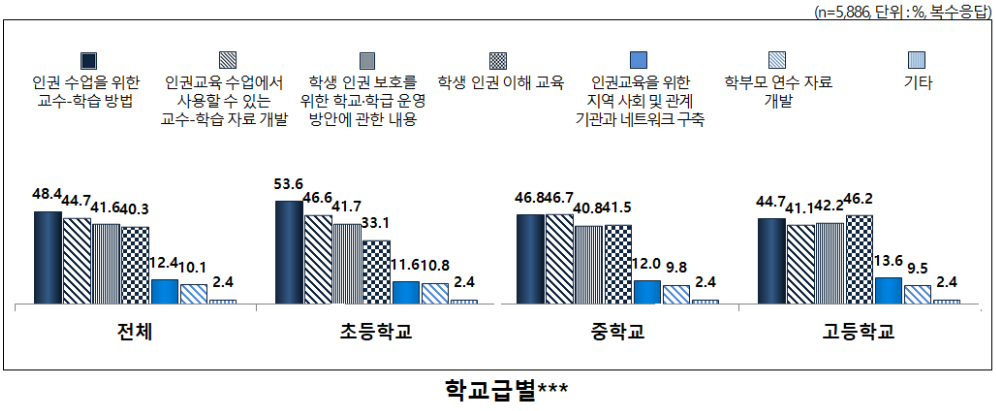

[그림 Ⅳ-102]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 요구

□ 인권 구제 제도 인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사)

[그림 Ⅳ-103]은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과 같은 인권조례 제정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구제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교사들의 학생 '인권 구제 제도' 인지도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의 평균이 2.63점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들여다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결과의 차이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도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20대(2.45점), 30대(2.58점), 40대(2.67점), 그리고 50대 이상(2.96점)으로 드러나 50대 이상에서 유독 높은 값을 보였다. 중학교도 20대(2.44점), 30대(2.57점), 40대(2.64점), 50대 이상(2.83점)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유사한 양상이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20대(2.52점)가 30대(2.45점)보다 높아서 전술한 두 학교급의 결과 양상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에서 학교급에 관계없이 50대 이상의 교사들의 '인권 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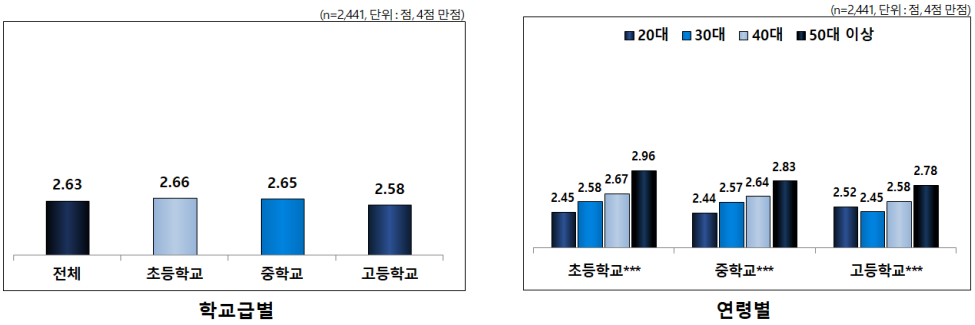

[그림 Ⅳ-103] 인권 구제 제도 인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

□ 인권 구제 제도 도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사)

[그림 Ⅳ-104]는 인권조례 제정 지역 교사들에게 '인권 구제 제도'가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기는지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 해당 교사들이 받아들이는 학생 '인권 구제 제도'의 도움 정도는 전체 평균이 4점 만점에 2.91점으로 나타났고, 학교급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2.97점), 중학교(2.90점), 고등학교(2.86점)의 순이었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일관된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50대 이상(3.22점) 교사와 중학교 50대 이상(3.04점)의 교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20대 교사가 3.15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드러내 차별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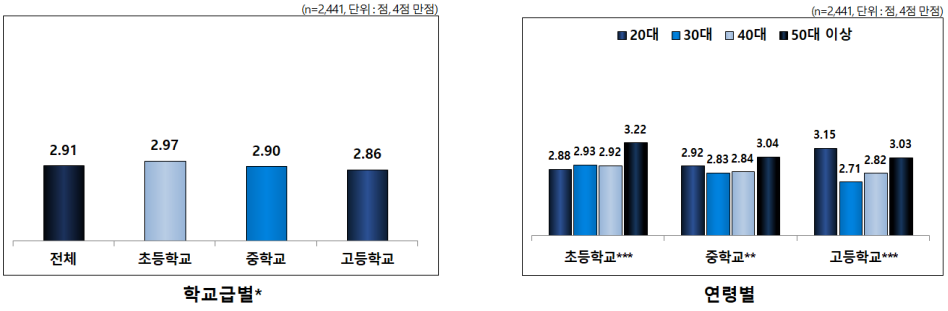

[그림 Ⅳ-104] 인권 구제 제도 도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

□ 인권조례 효과: 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사)

[그림 Ⅳ-105]는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등과 같은 인권조례 제정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더 잘 보장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4점 만점에 응답 교사 전체의 평균은 3.1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3.15, 중학교: 3.12, 고등학교: 3.14)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차이가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초등학교는 20대(3.05점), 30대(3.13점), 40대(3.11점), 50대 이상(3.34점) 등으로 나타났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20대(3.19점), 30대(2.97점), 40대(3.16점), 50대 이상(3.30점) 등으로 확인이 되었고,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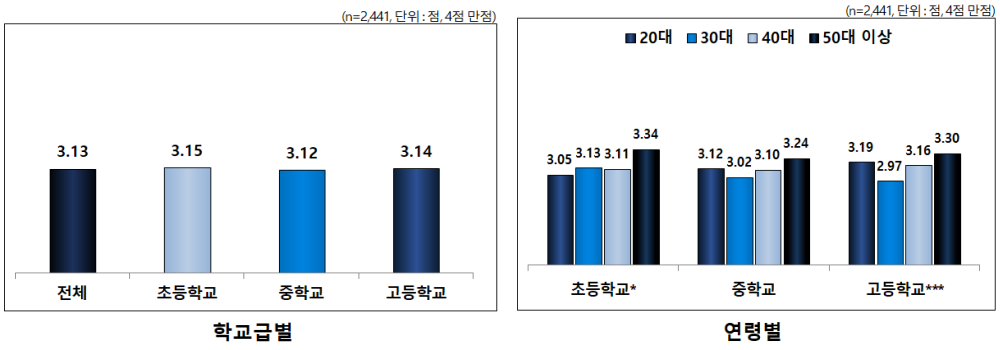

[그림 Ⅳ-105] 인권조례 효과: 인권조례 제정 지역

□ 인권 조례 필요 여부: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그림 Ⅳ-106]은 서울, 광주, 경기, 전북을 제외한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에 따른 결과에서는 초등학교-고등학교-중학교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연령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초등학교는 50대 이상(3.00점),

40대(2.91점), 20대(2.90점), 30대(2.79점)의 순위를 보이고 있고,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였다. 중학교 역시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50대(2.93점), 40대(2.88점), 20대(2.84점), 30대(2.76점) 순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동일한 연령별 순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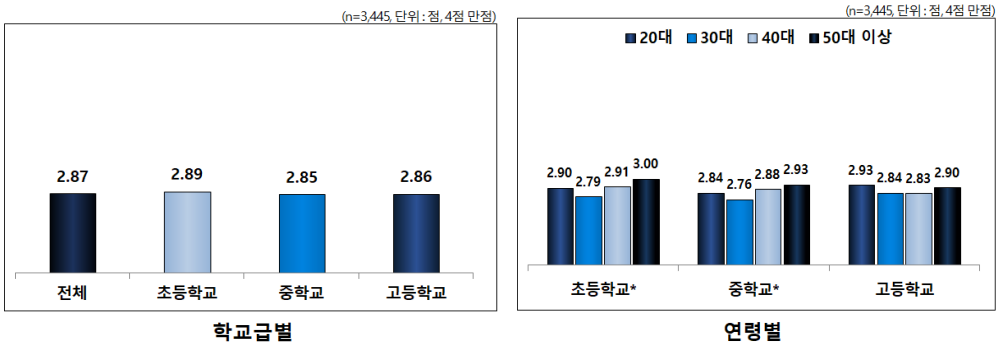

[그림 Ⅳ-106] 인권조례 필요 여부: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7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학교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교육 시간, 계획 수립 방법, 교수-학습 방법, 수업 만족도 등), 학교 내 학생들의 인권보호 실태(차별, 사생활 보호,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등)는 어떠한지, 교사, 학생의 인권의식은 어떠한지(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교사의 전문성 정도(수업 준비도, 연수 경험, 도움 정도 등)는 어떠한지,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와 학생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 간 인권보호 풍토의 차이와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의 인권현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실천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교육 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립된 주제로 반영하기보다 유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반영하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교육 계획수립 시 인권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전체: 89.7%, 초등: 92.2%, 중학교: 84.5%, 고등학교: 92.1%)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계획서에 반영하는 형태에 있어 독립된 교육프로그램으로 반영하고 있는 학교는 30.5%(초등: 29.8%, 중학교: 36.6%, 고등학교: 25.8%)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유관 교육프로그램(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었다.

인권교육은 교과수업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보다 생활지도(조회·종례, 상담 등) 시간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 보다 인권수업 시간이 많다.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간 인권교육 시간을 조사한 결과 생활지도 시간이 가장 많았으며(전체: 8.7, 초등학교: 10.8, 중학교: 8.0, 고등학교: 7.0), 다음으로, 교과수업 시간(전체: 7.4, 초등학교: 9.1, 중학교: 5.9, 고등학교: 6.3),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전체: 5.5, 초등학교: 6.0, 중학교: 5.1, 고등학교: 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 가지 교육활동 시간의 합산한 결과 초등학교 25.9시간, 중학교 19시간, 고등학교 13.6시간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교교육 계획서에 반영된 인권 교육과정 구성과 내용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인식하였다.

인권 교육과정 구성 시 목표, 내용 체계, 시간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전체: 2.97, 초등학교: 3.12, 중학교: 2.94, 고등학교: 2.87)으로 평가하였으며,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지식,

비판적 사고, 사회 참여 의식 함양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2.98, 초등학교: 3.11, 중학교: 2.98, 고등학교: 2.87) 인식하였다.

□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조사 참여 학생 중 33.2%는 자신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10가지 인권 영역별 인권교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의 차이가 컸으며,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7.9%(초등학교: 62.8, 중학교: 57.2, 고등학교: 53.9)는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33.2%는 자신이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별도의 인권교과가 없이 이루어지는 현재 교육 방법이 반영될 결과로 이해되지만, 인권교육의 의미와 방향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권리영역별 인권 수업 유무를 조사한 결과 폭력/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는 82.2% 학생이 관련 수업을 받았지만,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권리에 관해서는 64.5%만이 관련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수업 방법에 있어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수업 방법을 조사한 결과 설명식 수업을 자주 활용하는 정도 67.1%, 토론식 33.6%, 모둠활동 51.3%, 프로젝트(문제해결식) 51.2%로 여전히 설명식 수업 활용 정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권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체득할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이 학생의 지식 이해와 태도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수업 방법, 내용 이해, 자료 활동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 간 인권 수업 만족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학생 대상 조사 결과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관련 지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전체: 3.36, 초등학교: 3.47, 중학교: 3.26, 고등학교: 3.29), 태도 변화에도 도움을 주었다고(전체: 3.42, 초등학교: 3.51, 중학교: 3.36, 고등학교: 3.37) 평가하였지만, 수업의 흥미, 이해도, 자료 활동 등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전체: 2.97, 초등학교: 3.08, 중학교: 2.90, 고등학교: 2.90). 더불어 학교 간 수업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최솟값 2.25점, 최댓값 3.60점으로 학교 간 수업 만족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인권보호 풍토

초등학교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호되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보호 정도는 낮아진다. 중등학교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10가지 인권 영역별 인권보호 정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평균 3.20~3.45점 사이로 어느 정도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의 경우 인권 영역별 2.78~3.32점으로 초등보다 낮았으며, 고등학교 역시 2.82~3.23점 사이로 전반적으로 10가지 인권 영역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보호 정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등학교 급에서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중학교: 2.78, 고등학교: 2.82), 표현의 자유(중학교: 2.95, 고등학교: 2.90), 자치 및 참여 권리(중학교: 2.97, 고등학교: 2.90)의 보호 정도는 3점 미만으로 향후 이들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구(선배)간 권리보호 정도는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권리보호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에 의한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학생 간 권리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친구(선배)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초등학교: 3.37, 중학교: 3.16, 고등학교: 3.15),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초등학교: 3.03, 중학교: 2.99, 고등학교: 3.07) 사생활의 자

유와 비밀 보장(초등학교: 3.41, 중학교: 3.21, 고등학교: 3.24)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중학교급의 인권 보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권리보호 정도가 가장 낮았다.

▢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진다. 반면, 친구(선배)로부터 인권침해 경험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최근 1년간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8.7%, 중학생 15.6%, 고등학생 16.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침해 경험 비율 역시 높아졌다. 반면, 친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은 초등학생 10.7%, 중학생 8.6%, 고등학생 7.4% 순으로 낮아졌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차별 관련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높다.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침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차별 관련 침해 비율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46.9%,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35.2%, 사생활 침해 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부모,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다.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 중 42.7%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에게 상담을 한 학생이 23.7%로 많았다. 반면, 부모님(18.7%)과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1.1%에 불과하였다.

▢ 인권보호 풍토에 대한 교사 학생 간 인식 차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보호 정도와 학생이 인식하는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다. 이는 교사-학생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의 인권 영역별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보호 정도와 학생이 인식하는 인권보호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크다. 차별 받지 않을 권리(교사: 3.7, 학생: 3.1),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교사: 3.7, 학생: 3.1),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교사: 3.5, 학생: 3.0), 표현의 자유(교사: 3.5, 학생: 3.1) 등 주요 인권 영역별 교사와 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교사 전문성

교사들은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업에 대한 준비도는 중요도만큼 높지 않았다. 인권 중요도 및 수업 준비도 면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 고등학교 교사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르칠 준비도 역시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권 영역별 중요도 인식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3.77점(초등학교: 3.82, 중학교: 3.76, 고등학교: 3.70)으로 가장 높았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3.47점(초등학교: 3.55, 중학교: 3.45, 고등학교: 3.41)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에 대한 권리에 대해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 수준은 3.15점(초등학교: 3.25, 중학교: 3.12, 고등학교: 3.07)로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영역은 대체로 3.20점 정도의 준비도 수준을 보였다.

학교급별 특징을 볼 때 초등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학생인권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준비도 역시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양성 단계 및 현직에서의 인권 관련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 방법, 학급 운영 방안 등 실천적인 연수에 대한 요구가 높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48.3%(초등학교: 51.6 중학교: 46.4, 고등학교: 46.7)로 절반을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사 임용 후 인권 관련 연수를 받은 교사의 비율 역시 52.3%(초등학교: 53.3, 중학교: 53.0, 고등학교: 50.8)로 절반가량의 교사만이 현직 연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 연수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48.4%의 교사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수-학습 자료 개발(44.7%),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 및 학급 운영 방안(41.6%) 순으로 연구 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인권 연수 내용은 지식으로서 인권 이해 교육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법, 네트워크 구축 방법,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수가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연구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1년간 참여한 인권 관련 연수에서 다루어진 주제를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이 8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41.7%), 교수-학습 방법(28.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4.1%), 지역사회 연계 방안(7.2%), 교수-학습 자료 개발(17.1%) 순으로 해당 주제들이 연수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수 결과 학생인권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평균: 3.01), 교수-학습 방법에 도움이 된 정도는 2.84점,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도움이 된 정도는 2.75점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

교사들은 시간 확보의 어려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목표와 의미에 대한 공유 부재로 인해 인권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시간 확보, 교수-학습 자료 보급,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교사들은 인권교육을 실천의 어려움으로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49.9%)을 첫 번째로 뽑았으며, 다음으로 교수-학습 자료 확보의 어려움(41.8%), 인권교육 목표 및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31.3%), 국가 수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부족(27.1%)이라 인식하였다. 더불어,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인권교육 시간 확보(36.7%), 교수-학습 자료 보급(34.9%),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33.1%),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29.0%)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Ⅴ.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분석

1. 서론
2.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류
3. 학교특성별 학교유형 분석
4.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 시사점

V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분석

1 서론

가. 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김자영·이로미·김진희, 2019),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 연구들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교 인권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구정화, 2012, 2016b, 2018; 구정화·박새롬, 2019; 이수경·정필운, 2018; 조태원, 2010),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도 적지 않다(설양환 외, 2016; 이정연 외, 2018). 그러나 단위학교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만족도에 대한 파악이나,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인권보호 정도만을 파악하고 학교풍토가 얼마나 인권친화적인지를 점검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인권실태를 조사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분석 단위를'학생'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설정하여 개인적 차원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김영지 외, 2016; 임희진·김현신, 2011),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 및 개선점 도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실태와 학교에서의 인권보호 정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우선,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구성·내용·방법 등 질(quality)에 대한 인식과 학생들의 인권교육 만족도를, 학교풍토와 관련해서는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와 더불어 학교장 리더십이 얼마나 인권친화적인지 등을 투입하여 학교를 유형화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분류된 학교유형별로 학교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학교특성에 따라 학교유형 분포에도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교특성으로는 학교의 고정요인인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과 학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취약집단 비율과, 인권 관련 정책요인인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와 혁신학교 여부[7]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개선과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내용

1)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류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실태 및 인권보호 실태 및 인권친화적 학교 풍토 수준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적용하여 학교를 유형화한다. 학교유형분석을 위해,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별 학교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인권친화적 교장리더십 변수를 투입한다.

2) 학교유형과 학교특성 간 교차분석

학교유형별 학교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유형에 따라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취약집단 비율,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학교특성에 따라 학교유형이 분포하는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한다.

3)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교특성 중 고정적 특성인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취약집단 비율과, 인권 관련 정책특성인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

7)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과 공공성', '자율과 창의', '자발과 참여', '소통과 협력'과 더불어, '인권과 평화'의 기본 정신 아래, 인권, 생명 존중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추구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다.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학교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102개교의 학생 4,374명, 교사 1,971명, 중학교 98개교의 학생 4,647명, 교사 1,893명, 고등학교 101개교의 학생 4,503명, 교사 2,022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학교별로 통합(aggregation)하여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학교별 학생과 교사의 응답은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여 학교수준의 변수로 변환하였으며, 총 301개 학교의 학교특성, 인권교육, 학교에서의 인권보호 정도, 학교장 리더십에 관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V-1〉 분석대상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 현황

학교급	지역규모	설립유형	분석대상		
			학교 수	학생 수	교사 수
초등학교	특별광역시	국 · 공립	31	1,319	646
		사립	1	50	16
	중소도시	국 · 공립	28	1,228	544
		사립	1	50	23
	군 · 읍 · 면지역	국 · 공립	41	1,727	742
	소계		102	4,374	1,971
중학교	특별광역시	국 · 공립	25	1,186	533
		사립	8	441	160
	중소도시	국 · 공립	24	1,258	484
		사립	11	561	200
	군 · 읍 · 면지역	국 · 공립	25	1,023	439
		사립	5	178	77
	소계		98	4,647	1,893
고등학교	특별광역시	국 · 공립	20	966	435
		사립	21	992	442
	중소도시	국 · 공립	20	941	409
		사립	13	602	283
	군 · 읍 · 면지역	국 · 공립	18	654	291
		사립	9	348	162
	소계		101	4,503	2,022
계			301	13,524	5,886

2) 분석 변수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인권교육 관련 변수로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교사가 제공하는 인권교육의 질(교육과정 구성,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을, 인권실태 관련 변수로는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사-교사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지원간 인권보호 정도,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의 6개 요인을 투입하였다. 자세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Ⅴ-2〉와 같다.

〈표 Ⅴ-2〉 학교유형 분류에 투입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설명
인권교육	교사관련	인권교육의 질	301	3.01	.21	교사가 응답한 9개 문항의 평균 점수, 4점 척도 (예: 우리학교는 학년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등)
	학생관련	인권교육 만족도	301	2.95	.22	학생이 응답한 6개 문항의 평균 점수, 4점 척도 (예: 인권 수업 방법은 재미있었다, 일상에서 경험한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등)
인권실태	학생관련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301	3.12	.25	학생이 응답한 17개 문항의 평균 점수, 4점 척도 (예: 우리학교는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등)
		학생-학생간 인권보호정도	301	3.19	.21	학생이 응답한 7개 문항의 평균 점수, 4점 척도 (예: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등)
	교사관련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301	3.54	.25	교사가 응답한 7개 문항의 평균 점수, 4점 척도 (예: 우리 학교(교직원)는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등)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	301	3.51	.32	교사가 응답한 5개 문항의 평균 점수, 4점 척도 (예: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교사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등)

3) 분석 모형

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수준에 따른 학교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의 혼합모형기법(Mixture Modeling Technique)을 활용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계층 수를 2개부터 6개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모형을 검증하였다.

나)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x2) 검정

학교특성별 학교유형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카이제곱(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

학교유형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다. 1개 유형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유형에 속할 확률을 종속변수로 한다. 독립변수로는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취약집단 비율,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를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라.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학교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연구 자료를 학교급별로 분할하지 않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급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학령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Wade, 1994; 김자영, 2012, pp.45-46에서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 수준이 아닌 학교 수준에서의 유형화 분석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표본 수(200개 이상)(Muthén & Muthén, 2002;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분류

단위학교의 인권교육의 질 및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정도 및 학교장 리더십의 인권친화성 수준에 따라 학교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한 집단 내의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잠재계층을 구분해주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신택수, 2010; 홍세희·노언경, 2013). 혼합모형기법(Mixture Modeling Technique)을 적용하여 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검증한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모형 결정 기준으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SA-BIC (sample-size adjusted BIC) 값과 Entropy 지수, LMR(Lo, Mendell, and Rubin test)과 BLRT(bootstrapped log-likelihood ratio tests) 값을 사용하였다[8]. AIC, BIC, SSA-BIC는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Entropy 지수 역시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1에 가까워지고 있다. LMR과 BLRT 검증결과를 보면, BLRT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LMR의 경우에는 2집단과 5집단 모형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모든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AIC, BIC, SSA-BIC 값이 더 작고, Entropy 값이 더 크며, 동시에 LMR과 BLRT 값이 모두 유의한 5집단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정확한 계층분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결과, 계층1의 사후 확률은 .887, 계층2는 .829, 계층3은 .907, 계층4는 .905, 계층5는 .959로 모두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분류오차가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모형의 따라 분류된 5개 집단의 비율을 보면, 집단1은 전체의 22.3%(67개교), 집단2는 17.3%(52개교), 집단3은 35.2%(106개교), 집단4는 19.6%(59개교), 집단5는 5.6%(17개교)로 나타나 집단3에 속한 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집단1, 집단4, 집단2의 순이었으며, 집단5에 속한 학교가 가장 적었다.

8) AIC, BIC, SSA-BIC는 값이 작아질수록, Entropy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형이다. LMR과 BLRT 검증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은 k개 잠재계층모형이 k-1개 잠재계층모형보다 유의미하게 모형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선택하면 된다(Kreuter, Yan & Tourangeau, 2008; 신택수, 2010). 집단 분류 시 최소 비율은 5%를 기준으로 하였다(Jung & Wickrama, 2008).

〈표 Ⅴ-3〉 잠재계층 분류 적합도 지수

집단	AIC	BIC	SSA-BIC	LMR (p)	BLRT (p)	Entropy	집단 분류(%)					
							1	2	3	4	5	6
2	-364.144	-293.709	-353.966	.001	.000	.762	47.5	52.5	·	·	·	·
3	-531.260	-434.875	-517.332	.377	.000	.780	15.0	45.8	39.2	·	·	·
4	-640.410	-518.075	-622.733	.445	.000	.814	26.6	7.3	35.2	30.9	·	·
5	-723.841	-575.557	-702.414	.045	.000	.827	22.3	17.3	35.2	19.6	5.6	·
6	-791.082	-616.848	-765.905	.141	.000	.844	14.6	19.6	11.3	35.5	5.6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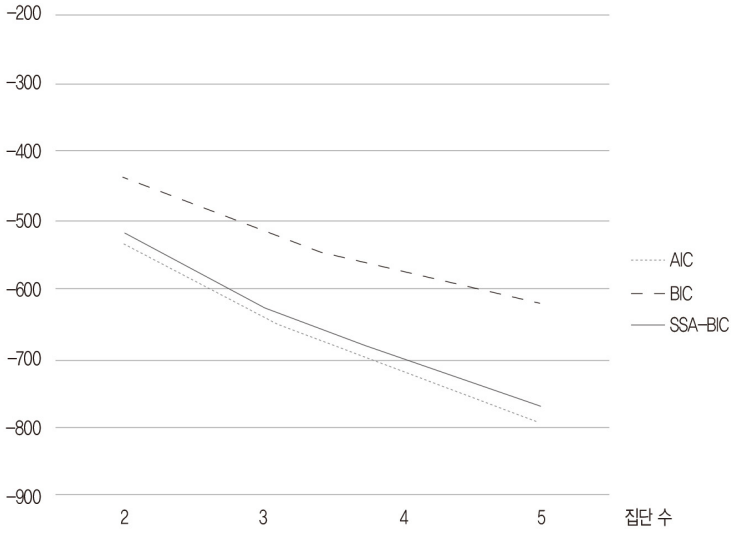

[그림 Ⅴ-1] 잠재계층 분류 적합도 지수 도표

먼저 유형별 학교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질은 유형1이 4점 만점에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형3(3.05점), 유형2(2.98점), 유형4(2.85점), 유형5(2.77점)의 순이었다. 학생의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유형1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형2(3.08점), 유형3(2.86점), 유형5(2.83점), 유형4(2.82점)의 순이었다. 학생과 관련한 학교 인권실태는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와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는 유형1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형2(3.25점), 유형3(3.05

점), 유형4(2.88점), 유형5(2.87점)의 순이었다.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는 유형1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형2(3.33점), 유형3(3.09점), 유형4(3.05점), 유형5(3.04점)의 순이었다. 교사와 관련한 학교 인권실태인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와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을 살펴보면,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는 유형1이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형3(3.66점), 유형2(3.43점), 유형4(3.36점), 유형5(2.88점)의 순이었다.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은 유형1이 3.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형3(3.68점), 유형2(3.33점), 유형4(3.26점), 유형5(2.77점)의 순이었다.

〈표 Ⅴ-4〉 유형별 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구분		항목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전체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점수
인권교육	교사 관련	인권교육의 질	3.18	2.98	3.05	2.85	2.77	3.01
			(.19)	(.18)	(.17)	(.15)	(.15)	(.21)
			.78	-.16	.20	-.77	-1.15	.00
	학생 관련	인권교육 만족도	3.15	3.08	2.86	2.82	2.83	2.95
			(.16)	(.15)	(.17)	(.15)	(.25)	(.22)
			.94	.60	-.45	-.63	-.58	.00
인권실태	학생 관련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3.40	3.25	3.05	2.88	2.87	3.12
			(.14)	(.14)	(.15)	(.18)	(.20)	(.25)
			1.14	.54	-.30	-.96	-1.01	.00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3.38	3.33	3.09	3.05	3.04	3.19
			(.17)	(.14)	(.15)	(.15)	(.14)	(.21)
			.94	.70	-.46	-.64	-.73	.00
	교사 관련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3.76	3.43	3.66	3.36	2.88	3.54
			(.09)	(.12)	(.12)	(.13)	(.21)	(.25)
			.87	-.43	.48	-.72	-2.60	.00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	3.77	3.33	3.68	3.26	2.77	3.51
			(.11)	(.23)	(.13)	(.20)	(.26)	(.32)
			.83	-.56	.54	-.76	-2.30	.00

유형별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평균을 0으로 하고 표준편차를 1로 하는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유형1은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관련 모든 항목의 표준점수가 .78~1.14로, 인권 관련 모든 항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2는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생 관련 인권실태인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및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의 표준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교사 관련 인권실태인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및 학교장 리더십의 표준점수는 음(-)의 값을 보였다. 유형3은 유형2와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는데,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생 관련 인권실태의 표준점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반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교사 관련 인권실태는 양(+)의 값을 보였다. 유형4는 인권교육 및 학생/교사 인권실태 관련 모든 항목의 표준점수가 -.63~-.96으로 0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유형5는 인권교육과 인권실태의 표준점수가 유형4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았으며, 특히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와 학교장 리더십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V-2]는 학교유형별로 인권교육의 질과 만족도,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학교장 리더십의 표준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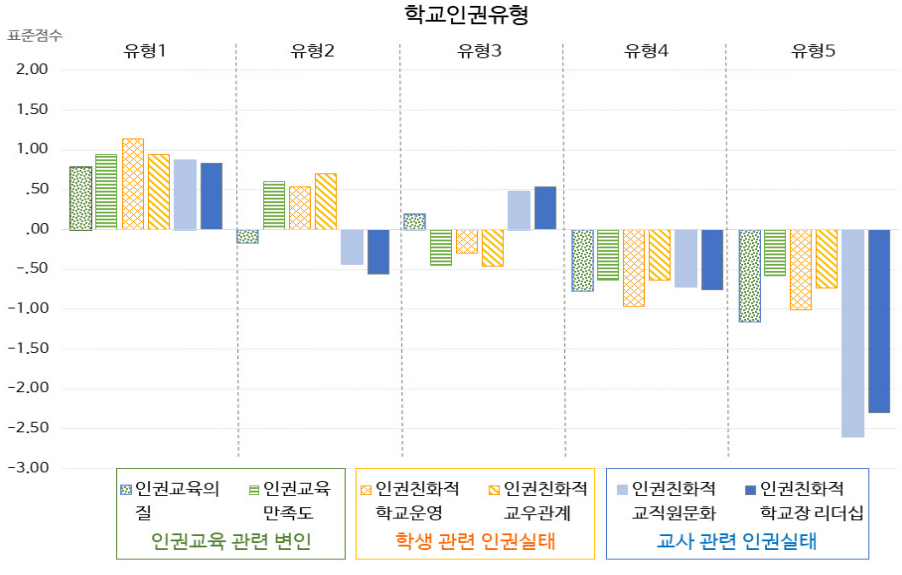

[그림 V-2]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유형

3 학교특성별 학교유형 분석

다음에서는 학교특성별로 학교유형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표 Ⅴ-5〉 참조).

먼저 학교급별 학교유형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에는 유형1(52.0%)이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에는 유형3(49.0%), 고등학교는 유형4(34.7%)가 가장 많았다. 학교 소재지별로는 특별광역시(32.1%), 중소도시(37.1%), 군·읍·면지역(36.7%) 모두 유형3이 가장 많았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학교에는 유형3(39.7%), 사립학교에는 유형4(36.2%)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취약집단의 비율은 0~10%인 경우(40.0%)와 11~20%(31.8%)인 경우에 유형3의 비중이 높았고, 취약집단의 비율이 21% 이상인 경우에는 유형4(28.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에 따르면, 인권조례 제정 지역 학교(42.1%)와 미제정 지역 학교(30.6%) 모두 유형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학교유형의 경우에도 혁신학교(44.2%)와 일반학교(33.3%) 모두 유형3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Ⅴ-5〉 학교특성별 학교유형 현황

구분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x^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계	301	(100)	67	(22.3)	52	(17.3)	106	(35.2)	59	(19.6)	17	(5.6)	
초등학교	102	(100)	53	(52.0)	16	(15.7)	30	(29.4)	3	(2.9)	0	(0.0)	119.61***
중학교	98	(100)	10	(10.2)	17	(17.3)	48	(49.0)	21	(21.4)	2	(2.0)	
고등학교	101	(100)	4	(4.0)	19	(18.8)	28	(27.7)	35	(34.7)	15	(14.9)	
특별광역시	106	(100)	23	(21.7)	24	(22.6)	34	(32.1)	18	(17.0)	7	(6.6)	16.01*
중소도시	97	(100)	16	(16.5)	11	(11.3)	36	(37.1)	29	(29.9)	5	(5.2)	
군·읍·면지역	98	(100)	28	(28.6)	17	(17.3)	36	(36.7)	12	(12.2)	5	(5.1)	
국·공립	232	(100)	64	(27.6)	38	(16.4)	92	(39.7)	34	(14.7)	4	(1.7)	59.25***
사립	69	(100)	3	(4.3)	14	(20.3)	14	(20.3)	25	(36.2)	13	(18.8)	
0~10%	170	(100)	38	(22.4)	21	(12.4)	68	(40.0)	32	(18.8)	11	(6.5)	11.97
11~20%	88	(100)	20	(22.7)	21	(23.9)	28	(31.8)	14	(15.9)	5	(5.7)	
21% 이상	42	(100)	9	(21.4)	10	(23.8)	10	(23.8)	12	(28.6)	1	(2.4)	
미응답	1	(100)	0	(0.0)	0	(0.0)	0	(0.0)	1	(100)	0	(0.0)	

구분	전체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x^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제정 지역*	121	(100)	20	(16.5)	18	(14.9)	51	(42.1)	22	(18.2)	10	(8.3)	9.08
미제정 지역	180	(100)	47	(26.1)	34	(18.9)	55	(30.6)	37	(20.6)	7	(3.9)	
혁신학교	52	(100)	14	(26.9)	8	(15.4)	23	(44.2)	6	(11.5)	1	(1.9)	5.82
일반학교	249	(100)	53	(21.3)	44	(17.7)	83	(33.3)	53	(21.3)	16	(6.4)	

* 인권조례 제정 지역: 서울, 광주, 경기,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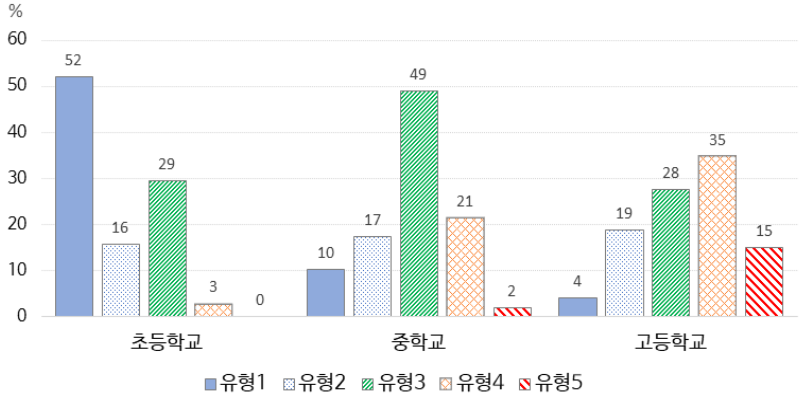

[그림 V-3] 학교급별 학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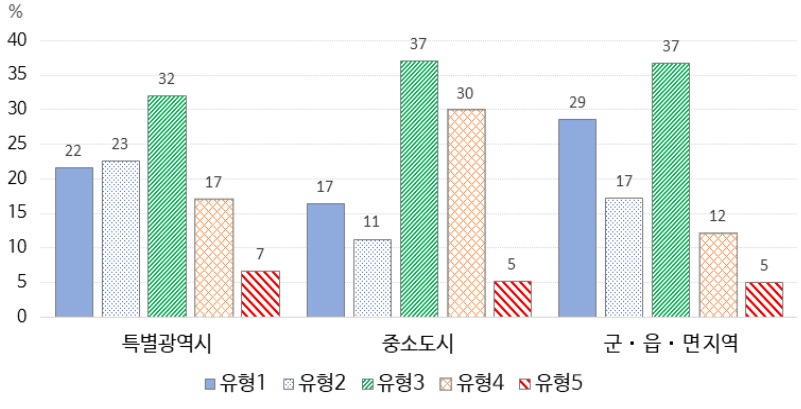

[그림 V-4] 학교소재지별 학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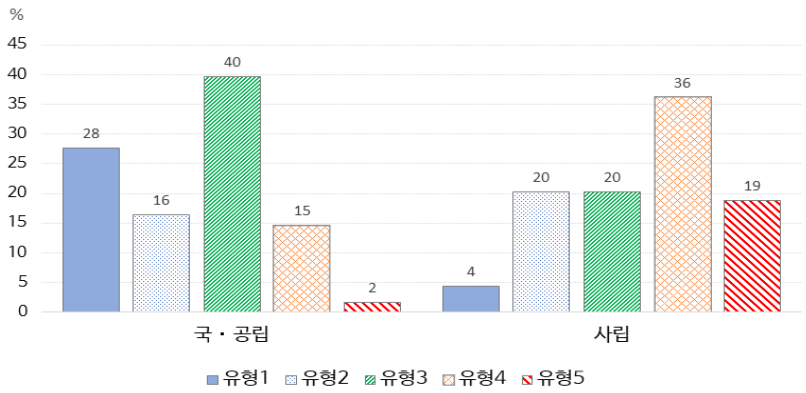

[그림 Ⅴ-5] 설립유형별 학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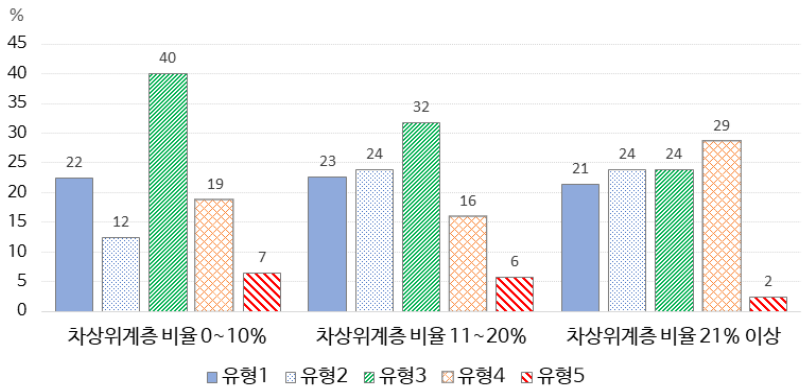

[그림 Ⅴ-6] 차상위계층 비율별 학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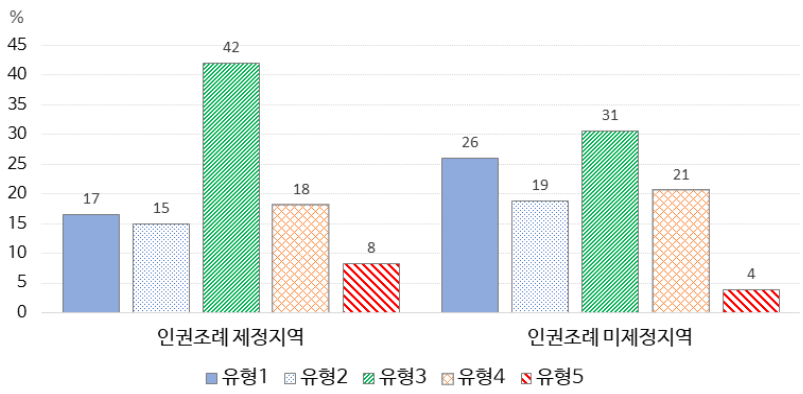

[그림 Ⅴ-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별 학교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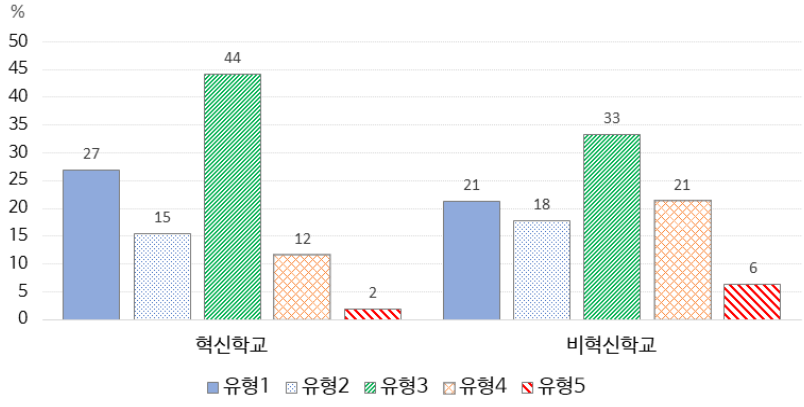

[그림 V-8] 혁신학교 여부별 학교유형

4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된 초·중등학교들은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three-step approach)을 활용하여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학교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3(35.2%)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유형에 속할 확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취약집단 비율,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와 같은 학교특성을 투입하였다. 투입된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 및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V-6〉과 같다.

〈표 V-6〉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량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설명
학교급	초등학교	102	.34	.47	초등학교=1, 중학교=0, 고등학교=0
	중학교	98	.33	.47	중학교=1, 초등학교=0, 고등학교=0
학교소재지	특별시	106	.35	.48	특별시=1, 중소도시=0, 군·읍·면지역=0
	중소도시	97	.32	.47	중소도시=1, 특별시=0, 군·읍·면지역=0
설립유형	사립	69	.23	.42	사립=1, 국·공립=0

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설명
취약집단 비율	중(11~20%)	88	.29	.46	취약집단 비율 11~20%=1, 그 외=0
	상(21% 이상)	42	.14	.35	취약집단 비율 21% 이상=1, 그 외=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제정 지역	121	.40	.49	인권조례 제정 지역(서울/광주/경기/전북)=1 그 외 지역=0
혁신학교 여부	혁신학교	52	.17	.38	혁신학교=1, 일반학교=0

학교들이 유형3 대비 유형1에 속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과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대비 유형1에 속할 가능성은 초등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29.109배 높았으며, 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미제정 지역에 비해 .315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들이 유형3 대비 유형2에 속할 가능성에는 취약집단 비율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집단 비율이 0~10%인 학교에 비해 11~20%인 학교가 유형3에 비해 유형2에 속할 확률이 3.680배 더 높았으며, 취약집단 비율이 21% 이상인 학교가 유형2에 속할 확률은 4.280배 더 높았다.

〈표 V-7〉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유형1				유형2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절편		-2.421	***	.901		-1.409	***	.697	
학교급 (준거: 고등학교)	초등학교	3.371	***	.814	29.108	.657		.675	1.929
	중학교	.533		.885	1.704	-.566		.554	.568
학교소재지 (준거: 군·읍·면지역)	특별시	.507		.599	1.660	.650		.536	1.916
	중소도시	-.166		.589	.847	-.205		.655	.815
설립유형 (준거: 국공립)	사립	-.221		.992	.802	1.176		.601	3.241
취약집단 비율 (준거: 하(0~10%))	중(11~20%)	.665		.621	1.944	1.303	*	.573	3.680
	상(21% 이상)	1.199		.672	3.317	1.454	*	.682	4.28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준거: 비제정 지역)	제정 지역	-1.154	*	.468	.315	-.668		.487	.513
혁신학교 여부 (준거: 일반학교)	혁신학교	.113		.595	1.120	-.226		.632	.798

※ 참조집단: 유형3
*** p〈.001, ** p〈.01, * p〈.05

초·중·고등학교들이 유형3 대비 유형4에 속할 확률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을 기준으로 할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고등학교에 비해 각각 .082배, .352배 유형4에 속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군·읍·면지역 학교보다는 중소도시의 학교(3.827배)가,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3.785배)가 유형4에 속할 확률이 더 높았다. 유형3에 비해 유형5에 속할 확률에는 학교급과 설립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유형5에는 초등학교가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유형3 대비 유형5에 속할 확률은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096배 더 낮았다. 국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13.791배)가 유형5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8〉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유형4				유형5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절편		-.842	***	.602		-1.536	***	.651	
학교급 (준거: 고등학교)	초등학교	-2.504	*	1.237	.082	-18.429	***	.563	.000a
	중학교	-1.045	*	.474	.352	-2.344	**	.849	.096
학교소재지 (준거: 군·읍·면지역)	특별시	.523		.642	1.687	-.622		.811	.537
	중소도시	1.342	*	.637	3.827	-.377		.973	.686
설립유형 (준거: 국공립)	사립	1.331	**	.517	3.785	2.624	***	.786	13.791
취약집단 비율 (준거: 하(0~10%))	중(11~20%)	.054		.578	1.055	.206		.730	1.229
	상(21% 이상)	.849		.598	2.337	-.945		1.122	.38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준거: 비제정 지역)	제정 지역	-.649		.554	.523	.168		.744	1.183
혁신학교 여부 (준거: 일반학교)	혁신학교	-.571		.711	.565	-.997		1.300	.369

※ 참조집단: 유형3
a) 유형5에는 초등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p〈.001, ** p〈.01, * p〈.05

5 시사점

본 연구의 학교유형 분석, 학교유형 및 학교특성 분석, 학교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식 전달을 넘어 경험과 삶의 현장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United Nation, 2006), 그동안의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학생이나 아동·청소년 등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김영지 외, 2016; 임희진·김현신, 2011). 본 연구는 단위학교에 초점을 두고 학교 내 인권교육과 학생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더불어, 인권교육의 접근 방법에 있어 지식으로서의 교육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며, 삶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와 학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 역동과 관계성 속에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구성·내용·방법 등 인권교육의 질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학교장 리더십의 인권친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권교육이 교과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학교공동체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현실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유형 양상을 살펴보면, 인권교육과 인권실태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및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도 높고(유형1, 유형2), 인권교육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및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도 낮았다(유형3, 유형4, 유형5). 마찬가지로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과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및 학교장 리더십 간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구성원별로 인권

교육과 인권실태 간에 유의미한 상호 영향력을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교에서 인권친화적 경험을 하지 못한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셋째,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라 학교유형을 5가지로 유형화한 것은 각 단위학교의 실정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정책 지원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관련 모든 항목이 양호한 유형1에서는 단위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계속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들과 공유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중 학생 관련 항목만이 양호한 유형2나 교사 관련 항목만이 양호한 유형3에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인권교육과 인권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유형4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연수와 자료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학교생활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 배우고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학교풍토를 만들어 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형4에 비해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가 낮고 학교장 리더십에 있어 인권친화 정도가 낮은 유형5의 경우에는 보다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요구되며, 특히 교사들의 인권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넷째,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유형1은 점점 줄어들고, 교사-학생 관계, 학생-학생 관계 등에 있어 인권친화적인 요소들은 점점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입시와 성적에 대한 부담, 학부모 등에 의한 압박으로 인해 많은 고등학교들이 유형4나 유형5로 분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 개선과 더불어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유형1에는 군·읍·면지역 학교와 국·공립학교가 많았고,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와 사립학교에 유형5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 외에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와 취약집단 비율이 경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3 대비 유형1에 속할 확률에는 학교급 외에 인권조례 제정 지역이 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가 오히려 유형1에 속할 확률이 낮았다. 한편, 취약집단에 따른 유형 분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집단 비율이 높은 학교일 수록 유형3 대비 유형2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이유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교인권 실태 및 상황에 대해서는 인권의식이 높은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 실태와 인권보호 정도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Ⅵ.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방법
3. 분석 결과
4. 시사점

Ⅵ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1) 인권교육의 개념 및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구정화, 2017, 박상준, 2003; 심상보, 2014, 조윤아, 2015), 2)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및 실행 연구(김숙자·김현정·장윤정, 2008; 유문무, 2013,; 이미식, 2007, 최용성, 2014), 3)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실태 분석 연구(김원금, 2007; 박계신, 2017; 오승호, 2011; 이정주·성열관, 2011; 임경수, 2012; 전진희, 2017; 허종렬, 2016), 4) 향후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탐색 연구(허종렬·나달숙·이대성, 2013; 유병열, 2012, 2013; 조일수, 2004), 그리고 5)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강경욱, 2012, 박성익·이승미, 2000; 유향선·최현정, 2014; 이미나·백현옥, 2015; 전아영·최미숙, 2018)와 같이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학교 단위의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과 실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이면서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를 안고 있다. 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교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현황 및 학생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권교육이 학생 및 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 및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지녀 왔다.

특히,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다룬 연구들 또한 주로 연구진이 개발한 특정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소수의 처치 및 통제 집단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추정함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성 또한 반편견 및 장애인식, 인권태도, 공감 수준, 친인권적 행동 경향성, 자아존중감, 친사회적 행동 등과

같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분석을 실시함에 따라 인권교육의 직접적인 결과이자,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인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강경욱(2012)은 연구자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험 집단에게 실행한 후 비교 집단과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반 편견 및 장애인식이 개선되었음을 보임으로써 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밝힌 바 있다. 박성익·이승미(2000)는 연구진이 개발한 인지판단능력 훈련 프로그램과 정서적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서울대학교 대학생 57명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48명의 통제집단과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이 인권태도, 공감 수준, 친인권적 행동 경향성 측면에서 효과적임을 보인 바 있다. 유향선과 최현정(2014)은 유아 대상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30명의 실험 집단에 이를 적용한 후 30명의 비교집단과 사전·사후 점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권 관련 태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미나와 백현옥(2015)은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 대상 인권교육 활동의 효과성을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 측면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사전사후 실험 처치 비교를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전아영과 최미숙(2018) 또한 위의 연구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중심학습에 기초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험·비교 집단을 구성한 후 사전·사후 비교를 통하여 유아 인권 관련 태도 및 인권 행동 측면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들은 연구진이 개발한 특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표성이 약한 소수의 표본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함에 따라 해당 분석 결과의 인과성(causality)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점 또한 안고 있다. 즉, 기존의 인권교육 효과성 관련 연구들은 임의 표집(random sampling)된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 아니라 주로 편의 표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 확보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편의 표집된 표본을 대상으로 적용된 분석 방법 또한 집단 간 평균 비교와 같이 인과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방법들이 주로 활용됨으로써 해당 결과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 단

위의 인권교육이 재학생들의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기초한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인권교육 관련 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대상을 단순히 학생에 한정짓지 않고,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교육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사들 또한 중요한 인권교육의 대상임을 고려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1)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이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2) 학교 단위에서 제공되는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3) 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인과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 및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김진희 외, 2018)이 개발한 문항을 수정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 대상 인권의식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해당 설문지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4,374명, 중학생 4,603명, 고등학생 4,503명 등 총 13,4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권의식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300개(초등학교 102개, 중학교 97개, 고등학교 101개)에 재직 중인 교사 5,876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및 이들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9].

9) 전체 301개교의 학생 13,524명과 교사 5,886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나, 학교용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1개교의 학생 44명과 교사 10명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나. 변수 선정

1)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가) 처치 변수: 학교 인권교육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학교 인권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처치변수로는 인권교육 관련 변수(학생 및 학교 설문지)들을 활용하였다.

학생 대상 조사의 경우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학생용 설문지 문항 3번)'과 '인권 관련 수업 경험 여부(학생용 설문지 문항 5번)[10]'의 2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이들이 참여한 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학생용 설문지 문항 7번의 1)~4)번)', '인권교육 수업 풍토(학생용 설문지 문항 7번의 5)~6)번)'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 각각을 처치변수로 하여 학생이 직접 경험한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학교 대상 조사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상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및 형태(학교용 설문지 문항 5번)', '인권교육 계획수립에 학교 구성원들(학교장, 부장교사 및 인권교육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전체교사)의 참여 정도(학교용 설문지 문항 8번의 1)~4)번)', '인권교육을 위한 활동들(인권을 주제로 한 학교행사, 인권 관련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등), 인권 관련 시민단체 참여 활동, 인권 관련 단체와의 연계 활동)의 활용도(학교용 설문지 문항 9번의 1)-5)번)', '2019학년도 내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계획 유무(학교용 설문지 문항 10번의 1)-2)번)', '학생인권 침해시 구제 제도 마련 여부(학교용 설문지 문항 12번)'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들을 각각 처치변수로 활용하여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권교육 및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0) 본 문항은 실제 조사에서는 인권의 주요 내용 9가지 별로 관련 수업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해당 9가지 내용 중 하나 이상의 관련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처치변수로 활용하였다.

나) (학생 수준) 종속 변수: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학생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3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의식 중 '인권판단'을 측정하는 8문항(학생용 설문지 문항 19번 1)~8)번), 인권 감수성을 나타내는 7문항(학생용 설문지 문항 20번 1)~2), 4)~8)번),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된 8문항(학생용 설문지 문항 21번 1)~6), 8)번) 등 총 22개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권교육의 효과를 나타내는 인권의식 측정 문항들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각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응답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이외에 경험 여부를 묻는 문항들은 더미변수로 코딩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 통제 변수

본 연구는 실제 설문 조사에 포함된 문항 중 일종의 하위 문항으로서 결측치가 다수 나타나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최대한 모형에 투입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성 추정을 저해하는 처치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대표성을 갖춘 초·중·고등학교를 선정하고, 이에 재직 중인 교사 5,876명 및 재학 중인 학생 13,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다수의 설명변수 투입에 따른 자유도 감소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효과성 추정을 위하여 학생 특성으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 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등을 활용하였으며, 학교 특성으로는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2) 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가) 처치 변수: 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처치변수로는 교사용 설문지와 학교용 설문지 상의 교사 대상 인권교육·연수 관련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교사 대상 조사의 경우 소속 학교의 인권교육 제공 현황에 대해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 관련 교육 경험(교사용 설문지 문항 9번)', '최근 1년 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상 경험 여부(교사용 설문지 문항 10번)', '임용 이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상 경험 여부(교사용 설문지 문항 11번)',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교사용 설문지 문항 12번)'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들을 각각 처치변수로 활용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나) 종속 변수: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교사들의 인권의식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는 교사 인권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3개 변수를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판단을 측정하는 4문항(교사용 설문지 문항 23번 3), 5), 6), 7)번), 인권 감수성을 나타내는 7문항(교사용 설문지 문항 24번 1)~2), 4)~8)번),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된 7문항(교사용 설문지 문항 25번 1)~6), 8)번) 등 총 18개 문항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문항들은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각 종속변수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응답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다) 통제 변수

처치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및 효과성을 보다 엄밀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처치변수의 외생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처치변수 및 종속변수와 관련된 변수들을 최대한 모형에 투입·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다양한 특성 변

수들을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한편, 학교 수준에서는 학교 배경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 대상 인권교육 및 관련 연수의 효과성 추정을 위하여 교사 특성으로는 인지도(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개방적 수업 풍토), 학생 권리의 중요도 및 준비도(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및 휴식권,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원리, 복지에 관한 권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에 대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교직원 간 문화(비차별, 자율존중), 교장 리더십, 학교만족도, 학생 인권보장 강화로 인한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 담임교사 여부, 정규직 여부, 직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학교 특성 변수로는 학교급(초등, 중, 고등),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을 활용하였다.

다. 분석 모형

1)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의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전통적인 교육생산함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있는 학생 및 교사, 학교 관련 변수들을 통제한 후 학교의 인권교육 관련 변수가 교사 및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1) $y = f(STU, TEA, SCH)$

(y: 학생(교사)의 인권의식, STU: 학생 특성, TEA: 교사 특성, SCH: 학교 특성)

2) 학교 고정효과모형 및 학교 확률효과모형

위와 같은 중다회귀모형를 통한 교육생산함수 추정은 모형에 학생 및 교사들이 속해 있는 개별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조사와 같이 학교를 우선 추출한 후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및 재학 중인 학생들을 조사한 자료의 경우 개별 학생 및 교사들과 밀접히 연관된 단위 학교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못하여 추정된 계수의 일치성 및 효율성과 관련된 제약이 발생한다(김영식 외, 2013).

고정효과모형은 이와 같이 관측 불가능한 개체 특성 오차항(본 연구에서는 고유한 학교 특성)을 고정된 상수로 간주하여 이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이를 통해 처치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체특성 오차항를 제거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은 차분모형(differencing model)인데, 이는 '패널데이터의 각 시점 데이터에서 각 패널의 전체평균데이터를 차분한 후에 이에 대한 최소자승법(OLS) 추정을 실시'한다(김영식 외, 2013). 이와 같은 모형은 패널 개체의 개체 특성 오차항과 처치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더라도 회귀계수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있으며, 차분을 통해 오차항의 시간 개념이 사라져 자기상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민인식·최필선, 2010).

그러나 해당 모형은 동일한 조사 대상이 반복적으로 측정된 패널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횡단면 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각 조사 대상이 소속된 학교의 고유한 개체 특성이 학교별로 상이하면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최소제곱더미변인 고정효과모형(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할 수 있다(김영식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소제곱더미변인(least squares dummy variables, LSDV)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2)\quad y_{ij} = \sum_{j=1}^{k}\alpha_j + \sum_{q=1}^{l}X'_{qij}\beta_q + \epsilon_{ij}$$

(i : 학생(교사), j : 학교, l : 설명변수의 수, k : 전체학교 -1, α_j : j 학교의 고유 특성, β_q : 회귀계수 벡터, X'_{qij} : 개인의 독립변수 벡터, ϵ_{ij} : 오차항)

한편, 이러한 고정효과모형와 같이 학교의 고유한 특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확률변수로서 학교 간에 서로 독립이며 동분산을 지닌다는 가정을 할 경우에는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확률효과모형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의 임의절평모형(random intercept model)과 동일한 모형으로서 본 연구와 같은 다층 구조의 자료 분석에 적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을 고려할 때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고정된 것으로 볼 것인지,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확률 변수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석에 적합한 모형의 선택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추정치 간에 차이가 없다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결정한다. 위의 연구모형에서 처치변수와 학교 개체 특성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정이 참이라면, 즉 처치변수의 외생성(exogeneity)이 확보된다면 고정효과 추정량에 비해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량이 더 효율적인 추정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설명변수의 외생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확률효과 모형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 모형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이후, 설명변수의 외생성을 검증하는 하우스만 검정을 실행함으로써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분석 결과 중 보다 나은 추정량을 선택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 결과표에도 제시하였다.

한편,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의 경우 처치 변수가 학교 수준의 변수인 관계로 이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처치변수의 회귀계수를 안정적으로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학교 인권교육의 학생 인권의식 제고 효과에 대한 분석의 경우 최소자승법(OLS)과 확률효과(EF)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별 고유한 특성을 확률변수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Breusch와 Pagan(1980)이 제안한 라그랑지 승수 검정(Lagrange Multiplier (LM)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분석 결과

가.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경험 및 인식이 이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이들의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참여 경험 여부'와 '인권 관련 수업 경험 여부'등의 인권교육 참여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한편, '인권교육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및 '인권교육 시간의 개방적 수업 풍토'와 같이 이들이 인권교육 시간에 대하여 지니는 인식이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Ⅵ-1〉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판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종속변수: 인권판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F/E	R/E	OLS	F/E	R/E	OLS	F/E	R/E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여부	β	.074	.067	.076	-.025	-.016	-.016	.008	-.007	.011
	(S.E)	(.067)	(.071)	(.066)	(.046)	(.049)	(.045)	(.036)	(.039)	(.036)
	H.T		32.22			46.64*			40.80	
인권 관련 수업 경험 여부	β	-.121*	-.185**	-.112	-.057	-.057	-.055	.044	.027	.044
	(S.E)	(.071)	(.074)	(.070)	(.045)	(.046)	(.044)	(.036)	(.037)	(.036)
	H.T		45.92*			42.58			49.36**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	β	.029	.043	.036	.004	-.006	.002	-.016	-.029	-.018
	(S.E)	(.035)	(.037)	(.035)	(.030)	(.031)	(.030)	(.028)	(.029)	(.028)
	H.T		60.18***			85.64**			46.09*	
인권교육 개방적 수업 풍토	β	.017	.016	.021	-.014	-.022	-.016	-.045*	-.061**	-.044*
	(S.E)	(.029)	(.031)	(.029)	(.027)	(.028)	(.027)	(.024)	(.025)	(.024)
	H.T		59.54***			90.46***			49.33**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학생이 응답한 '인권판단'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표 Ⅵ-1〉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권교육 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이들의 인권판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모든 분석 모형에서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판단과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오히려 인권 관련 수업 경험이 이들의 인권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개방적 수업 풍토에 대한 인식이 인권판단과 부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종속변수: 인권감수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F/E	R/E	OLS	F/E	R/E	OLS	F/E	R/E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여부	β	-.006	.006	-.007	.015	-.019	-.007	-.048	-.059*	-.046
	(S.E)	(.065)	(.068)	(.065)	(.041)	(.043)	(.040)	(.033)	(.035)	(.033)
	H.T		25.09			30.43			20.59	
인권 관련 수업 경험 여부	β	.114	.108	.103	.027	-.010	.016	.054*	.047	.051
	(S.E)	(.070)	(.073)	(.070)	(.040)	(.040)	(.039)	(.033)	(.033)	(.033)
	H.T		125.73***			39.26			36.66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	β	.133***	.151***	.142***	.048*	.055**	.052*	.073***	.072***	.065***
	(S.E)	(.033)	(.035)	(.033)	(.027)	(.028)	(.027)	(.025)	(.026)	(.025)
	H.T		49.30**			31.47			42.01	
인권교육 개방적 수업 풍토	β	.078***	.092***	.080***	.067***	.073***	.067***	.035*	.030	.034
	(S.E)	(.028)	(.029)	(.028)	(.024)	(.025)	(.024)	(.021)	(.022)	(.021)
	H.T		51.26**			32.80			41.20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학생이 응답한 '인권 감수성'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한편, 〈표 Ⅵ-2〉에 따르면 학생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인권 감수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에게서 인

권교육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만족도가 높은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인권교육 수업이 개방적인 풍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경우 인권 감수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권교육에의 참여 여부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과 통계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기보다는 보다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수업이 보다 개방적인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인권교육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Ⅵ-3〉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종속변수: 인권 행동의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F/E	R/E	OLS	F/E	R/E	OLS	F/E	R/E
1년 이내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여부	β (S.E)	.017 (.063)	.014 (.066)	.009 (.062)	-.044 (.038)	-.055 (.040)	-.062* (.037)	-.075** (.031)	-.097*** (.033)	-.073** (.031)
	H.T		63.95***			57.05***			63.56***	
인권 관련 수업 경험 여부	β (S.E)	.078 (.068)	.070 (.070)	.069 (.068)	-.021 (.038)	-.016 (.039)	-.023 (.038)	.015 (.032)	.018 (.032)	.013 (.032)
	H.T		71.49***			37.85			37.49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	β (S.E)	.181*** (.032)	.174*** (.033)	.182*** (.032)	.130*** (.024)	.130*** (.025)	.145*** (.024)	.122*** (.023)	.112*** (.024)	.121*** (.023)
	H.T		94.11***			66.42***			42.11	
인권교육 개방적 수업 풍토	β (S.E)	.109*** (.027)	.100*** (.028)	.110*** (.027)	.101*** (.022)	.113*** (.023)	.113*** (.021)	.090*** (.020)	.079*** (.021)	.090*** (.020)
	H.T		138.07***			79.44***			43.62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학생이 응답한 '인권 행동의사'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앞의 〈표 Ⅵ-2〉의 분석 결과는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Ⅵ-3〉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인권 행동의사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교육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개방적인 수업 풍토 속에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권 행동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초, 중, 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만족도가 높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개방적인 수업 풍토 속에서 제공할 경우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 행동의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권판단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인 영향이 나타남을 고려할 때 현재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인권교육의 내용 및 수업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 관련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차원의 다양한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한편, 특히 인권교육 계획 수립 여부 및 해당 계획 수립에 교사들의 참여 정도, 인권교육과 관련된 활동과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계획 여부 및 학생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 마련 여부 등과 관련된 학교 차원의 다양한 인권교육 관련 노력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분석의 경우 학교 단위의 다양한 노력들이 처치 변수로 활용됨에 따라 학교 고정효과를 통제할 경우 다중공선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추정결과를 도출할 수 없기에 최소자승법(OLS)과 확률효과(EF)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Ⅵ-4〉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R/E	OLS	R/E	OLS	R/E
학교교육계획서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β	.079	.072	.064*	.060*	.059	.037
	(S.E)	(.054)	(.049)	(.038)	(.034)	(.042)	(.043)
	L.M	.00		.00		14.42***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교장	β	-.005	-.000	.019	.019	.038**	.020
	(S.E)	(.022)	(.020)	(.021)	(.020)	(.016)	(.017)
	L.M	.00		.00		13.29***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업무담당자	β	-.011	-.006	.004	.012	.024	.014
	(S.E)	(.026)	(.024)	(.026)	(.023)	(.018)	(.020)
	L.M	.00		.00		13.56***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담임교사	β	.033	.036	.028	.034	.041**	.024
	(S.E)	(.026)	(.024)	(.023)	(.022)	(.020)	(.021)
	L.M	.00		.00		12.71***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전체교사	β	-.004	.001	.026	.026	.074***	.058***
	(S.E)	(.022)	(.021)	(.022)	(.020)	(.015)	(.016)
	L.M	.00		.00		6.41***	
인권교육 활용 정도: 학교 행사	β	.040**	.040**	.003	.008	.061***	.045***
	(S.E)	(.020)	(.019)	(.016)	(.014)	(.017)	(.017)
	L.M	.00		.00		8.75***	
인권교육 활용 정도: 동아리 활동	β	.022	.020	.009	.009	.046***	.029**
	(S.E)	(.017)	(.015)	(.014)	(.013)	(.013)	(.015)
	L.M	.00		.00		10.99***	
인권교육 활용 정도: 학생자치 활동	β	.014	.024	.019	.014	.038**	.025
	(S.E)	(.024)	(.022)	(.021)	(.018)	(.018)	(.019)
	L.M	.00		.00		13.21***	
인권교육 활용 정도: 시민단체	β	-.016	-.010	.012	.013	.020	.020
	(S.E)	(.018)	(.017)	(.014)	(.014)	(.014)	(.016)
	L.M	.00		.00		13.25***	
인권교육 활용 정도: 인권단체 연계	β	.005	.007	.018	.018	.012	.015
	(S.E)	(.017)	(.016)	(.015)	(.014)	(.014)	(.015)
	L.M	.00		.00		13.87***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계획 유무	β	.047	.056	-.011	-.005	-.000	-.001
	(S.E)	(.053)	(.049)	(.032)	(.031)	(.035)	(.036)
	L.M	.00		.00		14.30***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R/E	OLS	R/E	OLS	R/E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계획 유무	β (S.E)	.043 (.039)	.045 (.035)	.016 (.031)	.015 (.029)	-.030 (.027)	-.029 (.028)
	L.M	.00		.00		12.92***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여부	β (S.E)	-.116** (.054)	-.108** (.052)	-.010 (.048)	.008 (.043)	.094** (.037)	.077* (.042)
	L.M	.00		.00		11.75***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학생이 응답한 '인권판단'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우선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표 Ⅵ-4〉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인권을 주제로 한 학교 행사를 통하여 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인권판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난다. 이에 반해 학생인권 침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판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에 인권교육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학생들의 인권판단 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인권교육의 인권판단에 대한 영향력은 고등학생들에게서 보다 분명히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의 경우 인권교육 계획 수립에 전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인권을 주제로 한 학교 행사 및 인권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학생인권 침해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인권판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 단계에서 제공되는 인권교육은 학생들의 인권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이러한 영향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는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인권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이의 운영 방식을 보다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판단 함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Ⅵ-5〉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R/E	OLS	R/E	OLS	R/E
학교교육계획서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β	.125**	.054	.059*	.018	-.012	-.029
	(S.E)	(.054)	(.049)	(.033)	(.035)	(.038)	(.042)
	L.M	.00		3.82**		4.63**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교장	β	.025	.016	.026	.016	-.003	-.002
	(S.E)	(.021)	(.020)	(.019)	(.020)	(.015)	(.017)
	L.M	.00		3.50**		5.11**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업무담당자	β	-.015	-.027	.045*	.038*	.015	.015
	(S.E)	(.026)	(.024)	(.023)	(.022)	(.017)	(.020)
	L.M	5.14**		2.89**		4.84**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담임교사	β	-.004	-.012	.044**	.034	-.008	-.018
	(S.E)	(.026)	(.024)	(.021)	(.022)	(.018)	(.021)
	L.M	.00		2.61*		5.18**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전체교사	β	-.005	-.014	.018	-.001	.003	-.003
	(S.E)	(.022)	(.021)	(.019)	(.020)	(.014)	(.016)
	L.M	.00		4.10**		5.13**	
인권교육 활용 정도: 학교 행사	β	.041**	.044**	.011	.013	-.009	-.017
	(S.E)	(.020)	(.019)	(.014)	(.014)	(.015)	(.017)
	L.M	.00		3.75**		4.96**	
인권교육 활용 정도: 동아리 활동	β	.030*	.017	.020	.020	-.005	-.008
	(S.E)	(.017)	(.015)	(.013)	(.013)	(.012)	(.014)
	L.M	.00		2.79**		5.03**	
인권교육 활용 정도: 학생자치 활동	β	-.041*	-.036*	-.004	-.011	-.014	-.021
	(S.E)	(.023)	(.022)	(.018)	(.018)	(.016)	(.019)
	L.M	.00		4.21**		4.63**	
인권교육 활용 정도: 시민단체	β	.010	.009	.002	-.002	-.021	-.021
	(S.E)	(.018)	(.017)	(.013)	(.014)	(.013)	(.015)
	L.M	.00		4.19**		4.29**	
인권교육 활용 정도: 인권단체 연계	β	.007	.008	.010	-.001	-.022*	-.024*
	(S.E)	(.017)	(.016)	(.013)	(.014)	(.013)	(.015)
	L.M	.00		4.14**		4.20**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계획 유무	β	.135**	.116**	.076***	.046	.023	.022
	(S.E)	(.053)	(.048)	(.029)	(.031)	(.031)	(.035)
	L.M	.00		2.96**		4.78**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R/E	OLS	R/E	OLS	R/E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계획 유무	β (S.E)	.092** (.038)	.072** (.035)	.065** (.028)	.036 (.028)	-.005 (.024)	.001 (.027)
	L.M	.00		3.45**		5.11**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여부	β (S.E)	-.102* (.054)	-.125** (.052)	.042 (.042)	.022 (.043)	-.044 (.034)	-.049 (.039)
	L.M	.00		4.11**		4.43**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학생이 응답한 '인권 감수성'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Ⅵ-5〉 참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교육계획서에 인권교육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권을 주제로 한 학교 행사 및 인권 관련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교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할수록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학생자치활동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가 마련된 초등학교 재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다소 낮게 나타난 부분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낮은 연령으로 인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구제제도 활용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성장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정서적 배려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한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인권교육에 따른 인권 감수성 제고 효과는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부장교사 및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가 인권교육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인권 감수성이 다소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인권단체와 연계한 시민단체 참여 활동이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인권교육의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이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Ⅵ-6〉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R/E	OLS	R/E	OLS	R/E
학교교육계획서 인권교육 계획 포함 여부	β (S.E)	-.009 (.052)	-.046 (.055)	.079** (.032)	.015 (.035)	.018 (.037)	.014 (.049)
	L.M	13.53***		17.67***		45.55***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교장	β (S.E)	-.028 (.021)	-.026 (.022)	.044** (.018)	.033* (.020)	.035** (.014)	.028 (.019)
	L.M	12.51***		13.30***		39.07***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업무담당자	β (S.E)	-.018 (.025)	-.023 (.026)	.033 (.022)	.014 (.023)	.041** (.016)	.042* (.022)
	L.M	12.66***		17.26***		39.66***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담임교사	β (S.E)	-.001 (.025)	.012 (.027)	.040** (.020)	.024 (.022)	.017 (.018)	.014 (.024)
	L.M	14.02***		15.86***		44.14***	
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참여 정도: 전체교사	β (S.E)	-.020 (.021)	-.015 (.023)	.031 (.019)	.005 (.021)	0021 (.014)	.014 (.019)
	L.M	12.96***		17.63***		44.14***	
인권교육 활용 정도: 학교 행사	β (S.E)	.012 (.020)	.017 (.021)	.019 (.014)	.007 (.014)	.028* (.015)	.017 (.020)
	L.M	12.57***		17.60***		42.34***	
인권교육 활용 정도: 동아리 활동	β (S.E)	.016 (.016)	.013 (.017)	.009 (.012)	-.000 (.013)	.019 (.012)	.005 (.016)
	L.M	13.62***		18.45***		44.47***	
인권교육 활용 정도: 학생자치 활동	β (S.E)	-.057** (.023)	-.050** (.023)	.034* (.018)	.011 (.018)	.015 (.016)	-.003 (.022)
	L.M	11.59***		18.34***		45.46***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OLS	R/E	OLS	R/E	OLS	R/E
인권교육 활용 정도: 시민단체	β	-.014	-.019	.042***	.033**	.011	.009
	(S.E)	(.017)	(.019)	(.012)	(.014)	(.013)	(.018)
	L.M	14.55***		9.98***		45.34***	
인권교육 활용 정도: 인권단체 연계	β	.008	.002	.043***	.023*	-.020	-.018
	(S.E)	(.017)	(.018)	(.013)	(.014)	(.012)	(.017)
	L.M	13.61***		13.31***		42.26***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계획 유무	β	.072	.071	.085***	.037	.043	.011
	(S.E)	(.051)	(.053)	(.028)	(.031)	(.031)	(.040)
	L.M	12.72***		16.75***		44.63***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계획 유무	β	-.029	-.002	.072***	.041	.027	.018
	(S.E)	(.037)	(.039)	(.027)	(.028)	(.023)	(.031)
	L.M	13.77***		15.66***		44.90***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 마련 여부	β	-.164***	-.176***	.017	-.009	-.033	-.030
	(S.E)	(.052)	(.057)	(.041)	(.045)	(.033)	(.046)
	L.M	6.54***		18.48***		44.63***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학생이 응답한 '인권 행동의사'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인권,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1년간 인권교육 경험 여부(교외), 인권 관련 수업 필요성, 학교 안팎 인권 관련 활동 여부, 학교생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1년간 인권침해 여부(교사, 친구/선배, 보호자),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 관계(비차별, 비폭력, 상호존중),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여부,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에 대한 인식(관심과 보호, 비폭력), 응답자 성별, 성적 수준, 보호자의 학력, 장서 보유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 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학교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Ⅵ-6〉 참조), 중학교의 경우 인권교육 계획 수립에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인권 관련 시민단체 참여 활동 및 인권 관련 단체와의 연계 활동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자주 이루어지는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인권 관련 행동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의 경우 인권교육과 관련된 학교장의 의지가 강하거나 학교 밖의 인권 관련 단체와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인권 행동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중학생들의 인권 행동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학교장의 리더십을 보다 강화하며, 지역 내 인권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인권교육에 따른 인권 행동의사 제고 효과는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장교사 및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가 인권교육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인권 행동의사가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및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가 마련된 학교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보다 인권 행동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이 학생들의 인권 행동의사 제고에 있어서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현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인권교육의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이들의 인권 행동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 및 학생 자치활동을 활용한 인권교육이 대체로 재학생들의 인권의식(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과 부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인권교육 관련 활동 시 학교 차원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인권교육의 대상이 단순히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교사들 또한 중요한 인권교육의 대상이므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제도 및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또한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인권교육 관련 조사에 참여한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경험 여부'와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 관련 여수 경험 여부(15시간 이상)',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15시간 이상)' 및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여부' 등의 인권교육 참여 여부 및 향후 참여 의사가 교사 스스로의 인권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Ⅵ-7〉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인권판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OLS	F/E	R/E
교사 양성과정 중 인권관련 교육 경험 여부	β (S.E)	-.024 (.017)	-.041** (.018)	-.028 (.017)
	H.T		102.06***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수 여부	β (S.E)	-.082*** (.020)	-.094*** (.020)	-.093*** (.020)
	H.T		86.71***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경험 여부	β (S.E)	-.018 (.017)	-.030* (.018)	-.025 (.017)
	H.T		89.97***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β (S.E)	.041*** (.014)	.038*** (.015)	.035** (.014)
	H.T		90.39***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교사가 응답한 '인권판단'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개방적 수업풍토), 학생 권리의 중요도 및 준비도(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및 휴식권,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원리, 복지에 관한 권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에 대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교직원 간 문화(비차별, 자율존중), 교장 리더십, 학교만족도, 학생 인권 보장 강화로 인한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 담임교사 여부, 정규직 여부, 직위, 학교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Ⅵ-7〉 참조),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도 인권교육 관련 연수는 교사들의 인권판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양성 과정 중이나 임용 이후, 최근 1년 이내에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할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오히려 인권판단 관련 인권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현행 예비 교원 대상 인권교육 및 현직 교원 대상 인권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판단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강할수록 인권판단이 높게 나타난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현행 교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엄밀

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 중인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이에 기반하여 교사 대상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표 Ⅵ-8〉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OLS	F/E	R/E
교사 양성과정 중 인권관련 교육 경험 여부	β (S.E)	-.017 (.011)	-.023** (.011)	-.017 (.011)
	H.T		121.81***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수 여부	β (S.E)	-.009 (.012)	-.010 (.012)	-.008 (.012)
	H.T		117.04***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경험 여부	β (S.E)	-.016 (.011)	-.019* (.011)	-.015 (.011)
	H.T		117.93***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β (S.E)	.047*** (.009)	.044*** (.009)	.047*** (.009)
	H.T		111.98***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교사가 응답한 '인권 감수성'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개방적 수업풍토), 학생 권리의 중요도 및 준비도(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및 휴식권,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원리, 복지에 관한 권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에 대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교직원 간 문화(비차별, 자율존중), 교장 리더십, 학교만족도, 학생 인권 보장 강화로 인한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 담임교사 여부, 정규직 여부, 직위, 학교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교사 대상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판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표 Ⅳ-8〉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교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의 고유한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인권교육 관련 연수는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양성 과정 중이나 최근 1년 이내에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오히려

인권 감수성 관련 인권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앞선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행 교사 대상 인권 관련 교육 및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Ⅵ-7〉과 마찬가지로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강한 교사일수록 인권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분석 결과는 인권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높은 열의와 의지를 현행 교사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운영 방식 등이 충족시켜 주지 못함을 시사한다. 현재 시행 중인 교사 대상 인권교육에 대한 엄밀한 실태 조사는 물론,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현행 교사 대상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및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Ⅵ-9〉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인권 행동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OLS	F/E	R/E
교사 양성과정 중 인권관련 교육 경험 여부	β (S.E)	.023* (.012)	.021* (.013)	.021* (.012)
	H.T		109.88***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이수 여부	β (S.E)	.038*** (.014)	.041*** (.014)	.040*** (.014)
	H.T		107.27***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15시간 경험 여부	β (S.E)	.014 (.012)	.014 (.013)	.015 (.012)
	H.T		108.17***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	β (S.E)	.114*** (.010)	.112*** (.010)	.116*** (.010)
	H.T		108.21***	

※ 제시값(β)은 회귀계수이며 ( )안의 값은 표준오차임. 종속변수는 교사가 응답한 '인권 행동의사'이며, 통제변수로는 인지도(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개방적 수업풍토), 학생 권리의 중요도 및 준비도(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위험으로부터의 자유, 학습권 및 휴식권,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원리, 복지에 관한 권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교에 대한 인식(기본권, 자율권, 참여권 보장), 교직원 간 문화(비차별, 자율존중), 교장 리더십, 학교만족도, 학생 인권 보장 강화로 인한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성별, 연령, 담임교사 여부, 정규직 여부, 직위, 학교급, 학교소재지(특별/광역시, 중소도시, 군읍면지역), 인권조례 제정 지역 여부, 혁신학교 여부, 남녀공학,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 학생수, 차상위계층 비율 등이 활용되었음. 지면 제약 상 분석 결과표의 각 셀은 각 처치변수의 추정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만을 제시함.

*** 〈 .01 ** 〈.05 * 〈.1.

한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교사들의 인권판단 및 감수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분석 결과와 달리 교사들의 인권 행동의사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양성 과정 중 인권 관련 교육을 경험하였거나, 최근 1년 이내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이수한 교사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인권 행동의사가 높았으며, 향후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들 또한 인권 행동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의 임용 이후 인권교육 연수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반면, 최근 1년 이내 해당 연수 경험은 교사들의 인권 행동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 인권 행동의사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식을 정하는데 있어 인권 행동의사 측면에서 해당 연수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함은 물론, 이를 참고하여 인권판단 및 인권 감수성 관련 내용과 관련된 수정·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인권판단 및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모두에서 연수 참여 의향이 있는 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높게 나타난 부분은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열의와 의지가 이들의 인권의식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향후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교사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보다 살릴 수 있도록 인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시사점

본 장에서는 학생들이 인권교육 참여 및 이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인권교육 및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한편, 또 다른 주요 교육당사자 중 하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이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인권교육에 참여

하는 것보다는 인권교육이 어떠한 수업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며 만족하는지가 해당 교육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당국 및 학교 교육 당사자들이 학생들에게 더욱 만족도가 높은 인권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개방적인 수업 풍토 속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에 현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 및 수업 방식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실행 등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의식 중 인권교육 참여의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은 인권판단과 관련하여 보다 집중적인 검토 및 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이의 운영,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에 따라 학교 인권교육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권판단 측면에서는 현재 고등학교의 인권교육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의 인권교육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해당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행동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학교의 인권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인권교육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학교급에 따라 인권의식의 발현 양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고려한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인권의식 발달 과정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학교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학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내용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이에 기반한 엄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자치활동을 활용한 인권교육 및 학생인권침해 구제제도 등이 재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정서적 배려를 우선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 대상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인권교육 관련 연수는 교사들의 인권의식 함양, 특히 인권판단 및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교사 대상 인권교육의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보다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교사 대상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교사들의 경우 보다 높은 인권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사들 또한 높은 열의와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향후에는 교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한 열의와 의지를 학교 현장에서 발현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의 혁신 및 교사들이 해당 연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초중고생들의 인권의식 제고와 관련된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정책 결정권자 및 학교 현장 종사자들에게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인권교육 관련 연구들이 개념 및 실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온 한계점에서 벗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권교육 활동이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발현되는 다양한 주체 및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인권교육 활동 참여 여부, 인권교육 만족도 및 수업 풍토, 학교 내 인권교육 관련 활동, 인권교육 관련 계획 수립 주체, 교사 대상 인권교육 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학교 내 요인들과 학생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를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투입을 통하여 보다 인과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제약을 지니고 있어, 추후에는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학생들의 인권교육 활동 참여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 특성 및 가정 배경의 영향력 등을 엄밀히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를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인과적으로 추론(causal inference)하는데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다. 이에 추후에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및 보다 정교한 분석 모형 활용, 특히 도구 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이나 종단데이터 구축을 통한 패널회귀분석,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학생 인권의식 간의 관계를 보다 인과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조사 시점에 지니고 있는 인권의식의 수준에 따라 인권교육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의 차별적 효과,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따른 인권교육의 효과성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후에는 절편뿐만 아니라 회귀계수의 학교 간 차이를 반영하는 다층모형의 적용 및 학생들의 인권의식 분위에 따른 인권교육 효과성 추정을 위한 분위회귀분석의 활용 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이 각 시·도 간에 큰 정책 변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시·도 간 인권교육 효과성의 차이를 추가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인권교육, 노동교육, 성인지 교육, 특수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저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청마다 사업의 주안점과 실행 강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에 이러한 교육청 혹은 지역 간 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차이를 처치변수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할 경우 인권교육 효과성의 지역 간 차이 및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도 단위의 인권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의 시계열적 축적을 통하여 시·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면서도,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Ⅶ. 응답자 성향에 따른 항목 차별 적용 문제 보완 가능성 탐색: 사례제시법 (Anchoring Vignette Method)

1. 연구의 필요성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4. 시사점

Ⅶ 응답자 성향에 따른 항목 차별 적용 문제 보완 가능성 탐색: 사례제시법(Anchoring Vignette Method)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비인지적 측면에서 학생의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의사소통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등 학생 역량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읽기, 수학, 과학 등 학업성취도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했던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학생 역량을 중심으로 학력을 평가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OECD 사회정서역량 연구(김미숙·서예원·안해정, 2018), KEDI 학생 역량 연구(권희경 외, 2018) 등과 같이 역량을 측정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역량, 시민의식 등과 같은 구인을 측정할 때 자기보고식(self-reporting) 인식 조사 방법을 활용할 경우 실제 역량과 측정치가 일치하기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존재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를 통해 심리적 구인을 측정할 경우 차별기능문항(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DIF)으로 인해 정확한 구인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김종민·이문수·안성훈, 2016; 이문수, 2018). 여기서 '차별기능문항(DIF)'은 다른 집단에 속한 두 피험자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특정 문항에 대한 정답 확률이 달라질 경우를 말하는데(Roussos & Stout, 1996; 강태훈, 2015, p.578에서 재인용), 이는 검사를 통해 측정하려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능력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차이로 인해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한국교육학회 교육평가연구회, 1995; Dorens & Holland, 1993; 송미영, 2003, p.144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해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는 학생 역량과 같은 심리적 구인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차별기능문항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질문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방식의 개인차,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개인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근거한 응답 왜곡, 응답 양식

에 의한 오류 등을 꼽을 수 있다(권희경 외, 2018: 21-30). 첫째, 질문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방식의 개인차를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하는 이유로 들 수 있다(권희경 외, 2018: 21-23). 개인의 경험과 특성에 따라 특정 문항에 대한 이해 수준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문항 개발자의 의도와 달리, 특정한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문항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방식이 일관되게 다르게 나타날 경우 해당 문항은 차별기능문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컨대, 저학년 학생들이 특정 문항에서 언급한 단어나 어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부정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일관되게 응답하였다면, 해당 문항은 문항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 나이에 따라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지므로 차별기능문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개인차이다(권희경 외, 2018: 23-26).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에서 개인마다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의 경향성이 준거집단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능력을 가진 두 응답자가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대하게 평가하거나 혹은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통의 응답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정 값을 준거로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기준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이런 기준이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차별기능문항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근거한 응답 왜곡이다(권희경 외, 2018: 26-28).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편향된 정도에 따라서도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집단 특성의 차이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문항에 대한 응답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면 해당 문항을 차별기능문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컨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인 조직에서 생활하는 응답자를 생각해 보자. 이런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문화에 익숙한 응답자는 공동체주의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주하고 이런 입장에서 문항에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응답에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면, 이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한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응답 양식에 의한 오류이다(권희경 외, 2018: 28-30). 문항을 응답하는 과정에서 집단 특성에 따라 일정한 응답 패턴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질 때, 해당 문항을 차별기능문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의 응답자들은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등과 같은 중간 범주의 응답을 선호하는 반면, 북미 국가의 응

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지 않다' 등과 같은 극단에 있는 범주의 응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국가라는 집단 특성에 따라 문항에 대한 응답 패턴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달라진다면, 해당 문항은 차별기능문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서역량, 시민의식 등 비인지적 측면에서 교육적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한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로 King 등(2004)이 제안한 사례제시법(anchoring vignettes method, AVM)에 주목하였다. 사례제시법은 가설적인 상황을 묘사한 사례들(vignettes)을 활용하여 차별기능문항의 문제를 보완한다. 사례제시법을 활용할 경우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질문에 대한 이해 수준 및 방식의 개인차, 상대적 비교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개인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근거한 응답 왜곡, 응답 양식에 의한 오류-등을 포함하여 차별기능문항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응답의 오류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국내 연구들도 사례제시법을 적용해 왔다(권오상·서영·정재호, 2012; 함은혜·Robert, 2015).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여 인권의식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2 분석 방법

가. 차별기능문항 분석 진단

본 연구는 사례분석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조사 문항이 실제로 차별기능문항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강태훈, 2015; 손원숙, 2010). 선행연구들은 차별기능문항을 진단하기 위해 특정 문항을 맞출 확률에 대한 검사 점수, 집단 더미 변수, 검사 점수와 집단 더미 변수 간 상호작용항 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들이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다섯 가지 범주로 묻는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며, 동시에 범주들 사이에 순서가 일정한 의미를 갖는 순

위 변수(ordinal categorical variable)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모델을 활용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LOGIT[P(Y \leq j)] = \beta_0 + \beta_1 X_1 + \beta_2 X_2 + \cdots + \beta_k X_k$$
$$j = 0, \cdots, J-1$$

여기서 β_1, β_2, $\cdots$, β_k 등의 회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값을 가질 경우 개인 배경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예컨대, 동의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묻는 경우 5점으로 응답할 가능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회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가진다면 개인 배경이나 학교 특성 중 해당 변인에 의해서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응답(예컨대, 동의 정도에 대해 5점 척도로 묻는 경우 1점으로 응답할 가능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능력 이외의 개인 특성이나 학교 특성 등에 따라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해당 문항이 능력 이외의 응답자 특성에 따라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지는 차별기능문항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나. 사례제시법 개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는 방식은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한 응답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등 인권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응답자마다 다를 수 있다. 즉, 두 응답자가 인권의식에 대한 개념을 같게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민주성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응답자마다 달라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가령, '매우 그렇다'와 같은 긍정적인 응답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실제 인권의식 수준이 높지 않을지라도 '매우 그렇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실제 인권의식 수준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달라진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란 쉽지 않다.

King 등(2004)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제시법(anchoring vignette method, AVM)'을 제안하였다. 사례제시법은 '자기 평가(self-assessment, SA)' 문항과 '앵커링 비

네트(anchoring vignette, AV)' 문항을 활용한다(King et al., 2004). 여기서 자기 평가 문항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많이 활용하는 인식 조사 문항을 의미하며, 앵커링 비네트 문항은 가설적인 상황 속에서 구성된 짧은 사례 문항을 의미한다(권오상·서영·정재호, 2012: 26). 기존 연구들이 자기 평가 문항만을 활용하여 응답자의 인식 정도를 평가해 왔다면, 사례제시법은 가설적인 상황을 묘사한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응답 성향을 파악하고,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보정한 차별기능문항(DIF) 보정 변수를 산출한다. King 등(2004)은 이런 과정을 통해 DIF 문제를 보완한 후 응답자들의 인식 정도를 평가할 경우 자기 응답식 인식 조사가 가지는 한계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례제시법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한다(King et al., 2004: 194). 첫째, 응답일치성(response consistency, RC)이다(King et al., 2004: 194). 이 가정은 응답자들이 자기 평가 문항과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응답할 때 동일한 응답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달리 말해, 자기 평가 문항과 앵커링 비네트 문항 모두에서 한 응답자의 응답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일치성 가정은 응답자마다 각기 다른 이유에서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개별 응답자의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하는 방식도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가정은 개별 응답자가 같은 내용 영역에 대한 자기 평가 문항과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응답할 때 동일한 응답 기준에 따라 응답해야 함을 가정한다. 예컨대, 한 응답자가 인권 감수성과 관련한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응답할 때 가설적인 인물 및 상황에 대해 적용했던 평가 기준이 자기 평가 문항에서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할 때, 응답일치성 가정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네트 동등성(vignette equivalence, VE)이다(King et al., 2004: 194). 일반적으로 앵커링 비네트 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상, 중, 하 등 세 가지의 하위 문항들로 구성된다. 가령, 인권 감수성과 관련하여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구성할 경우, 감수성이 우수한 가설적 상황을 나타내는 '상'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 보통 수준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중'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취약한 '하'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으로 구성한다. 이 때, 비네트 동등성 가정은 모든 응답자에게서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세 가지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가 수준에 맞춰 일관되게 나타나야 함을 의미한다(King et al., 2004). 비네트 동등성 가

정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확률적으로(randomly) 일정 부분 다를 수 있겠지만,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이 나타내는 인권 감수성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가 집단 특성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상, 중, 하로 인권 감수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세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해 응답자가 상, 중, 하 순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 상, 중 혹은 중, 상, 하 등과 같이 인식하였다면,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토대로 사례제시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크게 비모수적 접근과 모수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2014)에서 적용했던 비모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에, 여기서는 비모수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사례제시법을 소개한다. 비모수적 접근(Non-parametric approach)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조정하여 차별기능문항의 문제를 보정하는 방식이다(King et al., 2004: 195). [그림 Ⅶ-1]을 통해 접근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Ⅶ-1]은 가상인물1, 가상인물2, 가상인물3에 대한 세 가지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을 가지고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응답자1과 응답자2의 응답 결과를 조정하는 방식을 설명한 그림이다. 수직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각 응답자의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오른쪽은 세 가지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서 응답한 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수직선 중 가장 왼편에 있는 수직선은 응답자1의 응답 결과를, 가운데 수직선은 응답자2의 응답 결과를, 오른편에 있는 수직선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활용하여 응답자1과 응답자2의 결과를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응답자1은 응답자2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직선상에서 응답자1의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표시가 응답자2의 응답 표시에 비해 비교적 '높음'에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경향성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응답자1이 응답자2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음'에 가깝게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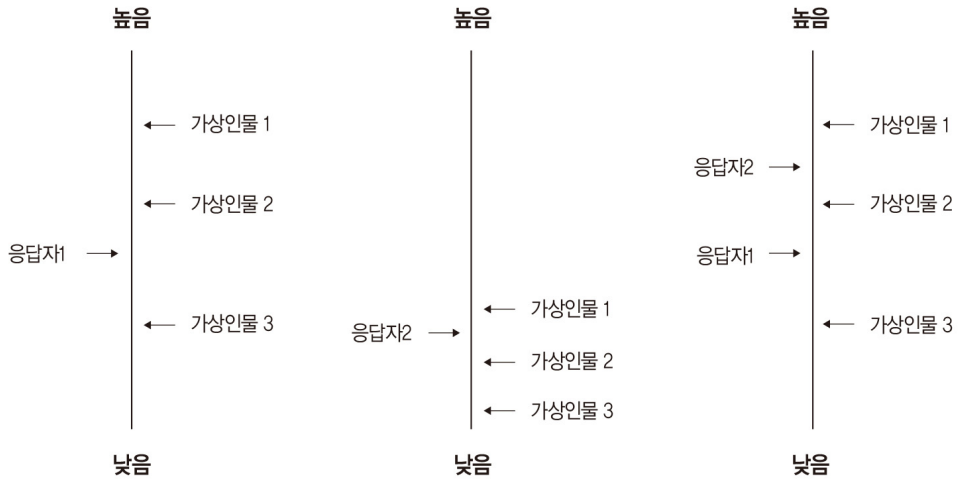

[그림 Ⅶ-1] 사례제시법의 비모수적 접근 개념도

출처: King et al. (2004: 195) 재구성

응답자들이 자기 평가 문항과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응답할 때 동일한 응답 기준을 사용한다는 응답일치성 가정과 모든 응답자들에게서 세 가지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가 수준에 맞춰 일관되게 나타나야 한다는 비네트 동등성 가정에 근거하여 사례제시법을 통해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1의 응답 결과를 응답자2의 결과와 일치시킬 수 있다. [그림 Ⅶ-1]과 같이 각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서 묘사한 가상인물1, 가상인물2, 가상인물3 등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일치시킨 후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응답 결과를 조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응답 결과를 조정하면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전과 달리, 응답자2가 응답자1보다 자신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례제시법 적용

본 연구는 학생 인권의식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등 인권의식의 세 가지 하위영역별로 상, 중, 하의 3개 수준에 맞춰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구성하였다(〈표 Ⅶ-1〉 참조). OECD(2014)가 적용했던 비모수적 접근 방식을 따른 것으로, 영역별로 구성한 세 가지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정한다. 하위영역별로 첫 번째 행의 문항은 해당 인권의식의 '상' 수준을, 두 번째 행의 문항은 '중' 수준을, 세 번째 행의 문항은 '하' 수준을 각각 나타내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이다.

〈표 Ⅶ-1〉 인권의식 관련 앵커링 비네트(Anchoring Vignettes) 문항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1) 태상이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항상 다른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다.	1) 지유는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1) 서유는 학급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준다.
2) 자현이는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가끔 상황에 따라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2) 지혜는 종종 친구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인지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도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2) 예리는 친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3) 경수는 인권에 대해 잘 모르며 항상 친구들의 의견과 감정을 무시한다.	3) 지희는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어려움은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원식이는 반 친구들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며 무례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이와 같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활용하여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가 가지는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보완한 DIF 보정 변수(DIF corrected variable)를 산출하였다. 여기서는 OECD가 시행한 PISA 조사에서 활용했던 비모수적 방식으로 DIF 보정 변수를 산출하였다(OECD, 2014).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활용하여 DIF 보정 변수(DIF corrected variable)를 구성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King et al., 2004: 195).

$$
\begin{aligned}
C_i = 1 &\text{ if } y_i < z_{i1}, \\
2 &\text{ if } y_i = z_{i1}, \\
3 &\text{ if } z_{i1} < y_i < z_{i2}, \\
4 &\text{ if } y_i = z_{i2}, \\
&\cdots \\
2J+1 &\text{ if } y_i > z_{i,J},
\end{aligned}
$$

여기서 C_i는 DIF 보정 변수를, y_i는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자 i의 응답결과를, z_{ij}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 j에 대한 응답자 i의 응답 결과를 각각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만약 한 응답자의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하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응답 결과보다 작을 경우($y_i < z_{i1}$), DIF 보정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응답자는 '1'로 코딩된다. 또한 다른 응답자의 자기 평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가 하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응답 결과와 같을 경우($y_i = z_{i1}$), DIF 보정 변수를 코딩하는 과정에서 이 응답자는 '2'로 코딩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DIF 보정 변수를 생성해 나갈 때, 7점 척도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인 DIF 보정 변수를 얻게 된다.

3 분석 결과

가. 인권의식 문항의 차별기능문항 분석

1) 학생 응답 문항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실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권의식 문항에서 차별기능문항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Ⅶ-2〉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응답한 인권판단 관련 문항의 차별기능문항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만약 특정 문항에서 집단 간 차이에 따라 특정 집단에 속한 학생이 자신의 인권판단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인식할 경우 해당 문항은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성취수준, 가구 내 도서 수 등 학생 개인 특성에 따라 인권판단에 대한 응답의 경향성이 달라졌다. 예컨대, 인권판단관련 문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인권판단과 관련한 8개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으면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데, 문항6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문항에서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상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가구 내 도서 수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 내 도서 수가 더 많을수록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가정환경이 양호한 학생들이 비교적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Ⅶ-2〉 인권판단 문항의 차별기능문항 분석(학생)

인권 판단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여학생	.564***	.626***	.457***	.905***	.789***	.685***	.394***	.183***
	(.033)	(.033)	(.033)	(.039)	(.034)	(.036)	(.031)	(.032)
성취수준	.072***	.103***	.067***	.097***	.051***	.014	.071***	.030**
	(.011)	(.011)	(.011)	(.013)	(.011)	(.012)	(.011)	(.011)
가구 내 도서 수	.001***	.001***	.001**	.001*	.001***	.000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초등학교	-.044	-.046	.276***	.472***	.498***	.875***	.245***	.026
	(.074)	(.074)	(.075)	(.082)	(.074)	(.078)	(.072)	(.072)
중학교	-.060	-.047	-.002	.076	.221**	.159*	.107	.094
	(.072)	(.072)	(.073)	(.079)	(.071)	(.074)	(.070)	(.070)
일반고	.262***	.324***	.048	.146	.218**	.067	.108	.197**
	(.073)	(.073)	(.074)	(.080)	(.072)	(.075)	(.071)	(.071)
중소도시	.007	.086*	-.026	.110*	.021	-.004	-.005	.001
	(.042)	(.043)	(.043)	(.049)	(.044)	(.046)	(.041)	(.041)
특별광역시	.080	.161***	.033	.253***	.066	-.003	.002	.027
	(.042)	(.042)	(.043)	(.049)	(.043)	(.046)	(.041)	(.041)
사립학교	.023	.035	.096*	.053	.041	.028	.061	.035
	(.042)	(.042)	(.042)	(.048)	(.043)	(.044)	(.040)	(.040)
인권조례	-.049	-.007	-.035	-.095*	-.050	-.084*	-.085*	-.074*
	(.035)	(.035)	(.035)	(.040)	(.036)	(.037)	(.033)	(.033)
혁신학교	.041	.050	-.023	-.029	-.009	-.074	-.049	.008
	(.047)	(.047)	(.047)	(.054)	(.048)	(.051)	(.045)	(.045)
학생 수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 문항1: 학생들은 판단력과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문항2: 학교 규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문항3: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문항4: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문항5: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 문항6: 경제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문항7: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고문을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문항8: 부모님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때려도 괜찮다.

*** p〈.001, ** p〈.01, * p〈.05

둘째, 학교급, 학교 소재 지역, 학교 유형, 인권조례 지정 여부 등 학교 및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학생의 인권판단에 대한 응답이 달라졌다. 가령, 특성화고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각 문항별로 학교급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인권판단 수준을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은 달리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문항1, 문항2, 문항5, 문항8의 경우 일반고에서,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은 초등학교에서, 문항5, 문항6은 중학교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도 학생의 인권판단에 대한 응답 경향성이 달랐는데, 문항2와 문항4의 경우 읍면 지역보다 중소도시나 특별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의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일부 문항에서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런 경향은 특히 문항4, 문항6, 문항7, 문항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 감수성 문항에서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Ⅶ-3〉과 같다. 첫째, 성별, 성취수준, 가정환경 등 학생의 개인 및 가정 특성에 따라 인권 감수성에 대한 학생 평가가 달라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은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경향은 분석에 활용한 모든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런 경향은 문항7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학생의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가정환경도 학생의 인권 감수성 평가도 일정한 관련성을 보였다. 가구 내 도서 수가 많은 학생, 즉 가정환경이 양호한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Ⅶ-3〉 인권감수성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학생)

인권감수성	문항1	문항2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여학생	.120***	.460***	.400***	.316***	.093**	.132***	.869***
	(.032)	(.034)	(.033)	(.033)	(.032)	(.032)	(.034)
성취수준	.075***	.110***	.081***	.089***	.039***	.016	.063***
	(.011)	(.011)	(.011)	(.011)	(.011)	(.011)	(.011)
가구 내 도서 수	.000*	.001**	.001***	.000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인권감수성	문항1	문항2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초등학교	.556***	.247**	.210**	.269***	.456***	.092	.187*
	(.074)	(.076)	(.075)	(.075)	(.073)	(.073)	(.076)
중학교	.261***	-.008	-.034	.068	.035	.160*	.014
	(.072)	(.074)	(.073)	(.073)	(.071)	(.071)	(.074)
일반고	.276***	.179*	.099	.247***	.093	.156*	.139
	(.073)	(.075)	(.074)	(.074)	(.072)	(.072)	(.075)
중소도시	-.124**	-.020	.027	-.041	-.076	-.076	-.051
	(.042)	(.044)	(.043)	(.043)	(.042)	(.041)	(.044)
특별광역시	.010	.093*	.150***	.073	.037	.011	.091*
	(.042)	(.043)	(.043)	(.043)	(.042)	(.041)	(.044)
사립학교	.117**	.085*	.111**	.110**	.227***	.113**	.153***
	(.041)	(.043)	(.042)	(.042)	(.041)	(.041)	(.043)
인권조례	-.087*	-.087*	-.082*	-.119***	-.140***	-.088**	-.080*
	(.034)	(.036)	(.035)	(.035)	(.034)	(.034)	(.036)
혁신학교	-.069	-.116*	-.040	-.085	-.026	.001	.017
	(.046)	(.048)	(.047)	(.047)	(.046)	(.045)	(.048)
학생 수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 문항1: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친구를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문항2: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 문항4: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문항5: 동아리 활동이나 학급 활동에 차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문항6: 장애를 가진 친구가 체육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문항7: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을 먼저 조사 한다면, 나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문항8: 누군가 성별이나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 p〈.001, ** p〈.01, * p〈.05

둘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특성이나 학교가 소재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인권 감수성에 대한 학생 응답이 달리 나타났다. 가령, 특성화고등학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학교급에 따른 응답 경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문항7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중학생들은 문항1과 문항7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문항1, 문항2, 문항5, 문항7에서 각각 자신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학생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타났다.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교해 모든 문항에서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권조례제정 여부에 따라서도 응답 경향성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의 학교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Ⅶ-4〉는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하여 차별기능문항 여부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가정환경 등 학생 개인 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에 따라 학생의 인권 행동의사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달리 나타났다. 예컨대, 문항2, 문항3, 문항5, 문항6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문항1의 경우 반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교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성취수준에 따른 학생의 행동의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일관된 양상을 보였는데, 문항8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가정 내 도서 수가 많은 학생, 즉 가정환경이 양호한 학생들도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Ⅶ-4〉 인권 행동의사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학생)

행동의사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8
여학생	-.115***	.160***	.355***	.001	.188***	.234***	.015
	(.033)	(.033)	(.034)	(.032)	(.033)	(.032)	(.032)
성취수준	.069***	.091***	.110***	.127***	.080***	.062***	.017
	(.011)	(.011)	(.012)	(.011)	(.011)	(.011)	(.011)
가구 내 도서 수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초등학교	.432***	.438***	.295***	-.032	-.038	-.142*	.079
	(.076)	(.075)	(.077)	(.074)	(.075)	(.072)	(.073)
중학교	.029	.054	.051	.036	.076	.115	.067
	(.074)	(.072)	(.075)	(.072)	(.073)	(.070)	(.071)
일반고	.122	.144	.213**	.177*	.251***	.149*	.024
	(.075)	(.073)	(.076)	(.073)	(.074)	(.071)	(.072)

행동의사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8
중소도시	-.139**	-.034	-.091*	-.119**	-.108*	-.144***	-.125**
	(.043)	(.043)	(.044)	(.042)	(.043)	(.042)	(.042)
특별광역시	-.045	.098*	.043	-.066	-.047	-.042	-.112**
	(.043)	(.043)	(.044)	(.042)	(.042)	(.041)	(.041)
사립학교	.105*	.093*	.049	.059	.157***	.099*	.076
	(.042)	(.042)	(.043)	(.041)	(.042)	(.041)	(.041)
인권조례	-.189***	-.189***	-.165***	-.193***	-.222***	-.182***	-.123***
	(.035)	(.035)	(.036)	(.034)	(.035)	(.034)	(.034)
혁신학교	-.076	-.040	-.049	-.042	-.041	-.123**	-.070
	(.048)	(.047)	(.049)	(.046)	(.047)	(.045)	(.046)
학생 수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13,524

※ 문항1: 같은 반 친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문항2: 외국인 학생이 전학 온다면 먼저 다가가 친해질 것이다, 문항3: 친구가 인권침해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와줄 것이다, 문항4: 선생님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문항5: 지진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할 것이다, 문항6: 내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등)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문항8: 인권 관련 집회를 본다면 시간을 뺏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p<.001, ** p<.01, * p<.05

둘째,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특성이나 학교가 소재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권 행동의사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에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문항1, 문항2, 문항3에서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문항6에서는 초등학생의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에서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도 인권 행동의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령, 읍면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교해 중소도시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권 행동의사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경향은 문항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같았다. 한편, 문항1, 문항2, 문항5, 문항6에서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보다 자신의 인권 행동

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교 설립유형에 따라 인권 행동의사에 따른 학생의 자기 인식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교사 응답 문항

인권의식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였다.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등 세 가지 인권의식을 중심으로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가 검증된 문항만을 중심으로 차별기능문항 여부를 검토하였다.

〈표 Ⅶ-5〉에서는 인권판단에 대해서 교사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개인 특성에 따라 인권판단에 대한 교사의 자기 응답 결과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며 달리 나타났다. 예컨대,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문항3, 문항5, 문항6, 문항7 등 모든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연령에 따라서도 인권판단에 대한 교사의 자기 평가에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예컨대, 연령이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젊은 교사는 50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연령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판단의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문항5, 문항6, 문항7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결과였다. 아울러, 사회나 도덕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판단을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문항3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5의 경우 정규직 교사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에 비교해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5〉 '인권판단' 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교사)

인권판단	문항3	문항5	문항6	문항7
여교사 여부	.194**	.650***	.436***	.185***
	(.060)	(.054)	(.058)	(.054)
연령1 (29세 이하)	-.192	-.709***	-.605***	-.365***
	(.103)	(.094)	(.101)	(.092)

인권판단	문항3	문항5	문항6	문항7
연령2 (30-39세)	-.237**	-.503***	-.372***	-.141*
	(.076)	(.069)	(.076)	(.069)
연령3 (40-49세)	-.011	-.165*	-.025	.120
	(.075)	(.068)	(.077)	(.067)
사회/도덕과 담당교사 여부	-.123*	-.018	-.027	-.010
	(.061)	(.055)	(.060)	(.055)
정규직 교사 여부	-.001	.348***	.142	.114
	(.080)	(.073)	(.079)	(.073)
부장교사 여부	.121	-.095	.034	.098
	(.070)	(.063)	(.070)	(.063)
초등학교	.448***	.575***	.609***	.371**
	(.123)	(.116)	(.121)	(.114)
중학교	.306**	.259*	.414***	.271*
	(.117)	(.110)	(.114)	(.109)
일반고	.244*	.156	.417***	.254*
	(.117)	(.110)	(.114)	(.109)
중소도시	.004	-.055	-.012	-.021
	(.072)	(.065)	(.071)	(.065)
특별광역시	.070	.077	.125	.069
	(.070)	(.063)	(.070)	(.063)
사립학교	-.264***	-.077	-.302***	-.271***
	(.072)	(.066)	(.071)	(.066)
인권조례	.013	-.056	-.078	.091
	(.058)	(.052)	(.058)	(.053)
혁신학교	.057	.140	.083	-.001
	(.080)	(.072)	(.080)	(.072)
교사 수	5,886	5,886	5,886	5,886

※ 문항3: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된다, 문항5: 회사나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 존중 받아야 한다, 문항6: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항7: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고문을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 p<.001, ** p<.01, * p<.05

둘째, 교사 특성과 함께,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특성도 인권판단에 대한 응답 및 자기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 요인이었다.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인권판단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경향은 모든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문항5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에 따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인권판단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인권판단과 관련한 4개의 문항들이 차별기능문항으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이런 경향성은 학교 설립유형과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항5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판단 수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Ⅶ-6〉은 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교사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특성에 따라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사의 응답 결과에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났다. 예컨대, 여교사는 남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이런 경향은 문항1과 문항8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평가는 달리 나타났다. 50세 이상인 교사들을 준거집단으로 살펴본 결과, 문항2, 문항4, 문항7에서 29세 이하의 교사들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40세에서 49세 이하에 해당하는 교사는 50세 이상인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런 경향성은 문항5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유사하였다. 인권 감수성과 관련해서 정규직 여부도 응답 결과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이었다. 정규직 교사는 비정규직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런 결과는 문항1, 문항5, 문항6, 문항7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장교사도 일반 평교사에 비해 인권 감수성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문항2, 문항4, 문항6, 문항7에서 유의한 결과였다.

둘째, 학교급, 학교 설립유형, 혁신학교 여부 등과 같은 학교 특성도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사의 자기 평가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문항1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중학교 교사들은 모든 문항에서, 일반고등학교 교사들은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인권판단과 유사하게,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응답 경향성이 달리 나타났다. 예컨대, 문항1, 문항5, 문항8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혁신학교 여부에 따라서도 교사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감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문항1, 문항7, 문항8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표 Ⅶ-6〉 인권 감수성 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교사)

인권 감수성	문항1	문항2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여교사 여부	-.092	.290***	.321***	.143*	.189**	.300***	.016
	(.058)	(.063)	(.065)	(.058)	(.060)	(.064)	(.057)
연령1 (29세 이하)	.092	.408***	.309**	.186	-.011	.345**	.092
	(.099)	(.113)	(.118)	(.102)	(.104)	(.114)	(.098)
연령2 (30-39세)	.193**	.272***	.156	.108	.027	.183*	.054
	(.073)	(.079)	(.083)	(.074)	(.076)	(.081)	(.072)
연령3 (40-49세)	.291***	.167*	.213**	.119	.263***	.246**	.194**
	(.071)	(.077)	(.082)	(.072)	(.076)	(.079)	(.070)
사회/도덕과 담당교사 여부	-.087	.007	-.079	.060	-.074	-.080	.006
	(.059)	(.064)	(.067)	(.059)	(.062)	(.066)	(.058)
정규직 교사 여부	-.566***	-.091	-.029	-.191*	-.200*	-.189*	-.012
	(.082)	(.087)	(.089)	(.080)	(.084)	(.089)	(.077)
부장교사 여부	.101	.150*	.189*	.120	.143*	.217**	.043
	(.066)	(.073)	(.079)	(.068)	(.071)	(.076)	(.066)
초등학교	-.124	.433***	.753***	.506***	.316*	.553***	.675***
	(.120)	(.129)	(.132)	(.121)	(.124)	(.129)	(.119)
중학교	.256*	.391**	.470***	.410***	.359**	.473***	.595***
	(.116)	(.122)	(.123)	(.115)	(.118)	(.122)	(.113)
일반고	.124	.201	.240	.228*	.248*	.261*	.473***
	(.116)	(.122)	(.122)	(.115)	(.118)	(.121)	(.113)

인권 감수성	문항1	문항2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7	문항8
중소도시	-.078	-.075	.027	-.007	.002	.023	-.020
	(.069)	(.077)	(.081)	(.071)	(.074)	(.078)	(.069)
특별광역시	-.041	-.021	.102	-.057	-.066	.089	-.076
	(.067)	(.074)	(.079)	(.068)	(.071)	(.076)	(.066)
사립학교	.138	-.164*	-.209**	-.112	-.271***	-.259***	-.106
	(.072)	(.075)	(.078)	(.071)	(.073)	(.077)	(.069)
인권조례	.011	.091	-.044	.044	.051	.051	-.048
	(.056)	(.062)	(.065)	(.057)	(.059)	(.063)	(.055)
혁신학교	.200**	.131	.083	.092	.115	.200*	.155*
	(.076)	(.086)	(.091)	(.078)	(.083)	(.090)	(.076)
교사 수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 문항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지켜볼 때, 불편하다, 문항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문항3: 종교적,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항4: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문항5: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문항6: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사자는 불합리함을 느낄 것이다, 문항7: 한부모, 미혼모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문항8: 질병 및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경우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다.

*** p〈.001, ** p〈.01, * p〈.05

〈표 Ⅶ-7〉은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해당 문항들이 차별기능문항에 해당하는 문항인지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연령, 담당교과, 정규직 여부, 보직교사 여부 등과 같은 교사 특성에 따라 인권 행동의사에 대한 교사의 자기 인식 및 평가가 달라졌다.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모든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문항3과 문항6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교사는 50세 이상인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30대에 해당하는 교사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0대 교사는 50세 이상인 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낮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문항3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동일하였다. 한편, 사회과와 도덕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비해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런 경향은 문항1, 문항2, 문항4, 문항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교사들은 비정규직 교사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문항1과 문항4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보직을 맡은 부장교사들은 평교사에 비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부장교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문항1에서 문항5까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Ⅶ-7〉 인권 행동의사 문항의 차별문항기능 분석(교사)

행동의사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8
여교사 여부	-.562***	-.590***	-.355***	-.462***	-.133*	-.237***	-.421***
	(.058)	(.058)	(.058)	(.057)	(.057)	(.054)	(.055)
연령1 (29세 이하)	-.341***	-.225*	-.019	-.528***	-.447***	-.094	-.261**
	(.101)	(.101)	(.100)	(.099)	(.099)	(.093)	(.094)
연령2 (30-39세)	-.311***	-.207**	-.092	-.362***	-.337***	-.208**	-.450***
	(.074)	(.073)	(.074)	(.072)	(.072)	(.068)	(.069)
연령3 (40-49세)	-.128	-.005	-.052	-.209**	-.312***	-.050	-.250***
	(.071)	(.071)	(.071)	(.069)	(.070)	(.065)	(.067)
사회/도덕과 담당교사 여부	.127*	.156**	.097	.166**	.075	.105	.200***
	(.059)	(.059)	(.059)	(.058)	(.058)	(.054)	(.055)
정규직 교사 여부	.039	-.451***	-.198*	-.040	-.431***	-.383***	-.301***
	(.080)	(.079)	(.080)	(.078)	(.078)	(.074)	(.074)
부장교사 여부	.373***	.345***	.316***	.427***	.130*	.069	-.016
	(.066)	(.066)	(.067)	(.065)	(.066)	(.061)	(.063)
초등학교	.214	-.171	.402**	.118	.039	-.096	-.083
	(.123)	(.122)	(.123)	(.119)	(.120)	(.112)	(.115)
중학교	.287*	.189	.334**	.190	.059	-.084	.027
	(.118)	(.116)	(.118)	(.114)	(.115)	(.107)	(.110)
일반고	-.073	-.078	-.014	-.110	-.083	-.218*	.009
	(.118)	(.116)	(.119)	(.114)	(.115)	(.107)	(.110)
중소도시	.030	.036	-.053	-.052	-.026	.023	-.107
	(.070)	(.069)	(.070)	(.068)	(.068)	(.064)	(.065)
특별광역시	-.030	-.100	-.136*	-.160*	-.205**	-.119	-.344***
	(.068)	(.068)	(.067)	(.066)	(.066)	(.062)	(.063)

행동의사	문항1	문항2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6	문항8
사립학교	-.286***	-.139*	-.192**	-.079	.034	.019	.047
	(.072)	(.071)	(.072)	(.069)	(.070)	(.066)	(.067)
인권조례	.002	-.042	-.027	-.044	-.137*	-.174***	-.118*
	(.056)	(.056)	(.056)	(.055)	(.055)	(.052)	(.053)
혁신학교	.184*	.152*	.195**	.177*	.181*	.090	.118
	(.076)	(.076)	(.076)	(.074)	(.075)	(.071)	(.072)
교사 수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5,886

※ 문항1: 학생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다면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문항2: 언어, 문화 등이 다른 학생이 전학 왔을 때 친구들과 친해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문항3: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이 있다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문항4: 학생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문항5: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문항6: 인권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해 SNS이나 인터넷에 의사를 표현할 것이다, 문항8: 인권 관련 캠페인이나 집회에 참여할 것이다.

*** p<.001, ** p<.01, * p<.05

둘째, 학교 소재 지역, 학교 설립유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인권 행동의사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달랐다. 예컨대, 특별광역시 소재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읍면 지역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이런 양상은 문항3, 문항4, 문항5, 문항8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설립유형에 따라서도 인권 행동의사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가 달랐다. 가령, 문항1, 문항2, 문항3과 관련하여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보다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인권 조례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항5, 문항6, 문항8과 관련해서 인권 조례를 제정한 지역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낮게 평가하였다. 한편,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자신의 인권 행동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문항6과 문항8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일관된 결과였다.

나. 사례제시법 문항의 타당도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응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네트 동

등성(vignette equivalence, VE)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네트 동등성 가정은 특정 요인의 세 가지 수준을 각각 묻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수준의 서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등 세 가지 인권의식 하위영역별로 상, 중, 하 수준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을 구성하여 총 9개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마련하였다. 비네트 동등성 가정은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확률적으로(randomly) 다를 수 있지만,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이해가 관찰 가능한 특성들에 따라 집단 사이에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상, 중, 하 수준에 해당하는 세 가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대한 응답이 각 수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하여 하 수준을 묻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면, 중 수준을 묻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서는 '그렇다'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 수준을 묻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해야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응답 결과를 확인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첫째, 학생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권의식 영역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조사 응답 학생 중 8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표 Ⅶ-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권판단과 관련해서 조사에 참여했던 13,524명 중 89.51%에 해당하는 12,105명이 '하≤중≤상'의 조건에 들어맞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2.15%에 해당하는 291명의 학생은 '중〈하≤상' 순으로 자신의 인권판단을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67%에 해당하는 학생은 중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 학생 중 4.67%에 해당하는 632명은 하 수준에 해당하는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인권 감수성과 관련하여 조사에 참여했던 13,524명의 학생 중 83.21%에 해당하는 11,253명의 학생이 '하≤중≤상' 순서에 맞게 답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학생 중 5.61%에 해당하는 759명의 학생은 '하≤상'으로 응답하였지만, 중 수준을 하 수준보다도 낮게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 또한, 전체 학생 중 8.73%에 해당하는 1,181명의 학생은 하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함으로써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해서는 13,524명의 학생 중 89.77%에 해당하는 12,140명의 학생은 '하≤중≤상' 순서로 맞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반면, 전체 응답 학생 중 3%에 해당하는 406명의 학생은 오히려 중 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5.71%에 해당하는 772명의 학생도 상 수준이나 중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보다 하 수준의 비네트 문항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8〉 사례제시법 문항에 대한 응답 타당성(학생)

구분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하≤중≤상	12,105	89.51	11,253	83.21	12,140	89.77
중〈하≤상	291	2.15	759	5.61	206	1.52
하≤상〈중	178	1.32	214	1.58	203	1.5
상〈하≤중	52	.38	46	.34	61	.45
하〈상〈중	266	1.97	71	.52	142	1.05
중≤상〈하	187	1.38	310	2.29	189	1.4
중〈상=하	219	1.62	550	4.07	298	2.2
상〈중≤하	226	1.67	321	2.37	285	2.11
전체	13,524	100	13,524	100	13,524	100

※ '하≤중≤상' 순서에 맞게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OECD(2014: 364-365)가 제시한 방식에 맞춰 응답값을 보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둘째, 인권의식에 대한 교사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전체 교사 중 87%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하≤중≤상'의 조건에 맞게 응답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권판단과 관련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의 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사에 참여한 5,886명의 교사 중 88.52%에 해당하는 5,210명의 교사가 '하≤중≤상'의 조건에

맞게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응답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응답 교사 중 4.19%에 해당하는 246명의 교사는 중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 교사 중 5.81%에 해당하는 434명의 교사는 하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인권 감수성과 관련하여 조사에 참여한 5,886명의 교사 중 87.56%에 해당하는 5,154명의 교사가 비네트 동등성 가정에 맞는 방식으로 앵커링 비네트 문항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 교사 중 2.17%에 해당하는 128명은 중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하≤중≤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전체 응답 교사 중 7.37%에 해당하는 434명의 교사는 하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 행동의사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 교사 중 90.23%에 해당하는 5,311명의 교사는 '하≤중≤상'의 순서에 맞게 응답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2.83%에 해당하는 167명은 중 수준의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Ⅶ-9〉 사례제시법 문항에 대한 응답 타당성(교사)

구분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하≤중≤상	5,210	88.52	5,154	87.56	5,311	90.23
중〈하≤상	88	1.50	170	2.89	44	.75
하≤상〈중	114	1.94	92	1.56	103	1.75
상〈하≤중	61	1.04	20	.34	32	.54
하〈상〈중	71	1.21	16	.27	32	.54
중≤상〈하	79	1.34	103	1.75	84	1.43
중〈상=하	109	1.85	168	2.85	123	2.09
상〈중≤하	154	2.62	163	2.77	157	2.67
전체	5,886	100	5,886	100	5,886	100

※ '하≤중≤상' 순서에 맞게 응답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OECD(2014: 364-365)가 제시한 방식에 맞춰 응답값을 보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다.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집단 간 인권의식 차이 비교

본 연구는 차별기능문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였다. 아래에서는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차이를 비교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앵커리 비네트 문항을 활용하여 DIF 보정변수를 생성하였는데, 이렇게 생성한 DIF 보정변수를 가지고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아래의 〈표 Ⅶ-10〉은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학생의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등 세 가지 인권의식 변수들이 사립학교 여부, 인권조례 제정 여부, 혁신학교 여부, 여학생 여부 등과 같은 집단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표이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제시법 적용 후 두 집단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인권의식 차이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예컨대, 사립학교 여부에 따라 인권 감수성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전에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즉,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3.17점으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03점 높았으며,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후에 이러한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조례 제정 여부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 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은 3.12점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 3.16점과 비교해 볼 때, .04점 가량 낮았다. 그러나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러한 점수 차이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Ⅶ-10〉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학생의 인권의식 비교

구분	사례제시법 적용 전			사례제시법 적용 후		
	해당	미해당	t검증	해당	미해당	t검증[a)]
인권판단						
사립학교 여부	3.22	3.22	.01	4.82	4.81	-.30
	(.67)	(.65)	(.99)	(1.74)	(1.71)	(.77)
	3,222	10,302		3,222	10,302	
인권조례 제정 여부	3.21	3.23	1.94	4.80	4.82	.65
	(.67)	(.64)	(.05)	(1.75)	(1.70)	(.52)
	5,647	7,877		5,647	7,877	

구분	사례제시법 적용 전			사례제시법 적용 후		
	해당	미해당	t검증	해당	미해당	t검증[a)]
혁신학교 여부	3.21 (.67) 2,083	3.23 (.65) 11,441	1.05 (.30)	4.78 (1.78) 2,083	4.82 (1.71) 11,441	.85 (.39)
여학생 여부	3.36 (.54) 6,743	3.09 (.73) 6,781	-24.69*** (.00)	5.16 (1.47) 6,743	4.47 (1.88) 6,781	-23.69*** (.00)
인권 감수성						
사립학교 여부	3.17 (.57) 3,222	3.14 (.60) 10,302	-2.93** (.00)	4.71 (1.73) 3,222	4.68 (1.75) 10,302	-.91 (.36)
인권조례 제정 여부	3.12 (.60) 5,647	3.16 (.59) 7,877	3.66*** (.00)	4.66 (1.76) 5,647	4.70 (1.73) 7,877	1.19 (.23)
혁신학교 여부	3.11 (.61) 2,083	3.15 (.59) 11,441	2.86** (.00)	4.60 (1.81) 2,083	4.70 (1.73) 11,441	2.28* (.02)
여학생 여부	3.22 (.52) 6,743	3.07 (.65) 6,781	-14.69*** (.00)	4.95 (1.53) 6,743	4.42 (1.90) 6,781	-17.75*** (.00)
인권 행동의사						
사립학교 여부	3.07 (.59) 3,222	3.05 (.61) 10,302	-1.82 (.07)	4.61 (1.67) 3,222	4.59 (1.67) 10,302	-.78 (.43)
인권조례 제정 여부	3.01 (.61) 5,647	3.08 (.60) 7,877	7.10*** (.00)	4.54 (1.70) 5,647	4.63 (1.65) 7,877	3.15** (.00)
혁신학교 여부	3.01 (.61) 2,083	3.06 (.61) 11,441	3.82*** (.00)	4.51 (1.74) 2,083	4.61 (1.65) 11,441	2.43* (.02)
여학생 여부	3.08 (.55) 6,743	3.02 (.66) 6,781	-6.05*** (.00)	4.82 (1.48) 6,743	4.36 (1.81) 6,781	-16.17*** (.00)

※ 제시값은 평균이며, ( )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a)의 경우 제시값은 t값이며, ( ) 안의 값은 p값임.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표 Ⅶ-11〉은 교사의 인권의식 차이가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로 사립학교 여부, 인권조례 제정 여부, 혁신학교 여부, 여학생 여부 등과 같은 집단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한 표이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차이가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후에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전,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3.65점)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3.59점)에 비해 .06점 높았다. 그러나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후 이런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변화는 인권 행동의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 행동의사는 3.12점으로 일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교해 .06점 높았다. 그러나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후 이러한 차이는 더 이상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Ⅶ-11〉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 교사의 인권의식 비교

구분	사례제시법 적용 전			사례제시법 적용 후		
	해당	미해당	t검증a)	해당	미해당	t검증a)
인권판단						
사립학교 여부	3.18 (.71) 1,363	3.36 (.65) 4523	8.68*** (.00)	4.61 (1.89) 1,363	5.00 (1.61) 4,523	6.88*** (.00)
인권조례 제정 여부	3.32 (.66) 2,441	3.32 (.68) 3445	-.47 (.64)	4.94 (1.67) 2,441	4.89 (1.70) 3,445	-.97 (.33)
혁신학교 여부	3.36 (.69) 895	3.31 (.66) 4991	-1.93 (.05)	5.01 (1.61) 895	4.89 (1.70) 4,991	-2.03* (.04)
여교사 여부	3.39 (.62) 3,853	3.18 (.74) 2033	-11.19*** (.00)	5.08 (1.55) 3,853	4.59 (1.87) 2,033	-10.18*** (.00)
인권 감수성						
사립학교 여부	3.55 (.49) 1,363	3.62 (.41) 4523	4.97*** (.00)	5.23 (1.77) 1,363	5.38 (1.46) 4,523	2.90** (.00)

구분	사례제시법 적용 전			사례제시법 적용 후		
	해당	미해당	t검증a)	해당	미해당	t검증a)
인권조례 제정 여부	3.61	3.60	-.77	5.36	5.34	-.68
	(.42)	(.44)	(.44)	(1.54)	(1.54)	(.49)
	2,441	3445		2,441	3,445	
혁신학교 여부	3.65	3.59	-3.43***	5.38	5.34	-.72
	(.42)	(.44)	(.00)	(1.49)	(1.55)	(.47)
	895	4991		895	4,991	
여교사 여부	3.62	3.56	-5.10***	5.46	5.13	-7.28***
	(.41)	(.47)	(.00)	(1.39)	(1.77)	(.00)
	3,853	2033		3,853	2,033	
인권 행동의사						
사립학교 여부	3.07	3.07	.37	4.51	4.61	2.14*
	(.52)	(.49)	(.71)	(1.69)	(1.43)	(.03)
	1,363	4523		1,363	4,523	
인권조례 제정 여부	3.05	3.08	2.44*	4.58	4.59	.33
	(.50)	(.49)	(.01)	(1.49)	(1.50)	(.74)
	2,441	3445		2,441	3,445	
혁신학교 여부	3.12	3.06	-2.85**	4.64	4.58	-1.21
	(.51)	(.49)	(.00)	(1.45)	(1.50)	(.23)
	895	4,991		895	4,991	
여교사 여부	3.03	3.15	8.92***	4.62	4.52	-2.31*
	(.48)	(.50)	(.00)	(1.41)	(1.64)	(.02)
	3,853	2,033		3,853	2,033	

*** p〈.001, ** p〈.01, * p〈.05

둘째, 앞의 경우와 달리,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지만, 사례제시법 적용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이전, 인권판단 점수에서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과 그렇지 않은 교사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례제시법을 적용 이후,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판단 점수는 5.01점으로 4.89점을 얻은 다른 교사들에 비교해 .19점 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행동의사와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사와 공립학교 교사 사이에도 유사한 형태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사례제시법을 적용하기 이전

에는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인 교사들과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사이에는 행동의사 점수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행동의사 점수는 4.51점으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 행동의사 점수(4.61점)와 비교할 때 약 .10점 낮아졌다.

4 시사점

본 연구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례제시법을 탐색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고, 앵커링 비네트 문항으로 사례분석법을 적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학생의 성취수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 인권의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사례제시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여부와 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에 따른 학생의 인권 감수성 차이에는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이후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권판단과 인권 감수성 차이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이런 연구 결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권의식과 같이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의 개인 특성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응답 경향성이 달리 나타나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인권의식 문항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응답이 측정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의식과 밀접한 연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래서 인권의식 조사와 같은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에서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인권의식 변수가 순서형 범주변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접근 방식과 함께 선행연구들이 주로 적용해 온 문항반응이론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문수,

2018)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권의식을 조사하는 문항에서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이 노정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사례제시법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여 인권의식 수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판단 수준이 그렇지 않은 교사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인권 행동의사 수준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사례제시법 적용 전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결과로 사례제시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사례제시법을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 비모수적 접근과 함께 모수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위해 앵커링 비네트 문항을 제시하고 이 문항의 응답 결과와 자기 평가 문항의 응답 결과를 모두 활용하여 DIF 보정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런 접근 방식은 모수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때 전제하는 가정들과 통제 변수들이 필요하지 않고 적용이 쉽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지만,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적절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King et al., 2004: 195). 이런 이유에서 비모수적 접근 방식과 함께 모수적 접근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제시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연구들은 사례제시법과 관련하여 모수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적용해 왔다(권오상 외, 2012; Jones et al., 2013; King et al., 2004). 따라서 향후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에서 모수적 접근 방식에 따른 사례제시법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례제시법의 주요 가정인 응답일치성 가정과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완화한 상태에서 적용 가능한 분석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례제시법의 주요 논리는 응답일치성 가정과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전제로 한다(King et al., 2004: 194). 따라서 두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례제시법은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앵커링 비네트 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도 가정 충족의 완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이런 가정들을 완화한 상태에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이런 노력과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정서 역량, 문제해결 역량, 자기주도 역량 등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를 기반으로 조사해 왔던 비인지적인 교육성과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논의해 왔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지적 영역과 비인지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인적인 교육성과를 논의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도 가능할 것이다.

Ⅷ.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학술적 의미와 제언
3. 정책적 제언

Ⅶ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아동·청소년의 개인 수준에서 전반적인 인권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학생들의 주요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수준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침해 실태는 어떠한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보고서 체계를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Ⅰ장), 이론적 배경(Ⅱ장), 조사 방법 및 도구 타당화(Ⅲ장) 등 조사 분석을 위한 기초 조사와 분석을 제시하였으며, 2부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 실태를 다각도로 드러낼 수 있도록 각 장별 핵심 주제와 질문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 도구 개발 및 자료 수집

2018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단기 수시연구과제로 추진한「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방안 연구(김진희 외, 2018)」에서 개발된 초·중등학교 학생용 및 교사용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타당화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학교용 조사 도구를 추가로 개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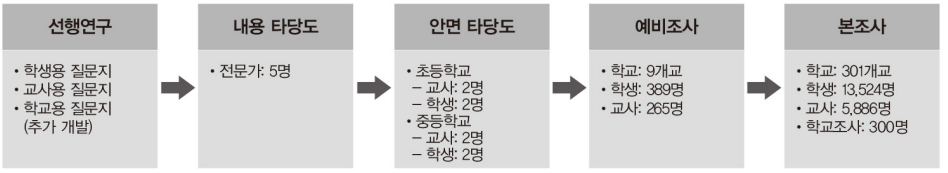

예비조사는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교사 4명 및 학생 4명의 검토를 통해 안면 타당도를 확보한 문항을 오프라인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 응답한 초등학생 118명, 중학생 136명, 고등학생 135명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265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문항과 요인간의 상관관계,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분석하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본조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사용 설문지는 해당학년 담당교사인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용 설문지는 교감이나 교무·연구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중등학교의 재적학생 수에 따라 층화군집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방식(학교 소재지, 학교유형(고등학교), 설립유형 등을 반영)으로 연구대상 학교를 표집 하였으며, 학교급별로 각각 105개 학교씩을 표집 하였다. 층화군집추출법에 따라 최종적 추출된 315개 학교 중 301개 학교(학생 13,524명, 교사 1,971명, 교감/부장교사 300명)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나. 조사도구 타당화

인권의식 조사 도구 문항의 타당화 분석 결과, 인권의식 척도는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지며, 타당화 과정에서도 가정된 하위구인과 동일하게 추출되었다. 초등 및 중등학교 학생, 교사 모두에서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각각에 대하여 8개씩 총 24개 문항이 개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학생용 척도에서는 2개 문항이 제거되었고, 교사용 척도에서는 6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정된 학생용 22문항과 교사용 18문항이 타당한 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3요인(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 모형지수의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 또한 적절한 수준임이 확인되어, 학생용과 교사용 모두 인권의식 척도의 구인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다. 2부: 주제별 분석 결과

Ⅳ장부터 Ⅶ장까지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실태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 인권을 중심에 두고 각 장별 핵심 주제 중심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인권실태 분석(Ⅳ장)과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인권유형 분석(Ⅴ장),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Ⅵ장), 차별기능문항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사례제시법 분석(Ⅶ장)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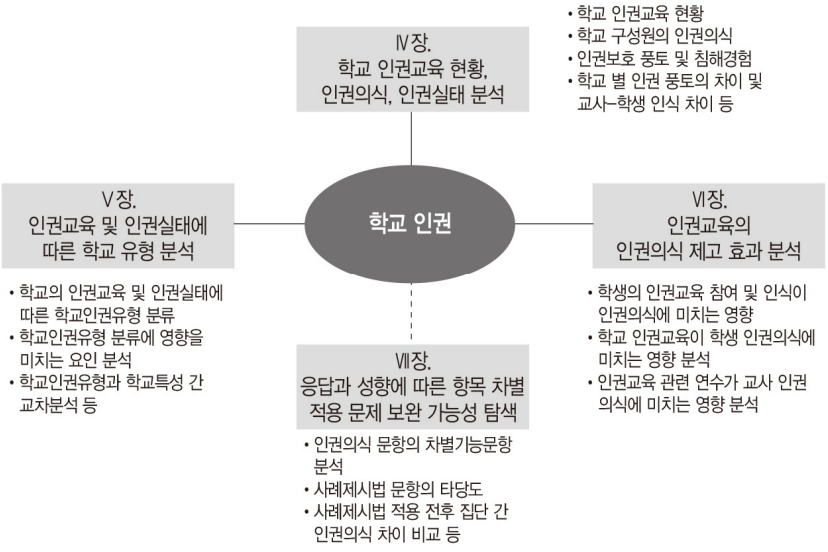

라. Ⅳ장: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 실태 분석

Ⅳ장에서는 1. 학교 인권교육현황, 2. 교사와 학생의 인권의식, 3. 학교 내 인권보호 실태, 4.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 5. 교사 전문성, 6. 지원 및 개선 요구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 간 인권보호 풍토의 차이와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의 인권 현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영역	주요 분석 내용
1. 학교 인권교육 현황	■ 인권교육 운영 형태, 운영 시간 ■ 학생의 인권교육 경험, 수업방법 및 효과 인식 등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의식	■ 교사의 인권의식, 학생의 인권의식 등
3. 인권보호 풍토 및 침해	■ 학교, 친구, 가정 내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 인권침해 경험 및 대응 등
4.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	■ 학교 내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권리 영역별)
5. 교사 전문성	■ 인권 중요도에 대한 인식 및 준비도, 연수 및 전문성 개발 정도
6. 지원 및 개선 요구	■ 지원 요구 사항, 개선을 위한 과제 등

■ 학교 인권교육 현황의 주요 특징

인권교육 현황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교육 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독립된 주제로 반영하기보다 유관교육 프로그램(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었다. 인권교육은 교과 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보다 생활지도(조회·종례, 상담 등) 시간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 보다 인권수업 시간이 많았다. 교사들은 학교교육 계획서에 반영된 인권교육과정 구성과 내용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10가지 인권 영역별 인권교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의 차이가 컸으며,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이 학생의 지식 이해와 태도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수업 방법, 내용 이해, 자료 활동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학교 간 인권 수업에 대한 만족도 차이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교사, 학생의 인권의식

학생의 인권의식을 분석한 결과 인권판단 3.22점(초등: 3.28, 중: 3.18, 고: 3.21), 인권 감수성 3.12점(초등: 3.18, 중: 3.08, 고: 3.12)에 비해 인권 행동의사는 3.01점(초등: 3.04, 중: 2.98, 고: 3.02)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체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인권판단, 인권 감수성, 인권 행동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인권의식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인권 감수성(3.60)이 가장 높았으며, 인권판단(3.32), 인권 행동의사(3.07) 순으로 나타나, 학생과 동일하게 인권 행동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권보호 실태**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인권이 가장 잘 보호되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인권보호 정도는 낮아졌다. 중등학교의 경우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 권리에 대한 보호 정도가 낮았다. 친구(선배) 간 권리보호 정도는 중학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특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정도가 가장 낮았다.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반면, 친구(선배)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졌다.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차별관련 인권침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부모,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은 학생 비율은 소수에 불과했다.

■ **학교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학교 간 차이 및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

학생 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권리 영역별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학교 간 차이와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첫째,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보호 정도에 대한 학교 간 차이가 컸으며, 둘째,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 역시 매우 컸다. 아래 그림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학교별 평균(교사, 학생) 값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학생 평균은 3.80점에서 최소 2.75점 사이에 분포해 있는 반면, 교사 평균은 최소 3.25점에서 최대 4.00점 사이에 분포해 있어, 학교 간, 학교 내 교사-학생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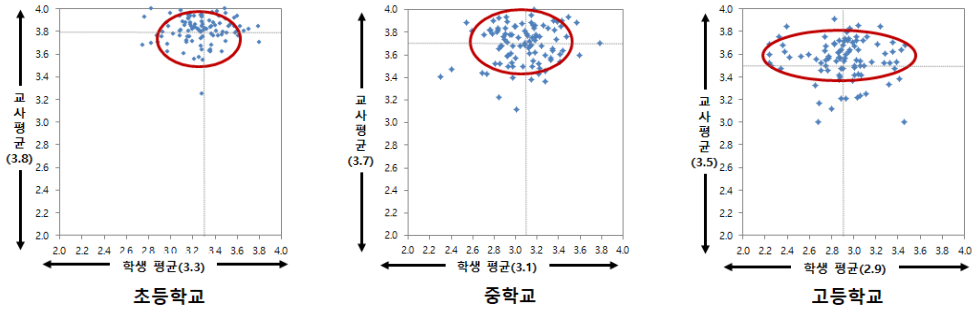

예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에 대한 교사-학생 간 인식 차이

■ 교사 전문성

교사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은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업에 대한 준비도는 중요도만큼 높지 않았다. 인권 중요도 및 수업 준비도 면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르칠 준비도 역시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 양성단계 및 현직에서의 인권 관련 연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수-학습 방법, 학급 운영 방안 등 실천적인 연수에 대한 교사들은 요구가 높았다. 인권 연수 내용은 지식으로서 인권 이해 교육의 비중이 높은 반면,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방법, 네트워크 구축 방법,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등에 관한 내용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연수가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 지원 및 개선 요구

교사들은 시간 확보의 어려움,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목표와 의미에 대한 공유 부재로 인해 인권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육 시간 확보, 교수-학습 자료 보급,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교육과정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마. Ⅴ장: 학교 유형 분석

Ⅴ장에서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정도, 학생 인권 실태(교사-학생, 학생-학생) ③ 교사 인권 실태(교사-교사, 교장 리더십)를 기준으로 학교를 유형화하였다.

인권교육		인권 실태			
교사 관련	학생관련	학생 관련		교사 관련	
인권교육의 질	인권교육 만족도	교사-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교직원 간 인권보호 정도	인권친화적 학교장 리더십

전체 301개 학교를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5개 유형-유형1(22.3%), 유형2(17.3%), 유형3(35.2%), 유형4(19.6%), 유형5(5.6%)-로 분류되었다. 유형1학교는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모두 잘 보호되고 있는 학교이다. 유형2 학교는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생의 인권보호 정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교사 간 인권보호 실태 및 학교장 리더십 등 교사 관련 항목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학교이다. 유형3 학교는 유형2 학교와는 반대로,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와 학생 관련 인권보호 실태는 평균보다 낮은 반면,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과 교사 관련 인권보호 실태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유형4 학교는 인권교육, 학생 및 교사 관련 인권보호 정도가 모두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 인권교육과 학교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학교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5 학교는 인권교육 정도와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수준이 유형4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보다 낮은 학교들로, 특히 교직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으며, 인권교육과 관련한 학교장 리더십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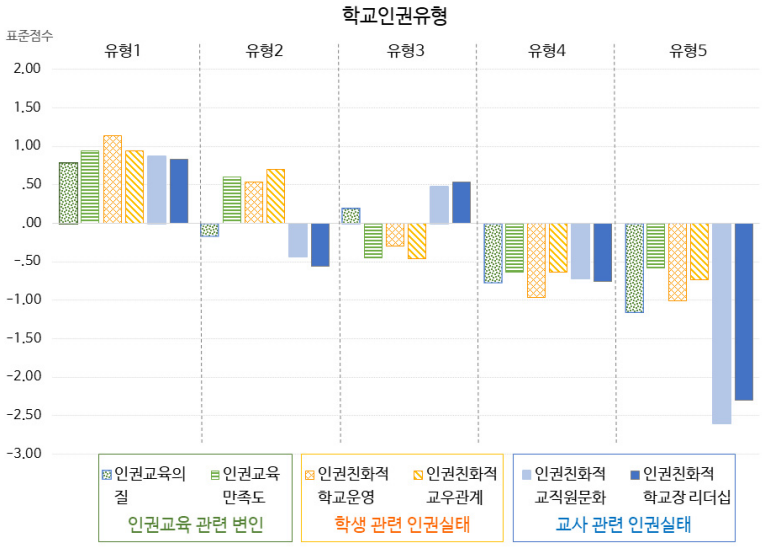

이렇게 분류된 학교 유형과 학교특성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교유형은 학교급, 학교소재지, 설립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유형1 학교는 초등학교, 군·읍·면지역 학교, 국·공립학교가 많았고, 유형2 학교에는 고등학교, 특별광역시학교, 국·공립학교가, 유형3 학교는 중학교, 중소도시 및 군·읍·면지역 학교, 국·공립학교가 많았다. 유형4 학교에는 고등학교, 중소도시, 국·공립학교가, 유형5 학교에는 고등학교, 특별광역시학교, 사립학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잠재프로파일분석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학교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였다.

바. Ⅵ장: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

Ⅵ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인권교육 및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는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생의 인권교육 참여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하

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인권교육이 어떠한 수업 풍토 속에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만족하는지가 교육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학교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이의 운영, 관련 제도가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급에 따라 학교 인권교육의 효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의 인권교육은 인권판단 제고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의 인권교육은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인권 감수성 제고에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교육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행동의사 측면에서는 오히려 중학교의 인권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인권교육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 대상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는 현행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교사들의 인권의식 함양, 특히 인권판단 및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 Ⅶ장: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

Ⅶ장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례제시법을 탐색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순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고, 앵커링 비네트 문항으로 사례분석법을 적용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성별, 학생의 성취수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소재지, 설립유형, 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과 같은 특성에 따라서 인권의식 문항에 대한 응답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사례제시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 여부와 인권조례 제정 여부 등에 따른 학생의 인권 감수성 차이에는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사례제시법을 적용한 이후 혁신학교 여부에 따른 교사의 인권판단과 인권 감수성 차이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2 학술적 의미와 제언

본 연구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기관으로서의 '학교', 학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공간으로서 '학교'의 중요성과 의미에 주목하고, 학교 내 인권 및 인권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인권의식 조사도구 개발(Ⅲ장), 학교 내 인권교육, 인권의식, 인권실태 분석(Ⅳ장),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유형 분석(Ⅴ장), 인권교육의 효과 분석(Ⅵ장)을 실시하였으며, 인권의식과 같은 자기보고방식의 인식 조사가 가지는 응답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탐색하였다(Ⅶ장). 다음에서는 각각의 분석이 가지는 학술적 의미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가. 인권의식 도구 개발: Ⅲ장

기존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제도적 인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체적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인 차원의 인권의식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구정화, 2016a: 5). 그러나 인권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인권의식, 인권인식, 인권태도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정진성 외, 2011: 36)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유성렬·김신영, 2013: 22; 천정웅, 2014: 36)에서도 인권의식은 구체적 인권 내용에 대해 동의 정도를 묻거나 사회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묻는 것에 그치고 있어 인권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에서 인권의식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권의식 조사도구는 인지적 요소인 인권판단(인권과 관련된 상황, 사건, 인물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관념, 판단 등), 정서적 요소인 인권 감수성(인권과 관련된 상황, 사건, 인물 등에 대해 갖는 평가, 호오의 감정 등), 행동적 요소인 인권 행동의사(인권과 관련된 상황, 사건, 인물에 대해 특정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로 구분되며,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의 구성요소인 인지, 정서, 행동을 인권의식에 도입·활용하여 인권의식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측정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타당화된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척도는 일부 문항에서의 초등과 중등 간에 표현의 차이만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학교급별 비교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학생용 척도와 교사용 척도는 각각 22문항,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제한된 시간에 교육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학교 인권교육 현황, 인권의식, 인권실태 분석: Ⅳ장

본 연구는 학교별 인권보호 풍토의 차이, 인권의식의 차이, 인권교육 만족도의 차이 등 선행연구가 다루지 못한 학교 내 학생인권(교육, 의식, 실태) 현황을 드러내고, 향후 관련 연구 수행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학교의 풍토가 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사-교장 등 학교 구성원 간 매일 매일 맺는 관계적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과, '인권교육'이라는 정규 과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권교육은 교원의 관심과 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또한, 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 영역별로 학생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학생 권리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인권교육이 단순히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인권교육 못지않게 생활을 통해 체득되는 인권교육(인권을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교별 인권보호 풍토의 차이에 관한 정보는 우리나라 학교의 인권 상황을 보다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한계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의 형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어디까지를 인권교육의 범주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 교육 등이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이라는 명시적인 연수 명, 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였지만, 향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

다.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른 학교인권유형 분석: Ⅴ장

본 연구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구성·내용·방

법 등 인권교육의 질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교우관계, 교직원문화, 학교장 리더십의 인권친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는 지식 전달을 넘어 경험과 삶의 현장성을 중시하는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민감도를 키우는 민주적 학교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 자료 분석을 통해 인권교육이 교과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학교공동체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권을 통한 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검증된 현실임을 확인하였다. 학교유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교육 만족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교사-학생 및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역시 높았고(유형1, 유형2 학교), 인권교육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교사-학생 및 학생-학생 간 인권보호 정도 역시 낮았다(유형3, 유형4, 유형5 학교). 마찬가지로 교사가 인식하는 인권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과 교사-교사 간 인권보호 정도 및 학교장 리더십 간에도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교구성원별로 인권교육과 인권실태 간에 유의미한 상호 영향력을 인식하고 또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학교유형 분류는 수치화된 인권교육의 만족도와 질,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 인권보호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각 유형별 학교의 특성과 현황을 상세하고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면담과 사례조사 등과 같은 질적 연구를 통해 학교 유형별로 학교현장에서 드러나는 실제 학생과 교사의 모습과 풍토를 인권과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피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라. 인권교육의 인권의식 제고 효과 분석: Ⅵ장

본 연구는 개념 및 실태 분석 중심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인권교육의 효과 즉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활동이 실제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교육 활동에 참여 여부,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수업 풍토, 학교 내 인권교육 관련 교육활동, 인권교육 계획 주체, 인권교육 관련교원 연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학생

의 인권의식 간의 관계를 최소자승법(OLS)과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등 정교한 통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는 학생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및 관심 정도, 인권의식 수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특성의 영향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인권교육 활동과 학생 인권수준 간의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인권의식에 대한 인권교육 활동의 평균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학생 및 학교 특성에 따른 차별적 효과, 인권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에 따른 강도 효과, 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에 따른 분위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심도 있는 분석이 병행될 때, 학생의 인권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시·도 교육청 간 인권교육 사업의 차이를 활용하여 사업 혹은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학교 규정, 인권교육, 노동교육, 성인권교육,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마다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교육청 간 인권교육 활동의 차이를 활용할 경우 인권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응답자 성향에 따른 항목 차별 적용 문제 보완 가능성 탐색: Ⅶ장

본 연구는 인권의식 관련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에서 차별기능문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비모수적인 방식의 사례 제시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차별기능문항의 식별하는 노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향후 인권의식과 같이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한 문항이 차별기능문항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기보고식 인식 조사에서 차별기능문항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도가 차별기능문항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통해 차별기능문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차별기능문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지만, 선행연구들은 차별기능문항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Mantel-Haenszel, SIBTEST, MIMIC, Wald-test, IRT-LR 등을 제안해 왔다. 따라서 특정 방식만을 적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차별기능문항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례제시법을 온전히 적용하기 위해 비모수적 접근과 함께 모수적 접근까지도 실증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비모수적 접근 방식을 통해 사례제시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런 접근 방식은 모수적 접근 방식을 적용할 때 전제하는 가정들과 통제 변수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적용이 쉽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King et al., 2004: 195). 이미 일부 연구들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모수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는데(권오상 외, 2012; Jones et al., 2013; King et al., 2004), 향후 비모수적 접근 방식과 함께 모수적 접근 방식을 함께 고려하여 사례제시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례제시법의 주요 가정인 응답일치성 가정과 비네트 동등성 가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정들을 완화한 상태에서도 적용 가능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인권의식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비인지적인 교육성과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적 제언

가.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학생 통제에서 학생 주도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이 인식하는 권리 영역별 인권보호 정도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반면,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학력 향상에 중

점을 두고 학생을 점점 더 강하게 통제하는 우리교육의 현실이 일정부분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학교 내 학생들의 권리보호 정도에 대한 교사-학생 간 인식의 차이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교사-학생 간 갈등과 불신의 여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에서 주어진 틀에 맞춰 가는 학생을 소위'착한 학생'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의 경험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학생의 참정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나. 민주시민교육 정책 등 유관 정책과의 통합을 통한 인권교육 실천

학교 인권교육은 교육과정을 통해 실천된다. 현재 우리의 교육과정상 인권교육은 사회과 일부 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범교과 학습 주제는 그 의미상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학습 주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과를 통해 실천해야한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교과 수업 시간에 다루기 어려우므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간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 정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단위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수많은 정책 중 하나로 정책 실행 동력을 갖기 힘들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유사한 정책이 각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학교 인권교육을 더욱 실천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관 정책과 통합을 통해 인권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교육

인권의식은 삶의 방식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개인의 인권이 보호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증진된다. 이는 인권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인권 업무 담당자 지정, 인권교육 시간 확보,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관련 내용 반영 등과 같은 기반 여건 마련 못지않게 실제,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화와 풍토 마련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권조례 제정 지역의 학교가 업무 담당자 지정 비율, 학교교육 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반영 비율, 인권교육 시간 등이 대부분의 인권교육 준비 및 여건 관련 내용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개방적 수업 풍토, 인권 수업 방법, 인권 수업 효과에 대한 인식 및 수업 만족도 등 과정과 성과 영역에 있어서는 대체로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 학교들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조례 또는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인권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환경 조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교사-학생의 관계와 의식, 수업 방법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물리적 환경보다 실제 교사, 학생이 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라. 학교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정책 지원의 필요성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별 인권교육 정도와 구성원 간 인권보호 풍토는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에 따라 학교 유형은 5가지로 유형화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향후 인권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 학교 별 차별적인 정책 지원과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 간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학교(유형1)의 경우 단위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계속 인권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학교의 사례를 다른 학교들과 공유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인권교육의 체계상이 부족하거나, 교직원 간 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 학교, 학교장의 인권친화적 리더십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유형5)의 경우 교육과정 컨설팅, 교직원 간 인권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학교장 대상 리더십 연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 인권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 사업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있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학생 만족도가 높은 인권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분석·개발하고, 이를 개방적인 수업 풍토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수업 풍토, 학생의 발단 단계에 따른 인권교육의 영향력 차이, 인권교육에 대한 학생 인식 및 만족도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개발 시 학생들의 발달과 성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인권의식 발달 과정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러한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현재의 학교 인권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 수준의 실태를 밝히는 차원을 넘어 인권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정책 및 사업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인권교육 현황, 시·도 교육청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사업, 학교에서의 인권실태, 학생 및 교사의 인권의식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며 누적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있다.

바. 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적 방식의 해결 절차 및 제도 마련

학생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교육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매년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초등학생 8.7%, 중학생 15.6%, 고등학생 16.7%)하고 있지만, 부모님 또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20% 미만이며, 대부분의 학생이 인권침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가거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의 인권의식은 자신이 부당한 경험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목소리에 대해 단위 학교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때 보다 성숙해질 것이다. 반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일방적으로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것은 표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잠재적으로 교사-학생 간 깨어진 신뢰는 교사, 학생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점에서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때 이를 적절히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방법이라는 인식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로 변화하였듯이,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역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지원의 과정은 사법적 절차가 아닌 교육적 관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사법적 관점에서 학교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학교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경욱(2012).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반 편견 및 장애 인식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1), 19-43.

강원도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강원도교육청.

강태훈(2015). 자료크기와 집단 간 피험자 수의 차이가 차별기능문항 추출의 제 1 종 오류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8**(2), 577-600.

거제인터넷신문(2019. 07. 01.). 교육과 인권의 사회적갈등 해결방안은. http://www.gjn.kr/news/articleView.html?idxno=40380 (2019. 09. 26. 인출.)

경기도교육청(2010).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경기도조례 제4085호 (2010. 10. 05. 제정)

경기도교육청(2019). **2019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2019). **2019 경북교육**.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2012).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4017호 (2011. 10. 28.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광주광역시교육청.

구정우·김선웅·김두년·유성상·정병은·신인철(2016).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8**(1), 1-12.

구정화(2012).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에 기초한 사회과 인권교육의 현황. **법과인권교육연구, 5**(1), 1-28.

구정화(2016a). 일상의 인권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8**(3), 1-25.

구정화(2016b). 초등 사회과 '인권' 내용 단원의 교육과정 시기별 변화 분석. **법교육연구, 11**(2), 1-34.

구정화(2017). 인권교육의 의미 재탐색. **교육문화연구, 23**(4), 5-23.

구정화(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사회/도덕 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1), 1-34.

구정화·박새롬(2019). 통합사회 교과서의 '인권 보장과 헌법' 단원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 **법교육연구, 14**(2), 1-33.

국가인권위원회(2005). **2005년 국민인권의식조사 총괄보고서(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6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06b). 유럽·미국의 인권교육 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국제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2016).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오상·서영·정재호(2012). 앵커링 비네트 분석법을 이용한 농업부문 공공 R&D 사업에 대한 지원의사 분석. **농업경제연구, 53**(4), 19-41.

권희경·이현주·남궁지영·박경호·최원석·길혜지(2018). **2018 KEDI 학생역량 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김병준(2017).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법과 사회, 56**, 387-428.

김미숙·서예원·안해정(2018). **OECD ESP 사회정서역량 종단조사 국제공동연구(Ⅱ): 문항실험 및 예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김숙자·김현정·장윤정(2008). 유치원의 일일교육계획안에 나타난 유아 인권교육 관련내용 분석-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Ⅱ. **유아교육학논집, 12**(2), 259-275.

김영식·주현준·정성수·이기정(2013). 청소년기 학생들의 이른 기상 효과 (Early Bird Effect) 분석 연구: 기상시간과 학업성취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4**(3), 271-290.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원금(2007).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의 연계성 분석. **사회과교육연구, 14**(1), 185-211.

김자영(2012). **청소년 인권의식의 유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자영·이로미·김진희(2019). 학교 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질적 탐색. **법교육연구, 14**(2), 63-92.

김종민·이문수·안성훈(2016). 2015년도 국가수준 초· 중학생 ICT 리터러시 검사의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 **교육평가연구, 29**(2), 301-324.

김진희·이로미·김자영(2019). 학교 현장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담론, 문제점 및 실천 방향. **시민교육연구, 51**(2), 71-94.

김진희·최인희·김자영·이로미·이혜경(201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대구광역시교육청(2019). **2019 대구미래역량교육**.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2019). **2019년 주요업무계획**.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아일보(2019. 04. 22.). "파마-화장 어디까지" 학교현장 혼란. http://news.donga.com/3/all/20190422/95158748/1 (2019. 04. 24. 인출.)

류은숙(1997).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 In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편,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문용린·곽병선·안경환·한기철(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민인식·최필선(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한국 STATA 학회.

박계신(2017). 유아 인권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장애 유아 인권교육 방향성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7**(2), 171-198.

박상준(2003). 인권교육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시민교육연구, 35**(1), 115-141.

박성익·이승미(2000). 인권교육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 **교육학연구, 38**(1), 185-205.

박효정·유성상(2006). **중등학생 인권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부산광역시교육청(2019).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247호 (2012. 1. 26. 제정)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2018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기본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2019). **주요업무계획 2019**.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규주·은지용·전진현(2016). **초·중등 인권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설양환·박상준·이지혜·이선영(2016). 인권실태조사를 통한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9**(3), 55-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손원숙(2010).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의 DIF 원인 탐색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적용. **교육평가연구, 23**(2), 371-390.

송미영(2003). 다분 차별기능문항 추출방법의 효과성 비교. **교육평가연구, 16**(1), 143-162.

신택수(2010). 종단프로파일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한 잠재집단연구: 성장혼합모형과 비교를 통하여. **교육평가연구, 23**(3), 641-664.

심상보(2014). 홀리스틱 영 교육과정 관점으로 본 인권교육 : 성 소수자를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8**(3), 75-91.

연합뉴스(2019. 03. 14.).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도의회 통과하나…찬·반 입장차 여전.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4134400052?input=1195m (2019. 04. 24. 인출.)

오세희·김민희·남형우·박병권(2015).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법무부.

오승호(2011). 사회과 법교육에서 인권교육내용에 관한 연구 – 한, 미 법교육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6**(2), 113-141.

울산광역시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울산광역시교육청.

유문무(2013). 학교폭력과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 Holism을 중심으로.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7**(3), 105-125.

유병열(2012).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3**(2), 51-71.

유병열(2013).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39**, 239-264.

유성렬·김신영(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향선·최현정(2014). 유아 다문화인권교육 활동이 인권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315-338.

이문수(2018). ICILS 2013 컴퓨터· 정보 소양 검사의 국가,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문항

분석. **교육평가연구, 31**(3), 653-679.

이미나·백현옥(2015).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9**(1), 99-119.

이미식(2007). 아동의 인권능력(capacity)을 신장시키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 -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5**(1), 185-212.

이수경·정필운(2018). 인권, 무엇이라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내용에 대한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1**(1), 29-50.

이정연·김명랑·안수현·이용민·이혜선(2018). **2018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정주·성열관(2011).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관련 내용 분석 : 1·2·3 세대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과교육연구, 18**(2), 51-71.

인천광역시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임경수(2012).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과 인권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9**(2), 53-69.

임희진·김현신(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라남도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2013).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3781호 (2013. 7. 12. 제정)

전라북도교육청(2019). **2019 주요 업무 계획**. 전라북도교육청.

전아영·최미숙(2018). 문제중심학습(PBL)에 기초한 유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3**(4), 149-176.

전진희(2017). 광주광역시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권법평론, 18**, 161-188.

정진성·구정우·공석기·유기웅(2014). 한국인의 인권인식과 태도: 2005년~2011년. **사회와 이론**, 24, pp.401-445.

정진성·유성상·정병은·김두년·공석기(2011).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정해숙·박성정·구정화·최윤정(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윤아(2015).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 - 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연구, 47**, 115-136.

조일수(2004). 체계적 인권교육을 위한 도덕과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18**, 131-148.

조태원(2010). 기본권분류체계로 본 사회과교육과정 및 교과서상의 인권교육 관련내용 분석: 제 6·7차 교육과정상의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3), 99-116.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교양인.

조효제(2019. 02. 26.). 인권도 마음이 중요하다.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3699.html. (2019. 10. 08. 인출)

천정웅(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청소년 인권 의식에 관한 구조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용성(2014).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적 개발·적용·검증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35**, 175-223.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충청남도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2019). **2019 주요업무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함은혜·Roberts, R. D.(2015). 가교 이야기 문항(Anchoring Vignettes)을 활용한 학생 자기보고식 팀워크 수의 교정. **교육평가연구, 28**(4), 1107-1128.

허종렬(2016). 글로벌 인권교육의 전개 과정 분석-유엔과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7**(1), 289-310.

허종렬·나달숙·이대성(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법과 인권교육연구, 6**(1), 171-202.

홍세희·노언경(2013). 남자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변화형태에 한 잠재계층 추정 및 비행형태와의 관련성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4**(4), 119-148.

SBS News(2019. 01. 28.). 교장 사모임에서 춤춘 학생들...사실로 드러난 강제동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15690&plink=ORI&cooper=NAVER (2019. 04. 24. 인출.)

Breusch, T. S., & Pagan, A. R. (1980). The Lagrange multiplier test and its applications to model specification in econometric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7*(1), 239-253.

Council of Europe (1985). Recommendation No. R (85) 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s. https://rm.coe.int/16804c2d48 (2019. 09. 26. 인출.)

Council of Europe (2009a). *How all teachers can support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Council of Europe (2009b).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

Ercan, R., Yaman, T., & Demir, S. B. (2015). Human Rights Attitude Scale: A Validity and Reliability Study.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Studies, 3*(6), 220-231.

Fornell, C. and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Hudson, A. (2005). Citizenship Education and Students' Identities: a school-based action research project, in: A. Osler (Ed)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oke on Trent, Trentham)

Hung, R. (2014). Toward an affective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Journal of Pedagogy, 5*(1), 48-64.

Jones, A. M., Rice, N., d'Uva, T. B., & Balia, S. (2013). *Applied health economics*. Routledge.

Jung, T. &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1), 302-317.

King, G., Murray, C. J., Salomon, J. A., & Tandon, A. (2004). Enhancing the validity and cross-cultural comparability of measurement in survey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1), 191-207.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London: Guilford Press.

Kreuter, F., Yan, T., & Tourangeau, R. (2008). Good item or bad—can latent class analysis tell?: the utility of latent class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survey questions.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71*(3), 723-738.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Leod, J. (2014). A peaceful pedagogy: Teaching human rights across the curriculu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2,* 1225-1232.

Muthén, L. K. & Muthén, B. O. (2002). How to use a Monte Carlo study to decide on sample size and determine powe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 599-620.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OECD (2014). *PISA 2012 technical report.*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97).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ited Nations.

Osler, A. & Starkey, H. (1998) Children's Rights and Citizenship: Som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choo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6,* 313-333.

Osler, A. (Ed.) (2005)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Stoke on Trent, Trentham).

Tibbitts, F. (2015). *Curriculum development and review for democratic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UNESCO Publishing.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n.d.a).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RC.aspx (2019. 10. 08. 인출)

UN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n.d.b).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05-ONGOING). https://www.ohchr.org/EN/Issues/Education/Training/Pages/Programme.aspx. (2019. 10. 08. 인출)

United Nations (2006). *Plan of Actio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aris: UNESCO.

United Nations (2012). *Plan of Actio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Phase*. Paris: UNESCO.

United Nations (2014). *Plan of Action for the third phase (2015-2019)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Abstract

Study of the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Lee, Ssang cheol(KEDI)
Kim, Jeong-a(KEDI)
Kim, Mee sook(KEDI)
Kim, Jin hee(KEDI)
Lee, Ho jun(KEDI)
Kim, Young sik(Kyungnam Univ.)
Kim, Ja young(Gongju Nat'l Univ. of Education)
Lee, Hyun joo(Myongji Univ.)
Lee, Jee mee(KEDI)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based on unit schools.

In chapter I, the purpose of the study,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were presented. Whil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identifying overall human rights education statu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such as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how human right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at schools, which are the main sites of students' lives; what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viol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is in schools; and the level of school members'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In chapter Ⅱ, the meaning and practice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were discussed. In order to grasp the latest trends in human rights education, we collected data on the 2019 work plans of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at set a big dire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and realize policies; and analyzed policie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each region. In addition, to develop and improve the 'Measuring instruments for the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 we analyzed the survey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atus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survey on the human rights condition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chapter Ⅲ,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ubjects, methods and contents of the pilot test and main survey were provided and the process of validity for the 'Measuring instruments for the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consciousness'was explained. The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an offline survey method with the questions secured by an expert council for content validity and a group of students and teachers (8 persons) for face validity. Using the data collected by 118 elementary school students, 136 middle school student, 135 high school students, and 26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ho answered the preliminary survey, we conducted the question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question-factor correlation, and question consistency reliability and modified the questions.

This survey was conducted nationwide in order to identify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According to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17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reflecting the information of region, high school type, national/public status, etc.), the target schools were sampled using th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Each of 105 schools was sampled per unit school. Out of 315 schools extracted finally by the stratified cluster extraction method, 301 schools (13,524 students, 1,971 teachers, 300 vice-principals/directors of research) participated in the survey. Student questionnaire and teacher questionnaire are composed of questions about human rights education status, human rights conditions, human rights consciousness, response propensity analysi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questionnaire for school surveyed questions about school background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tatus.

In chapter Ⅳ, we analyzed how the school's human right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what the status of students' human rights protection is in schools, what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eachers and students is, what the degree of teachers' professionalism is, and what teachers and students request for the substantia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most schools plan human rights education when planning school education, but they reflect it as part of the relevant education program (democratic citizens' education, personality education, etc.) rather than as an independent subject. Human rights education is conducted more during the guidance (morning assembly, end-day meeting, counseling, etc.) than in regular subject classes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classes, and elementary schools had more human rights classes than middle and high schools. Teachers recognized that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he human rights curriculum reflected in the school education plan were somewhat appropriate. Not a few students were aware of whether they received human rights education or not at school. In addition, a survey on 10 areas of human rights, asking whether or not students received education on each area,

showed that there was a wide gap between each area of human rights, and there was a need to strengthen education on the right fo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While human rights education contributes to students' knowledge understanding and attitude change to some extent, improvements in teaching methods, understanding contents and data activities are needed. In addition, there was a wide gap in satisfaction with human rights classes among schools.

According to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human rights are best protected in elementary schools, and the higher the school level, the lower the level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secondary schools, the degree of protection for freedom of privacy, confidentiality, freedom of expression, autonomy, and participation was low. Middle schools had the lowest degree of rights protection between friends (senior) and, particularly, showed the lowest degree of protection in the right of freedom from violence and danger. The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eachers increases as their school levels rise. On the other hand, the experi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by friends (senior) decreased as school levels rose. Students experienced the most discrimination-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teachers, and the ratio of infringed freedom of expression, unfair corporal punishment, and verbal abuse experience was high. When students were subjec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by teachers, only a small number of students received help from their parents or experts. The consciousness degree of human rights prote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teachers' professionalism, teachers think students' human rights are important, but the readiness for actual classes is not as high as the importance they perceive.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the preparation of classes, primary school teachers recognized that human rights were more important than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did, and that the degree of preparation to teach was also good. There are not enough human rights training in the training and in-service stages, and teachers have high demands for

practical training such as teaching-learning methods and classroom management. While the percentage of education on understanding human rights as knowledge is high, information on how to develop teaching-learning materials, how to build a network, and the development of parental training materials has not been well addressed. Also, the degree to which training is helpful in human rights educa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usual. Teachers found that they were having difficulties in human rights education due to difficulties in securing time, lack of teaching-learning materials, lack of sharing of goals and meanings, and that they needed to secure time for education, disseminate teaching-learning materials, create a democratic school environment, and develop integrated programs for curriculum to substantialize human rights education.

In Chapter V, we categorized school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diverse factors related to human rights in order to grasp in depth the actual status of human rights and their education at each school. The categorization of the total 301 schools according to their human rights education and actual status showed that there were five types: Type Ⅰ (22.3%), TypeⅡ (17.3%), Type Ⅲ (35.2%), Type Ⅳ (19.6%), and Type Ⅴ (5.6%). Type Ⅰ is the satisfactory group in all area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and actual status. Type Ⅱ had a higher score than the average in items related to students, such as the students' level of satisfaction with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status of students'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nd student-student relationship. However, they scored below the average in items related to teachers, such as the qua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that teachers perceive, as well as the human rights friendliness of the teaching staff culture and the head of school leadership. On the other hand, Type Ⅲ scored below the average in areas related to students, while the quality of the rights' education that the teachers perceived and

the status of human rights protection related to teacher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Type Ⅳ scored lower than the average in the actual status of human rights friendliness both related to students and teachers, as well as human rights education. Last, Type Ⅴ scored similarly to or lower than Type Ⅳ in the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y showed the particular features of their recognizing serious discrimination against the teaching staff and of the heads of the schools manifesting a significantly low degree of human rights friendliness in their leadership.

An analysis of the school characteristics related to each of the above five human rights type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grades, location, and establishment type. There were many public schools, schools ub ryrak areas, and elementary schools of Type Ⅰ, while schools of Type Ⅱ were mainly found among high schools, schools in metropolitan and big cities, and public schools. As for Type Ⅲ, there were many middle schools, schools in mid-sized cities and rural areas and public schools. Schools of Type Ⅳ were mainly found among high schools, small and schools in mid-sized cities, and public schools. On the other hand, Schools of Type Ⅴ were highly distributed among high schools, schools in metropolitan and big cities, and private schools. In addition to school grades, location, establishment type, and the ratio of vulnerable groups, we analyzed other factors impacting the categorization of each school type, including whether they were located in regions that have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as a human rights-related policy factor and whether they were innovative schools.

In Chapter Ⅵ, we examined how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and their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well as the diverse human rights education and related systems provided at the schools impacted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mong the students. At the same time,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for teachers influenced their consciousness of the right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mpact that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had o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depending on the school grades. In some cases, the possibility of negative impact also existed. Our analysis showed that the ambience in which the education took place and how the students perceived and were satisfied with the education more decisively deter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than just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it. Meanwhile,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divers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their management, and related systems, currently implemented at the schools, on the stud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showed that differences existed depending on the school grades. That is, while the education effectively enhanced the rights' judgment among students in high school, it had a relatively weak impact among student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While the education showed to be relatively effective in enhancing sensitivity to the rights in elementary schools, there was almost no educational effect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terms of the intent to practice the rights, the education was more effective in middle schools and not much in elementary and high schools. Lastl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teachers' human rights training i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showed that the current training provided actually negatively impacted their cultivation of the rights' consciousness, and in particular, their judgment and sensitivity to the rights.

In Chapter Ⅶ, we applied the anchoring vignette method as a way to supplement the problem of differential items functioning that manifest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answer tendencies to the consciousness questions differed depending on various characteristics like sex, students' level of achievement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the schools' location and establishment type, and whether a human rights ordinance had been enacted.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anchoring vignette method, constant changes manifested in the students' different sensitivity to human rights depending on certain features like whether the schools were private schools and whether they had enacted human rights ordinances. Similarly,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shown in the different teachers' sensitivity to and judgment of human rights depending on whether the schools were innovative, changed after applying the anchoring vignette method.

In Chapter Ⅷ, we presented academic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conceptualize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terms of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in order to understand human rights more comprehensively. Second, the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and role of schools as the ground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promote changes for it to become an educational course, or at least a potential course, that reflects the students' and teachers' life experiences. Third, it is noteworthy that this study provided information on which areas of students'human rights should be more concerned about in the future by looking at the actual status of how students' human rights are protected in our schools more structurally. Fourth,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enhancing such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 study results confirming the negative impact of teachers' training in the cultivation of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mean that the actual and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training currently being provided to teachers shall be more strictly investigated and that the courses and programs for the education shall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Fifth, this study examined whether differential items functioning existed and applied the anchoring vignette method, as non-parametric approaches. Efforts need to be made to develop a new analyzing method wherein both the answer conformity assumption and vignette equivalence

assumption can be applied even in a relaxed status, then it would be possible to more elaborately measure the non-cognitive educational achievements made by the education, includ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 Key words: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Consciousness, Human Rights Status, Classification of Human Rights in Schools,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choring Vignette Method

부 록

1.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설문지
2. Ⅳ장 관련 표

[부록 1]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설문지

본 설문은 아래와 그림과 같이 온라인조사로 진행이 되었으나,
독자의 편의를 위해 설문지 형태로 제시함.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학생용_중등)

진행률 0% (0/43)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및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이쌍철(민주시민교육연구실) / ssclee@kedi.re.kr
- 담당연구원 : 이지미(민주시민교육연구실) / jeemee7@kedi.re.kr / 043) 530-9216

시작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 초등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 상 진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및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이쌍철(민주시민교육연구실) / ssclee@kedi.re.kr
- 담당연구원 : 이지미(민주시민교육연구실) / jeemee7@kedi.re.kr / 043) 530-9216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Ⅰ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인권**이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인권교육**이란
수업이나 체험활동 속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배우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1. 다음의 각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인권	①	②	③	④
2) 세계인권선언	①	②	③	④
3) 유엔아동권리협약s	①	②	③	④
4)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④

문2. 최근 1년 동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③ 잘 모르겠다 (☞ 문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4. 인권교육은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교과 수업 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학급회의 등) 시간
③ 생활지도 시간(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5. 다음은 인권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수업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필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들은_____.	1) 수업 여부		2) 필요 정도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성적, 외모, 가정 형편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2) 폭력과 욕설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3) 수업 시간(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지품 검사, 성적 공개, 가정 현황 공개 등)	①	②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6)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 규칙 만들기,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	①	②	①	②	③	④
7) 쾌적한 환경과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8) 잘못을 하여 벌을 받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9)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 문3번에서 ① 있다 로 응답한 경우 문6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문3번에서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로 응답한 경우 문9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6.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 시간에 주로 어떻게 수업을 하셨나요?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방 법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가끔 활용했다	자주 활용했다	매우 자주 활용했다
1) 선생님께서 설명하고 학생들이 답하거나 질문하였다	①	②	③	④
2) 토론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3) 모둠별로 활동을 하고 발표하였다	①	②	③	④
4) 프로젝트수업 또는 문제해결식 수업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문7. 다음은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권 수업 방법은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2) 인권 수업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①	②	③	④
3) 전반적으로 인권 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인권 수업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①	②	③	④
5) 일상에서 경험한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6)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①	②	③	④

문8.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권의 뜻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9.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①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② 선생님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늘린다
③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의 참여를 늘린다
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
⑥ 기타(_____)

문10.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 또는 밖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예	아니요
1) 학교 동아리 활동	①	②
2) 시민단체 참여	①	②
3) 자원 봉사 활동	①	②
4)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백일장, 전시회 등) 참여	①	②
5) 캠페인 활동	①	②
6)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견 표현하기	①	②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Ⅱ 다음은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11.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남녀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에게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휴대폰 등 물건을 빼앗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학생들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해 야단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학교에 건의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10) 학생 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1)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준다	①	②	③	④
12)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다양한 문화 활동(연극, 전시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4)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학생에게 벌을 줄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	①	②	③	④
16)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하게 보호해준다	①	②	③	④
17)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18)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19)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문12. 최근 1년 이내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2-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3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2-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형편 공개 등)
④ 표현의 자유 관련(옷차림, 의견 제시 등)
⑤ 참여 권리(학생 자치 활동 제한 등)
⑥ 학습할 권리 관련
⑦ 기타( )

문12-2.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①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②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께 말씀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기타( )

문13. 다음은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또는 온라인 상에서)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성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잘 살거나 못사느냐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4. 최근 1년 이내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4-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4-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신체적, 언어적 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현황 공개 등) ④ 기타( )

문14-2.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②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께 말씀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기타( )

문15.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5-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6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5-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_____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6.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3)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은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의 보호자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을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3)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6) 나를 자주 때린다	①	②	③	④
7) 성별, 성적, 외모 등을 이유로 나를 차별하였다	①	②	③	④

문18. 최근 1년 이내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6-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7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8-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현황 공개 등)

④ 표현의 자유 관련 (옷차림, 의견 제시 등)

⑤ 건강 및 안전 관련

⑥ 기타(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8-2.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② 형제/자매 또는 친척께 말씀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기타(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Ⅲ 다음은 인권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문19.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학생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라도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 규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4) 성별에 따라 권리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5) 회사나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 존중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7)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명의 친구를 위해 학교 돈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0.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친구를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	①	②	③	④
3)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친구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5) 동아리 활동이나 학급 활동에 차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6) 장애를 가진 친구가 체육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을 먼저 조사 한다면, 나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누군가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1.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같은 반 친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외국인 학생이 전학 온다면 먼저 다가가 친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친구가 인권침해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지진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내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등)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본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인권 관련 집회를 본다면 시간을 뺏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Ⅳ 다음은 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22.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의식이 높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친구들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친구를 존중하지 않으며, 친구들의 의견과 감정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종종 친구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도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어려움은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4.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학급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친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반 친구들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무례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V 다음은 응답자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25.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문26. 학생의 현재 성적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하　　중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7.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최종 학력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구 분	학력
1) 남성 보호자	⓪ 잘 모르겠다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 포함)이상
2) 여성 보호자	⓪ 잘 모르겠다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 포함)이상

문28. 학생의 집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단, 교과서, 참고서, 잡지, 만화책 제외)

① 0-10권　　② 11-25권　　③ 26-100권
④ 101-200권　　⑤ 201권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 중등학생용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상진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및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이쌍철(민주시민교육연구실) / ssclee@kedi.re.kr
- 담당연구원 : 이지미(민주시민교육연구실) / jeemee7@kedi.re.kr / 043) 530-9216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Ⅰ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 **인권**이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권리 등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인권교육**이란
수업이나 체험활동 속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등을 배우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문1. 다음의 각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인권	①	②	③	④
2) 세계인권선언	①	②	③	④
3) 유엔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④
4)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④

문2. 최근 1년 동안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4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③ 잘 모르겠다 (☞ 문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4. 인권교육은 어느 시간에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교과 수업 시간
②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학급회의 등) 시간
③ 생활지도 시간(조회·종례, 상담 시간 등)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5. 다음은 인권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련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해당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수업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필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학생들은 _____.	1) 수업 여부		2) 필요 정도			
	받은 적이 있다	받은 적이 없다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성적, 외모, 경제 수준 등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2) 신체적 · 정신적 폭력(욕설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3) 수업 시간(학습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4) 사생활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소지품 검사, 성적 공개, 가정 현황 공개 등)	①	②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6)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칙 개정,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등)	①	②	①	②	③	④
7) 쾌적한 환경과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8) 잘못을 하여 징계를 받을 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9)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①	②	①	②	③	④

(☞ 문3번에서 ① 있다 로 응답한 경우 문6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문3번에서 ② 없다, ③ 잘 모르겠다 로 응답한 경우 문9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6.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 시간에 주로 어떻게 수업을 하셨나요?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방 법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가끔 활용했다	자주 활용했다	매우 자주 활용했다
1) 선생님의 설명과 학생의 답변	①	②	③	④
2) 토론식 수업	①	②	③	④
3) 모둠(협력) 수업	①	②	③	④
4) 프로젝트수업 또는 문제해결식 수업	①	②	③	④

문7. 다음은 인권교육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권 수업 방법은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2) 인권 수업 내용은 이해하기 쉬웠다	①	②	③	④
3) 전반적으로 인권 수업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4) 인권 수업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	①	②	③	④
5) 일상에서 경험한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	①	②	③	④
6)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①	②	③	④

문8.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권의 뜻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2) 인권 관련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인권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5)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 2), 4), 5) 번 문항은 초등학생용 설문 문항에 없음.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9.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① 학생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② 선생님 대상 인권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③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교를 운영할 때 학생의 참여를 확대한다
⑤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만든다
⑥ 기타(_____)

문10.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팎에서 인권과 관련한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예	아니요
1) 학교 동아리 활동	①	②
2) 시민단체 참여	①	②
3) 자원 봉사 활동	①	②
4) 외부기관, 단체 주관 행사(백일장, 전시회 등) 참여	①	②
5) 캠페인 활동	①	②
6)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견 표현하기	①	②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Ⅱ 다음은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11. 다음은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 폭언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물건을 압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학생들의 헤어스타일, 옷차림을 제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10) 학생자치 활동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11)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해 준다	①	②	③	④
12)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다양한 문화 활동(공연, 전시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4)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학생을 징계할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	①	②	③	④
16)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17)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학생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18)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19) 전반적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2. 최근 1년 이내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2-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3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2-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형편 공개 등)
④ 표현의 자유 관련(옷차림, 의견 제시 등)
⑤ 참여 권리(학생 자치 활동 제한 등)
⑥ 학습할 권리 관련
⑦ 기타( )

문12-2.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②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께 말씀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기타( )

문13. 다음은 학교 내 친구 또는 선배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또는 온라인 상에서)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성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경제 사정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외모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서로의 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4. 최근 1년 이내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4-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5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4-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현황 공개 등)

④ 기타( )

문14-2.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 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②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께 말씀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와 상의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기타( )

문15.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5-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6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5-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⑥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_____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6.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했는지,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것을 선택 해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이다	①	②	③	④
3)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은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은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와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의 보호자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내 의견을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3)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6) 나를 자주 때린다	①	②	③	④
7) 성별, 성적, 외모 등을 이유로 나를 차별하였다	①	②	③	④

문18. 최근 1년 이내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6-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7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8-1. 어떤 형태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까? 해당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차별 관련(성적, 성별 등에 따른)
②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③ 사생활 침해(성적 및 가정 현황 공개 등)
④ 표현의 자유 관련(옷차림, 의견 제시 등)
⑤ 건강 및 안전 관련
⑥ 기타(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8-2.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로부터 인권을 침해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② 형제/자매 또는 친척께 말씀드렸다
③ 친구나 선후배와 상의하였다
④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⑥ SNS(인터넷,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렸다
⑦ 기타(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Ⅲ 다음은 인권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19.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학생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일이라도 어른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 규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4) 성별에 따라 권리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5) 회사나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 존중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7)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명의 친구를 위해 학교 돈을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0.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친구를 보면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2)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	①	②	③	④
3)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친구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5) 동아리 활동이나 학급 활동에 차별 받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6) 장애를 가진 친구가 체육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을 먼저 조사 한다면, 나는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누군가 성별이나 외모 때문에 무시당하는 장면을 보면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1.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같은 반 친구가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외국인 학생이 전학 온다면 먼저 다가가 친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친구가 인권침해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지진 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내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등)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본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인권 관련 집회를 본다면 시간을 뺏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Ⅳ 다음은 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번호에 √ 표 해 주십시오.

문22.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의식이 높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친구들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친구를 존중하지 않으며, 친구들의 의견과 감정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종종 친구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도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어려움은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4.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학급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친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반 친구들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무례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V 다음은 응답자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25.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문26. 학생의 현재 성적 수준은 어느 정도 입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하 중 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7. 보호자(부모님, 조부모님 등)의 최종 학력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구 분	학력
1) 남성 보호자	⓪ 잘 모르겠다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 포함)이상
2) 여성 보호자	⓪ 잘 모르겠다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2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수료 포함)이상

문28. 학생의 집에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까?
(단, 교과서, 참고서, 잡지, 만화책 제외)

① 0-10권 ② 11-25권 ③ 26-100권
④ 101-200권 ⑤ 201권 이상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 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 상 진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및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이쌍철(민주시민교육연구실) / ssclee@kedi.re.kr
- 담당연구원 : 이지미(민주시민교육연구실) / jeemee7@kedi.re.kr / 043) 530-9216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I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선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문 서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는 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1) 세계 인권 선언	①	②	③	④
2) 유엔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④
3) 학생(학교) 인권 조례	①	②	③	④

문2. 귀교에서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	약간 참여한다	적극 참여한다
1) 학교장	①	②	③	④
2) 부장교사 및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①	②	③	④
3) 담임 교사*(중등의 경우, 사회/도덕교과 교사)*	①	②	③	④
4) 전체 교사*(중등의 경우, 모든 과목 교사)*	①	②	③	④

문3. 선생님께서는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교육활동 시간에 인권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있다	없다
1) 교과 수업 시간	① 년 간 약 ( )시간	②
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동아리, 자치활동 등)	① 년 간 약 ( )시간	②
3) 생활지도 시간(조회·종례 시간, 상담 시간 등)	① 년 간 약 ( )시간	②

(☞ 문3-1), 2), 3) 모두 ② 없다 로 응답한 경우 문5번으로 이동해 주시고)

(1개라도 ① 있다 로 응답한 경우 문4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4. 선생님께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수업 방법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가끔 활용한다	자주 활용한다	매우 자주 활용한다
1) 설명식 수업	①	②	③	④
2) 토론식 수업	①	②	③	④
3) 모둠 협력 학습	①	②	③	④
4) 프로젝트수업 또는 문제해결식 수업	①	②	③	④

문5. 다음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 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학교 교육 계획서에)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년별 인권교육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학년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전반적으로 인권 교육과정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5) 인권 관련 지식 이해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개념, 법, 제도 등)	①	②	③	④
6)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7)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8) 수업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9) 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한 인권 문제를 다룬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6. 다음에 제시된 학생의 권리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와 준비도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학생 권리	중요도				준비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1) 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학습권 및 휴식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표현의 자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복지에 관한 권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권리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10) 소수(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학생의 권리 보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문7.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인권교육 목표와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
② 학교장의 관심 부족
③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확보의 어려움
④ 교사의 관심 부족
⑤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
⑥ 국가(교육청) 수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부족
⑦ 학생의 관심 부족
⑧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⑨ 기타 (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8. 학교 내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①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② 현직 연수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③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의 개발·보급
④ 인권교육 시간 확보
⑤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⑥ 교육과정 통합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⑦ 지역 단체 및 인권 단체와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
⑧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확대
⑨ 기타 ( )

문9. 교사 양성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문10.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0-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0-1. 최근 1년 이내에 인권교육 관련 연수는 몇 회이고, 총 몇 시간을 받으셨습니까?
( )회 총 ( )시간

문10-2. 최근 1년 이내에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한 주체는 누구였습니까? 해당되는 주체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교육청(교육부)
② 소속 학교
③ 인권 관련 정부 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④ 대학
⑤ 교원단체
⑥ 시민단체
⑦ 교사동아리(전문적 학습공동체)
⑧ 기타 (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0-3.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인권교육 관련 연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당 연수 방법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출석(오프라인) ② 원격연수 ③ 기타 ( )

문10-4.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인권 관련 연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인권 개념, 관련법, 역사 등)
②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프로젝트 수업, 교과 통합 수업 등)
③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④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
⑤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⑥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⑦ 기타 ( )

문11. 교사 임용 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11-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없다 (☞ 문12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1-1. 교사 임용 후 받은 인권교육 관련 연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연수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지 않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인권 개념, 관련법, 역사 등)	⓪	①	②	③	④
2)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프로젝트 수업, 교과 통합 수업 등)	⓪	①	②	③	④
3)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⓪	①	②	③	④
4)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	⓪	①	②	③	④
5)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⓪	①	②	③	④
6)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⓪	①	②	③	④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2.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 문13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대체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 문13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③ 대체로 참여할 의향이 없다 (☞ 문12-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④ 전혀 참여할 의향이 없다 (☞ 문12-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2-1. 참여할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① 인권교육 연수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다른 교육연수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서

③ 연수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

④ 담당교과나 업무와 관계가 적어서

⑤ 연수의 내용이나 강사의 질이 다른 연수에 비해서 낮아서

⑥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연수의 기회가 없어서

⑦ 기타 ( )

문13.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연수에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u>두 가지</u>를 선택해 주세요.

① 학생 인권 이해 교육(인권 개념, 인권침해와 보장 등)

②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프로젝트 수업, 교과 통합 수업 등)

③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④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

⑤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⑥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⑦ 기타(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Ⅱ 다음은 학교 내 인권실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14. 다음의 내용이 귀교의 현재 상황과 얼마나 부합합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성별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말, 폭언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학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성적, 가정 형편 등)를 공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물건을 압수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7) 학생들의 헤어스타일, 옷차림을 제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8) 학생들이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9) 학교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10) 학생자치 활동이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11) 학생의 쉬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2)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 야간 자율 학습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13)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공연, 전시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14)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5) 학생을 징계할 때 적절한 절차를 거친다	①	②	③	④
16)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17) 취약집단(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18) 전반적으로 학생인권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19) 전반적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5. 다음은 교직원 간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교직원)는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출신 학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연차, 자녀 돌봄 휴가, 조퇴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서로를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문16. 다음은 교장 선생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 교사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①	②	③	④
5) 학교 경영을 투명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은 학교에 대한 만족 관련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에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맞이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는 데 긍지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에서의 교직 생활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8.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 구제 제도(인권옹호관, 상담 및 조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 인권 구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생 인권 구제 제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 구제 제도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19.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지역) 학생 인권 조례의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더 잘 보장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르겠다 (☞ 문20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19-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18. (서울, 광주, 경기, 전북을 제외한 지역)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대체로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⑤ 잘 모르겠다 (☞ 문20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18-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0.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① 현재와 같이 각 지역에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에 학생 인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한다
③ '학생인권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④ '학생인권법'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한다
⑤ 법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⑥ 기타( )

문21. 학생 인권 보장 강화로 인해 교사의 교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 한다

문22. 학교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써 주십시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Ⅲ 다음은 인권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23. 다음 문항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학생들은 판단력과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 규칙이 학생의 권리를 일부 침해하더라도 학생들은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4)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5) 회사나 학교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더 존중 받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6)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7)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고문을 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장애를 가진 한 명의 학생을 위해 학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4. 다음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이나 느낌에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지켜볼 때, 마음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2) 임신 또는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종교적,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출신지역을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당사자는 부당함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①	②	③	④
6) 학력이나 학벌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사자는 불합리함을 느낄 것이다	①	②	③	④
7) 한부모, 미혼모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①	②	③	④
8) 질병 및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경우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5.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나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료 교사가 학교에서 폭언을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서서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비정규직 교직원이 차별을 받는 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동료 교사가 인권침해로 고민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6) 내 주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등)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7)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서명 운동을 본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8) 인권 관련 집회를 본다면 시간이 뺏기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Ⅳ 다음은 학생의 인권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26.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의식이 높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친구들을 잘 배려하고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친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친구들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친구를 존중하지 않으며, 친구들의 의견과 감정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문27.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문제를 잘 받아들이고 느낀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공감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 깊이 고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종종 친구들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도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주변 친구들의 어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어려움은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28. 다음 각각의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내 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매우 동의한다				
1) A학생은 학급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B학생은 친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어려움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C학생은 반 친구들과 자주 말다툼을 하고 무례하게 친구들을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V 다음은 응답자 기본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29.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문30.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문31. 선생님께서는 담임교사이십니까?*(중등의 경우, 선생님의 담당교과는 무엇입니까?)*

① 담임교사*(중등의 경우, 사회/도덕과)* ② 그 외 교사*(중등의 경우, 사회/도덕과 이외의 과목)*

문32. 고용 형태

① 정규 교사 ② 기간제 교사

문33. 직위

① 교과 교사 ② 비교과교사(영양, 사서 등) ③ 부장 교사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설문조사

- 학교용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019년 9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반 상 진

※ 본 설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한국교육개발원)

□ 문의처 및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이쌍철(민주시민교육연구실) / ssclee@kedi.re.kr
- 담당연구원 : 이지미(민주시민교육연구실) / jeemee7@kedi.re.kr / 043) 530-9216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Ⅰ 다음은 학교 배경 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1. 혁신학교 유무

① 혁신학교 ② 일반 학교

문2. 2018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문3. 학교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0% - 10% ② 11% - 20% ③ 21% - 30%

④ 31% - 40% ⑤ 41% 이상

Ⅱ 다음은 인권교육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문4. 귀교에서는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문5. 귀교의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인권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① 예 (☞ 문5-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아니오 (☞ 문6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5-1. 학교 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①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교육 계획서에 제시됨

② 유관 교육 프로그램(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있음

③ 기타_____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5-2. 다음은 학교 인권교육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우리 학교(교육계획서에)는 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년별 인권교육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학년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이 적절히 편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전반적으로 인권 교육과정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문6. 귀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인권교육 시간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육과정 명에 인권이 명시된 경우에만 해당)

① 예 (☞ 문6-1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② 아니오 (☞ 문7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문6-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편성된 인권교육 시간은 총 몇 시간 입니까?
각 학년별로 작성해 주세요.

4학년*(중등의 경우, 1학년)*: _____시간

5학년*(중등의 경우, 2학년)*: _____시간

6학년*(중등의 경우, 3학년)*: _____시간

합 계: _____시간

문6-2.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진 인권교육은 누가 실시하였습니까?

① 학교 교사 ② 외부 전문 강사 ③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7. 귀교에서는 인권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마다 “예”,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내용	예	아니오
1) 사회/도덕과 수업을 통한 인권교육	□	□
2) 교과를 통한 인권교육	□	□
3)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	□
4)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교육	□	□

문8. 귀교에서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아래의 각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대체로 참여하지 않는다	대체로 참여한다	적극 참여한다
1) 학교장	①	②	③	④
2) 부장교사 및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①	②	③	④
3) 담임교사*(중등의 경우, 사회/도덕교과 교사)*	①	②	③	④
4) 전체 교사*(중등의 경우, 모든 과목 교사)*	①	②	③	④

문9. 귀교에서는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해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활용하지 않음	대체로 활용하지 않음	가끔 활용함	자주 활용함
1) 인권을 주제로 한 학교 행사	①	②	③	④
2) 인권 관련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3) 학생자치 활동(학생회, 학급회 등)	①	②	③	④
4) 인권관련 시민단체 참여 활동	①	②	③	④
5) 인권관련 단체와의 연계 활동	①	②	③	④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0. 귀교에서는 2019학년도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각 항목마다 "있음", "없음"을 선택해주시고, "있음"을 선택할 경우, 교육 횟수와 시간을 작성하여 주세요.

항 목	없음	있음
1) 교사 대상 인권교육	□	□ 총( )회 총( )시간
2)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	□ 총( )회 총( )시간

문11. 조사 대상 학년을 대상으로 귀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 관련 교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권 관련 교육 예시]

성폭력 예방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장애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 학생 자치 활동, 학교 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명 ( )	교육 주체 ① 외부 강사 ② 학교 교사 ③ 기타	교육과정 편성 ① 교과 수업 ② 창체 ③ 기타	교육 시간 ( ) 시간
예시) 양성평등 교육	*② 학교 교사*	*① 교과 수업*	*20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문12. 귀교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위원회, 규정 등)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IRB No. 2019-09-04-N 유효기간: 2019. 06. 05. ~ 2019. 12. 31.

문13. (서울, 광주, 경기, 전북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인권침해 발생 시 인권 구제 제도 (인권옹호관, 상담 및 조사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적절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 인권 구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생 인권 구제 제도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인권 구제제도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14. 귀교에서는 학생인권 보호 및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문15. 학교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 및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KEDI IRB

[부록 2] Ⅳ장 관련 표[1)]

Ⅳ장 관련 표

〈부록 Ⅱ-1〉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지정 여부(학교)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χ^2
전체			300	89.67	10.33	-
학교급	초등학교		102	88.24	11.76	1.92
	중학교		97	87.63	12.37	
	고등학교		101	93.07	6.9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97.50	2.50	5.44*^{a}
		무	62	82.26	17.74	
	중	유	38	97.37	2.63	5.47*^{a}
		무	59	81.36	18.64	
	고	유	43	100.00	0.00	5.58*^{a}
		무	58	87.93	12.0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1	90.48	9.52	0.13^{a}
		일반학교	81	87.65	12.35	
	중	혁신학교	22	86.36	13.64	0.04^{a}
		일반학교	75	88.00	12.00	
	고	혁신학교	9	88.89	11.11	0.27^{a,c}
		일반학교	92	93.48	6.52	
설립유형	초	국공립	100	89.00	11.00	2.87^{a,c}
		사립	2	50.00	50.00	
	중	국공립	73	86.30	13.70	0.48^{a}
		사립	24	91.67	8.33	
	고	국공립	58	93.10	6.90	0.00^{a}
		사립	43	93.02	6.98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부록 Ⅱ〉에 제시된 표 번호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보고서 Ⅴ장의 그림 번호와 일치시킨 것으로, 번호가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

〈부록 Ⅱ-2〉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 수립 여부(학교)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χ^2
전체			300	89.67	10.33	-
학교급	초등학교		102	92.16	7.84	4.07
	중학교		97	84.54	15.46	
	고등학교		101	92.08	7.9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100.00	0.00	5.60*[a]
		무	62	87.10	12.90	
	중	유	38	94.74	5.26	4.97*
		무	59	77.97	22.03	
	고	유	43	95.35	4.65	1.10[a]
		무	58	89.66	10.3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1	90.48	9.52	0.10[a]
		일반학교	81	92.59	7.41	
	중	혁신학교	22	90.91	9.09	0.88[a]
		일반학교	75	82.67	17.33	
	고	혁신학교	9	88.89	11.11	0.14[a,c]
		일반학교	92	92.39	7.61	
설립유형	초	국공립	100	93.00	7.00	5.02*[a,c]
		사립	2	50.00	50.00	
	중	국공립	73	84.93	15.07	0.04[a]
		사립	24	83.33	16.67	
	고	국공립	58	96.55	3.45	3.74[a]
		사립	43	86.05	13.95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3〉 학교교육 계획서에 인권교육 계획 반영 형태(학교)

구분			사례 수	독립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 계획서에 제시됨	유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영되어 있음	기타	χ^2
전체			269	30.48	67.66	1.86	-
학교급	초등학교		94	29.79	68.09	2.13	2.57^{a}
	중학교		82	36.59	62.20	1.22	
	고등학교		93	25.81	72.04	2.15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50.00	45.00	5.00	$17.70^{***a,c}$
		무	54	14.81	85.19	0.00	
	중	유	36	36.11	63.89	0.00	$0.82^{a,c}$
		무	46	36.96	60.87	2.17	
	고	유	41	39.02	56.10	4.88	$10.09^{**a,c}$
		무	52	15.38	84.62	0.00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9	68.42	31.58	0.00	$17.10^{***a,c}$
		일반학교	75	20.00	77.33	2.67	
	중	혁신학교	20	40.00	60.00	0.00	$0.43^{a,c}$
		일반학교	62	35.48	62.90	1.61	
	고	혁신학교	8	87.50	12.50	0.00	$17.41^{***a,c}$
		일반학교	85	20.00	77.65	2.35	
설립유형	초	국공립	93	30.11	67.74	2.15	$0.47^{a,c}$
		사립	1	0.00	100.00	0.00	
	중	국공립	62	38.71	61.29	0.00	$3.45^{a,c}$
		사립	20	30.00	65.00	5.00	
	고	국공립	56	30.36	67.86	1.79	$1.56^{a,c}$
		사립	37	18.92	78.38	2.70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4〉 학교장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참여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35	0.76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42	0.73	F=33.94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38	0.73			
	고등학교 ③		2,022	3.24	0.8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49	0.70	t=3.59	0.00	-
		무	1,144	3.37	0.75			
	중	유	737	3.40	0.74	t=0.98	0.328	-
		무	1,156	3.37	0.72			
	고	유	877	3.24	0.83	t=0.04	0.970	-
		무	1,145	3.24	0.7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42	0.74	t=-0.02	0.982	-
		일반학교	1,621	3.42	0.73			
	중	혁신학교	379	3.41	0.74	t=0.79	0.428	-
		일반학교	1,514	3.38	0.72			
	고	혁신학교	166	3.30	0.82	t=1.09	0.278	-
		일반학교	1,856	3.23	0.80			
연령	초	20대 ①	255	3.35	0.69	F=6.00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42	3.39	0.74			
		40대 ③	725	3.41	0.76			
		50대 이상 ④	349	3.57	0.65			
	중	20대 ①	200	3.20	0.72	F=9.86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34	0.76			
		40대 ③	598	3.38	0.73			
		50대 이상 ④	519	3.50	0.68			
	고	20대 ①	172	3.15	0.85	F=3.31	0.019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3.20	0.80			
		40대 ③	588	3.22	0.81			
		50대 이상 ④	577	3.32	0.77			

*p〈0.05, **p〈0.01, ***p〈0.001

〈부록 Ⅱ-5〉 인권 교육과정 구성의 적절성(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2.97	0.6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12	0.63	F=101.7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2.94	0.60			
	고등학교		③	2,022	2.85	0.61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26	0.58	t=8.87	0.000	-
		무		1,144	3.01	0.64			
	중	유		737	3.00	0.57	t=3.30	0.001	-
		무		1,156	2.90	0.62			
	고	유		877	2.89	0.58	t=2.87	0.004	-
		무		1,145	2.81	0.6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19	0.62	t=2.41	0.016	-
		일반학교		1,621	3.10	0.63			
	중	혁신학교		379	3.00	0.62	t=2.08	0.038	-
		일반학교		1,514	2.93	0.60			
	고	혁신학교		166	2.92	0.60	t=1.57	0.116	-
		일반학교		1,856	2.84	0.61			
연령	초	20대	①	255	3.04	0.59	F=2.18	0.089	-
		30대	②	642	3.10	0.62			
		40대	③	725	3.14	0.64			
		50대 이상	④	349	3.16	0.64			
	중	20대	①	200	2.86	0.56	F=2.07	0.102	-
		30대	②	576	2.94	0.57			
		40대	③	598	2.94	0.65			
		50대 이상	④	519	2.98	0.60			
	고	20대	①	172	2.85	0.61	F=0.55	0.646	-
		30대	②	685	2.83	0.62			
		40대	③	588	2.83	0.62			
		50대 이상	④	577	2.87	0.59			

*p〈0.05, **p〈0.01, ***p〈0.001

〈부록 Ⅱ-6〉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2.98	0.6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11	0.61	F=75.8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2.98	0.59			
	고등학교 ③		2,022	2.87	0.6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21	0.59	t=-6.40	0.000	-
		무	1,144	3.03	0.62			
	중	유	737	3.02	0.57	t=2.85	0.004	-
		무	1,156	2.95	0.60			
	고	유	877	2.90	0.61	t=2.03	0.043	-
		무	1,145	2.85	0.6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20	0.57	t=3.05	0.002	-
		일반학교	1,621	3.09	0.62			
	중	혁신학교	379	3.04	0.59	t=2.28	0.023	-
		일반학교	1,514	2.96	0.59			
	고	혁신학교	166	3.00	0.61	t=2.75	0.006	-
		일반학교	1,856	2.86	0.62			
연령	초	20대 ①	255	3.10	0.57	F=0.29	0.830	-
		30대 ②	642	3.10	0.62			
		40대 ③	725	3.12	0.61			
		50대 이상 ④	349	3.10	0.63			
	중	20대 ①	200	2.95	0.57	F=0.73	0.534	-
		30대 ②	576	2.98	0.57			
		40대 ③	598	2.96	0.63			
		50대 이상 ④	519	3.01	0.56			
	고	20대 ①	172	2.86	0.63	F=0.52	0.670	-
		30대 ②	685	2.86	0.63			
		40대 ③	588	2.86	0.62			
		50대 이상 ④	577	2.90	0.61			

*p〈0.05, **p〈0.01, ***p〈0.001

〈부록 Ⅱ-7〉 1년간 인권교육 실시 경험(교사)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5,886	69.27	30.73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88.18	11.82	531.02***
	중학교		1,893	64.13	35.87	
	고등학교		2,022	55.64	44.3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90.21	9.79	5.62*
		무	1,144	86.71	13.29	
	중	유	737	66.35	33.65	2.58
		무	1,156	62.72	37.28	
	고	유	877	56.10	43.90	0.13
		무	1,145	55.28	44.72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87.43	12.57	0.23
		일반학교	1,621	88.34	11.66	
	중	혁신학교	379	69.66	30.34	6.29*
		일반학교	1,514	62.75	37.25	
	고	혁신학교	166	55.42	44.58	0.00
		일반학교	1,856	55.66	44.34	
연령	초	20대	255	84.31	15.69	9.63*
		30대	642	90.65	9.35	
		40대	725	88.55	11.45	
		50대 이상	349	85.67	14.33	
	중	20대	200	47.00	53.00	65.26***
		30대	576	56.77	43.23	
		40대	598	68.56	31.44	
		50대 이상	519	73.80	26.20	
	고	20대	172	37.79	62.21	82.22***
		30대	685	46.42	53.58	
		40대	588	60.20	39.80	
		50대 이상	577	67.24	32.76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8〉 1년간 인권교육 실시 시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4,077	7.37	10.6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738	9.08	12.06	F=40.03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214	5.94	9.45			
	고등학교 ③		1,125	6.27	9.1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746	9.45	11.90	t=1.09	0.275	-
		무	992	8.81	12.17			
	중	유	489	5.24	7.28	t=-2.27	0.023	-
		무	725	6.41	10.65			
	고	유	492	6.44	9.61	t=0.56	0.573	-
		무	633	6.13	8.8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06	9.15	11.86	t=0.11	0.911	-
		일반학교	1,432	9.07	12.10			
	중	혁신학교	264	5.74	8.14	t=-0.38	0.702	-
		일반학교	950	5.99	9.79			
	고	혁신학교	92	6.40	9.81	t=0.15	0.884	-
		일반학교	1,033	6.26	9.13			
연령	초	20대 ①	215	9.12	11.96	F=1.68	0.170	-
		30대 ②	582	9.87	13.65			
		40대 ③	642	8.84	10.30			
		50대 이상 ④	299	8.04	12.29			
	중	20대 ①	94	6.97	11.76	F=1.61	0.185	-
		30대 ②	327	5.04	5.84			
		40대 ③	410	6.04	9.26			
		50대 이상 ④	383	6.34	11.31			
	고	20대 ①	65	7.57	13.56	F=0.73	0.534	-
		30대 ②	318	6.32	9.47			
		40대 ③	354	5.83	6.98			
		50대 이상 ④	388	6.40	9.81			

*p〈0.05, **p〈0.01, ***p〈0.001

〈부록 Ⅱ-9〉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편성 여부(학교)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00	64.00	36.00	-
학교급	초등학교		102	68.63	31.37	1.71
	중학교		97	59.79	40.21	
	고등학교		101	63.37	36.6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90.00	10.00	13.96***
		무	62	54.84	45.16	
	중	유	38	76.32	23.68	7.09**
		무	59	49.15	50.85	
	고	유	43	79.07	20.93	7.95**
		무	58	51.72	48.2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1	85.71	14.29	3.59
		일반학교	81	64.20	35.80	
	중	혁신학교	22	72.73	27.27	1.98
		일반학교	75	56.00	44.00	
	고	혁신학교	9	77.78	22.22	0.88^{a}
		일반학교	92	61.96	38.04	
설립유형	초	국공립	100	69.00	31.00	$0.33^{a,c}$
		사립	2	50.00	50.00	
	중	국공립	73	60.27	39.73	0.03
		사립	24	58.33	41.67	
	고	국공립	58	62.07	37.93	0.10
		사립	43	65.12	34.88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0〉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학년별 합계 평균 시간(학교)

구분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92	15.78	15.6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70	16.24	13.60	F=0.15	0.858	-
	중학교 ②		58	14.83	15.87			
	고등학교 ③		64	16.14	17.7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36	14.33	9.44	t=-1.21	0.229	-
		무	34	18.26	16.85			
	중	유	29	14.34	15.85	t=-0.23	0.819	-
		무	29	15.31	16.15			
	고	유	34	14.06	11.46	t=-0.96	0.341	-
		무	30	18.50	22.8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8	17.17	11.64	t=0.33	0.741	-
		일반학교	52	15.92	14.30			
	중	혁신학교	16	21.31	19.81	t=1.67	0.111	-
		일반학교	42	12.36	13.56			
	고	혁신학교	7	16.71	13.38	t=0.09	0.929	-
		일반학교	57	16.07	18.28			
설립유형	초	국공립	69	16.10	13.64	t=-0.72	0.474	-
		사립	1	26.00	-			
	중	국공립	44	14.32	15.26	t=-0.43	0.669	-
		사립	14	16.43	18.16			
	고	국공립	36	14.75	15.22	t=-0.71	0.481	-
		사립	28	17.93	2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1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인권교육: 실시 주체(학교)

구분			사례 수	학교 강사	외부 전문 강사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 강사	χ^2
전체			192	41.15	9.90	48.96	-
학교급	초등학교		70	58.57	1.43	40.00	18.71**
	중학교		58	29.31	17.24	53.45	
	고등학교		64	32.81	12.50	54.6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36	50.00	2.78	47.22	$2.84^{a,c}$
		무	34	67.65	0.00	32.35	
	중	유	29	34.48	17.24	48.28	0.82^{a}
		무	29	24.14	17.24	58.62	
	고	유	34	26.47	11.76	61.76	1.58^{a}
		무	30	40.00	13.33	46.6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8	55.56	5.56	38.89	$2.93^{a,c}$
		일반학교	52	59.62	0.00	40.38	
	중	혁신학교	16	37.50	12.50	50.00	0.84^{a}
		일반학교	42	26.19	19.05	54.76	
	고	혁신학교	7	14.29	28.57	57.14	$2.45^{a,c}$
		일반학교	57	35.09	10.53	54.39	
설립유형	초	국공립	69	57.97	1.45	40.58	$0.72^{a,c}$
		사립	1	100.00	0.00	0.00	
	중	국공립	44	31.82	22.73	45.45	5.75^{a}
		사립	14	21.43	0.00	78.57	
	고	국공립	36	22.22	16.67	61.11	4.58^{a}
		사립	28	46.43	7.14	46.43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2〉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교)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00	86.00	14.00	-
학교급	초등학교		102	91.18	8.82	5.91
	중학교		97	79.38	20.62	
	고등학교		101	87.13	12.8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100.00	0.00	6.37*[a]
		무	62	85.48	14.52	
	중	유	38	89.47	10.53	3.89*
		무	59	72.88	27.12	
	고	유	43	95.35	4.65	4.51*
		무	58	81.03	18.9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1	90.48	9.52	0.02[a]
		일반학교	81	91.36	8.64	
	중	혁신학교	22	90.91	9.09	2.31[a]
		일반학교	75	76.00	24.00	
	고	혁신학교	9	88.89	11.11	0.03[a]
		일반학교	92	86.96	13.04	
설립유형	초	국공립	100	91.00	9.00	0.20[a,c]
		사립	2	100.00	0.00	
	중	국공립	73	82.19	17.81	1.42[a]
		사립	24	70.83	29.17	
	고	국공립	58	84.48	15.52	0.85
		사립	43	90.70	9.30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3〉 2019년도 교사 대상 인권교육 시간(학교)

구분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258	2.59	3.59	-	-	-
학교급	초등학교		93	2.20	1.57	F=23.82	0.158	-
	중학교		77	3.23	6.01			
	고등학교		88	2.44	1.8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2.05	0.93	t=-0.90	0.373	-
		무	53	2.32	1.92			
	중	유	34	4.29	8.59	t=1.25	0.219	-
		무	43	2.40	2.41			
	고	유	41	2.56	1.60	t=0.56	0.576	-
		무	47	2.34	2.02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9	2.58	2.09	t=1.17	0.246	-
		일반학교	74	2.11	1.41			
	중	혁신학교	20	6.30	10.88	t=1.69	0.107	-
		일반학교	57	2.16	2.09			
	고	혁신학교	8	3.13	2.23	t=1.11	0.272	-
		일반학교	80	2.38	1.79			
설립유형	초	국공립	91	2.20	1.59	t=-0.27	0.790	-
		사립	2	2.50	0.71			
	중	국공립	60	2.68	3.20	t=-0.90	0.383	-
		사립	17	5.18	11.35			
	고	국공립	49	2.31	1.42	t=-0.79	0.434	-
		사립	39	2.62	2.25			

*p〈0.05, **p〈0.01, ***p〈0.001

〈부록 Ⅱ-14〉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학교)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300	77.00	23.00	-
학교급	초등학교		102	81.37	18.63	1.70
	중학교		97	74.23	25.77	
	고등학교		101	75.25	24.75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40	87.50	12.50	1.63
		무	62	77.42	22.58	
	중	유	38	81.58	18.42	1.77
		무	59	69.49	30.51	
	고	유	43	83.72	16.28	2.89
		무	58	68.97	31.0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1	76.19	23.81	0.47^a
		일반학교	81	82.72	17.28	
	중	혁신학교	22	77.27	22.73	0.14
		일반학교	75	73.33	26.67	
	고	혁신학교	9	77.78	22.22	0.03^a
		일반학교	92	75.00	25.00	
설립유형	초	국공립	100	82.00	18.00	$1.32^{a,c}$
		사립	2	50.00	50.00	
	중	국공립	73	78.08	21.92	2.29
		사립	24	62.50	37.50	
	고	국공립	58	70.69	29.31	1.52
		사립	43	81.40	18.60	

*p〈0.05, **p〈0.01, ***p〈0.001

※a.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5〉 2019년도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시간(학교)

구분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231	1.79	1.25	-	-	-
학교급	초등학교		83	1.71	0.94	F=0.45	0.750	-
	중학교		72	1.84	1.47			
	고등학교		76	1.84	1.3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35	1.77	0.84	t=0.50	0.621	-
		무	48	1.67	1.02			
	중	유	31	2.13	2.09	t=1.46	0.149	-
		무	41	1.62	0.66			
	고	유	36	1.94	0.86	t=0.64	0.527	-
		무	40	1.75	1.6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6	1.38	0.50	t=-1.60	0.114	-
		일반학교	67	1.79	1.01			
	중	혁신학교	17	2.91	2.67	t=2.15	0.047	-
		일반학교	55	1.51	0.50			
	고	혁신학교	7	2.29	1.25	t=0.93	0.357	-
		일반학교	69	1.80	1.33			
설립유형	초	국공립	82	1.71	0.95	t=-0.31	0.760	-
		사립	1	2.00	-			
	중	국공립	57	1.83	1.53	t=-0.08	0.938	-
		사립	15	1.87	1.25			
	고	국공립	41	1.85	1.04	t=0.08	0.935	-
		사립	35	1.83	1.62			

*p〈0.05, **p〈0.01, ***p〈0.001

〈부록 Ⅱ-16〉 최근 1년간 학교 밖 인권교육 경험 여부(학생)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3,524	35.06	64.94	-
학교급	초등학교		4,374	37.04	62.96	27.82***
	중학교		4,647	36.13	63.87	
	고등학교		4,503	32.05	67.95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4.90	65.10	5.46*
		무	2,672	38.40	61.60	
	중	유	1,937	37.74	62.26	3.72
		무	2,710	34.98	65.02	
	고	유	2,008	35.06	64.94	15.12***
		무	2,495	29.62	70.3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6.52	63.48	0.11
		일반학교	3,580	37.15	62.85	
	중	혁신학교	934	38.01	61.99	1.79
		일반학교	3,713	35.66	64.34	
	고	혁신학교	355	37.18	62.82	4.67*
		일반학교	4,148	31.61	68.39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2,989	37.14	62.86	0.31
		11~20%	1,106	37.16	62.84	
		21%이상	279	35.48	64.52	
	중	0~10%	2,611	35.04	64.96	5.47
		11~20%	1,307	38.71	61.29	
		21%이상	685	35.04	64.96	
	고	0~10%	2,486	32.54	67.46	0.99
		11~20%	1,298	30.97	69.03	
		21%이상	719	32.27	67.73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7〉 최근 1년간 학교 내 인권교육 경험 여부(학생)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3,524	57.92	8.86	-
학교급	초등학교		4,374	62.85	4.89	159.22***
	중학교		4,647	57.16	9.77	
	고등학교		4,503	53.92	11.7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65.57	4.82	9.36**
		무	2,672	61.12	4.94	
	중	유	1,937	65.72	6.09	112.60***
		무	2,710	51.03	12.40	
	고	유	2,008	59.21	9.06	48.45***
		무	2,495	49.66	13.9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62.85	5.42	0.62
		일반학교	3,580	62.85	4.78	
	중	혁신학교	934	61.46	8.99	8.90*
		일반학교	3,713	56.07	9.96	
	고	혁신학교	355	59.15	10.70	4.28
		일반학교	4,148	53.47	11.86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2,989	64.74	4.72	21.66***
		11~20%	1,106	59.67	5.79	
		21%이상	279	55.20	3.23	
	중	0~10%	2,611	58.56	9.92	15.60**
		11~20%	1,307	57.77	9.64	
		21%이상	685	51.39	9.20	
	고	0~10%	2,486	55.79	12.43	20.10***
		11~20%	1,298	52.93	10.02	
		21%이상	719	49.24	12.66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8〉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시간(학생)

구분			사례 수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생활지도 시간	χ^2
전체			7,833	72.56	40.93	22.81	-
학교급	초등학교		2,749	88.80	23.64	21.39	1475.57***
	중학교		2,656	72.55	41.64	23.08	
	고등학교		2,428	54.20	59.72	24.14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116	84.68	28.14	20.16	54.71***
		무	1,633	91.61	20.58	22.23	
	중	유	1,273	71.09	43.28	20.50	14.48**
		무	1,383	73.90	40.13	25.45	
	고	유	1,189	50.80	65.52	23.13	44.71***
		무	1,239	57.47	54.16	25.10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99	87.78	26.45	17.84	7.88*
		일반학교	2,250	89.02	23.02	22.18	
	중	혁신학교	574	70.56	45.12	18.99	12.01**
		일반학교	2,082	73.10	40.68	24.21	
	고	혁신학교	210	57.62	68.10	20.48	9.47*
		일반학교	2,218	53.88	58.93	24.4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1,935	87.70	25.37	22.02	22.19**
		11~20%	660	90.76	20.00	19.70	
		21%이상	154	94.16	17.53	20.78	
	중	0~10%	1,529	73.25	41.01	22.04	19.06**
		11~20%	755	69.67	46.49	24.64	
		21%이상	352	74.72	35.80	24.43	
	고	0~10%	1,387	52.13	63.66	25.96	37.04***
		11~20%	687	56.48	56.04	20.23	
		21%이상	354	57.91	51.41	24.58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9〉 권리 영역별 수업 여부(학생)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3,524	72.09	27.91	-
차별	초등학교	4,374	77.34	22.66	114.56***
	중학교	4,647	71.94	28.06	
	고등학교	4,503	67.16	32.84	
폭력	초등학교	4,374	83.52	16.48	12.48**
	중학교	4,647	82.44	17.56	
	고등학교	4,503	80.68	19.32	
학습권	초등학교	4,374	72.98	27.02	23.30***
	중학교	4,647	70.67	29.33	
	고등학교	4,503	68.31	31.69	
사생활	초등학교	4,374	64.63	35.37	4.24
	중학교	4,647	65.38	34.62	
	고등학교	4,503	63.34	36.66	
표현	초등학교	4,374	74.74	25.26	21.26***
	중학교	4,647	72.24	27.76	
	고등학교	4,503	70.38	29.62	
자치	초등학교	4,374	79.04	20.96	161.29***
	중학교	4,647	69.61	30.39	
	고등학교	4,503	67.73	32.27	
복지	초등학교	4,374	75.31	24.69	42.11***
	중학교	4,647	71.36	28.64	
	고등학교	4,503	69.20	30.80	
절차에 따른 징계	초등학교	4,374	71.63	28.37	40.98***
	중학교	4,647	68.47	31.53	
	고등학교	4,503	65.31	34.69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초등학교	4,374	83.36	16.64	50.49***
	중학교	4,647	79.60	20.40	
	고등학교	4,503	77.39	22.61	

*p〈0.05, **p〈0.01, ***p〈0.001

〈부록 Ⅱ-20〉 권리 영역별 필요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45	0.72	-	-	-
차별	초등학교	①	4,374	3.47	0.74	F=2.93	0.053	-
	중학교	②	4,647	3.44	0.72			
	고등학교	③	4,503	3.45	0.70			
폭력	초등학교	①	4,374	3.55	0.66	F=2.67	0.069	-
	중학교	②	4,647	3.53	0.67			
	고등학교	③	4,503	3.53	0.65			
학습권	초등학교	①	4,374	3.38	0.68	F=6.19	0.002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42	0.69			
	고등학교	③	4,503	3.43	0.67			
사생활	초등학교	①	4,374	3.43	0.80	F=13.2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47	0.72			
	고등학교	③	4,503	3.51	0.69			
표현	초등학교	①	4,374	3.43	0.66	F=9.05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43	0.67			
	고등학교	③	4,503	3.48	0.65			
자치	초등학교	①	4,374	3.40	0.67	F=5.96	0.003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39	0.69			
	고등학교	③	4,503	3.44	0.68			
복지	초등학교	①	4,374	3.48	0.65	F=2.84	0.059	-
	중학교	②	4,647	3.47	0.67			
	고등학교	③	4,503	3.51	0.65			
절차에 따른 징계	초등학교	①	4,374	3.40	0.69	F=11.30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45	0.69			
	고등학교	③	4,503	3.47	0.66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초등학교	①	4,374	3.64	0.59	F=23.3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56	0.65			
	고등학교	③	4,503	3.57	0.63			

*p〈0.05, **p〈0.01, ***p〈0.001

〈부록 Ⅱ-21〉 1년간 인권 관련 활동별 참여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χ^2
전체		13,524	48.31	51.69	-
동아리	초등학교	4,374	57.02	42.98	209.67***
	중학교	4,647	46.01	53.99	
	고등학교	4,503	42.22	57.78	
시민단체	초등학교	4,374	9.72	90.28	24.03***
	중학교	4,647	12.93	87.07	
	고등학교	4,503	12.04	87.96	
자원봉사	초등학교	4,374	37.27	62.73	49.41***
	중학교	4,647	44.16	55.84	
	고등학교	4,503	38.84	61.16	
외부행사	초등학교	4,374	26.59	73.41	8.41*
	중학교	4,647	24.70	75.30	
	고등학교	4,503	24.01	75.99	
캠페인	초등학교	4,374	35.00	65.00	56.03***
	중학교	4,647	28.23	71.77	
	고등학교	4,503	29.20	70.80	
SNS	초등학교	4,374	32.03	67.97	24.42***
	중학교	4,647	34.60	65.40	
	고등학교	4,503	37.02	62.98	

*p〈0.05, **p〈0.01, ***p〈0.001

〈부록 Ⅱ-23〉 인권교육 수업방법: 설명식(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7,833	2.88	0.86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2,749	3.05	0.80	F=90.6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2,656	2.79	0.89			
	고등학교 ③		2,428	2.77	0.8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116	3.05	0.77	t=-0.11	0.912	-
		무	1,633	3.05	0.81			
	중	유	1,273	2.69	0.90	t=-5.71	0.000	-
		무	1,383	2.89	0.86			
	고	유	1,189	2.72	0.88	t=-2.63	0.009	-
		무	1,239	2.81	0.8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99	3.11	0.79	t=1.70	0.089	-
		일반학교	2,250	3.04	0.80			
	중	혁신학교	574	2.78	0.87	t=-0.52	0.603	-
		일반학교	2,082	2.80	0.89			
	고	혁신학교	210	2.82	0.83	t=0.91	0.361	-
		일반학교	2,218	2.76	0.8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1,935	3.05	0.80	F=1.14	0.320	-
		11~20% ②	660	3.02	0.78			
		21%이상 ③	154	3.13	0.80			
	중	0~10% ①	1,529	2.80	0.89	F=0.66	0.516	-
		11~20% ②	755	2.81	0.87			
		21%이상 ③	352	2.75	0.91			
	고	0~10% ①	1,387	2.78	0.88	F=0.99	0.372	-
		11~20% ②	687	2.78	0.86			
		21%이상 ③	354	2.71	0.85			

*p〈0.05, **p〈0.01, ***p〈0.001

〈부록 Ⅱ-24〉 인권교육 수업방법: 토론식(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7,833	2.17	0.9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2,749	2.27	0.91	F=29.70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2,656	2.16	1.00			
	고등학교		③	2,428	2.07	0.9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116	2.27	0.91	t=-0.29	0.770	-
		무		1,633	2.28	0.92			
	중	유		1,273	2.00	0.95	t=-7.67	0.000	-
		무		1,383	2.30	1.01			
	고	유		1,189	2.02	0.98	t=-2.27	0.023	-
		무		1,239	2.11	0.9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99	2.35	0.96	t=1.96	0.051	-
		일반학교		2,250	2.26	0.90			
	중	혁신학교		574	2.20	0.99	t=1.18	0.239	-
		일반학교		2,082	2.15	1.00			
	고	혁신학교		210	2.32	0.94	t=3.90	0.000	-
		일반학교		2,218	2.04	0.9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1,935	2.27	0.93	F=0.31	0.736	-
		11~20%	②	660	2.28	0.89			
		21%이상	③	154	2.22	0.89			
	중	0~10%	①	1,529	2.16	1.01	F=0.01	0.985	-
		11~20%	②	755	2.16	0.96			
		21%이상	③	352	2.15	1.00			
	고	0~10%	①	1,387	2.06	0.99	F=0.37	0.689	-
		11~20%	②	687	2.07	0.97			
		21%이상	③	354	2.10	0.96			

*p〈0.05, **p〈0.01, ***p〈0.001

〈부록 Ⅱ-25〉 인권교육 수업방법: 모둠활동(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7,833	2.52	1.03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2,749	2.73	0.98	F=123.0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2,656	2.52	1.04			
	고등학교 ③		2,428	2.28	1.0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116	2.72	0.95	t=-0.37	0.711	-
		무	1,633	2.73	1.00			
	중	유	1,273	2.42	1.02	t=-4.70	0.000	-
		무	1,383	2.61	1.04			
	고	유	1,189	2.20	1.01	t=-3.82	0.000	-
		무	1,239	2.36	1.0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99	2.74	0.99	t=0.39	0.694	-
		일반학교	2,250	2.72	0.98			
	중	혁신학교	574	2.58	1.04	t=1.59	0.112	-
		일반학교	2,082	2.50	1.03			
	고	혁신학교	210	2.51	0.93	t=3.62	0.000	-
		일반학교	2,218	2.26	1.04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1,935	2.75	0.98	F=1.80	0.166	-
		11~20% ②	660	2.67	0.98			
		21%이상 ③	154	2.76	0.87			
	중	0~10% ①	1,529	2.54	1.03	F=0.95	0.389	-
		11~20% ②	755	2.53	1.06			
		21%이상 ③	352	2.45	1.03			
	고	0~10% ①	1,387	2.26	1.04	F=0.79	0.456	-
		11~20% ②	687	2.32	1.02			
		21%이상 ③	354	2.31	1.02			

*p〈0.05, **p〈0.01, ***p〈0.001

〈부록 Ⅱ-26〉 인권교육 수업방법: 프로젝트, 문제해결식(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7,833	2.54	0.9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2,749	2.57	0.93	F=23.94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2,656	2.60	0.99			
	고등학교		③	2,428	2.42	1.0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116	2.60	0.91	t=1.21	0.227	-
		무		1,633	2.55	0.95			
	중	유		1,273	2.51	0.99	t=-4.48	0.000	-
		무		1,383	2.69	0.98			
	고	유		1,189	2.39	1.02	t=-1.84	0.066	-
		무		1,239	2.46	1.01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99	2.69	0.94	t=3.09	0.002	-
		일반학교		2,250	2.54	0.93			
	중	혁신학교		574	2.71	0.95	t=2.93	0.004	-
		일반학교		2,082	2.57	1.00			
	고	혁신학교		210	2.54	0.93	t=1.84	0.067	-
		일반학교		2,218	2.41	1.02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1,935	2.60	0.94	F=2.68	0.069	-
		11~20%	②	660	2.51	0.94			
		21%이상	③	154	2.51	0.78			
	중	0~10%	①	1,529	2.58	1.00	F=1.71	0.180	-
		11~20%	②	755	2.66	1.00			
		21%이상	③	352	2.57	0.96			
	고	0~10%	①	1,387	2.39	1.02	F=1.65	0.193	-
		11~20%	②	687	2.48	1.01			
		21%이상	③	354	2.44	1.00			

*p〈0.05, **p〈0.01, ***p〈0.001

〈부록 Ⅱ-27〉 개방적 수업풍토(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2.96	0.70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06	0.65	F=45.2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91	0.72			
	고등학교 ③		4,503	2.90	0.7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03	0.64	t=-1.63	0.103	-
		무	2,672	3.08	0.66			
	중	유	1,937	2.79	0.72	t=-8.16	0.000	-
		무	2,710	3.02	0.71			
	고	유	2,008	2.87	0.70	t=-1.53	0.126	-
		무	2,495	2.92	0.70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02	0.67	t=-1.59	0.112	-
		일반학교	3,580	3.07	0.65			
	중	혁신학교	934	2.88	0.72	t=-1.32	0.188	-
		일반학교	3,713	2.92	0.72			
	고	혁신학교	355	2.89	0.62	t=-0.06	0.955	-
		일반학교	4,148	2.90	0.71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06	0.66	F=1.99	0.137	-
		11~20% ②	1,106	3.03	0.62			
		21%이상 ③	279	3.15	0.65			
	중	0~10% ①	2,611	2.86	0.74	F=8.84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00	0.70			
		21%이상 ③	685	2.94	0.70			
	고	0~10% ①	2,486	2.88	0.69	F=0.66	0.518	-
		11~20% ②	1,298	2.92	0.69			
		21%이상 ③	719	2.90	0.74			

*p〈0.05, **p〈0.01, ***p〈0.001

〈부록 Ⅱ-28〉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지식 이해로서의 교육효과(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34	0.5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47	0.55	F=101.2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26	0.61			
	고등학교		③	4,503	3.29	0.5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44	0.56	t=-2.31	0.021	-
		무		2,672	3.49	0.54			
	중	유		1,937	3.18	0.62	t=-7.24	0.000	-
		무		2,710	3.35	0.59			
	고	유		2,008	3.25	0.58	t=-3.20	0.001	-
		무		2,495	3.32	0.5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41	0.59	t=-2.66	0.008	-
		일반학교		3,580	3.48	0.54			
	중	혁신학교		934	3.27	0.62	t=0.12	0.904	-
		일반학교		3,713	3.26	0.60			
	고	혁신학교		355	3.28	0.51	t=-0.27	0.784	-
		일반학교		4,148	3.29	0.57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48	0.55	F=2.19	0.112	-
		11~20%	②	1,106	3.43	0.54			
		21%이상	③	279	3.51	0.56			
	중	0~10%	①	2,611	3.25	0.61	F=2.76	0.063	-
		11~20%	②	1,307	3.31	0.61			
		21%이상	③	685	3.25	0.59			
	고	0~10%	①	2,486	3.30	0.55	F=0.46	0.632	-
		11~20%	②	1,298	3.28	0.59			
		21%이상	③	719	3.27	0.56			

*p〈0.05, **p〈0.01, ***p〈0.001

〈부록 Ⅱ-29〉 인권교육을 통해 알게 된 내용: 태도로서의 교육효과(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42	0.5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51	0.52	F=57.0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36	0.61			
	고등학교 ③		4,503	3.37	0.5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47	0.54	t=-2.94	0.003	-
		무	2,672	3.53	0.51			
	중	유	1,937	3.28	0.63	t=-6.59	0.000	-
		무	2,710	3.43	0.59			
	고	유	2,008	3.35	0.58	t=-2.00	0.045	-
		무	2,495	3.40	0.5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47	0.55	t=-2.03	0.042	-
		일반학교	3,580	3.52	0.52			
	중	혁신학교	934	3.35	0.61	t=-0.48	0.632	-
		일반학교	3,713	3.36	0.62			
	고	혁신학교	355	3.40	0.53	t=0.66	0.509	-
		일반학교	4,148	3.37	0.5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50	0.52	F=3.33	0.036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52	0.52			
		21%이상 ③	279	3.61	0.52			
	중	0~10% ①	2,611	3.33	0.63	F=6.59	0.001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42	0.58			
		21%이상 ③	685	3.36	0.61			
	고	0~10% ①	2,486	3.39	0.56	F=0.92	0.397	-
		11~20% ②	1,298	3.35	0.59			
		21%이상 ③	719	3.37	0.58			

*p〈0.05, **p〈0.01, ***p〈0.001

〈부록 Ⅱ-30〉 인권교육 수업 만족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2.97	0.6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08	0.57	F=74.18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90	0.66			
	고등학교		③	4,503	2.90	0.6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05	0.55	t=-2.37	0.018	-
		무		2,672	3.10	0.58			
	중	유		1,937	2.79	0.66	t=-8.71	0.000	-
		무		2,710	3.01	0.65			
	고	유		2,008	2.86	0.64	t=-3.33	0.001	-
		무		2,495	2.94	0.61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06	0.58	t=-1.04	0.300	-
		일반학교		3,580	3.09	0.56			
	중	혁신학교		934	2.92	0.68	t=0.63	0.528	-
		일반학교		3,713	2.90	0.65			
	고	혁신학교		355	2.85	0.59	t=-1.20	0.232	-
		일반학교		4,148	2.91	0.63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08	0.58	F=2.46	0.086	-
		11~20%	②	1,106	3.06	0.54			
		21%이상	③	279	3.17	0.56			
	중	0~10%	①	2,611	2.87	0.67	F=5.92	0.003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2.97	0.64			
		21%이상	③	685	2.92	0.64			
	고	0~10%	①	2,486	2.89	0.62	F=1.45	0.235	-
		11~20%	②	1,298	2.94	0.63			
		21%이상	③	719	2.90	0.65			

*p〈0.05, **p〈0.01, ***p〈0.001

〈부록 Ⅱ-33〉 인권의식: 인권판단(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32	0.6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41	0.63	F=36.74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31	0.68			
	고등학교 ③		2,022	3.24	0.6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45	0.60	t=2.11	0.035	-
		무	1,144	3.39	0.65			
	중	유	737	3.32	0.67	t=0.43	0.664	-
		무	1,156	3.30	0.69			
	고	유	877	3.21	0.68	t=-1.40	0.162	-
		무	1,145	3.25	0.6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42	0.67	t=0.01	0.990	-
		일반학교	1,621	3.41	0.62			
	중	혁신학교	379	3.36	0.70	t=1.47	0.141	-
		일반학교	1,514	3.30	0.68			
	고	혁신학교	166	3.25	0.70	t=0.35	0.725	-
		일반학교	1,856	3.23	0.68			
연령	초	20대 ①	255	3.27	0.64	F=9.16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42	3.37	0.65			
		40대 ③	725	3.48	0.60			
		50대 이상 ④	349	3.46	0.61			
	중	20대 ①	200	3.18	0.66	F=10.81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21	0.72			
		40대 ③	598	3.38	0.68			
		50대 이상 ④	519	3.39	0.63			
	고	20대 ①	172	3.14	0.72	F=6.65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3.16	0.70			
		40대 ③	588	3.29	0.66			
		50대 이상 ④	577	3.29	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34〉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0	0.43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63	0.41	F=27.6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3	0.42			
	고등학교 ③		2,022	3.55	0.4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63	0.41	t=0.45	0.653	-
		무	1,144	3.62	0.41			
	중	유	737	3.63	0.41	t=0.42	0.673	-
		무	1,156	3.63	0.42			
	고	유	877	3.56	0.44	t=0.75	0.453	-
		무	1,145	3.54	0.4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68	0.39	t=2.67	0.008	-
		일반학교	1,621	3.62	0.42			
	중	혁신학교	379	3.65	0.43	t=0.96	0.335	-
		일반학교	1,514	3.62	0.41			
	고	혁신학교	166	3.57	0.46	t=0.62	0.533	-
		일반학교	1,856	3.55	0.47			
연령	초	20대 ①	255	3.60	0.37	F=0.85	0.467	-
		30대 ②	642	3.64	0.43			
		40대 ③	725	3.64	0.41			
		50대 이상 ④	349	3.61	0.41			
	중	20대 ①	200	3.70	0.35	F=5.50	0.001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59	0.43			
		40대 ③	598	3.66	0.38			
		50대 이상 ④	519	3.60	0.45			
	고	20대 ①	172	3.54	0.56	F=6.18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3.57	0.46			
		40대 ③	588	3.60	0.41			
		50대 이상 ④	577	3.49	0.49			

*p〈0.05, **p〈0.01, ***p〈0.001

〈부록 Ⅱ-35〉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07	0.49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07	0.50	F=11.0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11	0.48			
	고등학교 ③		2,022	3.04	0.4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05	0.51	t=-1.62	0.105	-
		무	1,144	3.08	0.50			
	중	유	737	3.09	0.47	t=-1.15	0.249	-
		무	1,156	3.12	0.49			
	고	유	877	3.03	0.50	t=-1.17	0.241	-
		무	1,145	3.05	0.4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10	0.53	t=1.20	0.229	-
		일반학교	1,621	3.06	0.50			
	중	혁신학교	379	3.15	0.48	t=2.13	0.033	-
		일반학교	1,514	3.10	0.48			
	고	혁신학교	166	3.07	0.55	t=0.66	0.509	-
		일반학교	1,856	3.04	0.49			
연령	초	20대 ①	255	3.02	0.50	F=1.27	0.284	-
		30대 ②	642	3.06	0.53			
		40대 ③	725	3.08	0.49			
		50대 이상 ④	349	3.10	0.50			
	중	20대 ①	200	3.08	0.51	F=8.32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03	0.50			
		40대 ③	598	3.13	0.47			
		50대 이상 ④	519	3.17	0.45			
	고	20대 ①	172	2.99	0.58	F=6.90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3.00	0.49			
		40대 ③	588	3.03	0.47			
		50대 이상 ④	577	3.12	0.48			

*p〈0.05, **p〈0.01, ***p〈0.001

〈부록 Ⅱ-36〉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유엔아동권리협약(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2.62	0.80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2.86	0.77	F=147.8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2.57	0.79			
	고등학교 ③		2,022	2.45	0.7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2.96	0.75	t=5.30	0.000	-
		무	1,144	2.78	0.77			
	중	유	737	2.58	0.79	t=0.66	0.512	-
		무	1,156	2.56	0.80			
	고	유	877	2.49	0.78	t=2.39	0.017	-
		무	1,145	2.41	0.7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2.97	0.79	t=3.04	0.002	-
		일반학교	1,621	2.83	0.76			
	중	혁신학교	379	2.68	0.80	t=3.02	0.003	-
		일반학교	1,514	2.54	0.79			
	고	혁신학교	166	2.53	0.81	t=1.47	0.142	-
		일반학교	1,856	2.44	0.77			
연령	초	20대 ①	255	2.67	0.79	F=7.67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42	2.89	0.78			
		40대 ③	725	2.92	0.74			
		50대 이상 ④	349	2.81	0.78			
	중	20대 ①	200	2.27	0.84	F=16.88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2.49	0.78			
		40대 ③	598	2.63	0.81			
		50대 이상 ④	519	2.69	0.73			
	고	20대 ①	172	2.26	0.79	F=10.97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2.38	0.77			
		40대 ③	588	2.44	0.75			
		50대 이상 ④	577	2.58	0.77			

*p〈0.05, **p〈0.01, ***p〈0.001

〈부록 Ⅱ-37〉 인권의식: 인권판단(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22	0.66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28	0.58	F=30.5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18	0.70			
	고등학교 ③		4,503	3.21	0.6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27	0.61	t=-0.87	0.385	-
		무	2,672	3.29	0.57			
	중	유	1,937	3.19	0.69	t=1.32	0.186	-
		무	2,710	3.17	0.72			
	고	유	2,008	3.17	0.71	t=-3.56	0.000	-
		무	2,495	3.24	0.6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24	0.61	t=-2.26	0.024	-
		일반학교	3,580	3.29	0.58			
	중	혁신학교	934	3.17	0.72	t=-0.52	0.603	-
		일반학교	3,713	3.18	0.70			
	고	혁신학교	355	3.25	0.61	t=1.24	0.214	-
		일반학교	4,148	3.21	0.67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9	0.58	F=0.49	0.611	-
		11~20% ②	1,106	3.27	0.60			
		21%이상 ③	279	3.28	0.58			
	중	0~10% ①	2,611	3.21	0.68	F=9.25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16	0.72			
		21%이상 ③	685	3.08	0.75			
	고	0~10% ①	2,486	3.25	0.64	F=9.19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19	0.69			
		21%이상 ③	719	3.13	0.71			

*p〈0.05, **p〈0.01, ***p〈0.001

〈부록 Ⅱ-38〉 인권의식: 인권 감수성(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14	0.59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19	0.58	F=26.50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10	0.61			
	고등학교 ③		4,503	3.14	0.5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18	0.58	t=-1.01	0.313	-
		무	2,672	3.20	0.58			
	중	유	1,937	3.07	0.60	t=-2.85	0.004	-
		무	2,710	3.12	0.62			
	고	유	2,008	3.12	0.60	t=-2.07	0.039	-
		무	2,495	3.15	0.5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15	0.59	t=-2.04	0.042	-
		일반학교	3,580	3.20	0.58			
	중	혁신학교	934	3.07	0.63	t=-1.83	0.067	-
		일반학교	3,713	3.11	0.60			
	고	혁신학교	355	3.11	0.57	t=-1.06	0.289	-
		일반학교	4,148	3.14	0.5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9	0.58	F=0.49	0.611	-
		11~20% ②	1,106	3.27	0.60			
		21%이상 ③	279	3.28	0.58			
	중	0~10% ①	2,611	3.21	0.68	F=9.25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16	0.72			
		21%이상 ③	685	3.08	0.75			
	고	0~10% ①	2,486	3.25	0.64	F=9.19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19	0.69			
		21%이상 ③	719	3.13	0.71			

*p〈0.05, **p〈0.01, ***p〈0.001

〈부록 Ⅱ-39〉 인권의식: 인권 행동의사(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08	0.60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12	0.59	F=17.6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05	0.62			
	고등학교 ③		4,503	3.08	0.5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08	0.59	t=-4.16	0.000	-
		무	2,672	3.15	0.59			
	중	유	1,937	2.99	0.63	t=-5.58	0.000	-
		무	2,710	3.09	0.62			
	고	유	2,008	3.06	0.60	t=-1.94	0.053	-
		무	2,495	3.09	0.5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07	0.59	t=-3.02	0.003	-
		일반학교	3,580	3.14	0.59			
	중	혁신학교	934	3.00	0.65	t=-2.48	0.013	-
		일반학교	3,713	3.06	0.62			
	고	혁신학교	355	3.08	0.54	t=0.18	0.856	-
		일반학교	4,148	3.08	0.59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11	0.60	F=5.04	0.006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13	0.57			
		21%이상 ③	279	3.23	0.57			
	중	0~10% ①	2,611	3.05	0.62	F=0.12	0.889	-
		11~20% ②	1,307	3.06	0.63			
		21%이상 ③	685	3.05	0.61			
	고	0~10% ①	2,486	3.09	0.58	F=3.71	0.025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04	0.61			
		21%이상 ③	719	3.09	0.61			

*p〈0.05, **p〈0.01, ***p〈0.001

〈부록 Ⅱ-40〉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인권 개념(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29	0.69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23	0.69	F=21.8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31	0.69			
	고등학교 ③		4,503	3.31	0.6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21	0.67	t=-1.32	0.190	-
		무	2,672	3.24	0.70			
	중	유	1,937	3.28	0.69	t=-2.85	0.004	-
		무	2,710	3.34	0.70			
	고	유	2,008	3.30	0.70	t=-0.82	0.412	-
		무	2,495	3.32	0.6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19	0.72	t=-1.74	0.082	-
		일반학교	3,580	3.24	0.68			
	중	혁신학교	934	3.28	0.74	t=-1.64	0.101	-
		일반학교	3,713	3.32	0.68			
	고	혁신학교	355	3.28	0.67	t=-0.76	0.446	-
		일반학교	4,148	3.31	0.69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5	0.68	F=6.44	0.002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18	0.70			
		21%이상 ③	279	3.15	0.69			
	중	0~10% ①	2,611	3.34	0.69	F=4.79	0.008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29	0.70			
		21%이상 ③	685	3.26	0.68			
	고	0~10% ①	2,486	3.33	0.68	F=5.63	0.004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31	0.68			
		21%이상 ③	719	3.24	0.72			

*p〈0.05, **p〈0.01, ***p〈0.001

〈부록 Ⅱ-41〉 인권 관련 내용 인지율: 유엔아동권리협약(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2.26	0.94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2.05	0.92	F=180.35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32	0.94			
	고등학교 ③		4,503	2.41	0.9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2.09	0.90	t=2.56	0.011	-
		무	2,672	2.02	0.92			
	중	유	1,937	2.25	0.91	t=-4.68	0.000	-
		무	2,710	2.38	0.96			
	고	유	2,008	2.43	0.92	t=1.48	0.138	-
		무	2,495	2.39	0.92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2.05	0.97	t=0.02	0.980	-
		일반학교	3,580	2.05	0.91			
	중	혁신학교	934	2.34	0.96	t=0.62	0.537	-
		일반학교	3,713	2.32	0.94			
	고	혁신학교	355	2.34	0.89	t=-1.36	0.175	-
		일반학교	4,148	2.41	0.93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2.08	0.92	F=3.90	0.02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2.00	0.91			
		21%이상 ③	279	1.96	0.92			
	중	0~10% ①	2,611	2.33	0.95	F=1.25	0.287	-
		11~20% ②	1,307	2.34	0.95			
		21%이상 ③	685	2.27	0.91			
	고	0~10% ①	2,486	2.41	0.92	F=0.01	0.986	-
		11~20% ②	1,298	2.40	0.93			
		21%이상 ③	719	2.41	0.93			

*p〈0.05, **p〈0.01, ***p〈0.001

〈부록 Ⅱ-42〉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07	0.8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27	0.80	F=243.1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06	0.81			
	고등학교 ③		4,503	2.89	0.8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23	0.82	t=-2.76	0.006	-
		무	2,672	3.30	0.79			
	중	유	1,937	2.98	0.82	t=-5.38	0.000	-
		무	2,710	3.11	0.80			
	고	유	2,008	2.93	0.80	t=2.68	0.007	-
		무	2,495	2.87	0.80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28	0.79	t=0.37	0.708	-
		일반학교	3,580	3.27	0.80			
	중	혁신학교	934	3.01	0.82	t=-2.24	0.025	-
		일반학교	3,713	3.07	0.81			
	고	혁신학교	355	3.05	0.75	t=4.00	0.000	-
		일반학교	4,148	2.88	0.80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7	0.79	F=2.13	0.120	-
		11~20% ②	1,106	3.25	0.85			
		21%이상 ③	279	3.36	0.77			
	중	0~10% ①	2,611	3.00	0.81	F=13.14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13	0.80			
		21%이상 ③	685	3.13	0.80			
	고	0~10% ①	2,486	2.85	0.79	F=8.04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2.95	0.78			
		21%이상 ③	719	2.95	0.85			

*p〈0.05, **p〈0.01, ***p〈0.001

〈부록 Ⅱ-43〉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10	0.80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24	0.80	F=97.0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04	0.79			
	고등학교 ③		4,503	3.04	0.7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23	0.82	t=-0.91	0.361	-
		무	2,672	3.25	0.79			
	중	유	1,937	2.98	0.80	t=-4.06	0.000	-
		무	2,710	3.08	0.79			
	고	유	2,008	3.06	0.79	t=1.09	0.276	-
		무	2,495	3.03	0.7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21	0.81	t=-1.21	0.225	-
		일반학교	3,580	3.25	0.80			
	중	혁신학교	934	3.08	0.76	t=1.93	0.053	-
		일반학교	3,713	3.03	0.80			
	고	혁신학교	355	3.21	0.64	t=5.12	0.000	-
		일반학교	4,148	3.03	0.79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5	0.79	F=2.19	0.112	-
		11~20% ②	1,106	3.20	0.84			
		21%이상 ③	279	3.30	0.80			
	중	0~10% ①	2,611	3.01	0.80	F=3.25	0.039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07	0.78			
		21%이상 ③	685	3.08	0.78			
	고	0~10% ①	2,486	3.03	0.78	F=1.44	0.237	-
		11~20% ②	1,298	3.07	0.74			
		21%이상 ③	719	3.03	0.82			

*p〈0.05, **p〈0.01, ***p〈0.001

〈부록 Ⅱ-44〉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보장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2.97	0.79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32	0.74	F=703.50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78	0.76			
	고등학교 ③		4,503	2.82	0.75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30	0.76	t=-1.16	0.247	-
		무	2,672	3.33	0.72			
	중	유	1,937	2.76	0.75	t=-1.59	0.113	-
		무	2,710	2.80	0.76			
	고	유	2,008	2.88	0.76	t=4.74	0.000	-
		무	2,495	2.77	0.7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31	0.73	t=-0.05	0.960	-
		일반학교	3,580	3.32	0.74			
	중	혁신학교	934	2.84	0.75	t=2.76	0.006	-
		일반학교	3,713	2.77	0.76			
	고	혁신학교	355	3.04	0.62	t=6.92	0.000	-
		일반학교	4,148	2.80	0.76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33	0.72	F=4.39	0.012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27	0.78			
		21%이상 ③	279	3.39	0.69			
	중	0~10% ①	2,611	2.73	0.77	F=18.91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2.88	0.74			
		21%이상 ③	685	2.83	0.75			
	고	0~10% ①	2,486	2.81	0.74	F=0.65	0.522	-
		11~20% ②	1,298	2.84	0.74			
		21%이상 ③	719	2.82	0.78			

*p〈0.05, **p〈0.01, ***p〈0.001

〈부록 Ⅱ-45〉 표현의 자유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06	0.8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35	0.79	F=356.2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95	0.88			
	고등학교 ③		4,503	2.90	0.8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30	0.82	t=-2.70	0.007	-
		무	2,672	3.37	0.77			
	중	유	1,937	2.90	0.89	t=-3.44	0.001	-
		무	2,710	2.99	0.88			
	고	유	2,008	2.92	0.89	t=0.93	0.350	-
		무	2,495	2.89	0.8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35	0.79	t=-0.04	0.964	-
		일반학교	3,580	3.34	0.79			
	중	혁신학교	934	3.01	0.88	t=2.56	0.011	-
		일반학교	3,713	2.93	0.88			
	고	혁신학교	355	3.13	0.71	t=6.08	0.000	-
		일반학교	4,148	2.89	0.90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34	0.80	F=4.96	0.007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32	0.79			
		21%이상 ③	279	3.48	0.64			
	중	0~10% ①	2,611	2.89	0.90	F=11.96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02	0.87			
		21%이상 ③	685	3.02	0.83			
	고	0~10% ①	2,486	2.89	0.89	F=0.61	0.541	-
		11~20% ②	1,298	2.92	0.88			
		21%이상 ③	719	2.92	0.90			

*p<0.05, **p<0.01, ***p<0.001

〈부록 Ⅱ-46〉 자치 및 참여 권리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02	0.7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20	0.72	F=179.74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97	0.79			
	고등학교 ③		4,503	2.90	0.8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15	0.73	t=-3.65	0.000	-
		무	2,672	3.23	0.71			
	중	유	1,937	2.92	0.80	t=-3.85	0.000	-
		무	2,710	3.01	0.79			
	고	유	2,008	2.94	0.81	t=2.46	0.014	-
		무	2,495	2.88	0.7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21	0.71	t=0.41	0.679	-
		일반학교	3,580	3.20	0.72			
	중	혁신학교	934	3.04	0.78	t=3.04	0.002	-
		일반학교	3,713	2.95	0.80			
	고	혁신학교	355	3.15	0.67	t=6.97	0.000	-
		일반학교	4,148	2.88	0.81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0	0.73	F=6.79	0.001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17	0.71			
		21%이상 ③	279	3.35	0.64			
	중	0~10% ①	2,611	2.91	0.81	F=18.72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06	0.77			
		21%이상 ③	685	3.04	0.76			
	고	0~10% ①	2,486	2.89	0.79	F=0.52	0.595	-
		11~20% ②	1,298	2.91	0.81			
		21%이상 ③	719	2.93	0.83			

*p<0.05, **p<0.01, ***p<0.001

〈부록 Ⅱ-47〉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33	0.70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45	0.65	F=119.5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32	0.70			
	고등학교 ③		4,503	3.23	0.7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44	0.65	t=-0.93	0.354	-
		무	2,672	3.46	0.65			
	중	유	1,937	3.29	0.70	t=-2.07	0.039	-
		무	2,710	3.34	0.69			
	고	유	2,008	3.28	0.72	t=4.60	0.000	-
		무	2,495	3.18	0.7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45	0.64	t=-0.03	0.975	-
		일반학교	3,580	3.45	0.66			
	중	혁신학교	934	3.29	0.70	t=-1.34	0.181	-
		일반학교	3,713	3.32	0.70			
	고	혁신학교	355	3.46	0.58	t=7.70	0.000	-
		일반학교	4,148	3.21	0.73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45	0.66	F=3.47	0.031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43	0.66			
		21%이상 ③	279	3.54	0.59			
	중	0~10% ①	2,611	3.30	0.70	F=1.52	0.219	-
		11~20% ②	1,307	3.34	0.71			
		21%이상 ③	685	3.34	0.68			
	고	0~10% ①	2,486	3.21	0.73	F=3.89	0.021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22	0.71			
		21%이상 ③	719	3.29	0.73			

*p〈0.05, **p〈0.01, ***p〈0.001

〈부록 Ⅱ-48〉 복지에 관한 권리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18	0.7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35	0.67	F=201.73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14	0.72			
	고등학교 ③		4,503	3.05	0.74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30	0.68	t=-3.55	0.000	-
		무	2,672	3.37	0.66			
	중	유	1,937	3.06	0.74	t=-6.60	0.000	-
		무	2,710	3.20	0.71			
	고	유	2,008	3.06	0.74	t=1.18	0.239	-
		무	2,495	3.04	0.7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31	0.67	t=-1.52	0.128	-
		일반학교	3,580	3.35	0.67			
	중	혁신학교	934	3.16	0.70	t=0.92	0.356	-
		일반학교	3,713	3.13	0.73			
	고	혁신학교	355	3.18	0.65	t=3.47	0.001	-
		일반학교	4,148	3.04	0.74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34	0.68	F=8.45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33	0.66			
		21%이상 ③	279	3.50	0.51			
	중	0~10% ①	2,611	3.09	0.74	F=15.06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19	0.70			
		21%이상 ③	685	3.23	0.70			
	고	0~10% ①	2,486	3.04	0.73	F=0.94	0.389	-
		11~20% ②	1,298	3.07	0.73			
		21%이상 ③	719	3.05	0.76			

*p<0.05, **p<0.01, ***p<0.001

〈부록 Ⅱ-49〉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18	0.7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24	0.80	F=21.0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18	0.78			
	고등학교 ③		4,503	3.13	0.7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19	0.82	t=-3.13	0.002	-
		무	2,672	3.27	0.79			
	중	유	1,937	3.09	0.80	t=-6.16	0.000	-
		무	2,710	3.24	0.76			
	고	유	2,008	3.11	0.79	t=-1.29	0.198	-
		무	2,495	3.14	0.7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22	0.83	t=-0.89	0.373	-
		일반학교	3,580	3.24	0.79			
	중	혁신학교	934	3.15	0.81	t=-1.05	0.293	-
		일반학교	3,713	3.18	0.77			
	고	혁신학교	355	3.14	0.70	t=0.12	0.907	-
		일반학교	4,148	3.13	0.77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23	0.79	F=1.19	0.305	-
		11~20% ②	1,106	3.24	0.82			
		21%이상 ③	279	3.31	0.79			
	중	0~10% ①	2,611	3.13	0.80	F=12.04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23	0.77			
		21%이상 ③	685	3.26	0.72			
	고	0~10% ①	2,486	3.12	0.75	F=1.48	0.227	-
		11~20% ②	1,298	3.16	0.77			
		21%이상 ③	719	3.12	0.79			

*p〈0.05, **p〈0.01, ***p〈0.001

〈부록 Ⅱ-50〉 권리침해로부터의 보호 정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13	0.81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34	0.75	F=226.28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06	0.82			
	고등학교 ③		4,503	3.00	0.8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29	0.76	t=-3.14	0.002	-
		무	2,672	3.36	0.73			
	중	유	1,937	2.99	0.83	t=-5.09	0.000	-
		무	2,710	3.11	0.80			
	고	유	2,008	3.02	0.81	t=1.39	0.164	-
		무	2,495	2.98	0.82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27	0.77	t=-2.58	0.010	-
		일반학교	3,580	3.35	0.74			
	중	혁신학교	934	3.06	0.82	t=0.07	0.946	-
		일반학교	3,713	3.06	0.81			
	고	혁신학교	355	3.09	0.73	t=2.11	0.035	-
		일반학교	4,148	2.99	0.82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33	0.74	F=1.06	0.347	-
		11~20% ②	1,106	3.33	0.77			
		21%이상 ③	279	3.40	0.71			
	중	0~10% ①	2,611	3.00	0.84	F=15.49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13	0.80			
		21%이상 ③	685	3.15	0.74			
	고	0~10% ①	2,486	2.99	0.81	F=0.78	0.457	-
		11~20% ②	1,298	3.02	0.80			
		21%이상 ③	719	3.00	0.85			

*p〈0.05, **p〈0.01, ***p〈0.001

〈부록 Ⅱ-52〉 친구(선배)간 인권보호: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22	0.75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37	0.76	F=121.2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16	0.77			
	고등학교 ③		4,503	3.15	0.71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32	0.78	t=-3.52	0.000	-
		무	2,672	3.40	0.74			
	중	유	1,937	3.09	0.77	t=-5.62	0.000	-
		무	2,710	3.22	0.76			
	고	유	2,008	3.13	0.72	t=-1.43	0.153	-
		무	2,495	3.16	0.70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30	0.77	t=-2.70	0.007	-
		일반학교	3,580	3.38	0.76			
	중	혁신학교	934	3.13	0.79	t=-1.35	0.178	-
		일반학교	3,713	3.17	0.76			
	고	혁신학교	355	3.19	0.65	t=1.15	0.252	-
		일반학교	4,148	3.14	0.71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36	0.75	F=6.35	0.002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34	0.79			
		21%이상 ③	279	3.52	0.65			
	중	0~10% ①	2,611	3.12	0.77	F=8.71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20	0.77			
		21%이상 ③	685	3.24	0.74			
	고	0~10% ①	2,486	3.13	0.69	F=1.90	0.150	-
		11~20% ②	1,298	3.16	0.70			
		21%이상 ③	719	3.18	0.76			

*p<0.05, **p<0.01, ***p<0.001

〈부록 Ⅱ-53〉 친구(선배)간 인권보호: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03	0.83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03	0.87	F=10.35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2.99	0.84			
	고등학교 ③		4,503	3.07	0.7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2.95	0.90	t=-4.87	0.000	-
		무	2,672	3.08	0.85			
	중	유	1,937	2.91	0.85	t=-5.88	0.000	-
		무	2,710	3.05	0.83			
	고	유	2,008	3.05	0.78	t=-1.47	0.142	-
		무	2,495	3.09	0.7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2.90	0.91	t=-4.50	0.000	-
		일반학교	3,580	3.06	0.86			
	중	혁신학교	934	2.97	0.85	t=-0.91	0.363	-
		일반학교	3,713	3.00	0.84			
	고	혁신학교	355	3.09	0.70	t=0.50	0.618	-
		일반학교	4,148	3.07	0.77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02	0.87	F=5.43	0.004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04	0.88			
		21%이상 ③	279	3.20	0.80			
	중	0~10% ①	2,611	2.94	0.85	F=10.58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05	0.83			
		21%이상 ③	685	3.06	0.84			
	고	0~10% ①	2,486	3.07	0.75	F=0.18	0.839	-
		11~20% ②	1,298	3.07	0.75			
		21%이상 ③	719	3.08	0.81			

*p〈0.05, **p〈0.01, ***p〈0.001

〈부록 Ⅱ-54〉 친구(선배)간 인권보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28	0.81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41	0.81	F=77.4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21	0.82			
	고등학교 ③		4,503	3.24	0.7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35	0.84	t=-3.41	0.001	-
		무	2,672	3.44	0.79			
	중	유	1,937	3.15	0.82	t=-4.57	0.000	-
		무	2,710	3.26	0.82			
	고	유	2,008	3.23	0.77	t=-0.60	0.551	-
		무	2,495	3.24	0.7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33	0.84	t=-2.96	0.003	-
		일반학교	3,580	3.43	0.80			
	중	혁신학교	934	3.17	0.85	t=-1.88	0.060	-
		일반학교	3,713	3.22	0.82			
	고	혁신학교	355	3.29	0.71	t=1.38	0.168	-
		일반학교	4,148	3.23	0.7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41	0.80	F=5.08	0.012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106	3.38	0.85			
		21%이상 ③	279	3.55	0.68			
	중	0~10% ①	2,611	3.18	0.83	F=4.58	0.01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307	3.27	0.80			
		21%이상 ③	685	3.21	0.84			
	고	0~10% ①	2,486	3.22	0.77	F=1.70	0.183	-
		11~20% ②	1,298	3.27	0.76			
		21%이상 ③	719	3.25	0.81			

*p〈0.05, **p〈0.01, ***p〈0.001

〈부록 Ⅱ-55〉 가정 내 인권보호: 의사 반영 (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53	0.6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57	0.66	F=14.0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50	0.68			
	고등학교 ③		4,503	3.51	0.6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55	0.66	t=-1.30	0.192	-
		무	2,672	3.58	0.65			
	중	유	1,937	3.45	0.70	t=-3.54	0.000	-
		무	2,710	3.53	0.66			
	고	유	2,008	3.48	0.67	t=-2.91	0.004	-
		무	2,495	3.54	0.6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52	0.68	t=-2.15	0.032	-
		일반학교	3,580	3.58	0.65			
	중	혁신학교	934	3.45	0.71	t=-2.04	0.041	-
		일반학교	3,713	3.51	0.67			
	고	혁신학교	355	3.46	0.66	t=-1.44	0.149	-
		일반학교	4,148	3.52	0.66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58	0.65	F=1.75	0.175	-
		11~20% ②	1,106	3.54	0.68			
		21%이상 ③	279	3.58	0.62			
	중	0~10% ①	2,611	3.49	0.69	F=0.19	0.830	-
		11~20% ②	1,307	3.50	0.69			
		21%이상 ③	685	3.51	0.65			
	고	0~10% ①	2,486	3.55	0.63	F=7.92	0.000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47	0.71			
		21%이상 ③	719	3.47	0.69			

*p〈0.05, **p〈0.01, ***p〈0.001

〈부록 Ⅱ-56〉 가정 내 인권보호: 폭력(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61	0.83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69	0.73	F=39.7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53	0.90			
	고등학교 ③		4,503	3.61	0.84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68	0.71	t=-0.66	0.509	-
		무	2,672	3.69	0.73			
	중	유	1,937	3.54	0.89	t=0.34	0.738	-
		무	2,710	3.53	0.91			
	고	유	2,008	3.53	0.93	t=-6.08	0.000	-
		무	2,495	3.68	0.7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65	0.74	t=-1.54	0.123	-
		일반학교	3,580	3.70	0.72			
	중	혁신학교	934	3.43	0.99	t=-3.62	0.000	-
		일반학교	3,713	3.56	0.88			
	고	혁신학교	355	3.65	0.75	t=1.05	0.292	-
		일반학교	4,148	3.61	0.85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68	0.74	F=1.69	0.184	-
		11~20% ②	1,106	3.72	0.67			
		21%이상 ③	279	3.65	0.79			
	중	0~10% ①	2,611	3.54	0.89	F=0.37	0.689	-
		11~20% ②	1,307	3.53	0.91			
		21%이상 ③	685	3.51	0.94			
	고	0~10% ①	2,486	3.64	0.81	F=4.28	0.014	②〈① ③〈①* ③〈②
		11~20% ②	1,298	3.60	0.86			
		21%이상 ③	719	3.54	0.90			

*p〈0.05, **p〈0.01, ***p〈0.001

〈부록 Ⅱ-57〉 가정 내 인권보호: 차별(학생)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3,524	3.55	0.8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374	3.69	0.75	F=93.3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647	3.45	0.94			
	고등학교 ③		4,503	3.52	0.89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3.71	0.72	t=1.46	0.145	-
		무	2,672	3.68	0.77			
	중	유	1,937	3.44	0.95	t=-0.92	0.357	-
		무	2,710	3.46	0.94			
	고	유	2,008	3.43	0.96	t=-5.58	0.000	-
		무	2,495	3.58	0.82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3.70	0.72	t=0.46	0.645	-
		일반학교	3,580	3.69	0.76			
	중	혁신학교	934	3.37	1.00	t=-2.75	0.006	-
		일반학교	3,713	3.47	0.93			
	고	혁신학교	355	3.58	0.83	t=1.42	0.156	-
		일반학교	4,148	3.51	0.89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①	2,989	3.68	0.76	F=1.02	0.362	-
		11~20% ②	1,106	3.72	0.70			
		21%이상 ③	279	3.69	0.80			
	중	0~10% ①	2,611	3.46	0.94	F=0.27	0.763	-
		11~20% ②	1,307	3.44	0.97			
		21%이상 ③	685	3.43	0.94			
	고	0~10% ①	2,486	3.54	0.86	F=2.09	0.124	-
		11~20% ②	1,298	3.49	0.91			
		21%이상 ③	719	3.48	0.93			

*p〈0.05, **p〈0.01, ***p〈0.001

〈부록 Ⅱ-58〉 교직원 간 인권보호: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70	0.55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78	0.48	F=88.25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75	0.51			
	고등학교 ③		2,022	3.57	0.63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78	0.49	t=0.01	0.992	-
		무	1,144	3.78	0.47			
	중	유	737	3.76	0.51	t=0.55	0.580	-
		무	1,156	3.74	0.50			
	고	유	877	3.56	0.63	t=-0.70	0.485	-
		무	1,145	3.58	0.6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78	0.48	t=0.01	0.993	-
		일반학교	1,621	3.78	0.48			
	중	혁신학교	379	3.83	0.44	t=3.63	0.000	-
		일반학교	1,514	3.73	0.52			
	고	혁신학교	166	3.65	0.61	t=1.80	0.074	-
		일반학교	1,856	3.56	0.63			
연령	초	20대 ①	255	3.74	0.52	F=1.30	0.274	-
		30대 ②	642	3.80	0.46			
		40대 ③	725	3.77	0.50			
		50대 이상 ④	349	3.80	0.43			
	중	20대 ①	200	3.80	0.40	F=3.07	0.027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71	0.54			
		40대 ③	598	3.74	0.53			
		50대 이상 ④	519	3.79	0.48			
	고	20대 ①	172	3.54	0.68	F=1.29	0.277	-
		30대 ②	685	3.54	0.64			
		40대 ③	588	3.59	0.58			
		50대 이상 ④	577	3.59	0.64			

*p〈0.05, **p〈0.01, ***p〈0.001

〈부록 Ⅱ-59〉 교직원 간 인권보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1	0.6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76	0.49	F=163.84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5	0.57			
	고등학교 ③		2,022	3.42	0.7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78	0.49	t=1.07	0.287	-
		무	1,144	3.75	0.49			
	중	유	737	3.63	0.57	t=-0.94	0.347	-
		무	1,156	3.66	0.56			
	고	유	877	3.40	0.74	t=-1.44	0.150	-
		무	1,145	3.44	0.71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75	0.49	t=-0.47	0.637	-
		일반학교	1,621	3.76	0.49			
	중	혁신학교	379	3.74	0.52	t=3.75	0.000	-
		일반학교	1,514	3.62	0.58			
	고	혁신학교	166	3.61	0.61	t=4.00	0.000	-
		일반학교	1,856	3.41	0.73			
연령	초	20대 ①	255	3.76	0.47	F=0.05	0.984	-
		30대 ②	642	3.76	0.48			
		40대 ③	725	3.76	0.50			
		50대 이상 ④	349	3.77	0.47			
	중	20대 ①	200	3.71	0.54	F=4.16	0.006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60	0.60			
		40대 ③	598	3.62	0.58			
		50대 이상 ④	519	3.71	0.52			
	고	20대 ①	172	3.33	0.86	F=2.27	0.078	-
		30대 ②	685	3.41	0.74			
		40대 ③	588	3.41	0.72			
		50대 이상 ④	577	3.48	0.67			

*p〈0.05, **p〈0.01, ***p〈0.001

〈부록 Ⅱ-60〉 교직원 간 인권보호: 성별에 따른 차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2	0.6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72	0.56	F=97.20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8	0.55			
	고등학교		③	2,022	3.47	0.70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72	0.57	t=0.15	0.878	-
		무		1,144	3.72	0.55			
	중	유		737	3.70	0.52	t=1.58	0.114	-
		무		1,156	3.66	0.57			
	고	유		877	3.45	0.71	t=-1.20	0.230	-
		무		1,145	3.49	0.6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69	0.57	t=-0.89	0.371	-
		일반학교		1,621	3.72	0.55			
	중	혁신학교		379	3.77	0.49	t=3.73	0.000	-
		일반학교		1,514	3.66	0.56			
	고	혁신학교		166	3.61	0.59	t=3.25	0.001	-
		일반학교		1,856	3.46	0.70			
연령	초	20대	①	255	3.61	0.63	F=9.00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42	3.67	0.61			
		40대	③	725	3.75	0.53			
		50대 이상	④	349	3.82	0.42			
	중	20대	①	200	3.69	0.53	F=6.81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61	0.59			
		40대	③	598	3.67	0.55			
		50대 이상	④	519	3.76	0.50			
	고	20대	①	172	3.31	0.85	F=6.43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3.44	0.71			
		40대	③	588	3.47	0.69			
		50대 이상	④	577	3.55	0.63			

*p〈0.05, **p〈0.01, ***p〈0.001

〈부록 Ⅱ-61〉 교직원 간 인권보호: 부당한 업무지시(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45	0.70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3.62	0.60	F=145.44	0.000	②〈①***
	중학교 ②		1,893	3.48	0.66			③〈①***
	고등학교 ③		2,022	3.26	0.78			③〈②***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3.60	0.63	t=-1.22	0.224	-
		무	1,144	3.63	0.58			
	중	유	737	3.47	0.64	t=-0.85	0.395	-
		무	1,156	3.49	0.67			
	고	유	877	3.20	0.79	t=-2.70	0.007	-
		무	1,145	3.30	0.7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3.56	0.64	t=-2.06	0.040	-
		일반학교	1,621	3.63	0.59			
	중	혁신학교	379	3.55	0.69	t=2.37	0.018	-
		일반학교	1,514	3.46	0.65			
	고	혁신학교	166	3.43	0.69	t=3.08	0.002	-
		일반학교	1,856	3.24	0.78			
연령	초	20대 ①	255	3.51	0.69	F=5.12	0.002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42	3.60	0.61			
		40대 ③	725	3.64	0.58			
		50대 이상 ④	349	3.69	0.53			
	중	20대 ①	200	3.44	0.68	F=3.60	0.013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3.45	0.65			
		40대 ③	598	3.46	0.68			
		50대 이상 ④	519	3.56	0.61			
	고	20대 ①	172	3.17	0.88	F=6.59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85	3.17	0.81			
		40대 ③	588	3.29	0.74			
		50대 이상 ④	577	3.35	0.72			

*p〈0.05, **p〈0.01, ***p〈0.001

〈부록 Ⅱ-62〉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학생)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3,524	13.77	86.23	-
학교급	초등학교		4,374	8.73	91.27	140.45***
	중학교		4,647	15.62	84.38	
	고등학교		4,503	16.74	83.2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10.16	89.84	7.16**
		무	2,672	7.82	92.18	
	중	유	1,937	16.73	83.27	3.07
		무	2,710	14.83	85.17	
	고	유	2,008	17.58	82.42	1.81
		무	2,495	16.07	83.9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8.69	91.31	0.00
		일반학교	3,580	8.74	91.26	
	중	혁신학교	934	15.74	84.26	0.01
		일반학교	3,713	15.59	84.41	
	고	혁신학교	355	12.39	87.61	5.23*
		일반학교	4,148	17.12	82.8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2,989	8.77	91.23	1.52
		11~20%	1,106	9.13	90.87	
		21%이상	279	6.81	93.19	
	중	0~10%	2,611	15.93	84.07	0.65
		11~20%	1,307	15.38	84.62	
		21%이상	685	14.74	85.26	
	고	0~10%	2,486	17.66	82.34	6.07*
		11~20%	1,298	16.64	83.36	
		21%이상	719	13.77	86.23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3〉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 침해: 유형(학생)

구분			사례 수	차별	표현의 자유	부당한 체벌 및 언어 폭력	사생활 침해	참여 권리	학습할 권리	기타	χ^2
전체			1,862	49.73	46.94	35.23	18.64	13.59	12.46	4.62	-
학교급	초등학교		382	46.86	33.51	31.41	16.23	13.87	13.09	7.59	99.66***
	중학교		726	49.04	51.79	37.74	19.42	13.22	9.78	2.89	
	고등학교		754	51.86	49.07	34.75	19.10	13.79	14.72	4.7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3	45.09	36.99	28.32	15.03	16.18	10.98	5.78	4.15
		무	209	48.33	30.62	33.97	17.22	11.96	14.83	9.09	
	중	유	324	46.30	53.40	35.80	18.52	10.19	8.95	1.85	8.33
		무	402	51.24	50.50	39.30	20.15	15.67	10.45	3.73	
	고	유	353	49.86	44.19	33.99	17.28	12.18	14.73	5.67	9.61
		무	401	53.62	53.37	35.41	20.70	15.21	14.71	3.9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69	34.78	37.68	33.33	10.14	8.70	13.04	7.25	9.48
		일반학교	313	49.52	32.59	30.99	17.57	15.02	13.10	7.67	
	중	혁신학교	147	49.66	46.94	34.01	25.17	17.01	12.24	0.00	10.02
		일반학교	579	48.88	53.02	38.69	17.96	12.26	9.15	3.63	
	고	혁신학교	44	65.91	25.00	25.00	20.45	6.82	6.82	2.27	20.68**
		일반학교	710	50.99	50.56	35.35	19.01	14.23	15.21	4.93	
취약집단학생비율	초	0~10%	262	48.85	33.97	30.15	13.74	13.74	13.36	7.63	21.22
		11~20%	101	45.54	34.65	32.67	22.77	15.84	14.85	5.94	
		21%이상	19	26.32	21.05	42.11	15.79	5.26	0.00	15.79	
	중	0~10%	416	52.16	52.16	37.74	19.23	10.34	10.58	1.92	20.24
		11~20%	201	42.29	49.25	37.31	17.91	16.92	9.95	5.47	
		21%이상	101	48.51	56.44	37.62	22.77	18.81	6.93	0.99	
	고	0~10%	439	54.21	49.66	37.13	20.27	12.53	13.90	4.10	30.44**
		11~20%	216	48.15	44.91	28.70	14.81	16.20	18.98	7.41	
		21%이상	99	49.49	55.56	37.37	23.23	14.14	9.09	2.02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4〉 1년간 교사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학생)

구분			사례 수	다른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보호자, 부모님, 조부모님 등께 말씀드렸다	친구나 선후배 에게 말하였다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SNS에 글을 올렸다	기타	χ^2
전체			1,862	6.44	18.74	23.74	1.07	42.75	1.24	6.02	-
학교급	초등학교		382	2.88	27.49	20.94	1.57	37.70	1.57	7.85	43.71***
	중학교		726	7.58	17.63	26.31	0.96	41.60	1.24	4.68	
	고등학교		754	7.16	15.38	22.68	0.93	46.42	1.06	6.3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3	1.73	24.86	26.01	1.73	38.15	1.16	6.36	9.26[b]
		무	209	3.83	29.67	16.75	1.44	37.32	1.91	9.09	
	중	유	324	7.41	16.67	28.70	0.93	40.74	0.62	4.94	3.46[b]
		무	402	7.71	18.41	24.38	1.00	42.29	1.74	4.48	
	고	유	353	8.78	14.73	24.93	0.57	41.93	1.70	7.37	10.43[b]
		무	401	5.74	15.96	20.70	1.25	50.37	0.50	5.4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69	1.45	31.88	17.39	1.45	42.03	0.00	5.80	4.18[b]
		일반학교	313	3.19	26.52	21.73	1.60	36.74	1.92	8.31	
	중	혁신학교	147	10.20	23.81	31.29	1.36	28.57	2.04	2.72	16.14*
		일반학교	579	6.91	16.06	25.04	0.86	44.91	1.04	5.18	
	고	혁신학교	44	15.91	13.64	20.45	2.27	38.64	0.00	9.09	8.01[b,c]
		일반학교	710	6.62	15.49	22.82	0.85	46.90	1.13	6.20	
취약집단학생비율	초	0~10%	262	2.29	27.48	23.66	1.15	34.73	1.53	9.16	19.15[b,c]
		11~20%	101	3.96	25.74	16.83	2.97	46.53	0.99	2.97	
		21%이상	19	5.26	36.84	5.26	0.00	31.58	5.26	15.79	
	중	0~10%	416	7.21	17.07	27.40	0.24	43.51	0.96	3.61	12.34[b,c]
		11~20%	201	8.46	18.91	24.88	1.99	38.81	1.99	4.98	
		21%이상	101	6.93	17.82	26.73	0.99	38.61	0.99	7.92	
	고	0~10%	439	5.01	14.12	25.28	0.46	48.52	1.14	5.47	24.26*[b,c]
		11~20%	216	9.26	16.20	20.83	0.46	43.06	1.39	8.80	
		21%이상	99	12.12	19.19	15.15	4.04	44.44	0.00	5.05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5〉 1년간 친구(선배)로 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학생)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3,524	8.90	91.10	-
학교급	초등학교		4,374	10.72	89.28	30.34***
	중학교		4,647	8.59	91.41	
	고등학교		4,503	7.44	92.5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13.28	86.72	19.02***
		무	2,672	9.09	90.91	
	중	유	1,937	9.71	90.29	5.30*
		무	2,710	7.79	92.21	
	고	유	2,008	7.52	92.48	0.03
		무	2,495	7.37	92.6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14.23	85.77	12.48***
		일반학교	3,580	9.94	90.06	
	중	혁신학교	934	8.78	91.22	0.06
		일반학교	3,713	8.54	91.46	
	고	혁신학교	355	7.04	92.96	0.09
		일반학교	4,148	7.47	92.53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2,989	10.81	89.19	7.29*
		11~20%	1,106	11.66	88.34	
		21%이상	279	6.09	93.91	
	중	0~10%	2,611	8.92	91.08	1.54
		11~20%	1,307	8.80	91.20	
		21%이상	685	7.45	92.55	
	고	0~10%	2,486	7.52	92.48	6.00*
		11~20%	1,298	8.40	91.60	
		21%이상	719	5.42	94.58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6〉 1년간 친구(선배)로 부터의 인권침해: 유형(학생)

구분			사례 수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차별 관련	사생활 침해	기타	χ^2
전체			1,203	53.87	39.07	25.52	9.14	-
학교급	초등학교		469	60.98	28.36	22.60	13.43	66.84***
	중학교		399	50.13	45.11	26.57	6.52	
	고등학교		335	48.36	46.87	28.36	6.2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26	60.18	27.88	22.12	16.37	0.95
		무	243	61.73	28.81	23.05	10.70	
	중	유	188	55.32	42.55	24.47	6.91	3.12
		무	211	45.50	47.39	28.44	6.16	
	고	유	151	49.67	45.70	25.83	8.61	4.27
		무	184	47.28	47.83	30.43	4.3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13	68.14	24.78	23.01	15.93	4.46
		일반학교	356	58.71	29.49	22.47	12.64	
	중	혁신학교	82	42.68	48.78	23.17	7.32	3.60
		일반학교	317	52.05	44.16	27.44	6.31	
	고	혁신학교	25	32.00	64.00	16.00	8.00	8.23
		일반학교	310	49.68	45.48	29.35	6.13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323	59.75	26.93	24.15	12.69	14.80[b]
		11~20%	129	63.57	28.68	20.93	17.05	
		21%이상	17	64.71	52.94	5.88	0.00	
	중	0~10%	233	52.79	42.06	28.33	5.15	4.95
		11~20%	115	46.96	49.57	22.61	10.43	
		21%이상	51	45.10	49.02	27.45	3.92	
	고	0~10%	187	49.20	47.06	29.95	6.95	2.07
		11~20%	109	46.79	49.54	26.61	5.50	
		21%이상	39	48.72	38.46	25.64	5.13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7〉 1년간 친구(선배)로 부터의 인권침해: 대응(학생)

구분			사례 수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보호자께 말씀드렸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SNS에 글을 올렸다	기타	χ^2
전체			1,203	13.63	18.04	19.45	1.33	38.65	1.83	7.07	-
학교급	초등학교		469	12.58	25.37	15.35	1.28	36.46	2.13	6.82	32.55**
	중학교		399	13.53	14.29	23.31	1.00	39.35	1.75	6.77	
	고등학교		335	15.22	12.24	20.60	1.79	40.90	1.49	7.7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26	12.39	24.78	15.49	1.33	36.28	2.21	7.52	0.55^b
		무	243	12.76	25.93	15.23	1.23	36.63	2.06	6.17	
	중	유	188	11.17	11.70	22.87	1.60	45.21	1.06	6.38	9.33^b
		무	211	15.64	16.59	23.70	0.47	34.12	2.37	7.11	
	고	유	151	16.56	13.91	15.23	0.66	45.03	0.66	7.95	10.23^b
		무	184	14.13	10.87	25.00	2.72	37.50	2.17	7.61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113	13.27	28.32	13.27	2.65	34.51	3.54	4.42	7.13^b
		일반학교	356	12.36	24.44	16.01	0.84	37.08	1.69	7.58	
	중	혁신학교	82	24.39	10.98	25.61	1.22	26.83	2.44	8.54	$14.20^{*}_{b,c}$
		일반학교	317	10.73	15.14	22.71	0.95	42.59	1.58	6.31	
	고	혁신학교	25	28.00	12.00	0.00	4.00	52.00	0.00	4.00	$12.20_{b,c}$
		일반학교	310	14.19	12.26	22.26	1.61	40.00	1.61	8.06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323	13.00	23.84	14.55	1.55	36.53	2.48	8.05	$12.93_{b,c}$
		11~20%	129	11.63	30.23	14.73	0.78	37.21	0.78	4.65	
		21%이상	17	11.76	17.65	35.29	0.00	29.41	5.88	0.00	
	중	0~10%	233	11.16	13.73	24.89	1.72	41.63	0.86	6.01	$12.28_{b,c}$
		11~20%	115	16.52	13.04	22.61	0.00	38.26	2.61	6.96	
		21%이상	51	17.65	19.61	17.65	0.00	31.37	3.92	9.80	
	고	0~10%	187	10.70	12.83	25.13	2.14	42.78	0.53	5.88	$25.99^{*}_{b,c}$
		11~20%	109	17.43	10.09	16.51	0.00	40.37	2.75	12.84	
		21%이상	39	30.77	15.38	10.26	5.13	33.33	2.56	2.56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8〉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학생)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13,524	4.92	95.08	-
학교급	초등학교		4,374	4.32	95.68	5.59
	중학교		4,647	5.38	94.62	
	고등학교		4,503	5.04	94.96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4.23	95.77	0.06
		무	2,672	4.38	95.62	
	중	유	1,937	5.63	94.37	0.40
		무	2,710	5.20	94.80	
	고	유	2,008	5.33	94.67	0.63
		무	2,495	4.81	95.1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5.54	94.46	3.50
		일반학교	3,580	4.05	95.95	
	중	혁신학교	934	4.93	95.07	0.47
		일반학교	3,713	5.49	94.51	
	고	혁신학교	355	4.79	95.21	0.05
		일반학교	4,148	5.06	94.94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2,989	4.22	95.78	0.83
		11~20%	1,106	4.34	95.66	
		21%이상	279	5.38	94.62	
	중	0~10%	2,611	5.74	94.26	3.48
		11~20%	1,307	5.51	94.49	
		21%이상	685	3.94	96.06	
	고	0~10%	2,486	4.63	95.37	3.58
		11~20%	1,298	6.01	93.99	
		21%이상	719	4.73	95.27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69〉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유형(학생)

구분			사례 수	차별 관련	표현의 자유 관련	부당한 체벌 및 언어폭력 관련	사생활 침해	건강 및 안전 관련	기타	χ^2
전체			666	51.20	36.64	33.18	27.03	9.91	5.41	-
학교급	초등학교		189	36.51	38.10	28.04	24.34	10.05	8.47	34.67**
	중학교		250	56.80	36.00	34.80	29.20	9.20	4.80	
	고등학교		227	57.27	36.12	35.68	26.87	10.57	3.5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72	27.78	45.83	20.83	20.83	6.94	12.50	14.19*
		무	117	41.88	33.33	32.48	26.50	11.97	5.98	
	중	유	109	59.63	33.94	33.94	28.44	6.42	6.42	5.48
		무	141	54.61	37.59	35.46	29.79	11.35	3.55	
	고	유	107	54.21	32.71	33.64	19.63	11.21	6.54	10.25
		무	120	60.00	39.17	37.50	33.33	10.00	0.8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4	31.82	40.91	31.82	22.73	9.09	11.36	1.65
		일반학교	145	37.93	37.24	26.90	24.83	10.34	7.59	
	중	혁신학교	46	47.83	45.65	41.30	19.57	8.70	4.35	8.41
		일반학교	204	58.82	33.82	33.33	31.37	9.31	4.90	
	고	혁신학교	17	41.18	35.29	35.29	29.41	5.88	11.76	6.95[b]
		일반학교	210	58.57	36.19	35.71	26.67	10.95	2.86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126	34.13	36.51	30.95	25.40	9.52	8.73	9.50[b]
		11~20%	48	39.58	41.67	22.92	16.67	10.42	10.42	
		21%이상	15	46.67	40.00	20.00	40.00	13.33	0.00	
	중	0~10%	150	60.67	33.33	33.33	26.00	8.00	4.00	12.11
		11~20%	72	50.00	38.89	36.11	31.94	12.50	6.94	
		21%이상	27	51.85	44.44	37.04	40.74	7.41	3.70	
	고	0~10%	115	55.65	33.91	38.26	26.96	10.43	2.61	6.66
		11~20%	78	56.41	34.62	28.21	26.92	10.26	6.41	
		21%이상	34	64.71	47.06	44.12	26.47	11.76	0.00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70〉 1년간 보호자로부터의 인권침해: 대응(학생)

구분			사례 수	선생님께 말씀 드렸다	형제/자매 또는 친척께 말씀드렸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말하였다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나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냥 넘어갔다	SNS에 글을 올렸다	기타	χ^2
전체			666	7.51	7.81	16.22	2.55	52.40	3.15	10.36	-
학교급	초등학교		189	5.29	8.47	11.11	0.53	56.61	3.17	14.81	23.59*
	중학교		250	7.20	8.40	18.40	2.80	55.20	2.00	6.00	
	고등학교		227	9.69	6.61	18.06	3.96	45.81	4.41	11.45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72	4.17	8.33	8.33	0.00	59.72	4.17	15.28	$2.28^{b,c}$
		무	117	5.98	8.55	12.82	0.85	54.70	2.56	14.53	
	중	유	109	8.26	10.09	18.35	4.59	51.38	1.83	5.50	2.48^{b}
		무	141	6.38	7.09	18.44	1.42	58.16	2.13	6.38	
	고	유	107	9.35	6.54	13.08	5.61	50.47	2.80	12.15	6.61^{b}
		무	120	10.00	6.67	22.50	2.50	41.67	5.83	10.8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44	9.09	4.55	9.09	0.00	59.09	4.55	13.64	$3.58^{b,c}$
		일반학교	145	4.14	9.66	11.72	0.69	55.86	2.76	15.17	
	중	혁신학교	46	13.04	4.35	17.39	0.00	54.35	4.35	6.52	$7.52^{b,c}$
		일반학교	204	5.88	9.31	18.63	3.43	55.39	1.47	5.88	
	고	혁신학교	17	0.00	5.88	23.53	0.00	64.71	5.88	0.00	$6.74^{b,c}$
		일반학교	210	10.48	6.67	17.62	4.29	44.29	4.29	12.38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126	3.97	7.94	10.32	0.79	59.52	3.97	13.49	$16.94^{b,c}$
		11~20%	48	6.25	10.42	6.25	0.00	52.08	2.08	22.92	
		21%이상	15	13.33	6.67	33.33	0.00	46.67	0.00	0.00	
	중	0~10%	150	8.00	7.33	17.33	2.67	58.00	0.67	6.00	$10.56^{b,c}$
		11~20%	72	5.56	11.11	22.22	2.78	47.22	5.56	5.56	
		21%이상	27	7.41	7.41	14.81	3.70	59.26	0.00	7.41	
	고	0~10%	115	6.96	5.22	19.13	3.48	49.57	4.35	11.30	7.52^{b}
		11~20%	78	12.82	7.69	14.10	3.85	44.87	2.56	14.10	
		21%이상	34	11.76	8.82	23.53	5.88	35.29	8.82	5.88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78〉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3	0.50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73	0.45	F=66.43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1	0.51			
	고등학교	③	2,022	3.55	0.52			
전체			5,886	3.24	0.61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41	0.59	F=115.9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19	0.60			
	고등학교	③	2,022	3.13	0.61			

*p〈0.05, **p〈0.01, ***p〈0.001

〈부록 Ⅱ-79〉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77	0.44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85	0.36	F=60.3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76	0.44			
	고등학교	③	2,022	3.70	0.48			
전체			5,886	3.32	0.62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46	0.59	F=89.18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27	0.62			
	고등학교	③	2,022	3.22	0.63			

*p〈0.05, **p〈0.01, ***p〈0.001

〈부록 Ⅱ-80〉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학습권 및 휴식권(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56	0.52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67	0.48	F=67.0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54	0.53			
	고등학교	③	2,022	3.48	0.54			
전체			5,886	3.23	0.65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37	0.64	F=72.13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21	0.62			
	고등학교	③	2,022	3.13	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81〉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1	0.51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67	0.49	F=23.1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0	0.51			
	고등학교	③	2,022	3.56	0.54			
전체			5,886	3.25	0.64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37	0.62	F=56.78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22	0.63			
	고등학교	③	2,022	3.17	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82〉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표현의 자유(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47	0.55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55	0.52	F=35.0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45	0.54			
	고등학교	③	2,022	3.41	0.57			
전체			5,886	3.20	0.64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32	0.61	F=65.2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18	0.61			
	고등학교	③	2,022	3.10	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83〉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자치 및 참여의 권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57	0.52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63	0.50	F=25.7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56	0.52			
	고등학교	③	2,022	3.51	0.54			
전체			5,886	3.24	0.65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35	0.62	F=47.40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21	0.66			
	고등학교	③	2,022	3.16	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84〉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복지에 관한 권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51	0.54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58	0.52	F=29.2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50	0.54			
	고등학교	③	2,022	3.45	0.56			
전체			5,886	3.15	0.65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25	0.64	F=43.26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12	0.65			
	고등학교	③	2,022	3.07	0.66			

*p〈0.05, **p〈0.01, ***p〈0.001

〈부록 Ⅱ-85〉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징계 받을 권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59	0.52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64	0.50	F=15.43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0	0.52			
	고등학교	③	2,022	3.55	0.54			
전체			5,886	3.19	0.70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18	0.73	F=0.34	0.712	-
	중학교	②	1,893	3.20	0.67			
	고등학교	③	2,022	3.20	0.68			

*p〈0.05, **p〈0.01, ***p〈0.001

〈부록 Ⅱ-86〉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0	0.52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67	0.49	F=35.6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59	0.52			
	고등학교	③	2,022	3.54	0.54			
전체			5,886	3.20	0.65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29	0.65	F=28.5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17	0.64			
	고등학교	③	2,022	3.14	0.65			

*p〈0.05, **p〈0.01, ***p〈0.001

〈부록 Ⅱ-87〉 권리영역별 중요도 및 준비도: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3.61	0.51	-	-	-
중요도	초등학교	①	1,971	3.65	0.49	22.94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63	0.50			
	고등학교	③	2,022	3.55	0.53			
전체			5,886	3.20	0.67	-	-	-
준비도	초등학교	①	1,971	3.32	0.64	F=60.71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893	3.16	0.66			
	고등학교	③	2,022	3.10	0.69			

*p〈0.05, **p〈0.01, ***p〈0.001

〈부록 Ⅱ-88〉 인권관련 교육 경험: 양성과정(교사)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5,886	48.27	51.73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51.65	48.35	13.60**
	중학교		1,893	46.43	53.57	
	고등학교		2,022	46.69	53.31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54.05	45.95	3.29
		무	1,144	49.91	50.09	
	중	유	737	49.66	50.34	5.05*
		무	1,156	44.38	55.62	
	고	유	877	49.37	50.63	4.49*
		무	1,145	44.63	55.3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52.57	47.43	0.15
		일반학교	1,621	51.45	48.55	
	중	혁신학교	379	46.97	53.03	0.05
		일반학교	1,514	46.30	53.70	
	고	혁신학교	166	46.99	53.01	0.01
		일반학교	1,856	46.66	53.34	
연령	초	20대	255	66.27	33.73	69.84***
		30대	642	59.81	40.19	
		40대	725	44.28	55.72	
		50대 이상	349	41.26	58.74	
	중	20대	200	53.00	47.00	29.04***
		30대	576	53.47	46.53	
		40대	598	44.31	55.69	
		50대 이상	519	38.54	61.46	
	고	20대	172	56.40	43.60	36.13***
		30대	685	52.41	47.59	
		40대	588	46.43	53.57	
		50대 이상	577	37.26	62.74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89〉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 교사 임용 후(교사)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5,886	52.34	47.66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53.32	46.68	3.02
	중학교		1,893	52.98	47.02	
	고등학교		2,022	50.79	49.21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60.70	39.30	31.16***
		무	1,144	47.99	52.01	
	중	유	737	58.62	41.38	15.36***
		무	1,156	49.39	50.61	
	고	유	877	55.53	44.47	13.92***
		무	1,145	47.16	52.8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54.29	45.71	0.16
		일반학교	1,621	53.12	46.88	
	중	혁신학교	379	51.19	48.81	0.61
		일반학교	1,514	53.43	46.57	
	고	혁신학교	166	43.37	56.63	3.98*
		일반학교	1,856	51.45	48.55	
연령	초	20대	255	42.75	57.25	21.44***
		30대	642	55.92	44.08	
		40대	725	57.24	42.76	
		50대 이상	349	48.14	51.86	
	중	20대	200	25.00	75.00	74.40***
		30대	576	53.13	46.88	
		40대	598	56.86	43.14	
		50대 이상	519	59.15	40.85	
	고	20대	172	35.47	64.53	29.60***
		30대	685	47.15	52.85	
		40대	588	53.91	46.09	
		50대 이상	577	56.50	43.50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91〉 인권교육 관련 연수 주제별 도움 정도: 교사 임용 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3,081	4.01	0.62	-	-	-
인권이해 교육	초등학교	①	1,051	4.06	0.58	F=6.92	0.001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003	4.00	0.63			
	고등학교	③	1,027	3.96	0.64			
교수학습 방법	초등학교	①	1,051	3.98	0.67	F=33.93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003	3.80	0.68			
	고등학교	③	1,027	3.73	0.72			
학습자료 개발	초등학교	①	1,051	3.87	0.74	F=20.37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003	3.71	0.75			
	고등학교	③	1,027	3.67	0.77			
학교학급 운영방안	초등학교	①	1,051	4.02	0.68	F=17.89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003	3.88	0.71			
	고등학교	③	1,027	3.84	0.72			
학부모 연수자료	초등학교	①	1,051	3.46	0.83	F=0.70	0.496	-
	중학교	②	1,003	3.46	0.79			
	고등학교	③	1,027	3.42	0.81			
네트워크	초등학교	①	1,051	3.53	0.85	F=1.63	0.196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1,003	3.50	0.80			
	고등학교	③	1,027	3.46	0.84			

*p<0.05, **p<0.01, ***p<0.001

〈부록 Ⅱ-92〉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경험(교사)

구분			사례 수	있음	없음	χ^2
전체			5,886	24.86	75.14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21.61	78.39	16.74***
	중학교		1,893	26.31	73.69	
	고등학교		2,022	26.66	73.34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24.43	75.57	6.65*
		무	1,144	19.58	80.42	
	중	유	737	29.72	70.28	7.23**
		무	1,156	24.13	75.87	
	고	유	877	30.10	69.90	9.41**
		무	1,145	24.02	75.98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20.29	79.71	0.44
		일반학교	1,621	21.90	78.10	
	중	혁신학교	379	28.23	71.77	0.91
		일반학교	1,514	25.83	74.17	
	고	혁신학교	166	19.28	80.72	5.04*
		일반학교	1,856	27.32	72.68	
연령	초	20대	255	18.04	81.96	8.33*
		30대	642	19.63	80.37	
		40대	725	24.97	75.03	
		50대 이상	349	20.92	79.08	
	중	20대	200	18.50	81.50	9.97*
		30대	576	24.83	75.17	
		40대	598	27.76	72.24	
		50대 이상	519	29.29	70.71	
	고	20대	172	29.07	70.93	7.26
		30대	685	26.13	73.87	
		40대	588	23.30	76.70	
		50대 이상	577	29.98	70.02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93〉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횟수(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회)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463	1.96	2.9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26	1.46	1.55	F=17.32	0.00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498	1.77	2.38			
	고등학교 ③		539	2.53	4.05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02	1.53	1.65	t=0.91	0.365	-
		무	224	1.39	1.46			
	중	유	219	1.75	2.30	t=-0.16	0.870	-
		무	279	1.79	2.45			
	고	유	264	2.67	4.46	t=0.76	0.445	-
		무	275	2.40	3.61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1	1.55	1.17	t=0.54	0.587	-
		일반학교	355	1.44	1.62			
	중	혁신학교	107	2.22	3.02	t=1.85	0.067	-
		일반학교	391	1.65	2.16			
	고	혁신학교	32	2.31	2.73	t=-0.31	0.754	-
		일반학교	507	2.54	4.12			
연령	초	20대 ①	46	1.59	2.09	F=0.89	0.446	-
		30대 ②	126	1.35	0.84			
		40대 ③	181	1.41	1.31			
		50대 이상 ④	73	1.68	2.43			
	중	20대 ①	37	2.05	2.76	F=1.28	0.281	-
		30대 ②	143	1.45	1.21			
		40대 ③	166	1.92	2.81			
		50대 이상 ④	152	1.85	2.58			
	고	20대 ①	50	2.28	2.86	F=2.76	0.042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179	2.35	3.40			
		40대 ③	137	1.98	2.63			
		50대 이상 ④	173	3.23	5.54			

*p〈0.05, **p〈0.01, ***p〈0.001

〈부록 Ⅱ-94〉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이수 시간(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시간)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1,463	20.31	13.38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426	20.13	11.48	F=2.20	0.112	-
	중학교 ②		498	19.48	14.17			
	고등학교 ③		539	21.20	13.97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02	20.57	13.00	t=0.75	0.453	-
		무	224	19.73	9.92			
	중	유	219	18.60	16.41	t=-1.24	0.217	-
		무	279	20.18	12.12			
	고	유	264	20.85	12.78	t=-0.58	0.563	-
		무	275	21.55	15.0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1	17.75	5.45	t=-3.11	0.002	-
		일반학교	355	20.61	12.29			
	중	혁신학교	107	19.23	9.75	t=-0.21	0.837	-
		일반학교	391	19.55	15.17			
	고	혁신학교	32	21.97	15.08	t=0.32	0.750	-
		일반학교	507	21.16	13.91			
연령	초	20대 ①	46	22.87	15.31	F=1.15	0.329	-
		30대 ②	126	19.74	8.64			
		40대 ③	181	20.15	12.98			
		50대 이상 ④	73	19.03	8.61			
	중	20대 ①	37	19.46	9.77	F=0.50	0.683	-
		30대 ②	143	19.91	21.35			
		40대 ③	166	20.17	11.42			
		50대 이상 ④	152	18.34	8.08			
	고	20대 ①	50	19.64	14.26	F=0.80	0.495	-
		30대 ②	179	21.53	15.21			
		40대 ③	137	20.12	9.92			
		50대 이상 ④	173	22.18	15.24			

*p〈0.05, **p〈0.01, ***p〈0.001

〈부록 Ⅱ-95〉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실시 주체(교사)

구분			사례 수	교육청 (교육부)	소속 학교	교사 동아리	인권 관련 정부 기관	교원 단체	대학	시민 단체	기타	χ^2
전체			1,463	65.96	38.21	9.71	8.54	4.85	1.91	1.78	10.59	-
학교급	초등학교		426	64.32	32.63	11.03	8.45	7.51	1.41	1.41	13.38	47.35***
	중학교		498	65.26	35.54	10.64	9.24	4.02	3.21	2.01	11.45	
	고등학교		539	67.90	45.08	7.79	7.98	3.53	1.11	1.86	7.61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02	62.38	36.14	14.36	7.43	9.41	0.50	1.49	15.84	13.95[b]
		무	224	66.07	29.46	8.04	9.38	5.80	2.23	1.34	11.16	
	중	유	219	60.73	44.75	15.07	10.05	4.11	2.74	1.83	10.05	27.47**
		무	279	68.82	28.32	7.17	8.60	3.94	3.58	2.15	12.54	
	고	유	264	60.98	51.52	8.33	6.82	3.41	1.52	1.14	9.85	24.48**
		무	275	74.55	38.91	7.27	9.09	3.64	0.73	2.55	5.4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1	59.15	40.85	14.08	5.63	9.86	1.41	2.82	14.08	7.22[b,c]
		일반학교	355	65.35	30.99	10.42	9.01	7.04	1.41	1.13	13.24	
	중	혁신학교	107	64.49	41.12	18.69	11.21	4.67	2.80	3.74	10.28	14.29
		일반학교	391	65.47	34.02	8.44	8.70	3.84	3.32	1.53	11.76	
	고	혁신학교	32	68.75	43.75	12.50	3.13	3.13	0.00	0.00	21.88	11.70[b,c]
		일반학교	507	67.85	45.17	7.50	8.28	3.55	1.18	1.97	6.71	
연령	초	20대	46	78.26	36.96	10.87	0.00	6.52	6.52	2.17	4.35	46.35**[b,c]
		30대	126	65.87	32.54	8.73	7.94	9.52	1.59	2.38	9.52	
		40대	181	66.30	28.73	12.71	9.94	6.63	0.55	0.55	14.92	
		50대 이상	73	47.95	39.73	10.96	10.96	6.85	0.00	1.37	21.92	
	중	20대	37	75.68	32.43	10.81	2.70	0.00	8.11	2.70	13.51	24.87[b,c]
		30대	143	69.93	33.57	10.49	9.09	2.80	3.50	2.10	9.79	
		40대	166	63.25	42.17	9.64	9.04	4.22	3.61	0.60	12.05	
		50대 이상	152	60.53	30.92	11.84	11.18	5.92	1.32	3.29	11.84	
	고	20대	50	78.00	52.00	2.00	2.00	2.00	2.00	2.00	2.00	31.06[b,c]
		30대	179	71.51	40.78	7.82	7.82	2.23	1.12	0.56	6.70	
		40대	137	64.96	43.80	12.41	7.30	5.84	1.46	2.92	10.95	
		50대 이상	173	63.58	48.55	5.78	10.40	3.47	0.58	2.31	7.51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96〉 1년간 인권교육 관련 연수 형태(교사)

구분			사례 수	원격연수	출석 (오프라인)	기타	χ^2
전체			1,463	86.67	31.51	0.55	-
학교급	초등학교		426	91.31	28.87	0.47	49.81***
	중학교		498	89.36	26.10	0.40	
	고등학교		539	80.52	38.59	0.74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02	90.10	32.67	0.50	3.52[b]
		무	224	92.41	25.45	0.45	
	중	유	219	90.87	27.40	0.46	2.41[b]
		무	279	88.17	25.09	0.36	
	고	유	264	81.44	39.02	1.14	0.36[b]
		무	275	79.64	38.18	0.3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1	88.73	35.21	1.41	8.78*[b,c]
		일반학교	355	91.83	27.61	0.28	
	중	혁신학교	107	82.24	41.12	0.00	26.42***[b]
		일반학교	391	91.30	21.99	0.51	
	고	혁신학교	32	90.63	21.88	0.00	6.50[c]
		일반학교	507	79.88	39.64	0.79	
연령	초	20대	46	86.96	34.78	0.00	5.73[b,c]
		30대	126	90.48	26.98	0.00	
		40대	181	92.82	27.07	0.55	
		50대 이상	73	91.78	32.88	1.37	
	중	20대	37	78.38	40.54	0.00	22.79**[b,c]
		30대	143	92.31	20.98	0.00	
		40대	166	89.76	29.52	0.00	
		50대 이상	152	88.82	23.68	1.32	
	고	20대	50	78.00	46.00	0.00	23.33**[b,c]
		30대	179	79.33	41.34	0.00	
		40대	137	89.05	27.01	1.46	
		50대 이상	173	75.72	42.77	1.16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97〉 1년간 참여한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교사)

구분			사례 수	학생 인권 이해 교육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기타	χ^2
전체			1,463	81.95	41.70	28.43	17.09	7.18	4.10	1.78	-
학교급	초등학교		426	79.34	42.49	33.33	17.61	4.69	3.29	1.88	25.32*
	중학교		498	81.12	43.37	27.31	16.87	6.63	3.82	2.01	
	고등학교		539	84.79	39.52	25.60	16.88	9.65	5.01	1.4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202	81.19	40.59	34.65	19.80	4.46	2.97	1.49	3.43
		무	224	77.68	44.20	32.14	15.63	4.91	3.57	2.23	
	중	유	219	86.30	42.92	25.57	15.07	8.22	4.11	2.28	10.56
		무	279	77.06	43.73	28.67	18.28	5.38	3.58	1.79	
	고	유	264	84.47	38.64	25.38	17.42	7.58	3.79	1.89	4.70
		무	275	85.09	40.36	25.82	16.36	11.64	6.18	1.09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1	78.87	50.70	38.03	22.54	11.27	5.63	0.00	15.97*[b]
		일반학교	355	79.44	40.85	32.39	16.62	3.38	2.82	2.25	
	중	혁신학교	107	78.50	48.60	33.64	18.69	8.41	1.87	2.80	7.44
		일반학교	391	81.84	41.94	25.58	16.37	6.14	4.35	1.79	
	고	혁신학교	32	81.25	31.25	25.00	15.63	12.50	0.00	3.13	3.62[b,c]
		일반학교	507	85.01	40.04	25.64	16.96	9.47	5.33	1.38	
연령	초	20대	46	78.26	47.83	34.78	19.57	6.52	6.52	0.00	25.22[b,c]
		30대	126	81.75	34.13	40.48	18.25	2.38	3.17	1.59	
		40대	181	79.56	41.44	28.18	17.68	6.08	1.66	2.76	
		50대 이상	73	75.34	56.16	32.88	15.07	4.11	5.48	1.37	
	중	20대	37	70.27	37.84	32.43	16.22	2.70	0.00	5.41	27.47[b,c]
		30대	143	82.52	41.26	23.78	16.08	7.69	5.59	0.70	
		40대	166	86.75	43.37	22.89	18.07	4.22	4.22	1.81	
		50대 이상	152	76.32	46.71	34.21	16.45	9.21	2.63	2.63	
	고	20대	50	82.00	34.00	26.00	20.00	8.00	10.00	0.00	23.74[b]
		30대	179	80.45	38.55	28.49	20.11	6.70	6.15	2.23	
		40대	137	86.86	37.23	27.01	16.79	10.95	4.38	0.00	
		50대 이상	173	88.44	43.93	21.39	12.72	12.14	2.89	2.31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98〉 향후 인권교육 관련 연수 참여 의향(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5,886	2.05	0.61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971	2.05	0.60	F=0.79	0.452	②〈①
	중학교 ②		1,893	2.05	0.61			③〈①
	고등학교 ③		2,022	2.03	0.62			③〈②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2.06	0.61	t=0.49	0.622	-
		무	1,144	2.05	0.60			
	중	유	737	2.10	0.62	t=2.52	0.012	-
		무	1,156	2.02	0.61			
	고	유	877	2.05	0.60	t=1.08	0.282	-
		무	1,145	2.02	0.63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2.01	0.60	t-=-1.35	0.177	-
		일반학교	1,621	2.06	0.60			
	중	혁신학교	379	2.00	0.62	t=-1.97	0.049	-
		일반학교	1,514	2.07	0.61			
	고	혁신학교	166	2.00	0.62	t=-0.70	0.484	-
		일반학교	1,856	2.04	0.62			
연령	초	20대 ①	255	2.08	0.57	F=3.05	0.028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642	2.09	0.66			
		40대 ③	725	2.05	0.54			
		50대 이상 ④	349	1.98	0.63			
	중	20대 ①	200	2.12	0.66	F=4.85	0.002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576	2.12	0.61			
		40대 ③	598	2.01	0.60			
		50대 이상 ④	519	2.01	0.62			
	고	20대 ①	172	1.97	0.63	F=0.98	0.402	-
		30대 ②	685	2.05	0.63			
		40대 ③	588	2.05	0.60			
		50대 이상 ④	577	2.02	0.61			

*p〈0.05, **p〈0.01, ***p〈0.001

〈부록 Ⅱ-99〉 인권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교사)

구분			사례 수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확보의 어려움	인권교육 목표와 의미에 대한 인식부조	국가수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부족	학생의 관심부족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교사의 관심부족	하교장의 관심부족	기타	χ^2
전체			5,886	49.03	41.78	31.26	27.06	22.34	11.11	10.09	4.01	2.34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44.70	50.38	29.93	27.80	19.03	10.40	10.60	2.49	3.35	243.77***
	중학교		1,893	52.35	39.46	30.16	28.26	24.78	11.09	8.08	2.75	2.22	
	고등학교		2,022	50.15	35.56	33.58	25.22	23.29	11.82	11.47	6.68	1.48	
인권조례제정지역	초	유	827	44.86	52.96	29.63	28.42	21.16	7.98	9.07	1.81	3.02	24.32**
		무	1,144	44.58	48.51	30.16	27.36	17.48	12.15	11.71	2.97	3.58	
	중	유	737	50.75	39.21	27.27	29.17	28.09	11.40	8.14	2.58	2.58	14.68
		무	1,156	53.37	39.62	32.01	27.68	22.66	10.90	8.04	2.85	1.99	
	고	유	877	47.43	34.89	31.36	26.68	26.45	11.63	11.63	7.53	1.71	23.08**
		무	1,145	52.23	36.07	35.28	24.10	20.87	11.97	11.35	6.03	1.31	
혁신학교여부	초	혁신학교	350	48.00	49.71	30.00	28.29	16.29	10.86	10.29	1.43	2.29	6.23
		일반학교	1,621	43.99	50.52	29.92	27.70	19.62	10.30	10.67	2.71	3.58	
	중	혁신학교	379	52.77	40.11	30.08	27.44	23.22	11.87	8.18	2.37	2.90	2.71
		일반학교	1,514	52.25	39.30	30.18	28.47	25.17	10.90	8.06	2.84	2.05	
	고	혁신학교	166	53.01	39.76	34.94	23.49	22.29	4.22	13.86	6.63	0.00	14.11
		일반학교	1,856	49.89	35.18	33.46	25.38	23.38	12.50	11.26	6.68	1.62	
연령	초	20대	255	42.75	52.16	28.63	28.24	22.35	6.27	11.76	5.10	2.75	44.10*
		30대	642	47.66	46.88	29.60	25.70	20.87	11.06	10.90	2.34	3.58	
		40대	725	43.31	50.07	31.17	28.83	16.97	11.72	10.90	1.79	4.00	
		50대 이상	349	43.55	56.16	28.94	29.23	17.48	9.46	8.60	2.29	2.01	
	중	20대	200	57.50	37.50	24.50	31.00	26.50	10.00	8.00	3.50	1.50	40.07
		30대	576	48.61	37.33	29.51	30.73	27.08	11.63	8.85	2.78	2.26	
		40대	598	52.01	43.98	30.27	26.25	22.07	11.20	7.19	3.34	2.68	
		50대 이상	519	54.91	37.38	32.95	26.78	24.66	10.79	8.29	1.73	1.93	
	고	20대	172	46.51	41.28	32.56	25.00	26.74	11.63	10.47	5.23	0.58	31.33
		30대	685	50.36	35.18	32.26	25.40	25.26	10.36	10.22	8.32	1.61	
		40대	588	52.55	35.88	33.84	24.49	20.58	12.41	10.71	6.63	1.87	
		50대 이상	577	48.53	33.97	35.18	25.82	22.70	13.00	14.04	5.20	1.21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00〉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교사)

구분			사례 수	인권교육 시간 확보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의 개발 보급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	교육과정 통합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현직 연수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강화	지연단체 및 인권단체와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	기타	χ^2
전체			5,886	36.68	34.88	33.11	28.97	17.99	17.50	16.60	12.18	1.68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29.02	41.50	29.43	31.61	15.32	17.20	20.50	12.79	2.08	258.80***^{b,c}
	중학교		1,893	39.57	32.49	34.76	29.27	17.06	16.43	16.11	12.41	1.58	
	고등학교		2,022	41.44	30.66	35.16	26.11	21.46	18.79	13.25	11.37	1.38	
인권조례제정지역	초	유	827	26.24	45.83	26.60	32.29	14.63	15.24	22.49	14.27	1.69	42.96***^{b,c}
		무	1,144	31.03	38.37	31.47	31.12	15.82	18.62	19.06	11.71	2.36	
	중	유	737	37.45	33.24	34.33	32.02	17.77	13.43	16.01	13.70	1.63	24.49^{b,c}
		무	1,156	40.92	32.01	35.03	27.51	16.61	18.34	16.18	11.59	1.56	
	고	유	877	39.57	31.36	35.69	27.71	21.55	18.24	12.88	11.29	1.37	11.60^{b,c}
		무	1,145	42.88	30.13	34.76	24.89	21.40	19.21	13.54	11.44	1.40	
혁신학교여부	초	혁신학교	350	29.43	41.43	30.00	32.86	16.57	18.00	19.14	10.00	1.14	11.02^{b,c}
		일반학교	1,621	28.93	41.52	29.30	31.34	15.05	17.03	20.79	13.39	2.28	
	중	혁신학교	379	43.01	27.97	37.20	30.08	17.15	17.94	14.78	11.08	0.53	15.66^{b,c}
		일반학교	1,514	38.71	33.62	34.15	29.06	17.04	16.05	16.45	12.75	1.85	
	고	혁신학교	166	42.77	38.55	24.70	29.52	21.08	20.48	10.84	10.84	0.60	18.33^{b,c}
		일반학교	1,856	41.33	29.96	36.10	25.81	21.50	18.64	13.47	11.42	1.45	
연령	초	20대	255	33.73	42.75	29.02	29.80	16.86	15.69	15.69	14.51	1.96	70.66*^{b,c}
		30대	642	32.87	41.59	31.62	28.35	14.02	16.04	20.25	12.15	2.80	
		40대	725	26.07	40.14	30.76	34.90	14.90	16.83	21.52	12.28	1.66	
		50대 이상	349	24.64	43.27	22.92	32.09	17.48	21.20	22.35	13.75	1.72	
	중	20대	200	46.00	38.50	33.00	26.50	14.00	15.50	13.50	12.00	1.00	68.46*^{b,c}
		30대	576	36.98	33.16	36.11	27.08	16.49	15.28	17.71	14.41	2.26	
		40대	598	39.46	35.12	36.45	28.09	16.39	17.22	12.88	12.37	1.67	
		50대 이상	519	40.08	26.40	31.98	34.10	19.65	17.15	19.08	10.40	0.96	
	고	20대	172	48.26	29.65	27.91	20.93	23.84	19.77	17.44	11.05	0.58	54.66^{b,c}
		30대	685	44.09	32.85	35.77	25.55	18.54	16.20	13.28	11.39	1.75	
		40대	588	40.14	30.78	36.73	27.55	21.09	19.05	12.07	11.22	1.02	
		50대 이상	577	37.61	28.25	35.01	26.86	24.61	21.32	13.17	11.61	1.56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01〉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노력할 점(학생)

구분			사례 수	학생 대상 교육시간 확대	선생님 대상 교육시간 확대	인권 침해시 전문가 도움	학생 참여 확대	학생 인권 침해 확인을 위한 정기적 제도	기타	χ^2
전체			13,524	24.58	11.73	20.43	19.11	21.66	2.48	-
학교급	초등학교		4,374	25.67	6.56	22.77	15.04	26.45	3.50	356.30***
	중학교		4,647	25.91	12.67	19.73	19.82	19.84	2.02	
	고등학교		4,503	22.14	15.79	18.88	22.34	18.88	1.98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1,702	22.39	6.35	24.15	15.92	27.14	4.05	18.96**
		무	2,672	27.77	6.70	21.89	14.48	26.01	3.14	
	중	유	1,937	24.99	11.67	20.29	20.91	20.29	1.86	7.19
		무	2,710	26.57	13.39	19.34	19.04	19.52	2.14	
	고	유	2,008	22.96	14.89	19.77	22.41	17.83	2.14	8.25
		무	2,495	21.48	16.51	18.16	22.28	19.72	1.8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794	22.92	6.55	21.91	17.00	27.71	3.90	6.98
		일반학교	3,580	26.28	6.56	22.96	14.61	26.17	3.41	
	중	혁신학교	934	26.02	14.03	18.31	21.09	18.52	2.03	4.54
	고	일반학교	3,713	25.88	12.34	20.09	19.50	20.17	2.02	14.08*
		혁신학교	355	23.38	11.55	24.23	19.72	20.00	1.13	
		일반학교	4,148	22.03	16.15	18.42	22.57	18.78	2.05	
취약집단 학생비율	초	0~10%	2,989	24.92	6.46	22.82	15.36	26.90	3.55	8.20
		11~20%	1,106	27.76	6.78	22.42	14.29	24.95	3.80	
		21%이상	279	25.45	6.81	23.66	14.70	27.60	1.79	
	중	0~10%	2,611	26.01	12.91	20.45	19.76	18.61	2.26	16.08
		11~20%	1,307	25.94	11.55	19.36	20.20	20.96	1.99	
		21%이상	685	24.38	13.87	17.81	20.29	22.34	1.31	
	고	0~10%	2,486	21.04	17.22	18.70	23.41	17.78	1.85	19.22*
		11~20%	1,298	22.96	13.94	19.57	21.11	20.42	2.00	
		21%이상	719	24.48	14.19	18.22	20.86	19.89	2.36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02〉 인권교육 관련 연수 내용 요구(교사)

구분			사례 수	인권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인권교육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학급 운영 방안에 관한 내용	학생 인권 이해 교육	인권교육을 위한 지역 사회 및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기타	χ^2
전체			5,886	48.35	44.73	41.59	40.32	12.40	10.06	2.36	-
학교급	초등학교		1,971	53.63	46.58	41.70	33.08	11.57	10.81	2.44	130.62***
	중학교		1,893	46.75	46.70	40.78	41.52	12.04	9.83	2.32	
	고등학교		2,022	44.71	41.10	42.24	46.24	13.55	9.55	2.32	
인권조례 제정 지역	초	유	827	57.80	49.70	39.30	28.30	12.33	9.67	2.66	36.67***
		무	1,144	50.61	44.32	43.44	36.54	11.01	11.63	2.27	
	중	유	737	50.47	46.95	43.28	36.64	10.99	8.96	2.58	24.63**
		무	1,156	44.38	46.54	39.19	44.64	12.72	10.38	2.16	
	고	유	877	43.56	42.65	44.81	43.10	14.37	9.12	2.17	14.10*
		무	1,145	45.59	39.91	40.26	48.65	12.93	9.87	2.4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350	56.00	43.43	45.43	34.86	9.43	8.00	2.86	11.16
		일반학교	1,621	53.12	47.25	40.90	32.70	12.03	11.41	2.34	
	중	혁신학교	379	50.40	42.22	44.59	43.01	11.08	6.86	1.85	15.32*
		일반학교	1,514	45.84	47.82	39.83	41.15	12.29	10.57	2.44	
	고	혁신학교	166	51.81	44.58	38.55	44.58	12.05	7.23	1.20	7.36
		일반학교	1,856	44.07	40.79	42.56	46.39	13.69	9.75	2.42	
연령	초	20대	255	56.08	49.80	37.25	31.76	10.20	10.20	4.31	68.50***
		30대	642	59.35	48.75	39.56	31.78	7.17	10.12	3.27	
		40대	725	52.00	44.41	43.86	33.24	13.79	10.48	1.93	
		50대 이상	349	44.70	44.70	44.41	36.10	16.05	13.18	0.57	
	중	20대	200	55.00	44.50	39.50	33.50	11.50	11.50	4.50	65.13***
		30대	576	50.35	46.53	39.58	39.93	9.72	10.59	3.13	
		40대	598	44.98	48.33	45.15	40.97	11.37	7.02	2.17	
		50대 이상	519	41.62	45.86	37.57	47.01	15.61	11.56	0.77	
	고	20대	172	54.07	35.47	40.12	47.09	11.63	9.88	1.74	59.46***
		30대	685	48.61	43.36	42.63	41.61	11.68	9.05	2.77	
		40대	588	44.05	41.50	43.88	43.37	15.65	8.67	2.55	
		50대 이상	577	37.95	39.69	40.73	54.42	14.21	10.92	1.73	

*p〈0.05, **p〈0.01, ***p〈0.001
※b. 이 부표의 셀 중 20% 이상이 셀 빈도를 5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이 부표의 최소 예상 셀 빈도는 1보다 작습니다. 카이제곱 결과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록 Ⅱ-103〉 인권구제 제도 인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2,441	2.63	0.79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827	2.66	0.81	F=2.43	0.088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737	2.65	0.78			
	고등학교 ③		877	2.58	0.77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54	2.63	0.81	t=-0.65	0.516	-
		일반학교	573	2.67	0.81			
	중	혁신학교	174	2.65	0.87	t=-0.08	0.934	-
		일반학교	563	2.66	0.75			
	고	혁신학교	150	2.61	0.78	t=0.49	0.621	-
		일반학교	727	2.58	0.77			
연령	초	20대 ①	96	2.45	0.79	F=9.42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269	2.58	0.81			
		40대 ③	332	2.67	0.81			
		50대 이상 ④	130	2.96	0.76			
	중	20대 ①	75	2.44	0.76	F=6.38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211	2.57	0.78			
		40대 ③	248	2.64	0.77			
		50대 이상 ④	203	2.83	0.76			
	고	20대 ①	66	2.52	0.79	F=8.39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306	2.45	0.78			
		40대 ③	271	2.58	0.78			
		50대 이상 ④	234	2.78	0.71			

*p〈0.05, **p〈0.01, ***p〈0.001

〈부록 Ⅱ-104〉 인권구제 제도 도움 정도: 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2,441	2.91	0.72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827	2.97	0.72	F=4.60	0.010	②〈① ③〈①* ③〈②
	중학교 ②		737	2.90	0.71			
	고등학교 ③		877	2.86	0.74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54	2.97	0.69	t=0.03	0.975	-
		일반학교	573	2.97	0.73			
	중	혁신학교	174	2.86	0.78	t=-0.95	0.341	-
		일반학교	563	2.91	0.68			
	고	혁신학교	150	2.87	0.77	t=0.08	0.933	-
		일반학교	727	2.86	0.73			
연령	초	20대 ①	96	2.88	0.67	F=6.85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269	2.93	0.74			
		40대 ③	332	2.92	0.70			
		50대 이상 ④	130	3.22	0.70			
	중	20대 ①	75	2.92	0.61	F=3.94	0.008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211	2.83	0.74			
		40대 ③	248	2.84	0.72			
		50대 이상 ④	203	3.04	0.67			
	고	20대 ①	66	3.15	0.59	F=12.28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306	2.71	0.79			
		40대 ③	271	2.82	0.69			
		50대 이상 ④	234	3.03	0.71			

*p〈0.05, **p〈0.01, ***p〈0.001

〈부록 Ⅱ-105〉 인권조례 효과: 인권조례 제정 지역(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2,441	3.13	0.7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827	3.15	0.78	F=0.30	0.742	-
	중학교 ②		737	3.12	0.79			
	고등학교 ③		877	3.14	0.75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254	3.10	0.81	t=-1.09	0.277	-
		일반학교	573	3.17	0.76			
	중	혁신학교	174	3.22	0.79	t=1.93	0.054	-
		일반학교	563	3.09	0.79			
	고	혁신학교	150	3.14	0.75	t=0.12	0.906	-
		일반학교	727	3.13	0.75			
연령	초	20대 ①	96	3.05	0.79	F=3.49	0.015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269	3.13	0.78			
		40대 ③	332	3.11	0.80			
		50대 이상 ④	130	3.34	0.69			
	중	20대 ①	75	3.12	0.83	F=2.51	0.057	-
		30대 ②	211	3.02	0.83			
		40대 ③	248	3.10	0.77			
		50대 이상 ④	203	3.24	0.74			
	고	20대 ①	66	3.19	0.64	F=8.08	0.00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306	2.97	0.82			
		40대 ③	271	3.16	0.74			
		50대 이상 ④	234	3.30	0.68			

*p〈0.05, **p〈0.01, ***p〈0.001

〈부록 Ⅱ-106〉 인권조례 필요 여부: 인권조례 미제정 지역(교사)

구분			사례 수	평균 (4점 만점)	표준편차	t/F	유의확률	사후분석
전체			3,445	2.87	0.77	-	-	-
학교급	초등학교 ①		1,144	2.89	0.79	F=0.52	0.596	-
	중학교 ②		1,156	2.85	0.76			
	고등학교 ③		1,145	2.86	0.76			
혁신학교 여부	초	혁신학교	96	3.05	0.85	t=1.95	0.051	-
		일반학교	1,048	2.87	0.79			
	중	혁신학교	205	3.01	0.74	t=3.17	0.002	-
		일반학교	951	2.82	0.76			
	고	혁신학교	16	2.87	0.74	t=0.02	0.980	-
		일반학교	1,129	2.86	0.76			
연령	초	20대 ①	159	2.90	0.75	F=3.06	0.027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373	2.79	0.81			
		40대 ③	393	2.91	0.79			
		50대 이상 ④	219	3.00	0.80			
	중	20대 ①	125	2.84	0.75	F=2.79	0.040	②〈① ③〉① ④〉① ③〉② ④〉② ④〉③
		30대 ②	365	2.76	0.75			
		40대 ③	350	2.88	0.77			
		50대 이상 ④	316	2.93	0.76			
	고	20대 ①	106	2.93	0.74	F=0.74	0.529	-
		30대 ②	379	2.84	0.72			
		40대 ③	317	2.83	0.77			
		50대 이상 ④	343	2.90	0.81			

*p〈0.05, **p〈0.01, ***p〈0.001

연구보고 RR 2019-2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발 행 2019년 12월
발행인 원장 반상진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27873)
전화 : (043) 5309-114
팩스 : (043) 5309-819
http://www.kedi.re.kr
등 록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쇄처 디자인 범신 (042) 254-8737
ISBN 979-11-5666-385-0 93370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ISBN: 979-11-5666-385-0
93370
9 791156 663850